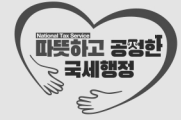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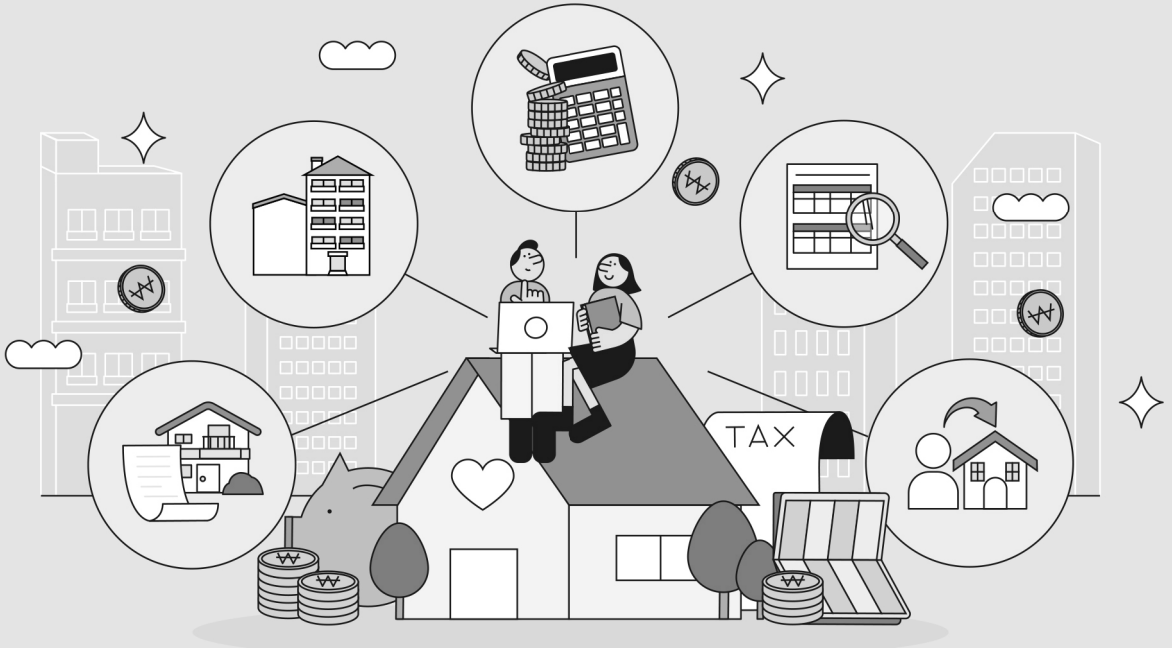
11-1210000-000488-10



TAX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리말

어려운 세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상속·증여세 납세인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원 여러분의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 상속·증여세는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및 세심한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상속·증여세 관련 전문지식 함양 및 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실무해설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신 해석사례 및 판례 뿐만 아니라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비롯하여 가업승계 세제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상속·증여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납세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4.

자산과세국장 안 덕 수

일러두기

편의상 법령 명칭을 아래와 같이 약어로 표시하였습니다.

- 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증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증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증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 상증집행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특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국기법 ⇒ 국세기본법
- 국기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기규칙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소득법 ⇒ 소득세법
- 소득령 ⇒ 소득세법 시행령
- 법인법 ⇒ 법인세법
- 법인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규정 및
질의회신·판례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개정내용
-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11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11
제2절 상속의 효과	12
1. 상속	12
2. 상속의 효과	12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14
1. 유 증	14
2. 사인증여	16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17
1. 자연사망	18
2. 인정사망	18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19
4. 동시사망	19
5. 상속개시의 시기	20
6.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	20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22
1. 지정상속분	22
2. 법정상속분	22
3. 대습상속분	26
4. 기여분	26

5. 협의에 따른 분할	27
6. 유류분 제도	27
7.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28
8. 국 가	29
제6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0
1. 단순승인	30
2. 한정승인	31
3. 상속의 포기	31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32
제2장 상속세 총설	33
제1절 상속세의 의의	33
1. 상속세의 특성	33
2. 상속세의 과세체계	34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36
1. 상속의 범위	36
2. 상속세 과세범위와 상속개시일	37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	41
1. 상속세 납부의무자 구분	41
2. 상속세 납부의무	44
제4절 납세지	47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47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48
3.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48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50
1. 일반적인 경우	50
2.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50



3. 상속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51
4. 판결 등에 따른 제척기간 특례	52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53
제1절 총상속재산	53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54
제3절 간주 상속재산	56
1. 보험금	56
2. 신탁재산	58
3. 퇴직금 등	60
제4절 추정 상속재산	62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62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66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66
4. 추정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추정의 배제	67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70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70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71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71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74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74
2.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78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79
1. 공과금	79
2. 장례비용	81
3. 채 무	81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85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85
1. 총상속재산가액 및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공제금액	85
2.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86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91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92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93
1.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93
2. 상속세 과세최저한	93
제2절 상속공제	94
1. 기초공제	94
2. 가업상속공제	95
3. 영농상속공제	120
4. 그 밖의 인적공제	127
5. 일괄공제	130
6. 배우자 상속공제	131
7. 금융재산 상속공제	137
8. 재해손실공제	140
9. 동거주택 상속공제	140
10.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액	146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148
제1절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등	148
1. 세 율	148
2. 산출세액	148
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149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150
1.	증여세액공제	150
2.	외국납부세액공제	152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53
4.	신고세액공제	154
5.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155
제3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158
1.	납부유예 신청대상	158
2.	신청절차 및 허가절차	158
3.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159
4.	사후관리	160
5.	납부유예 취소 및 변경	163
6.	재차 납부유예	163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167
제1절	증여와 증여세	167
1.	민법상 증여	167
2.	상증법상 증여	169
3.	증여세 원전포괄주의 시행	170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172
1.	증여재산	172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재분할의 경우	175
3.	반환 또는 再증여한 경우	178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181
1.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182
2.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의 범위	183
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87
4.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188
5. 명의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191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192
1. 신고 관할	193
2. 결정·경정의 관할	193
3. 증여재산의 소재지	193
제5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94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194
1. 특수관계인 규정	194
2. 특수관계인 범위	195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99
제1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99
1. 일반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99
2. 증여예시·추정·의제 재산의 취득시기	202
제2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03
1. 의 의	203
2. 증여재산가액 계산	203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6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06
1.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06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10
1.	공익법인 등의 범위	210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11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12
1.	공익신탁의 요건	212
2.	공익신탁의 이행시기	212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13
1.	장애인의 범위	213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214
3.	증여세 과세	215
4.	증여세 추징세액의 계산	217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218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218
1.	채 무	218
2.	증여재산가산액	220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224
1.	증여재산공제	224
2.	재해손실공제	230
3.	감정평가수수료	230
제3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32
1.	공제내용	232
2.	공제한도	233
3.	증여재산	233
4.	반환특례	234
5.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면제 특례 등	234
6.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	235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236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236
1. 세 율	237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237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240
1. 납부세액공제	240
2. 외국납부세액공제	240
3.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241
4. 신고세액공제	242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243
1. 증여자(자경농민) 요건	243
2. 수증자(영농자녀) 요건	244
3. 감면대상 증여농지 등의 범위	245
4. 감면세액의 한도	246
5. 감면세액의 징수	246
6.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248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증여세 계산 특례	248
8. 감면신청	249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251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51
1. 과세특례 적용요건	252
2. 과세특례 내용	254
3. 사후관리	255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59
1. 과세특례 적용요건	260
2. 과세특례 내용	263
3. 사후관리	266



제3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270
1.	납부유예 신청대상	270
2.	신청절차 및 허가절차	270
3.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271
4.	사후관리	271
5.	납부유예 취소 및 변경	273
6.	재차 납부유예	273
제7장	유형별 증여예시	274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274
1.	하나의 증여에 2 이상 증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할 증여규정	274
2.	1년간 동일한 이익의 합산	275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277
1.	과세요건	278
2.	증여시기	278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279
제3절	보험금의 증여	281
1.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282
2.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84
제4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86
1.	특수관계인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	287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	290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95
1.	과세요건	295
2.	증여재산가액	296
3.	증여시기	296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97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298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300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1
	1. 과세요건	302
	2. 증여재산가액	304
	3. 증여시기	307
	4. 증여세 납세의무	307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12
	1. 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314
	2. 저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319
	3. 저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321
	4. 저가의 신주를 직접배정·초과배정한 경우	324
	5.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327
	6. 고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328
	7. 고가의 신주를 직접배정·초과배정한 경우	330
	8.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333
	9.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333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37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338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339
	3. 증여시기	340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43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345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346
	3. 증여시기	347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49
1. 거래단계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350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354
3.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355
4. 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	357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358
6. 초과인수 주주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358
7. 주주 아닌 자가 인수 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359
8. 전환가액 등이 주시가액보다 높은 경우	360
9.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361
10. 과세표준과 연대납세의무 면제	362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364
1. 과세요건	365
2. 증여재산가액	365
3. 과세방법 및 증여세 정산신고	367
4. 납세의무자	368
5. 증여시기	368
제13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69
1. 과세요건	370
2. 정산기준일	371
3. 증여재산가액	372
4. 증여세액의 정산 등	375
5.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375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8
1. 과세요건	378
2. 증여시기	379
3. 증여재산가액	379
4. 경정 등의 특례	380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381
1. 과세요건	382
2. 정산기준일	384
3. 증여재산가액	384
4. 증여세액의 정산 등	386
5.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387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8
1. 과세대상 거래유형	388
2. 증여시기	389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89
4. 용역의 시가	390
5. 경정 등의 청구특례	391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2
1. 과세대상 거래유형	392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93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5
1. 과세요건	396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97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99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400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	400
2.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402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03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03
2.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06
3. 증여추정의 배제기준	407
4. 증여시기	408



제3절	명익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09
1.	증여의제 대상	410
2.	증여의제 제외	413
3.	증여의제 요건	414
4.	증여의제 시기	417
5.	증여의제 재산가액	419
6.	명익신탁의 해지(환원)	420
7.	명익신탁재산의 판정 흐름도	424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25
1.	과세요건	426
2.	증여시기	438
3.	증여자	438
4.	수증자	438
5.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438
6.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445
7.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446
8.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446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48
1.	사업기회제공	448
2.	과세요건	449
3.	증여의제이익	449
4.	정 산	451
5.	증여세 신고기한	452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3
1.	과세요건	455
2.	특수관계인의 범위	456
3.	증여재산가액	456
4.	증여시기	459
5.	증여세 신고기한	459

제3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463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464
1.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	464
2. 상속세 자진납부	467
제2절 증여세 신고 납부	469
1.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	469
2. 증여세 자진납부	471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473
1. 수정신고	473
2. 기한 후 신고	474
3. 경정 등의 청구	474
4.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특례	476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479
제1절 연부연납	479
1. 연부연납 신청요건	479
2.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480
3. 연부연납과 납세담보의 제공	483
4. 연부연납기간	483
5. 연부연납에 의한 분할 납부세액	486
6. 연부연납기간 중 경정으로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의 방법	487
7. 연부연납의 취소와 징수	487
8. 연부연납 가산금	489



제2절 물납 제도	492
1. 물납 신청요건	493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494
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497
4. 물납 세액의 범위	498
5. 물납에 총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501
6.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503
7. 물납재산의 환급	506
제3절 문화재 등의 물납	507
1. 물납 요건	507
2. 물납 대상	507
3. 물납 절차	507
4. 수납일 지정	509
5. 물납 신청 한도	509
6. 수납가액	509
7. 물납 불허 사유	509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510
제1절 결정과 경정	510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510
2. 고액 상속인 재산 사후관리	512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513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515
제3절 질문조사권	516
1. 조사원증의 제시	516
2.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516
3. 과태료 부과	517

제4절	납세관리인	518
	1. 납세관리인의 업무 및 권한	518
	2. 납세관리인의 설정·변경·해임의 신고	518
	3.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519
	4.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519
	5. 상속세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발급	519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520
제1절	신고 관련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520
	1. 무신고 가산세	520
	2. 과소신고 가산세	522
	3.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523
	4.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524
	5.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 관련 가산세	524
	6. 납부지연 가산세	525
	7. 가산세의 면제·감면	527
	8. 가산세의 한도	528
제2절	상속·증여세법 상의 가산세	529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529

제4편 재산의 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533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533
	1. 재산평가의 의의	533
	2. 재산평가의 기준일	533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536
1. 시가평가의 원칙	536
2. 시가산정 곤란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536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537
4. 기타재산(국외재산, 공유재산, 할부재산 등) 평가방법	537
5. 2 이상의 재산에 포함된 경우 안분방법	539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541
제1절 시가의 이해	541
1. 시가의 개념	541
제2절 시가의 적용 기준	543
1.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543
2. 평가기간 내의 적용기준	543
제3절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	544
1. 평가대상 재산의 거래가액	545
2.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546
3. 평가대상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548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549
5.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	550
6. 평가심의위원회	553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556
제1절 부동산 등의 평가	558
1. 토지의 평가	558
2. 건물의 평가	561
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565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	569
1. 지상권의 평가	569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570
3. 선박·항공기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571
4. 상품·제품 등의 평가	571
5.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	572
6. 동물 및 별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유형재산의 평가	572
7. 미착상품의 평가	572
8.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572
9.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의 평가	574
10. 신주인수권증권(warrants)의 평가	577
11.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의 평가	578
1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581
13.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평가	582
14.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583
15.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584
1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584
17. 영업권의 평가	586
18.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평가	588
19.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588
20.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590
2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590
2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592
23. 가상자산의 평가	593
24. 국외재산의 평가	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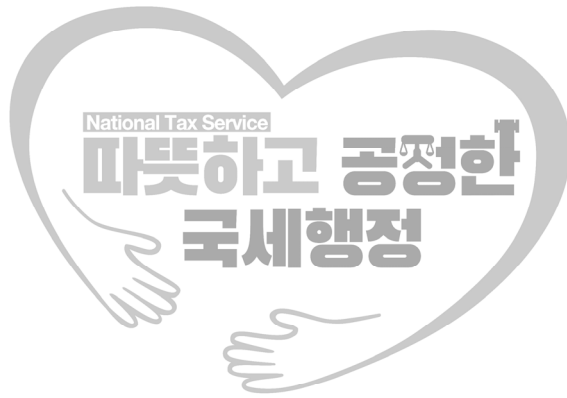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597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597
1.	주식과 출자지분	597
2.	유가증권 시장	598
제2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600
1.	원 칙	600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601
3.	전·후 2개월 중에 증자 등의 사유발생시 평가	602
제3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605
1.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605
2.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606
3.	미상장 주식 등의 평가	607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609
1.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609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609
3.	순자산가치의 산정	613
4.	순손익가치의 산정	631
5.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650
제5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651
1.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651
2.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654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669
1.	평가 특례의 취지	669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670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671
4.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673



2024년 상속세·증여세 분야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직계존속 ○ (증여기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후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제한도)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 20% ○ (연부연납기간) 5년 ○ (사후관리) 중분류 내 변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 (연부연납기간) 15년 ○ (사후관리) 대분류 내 변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중분류 내 변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기회발전특구) 일부 사업장 이전·소재 기업에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화·골동품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인 범위) 2인 이상의 전문가 ○ (평가방법)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화·골동품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인 범위) 2개 이상의 전문기관 ○ (평가방법) 좌동
(단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사유 합리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신고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사유 합리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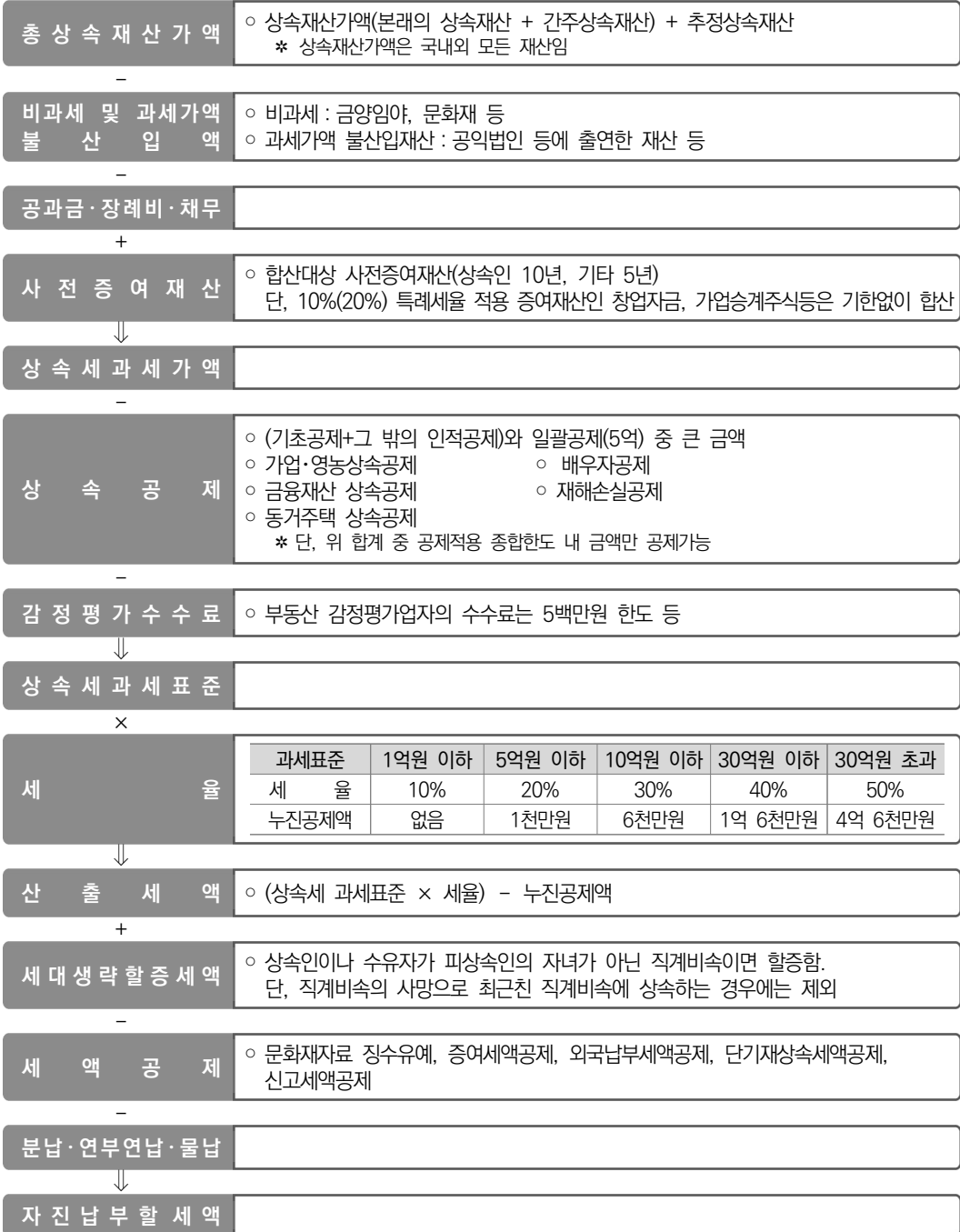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2
◆ 상속공제액의 종류	3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4
◆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5
◆ 증여추정배제기준	5
◆ 재산 종류별 기준시가 요약	6
◆ 상증법상 이자율(1)	7
◆ 상증법상 이자율(2)	8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공제액의 종류

☑ 공제 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아래 ①~⑦의 합계,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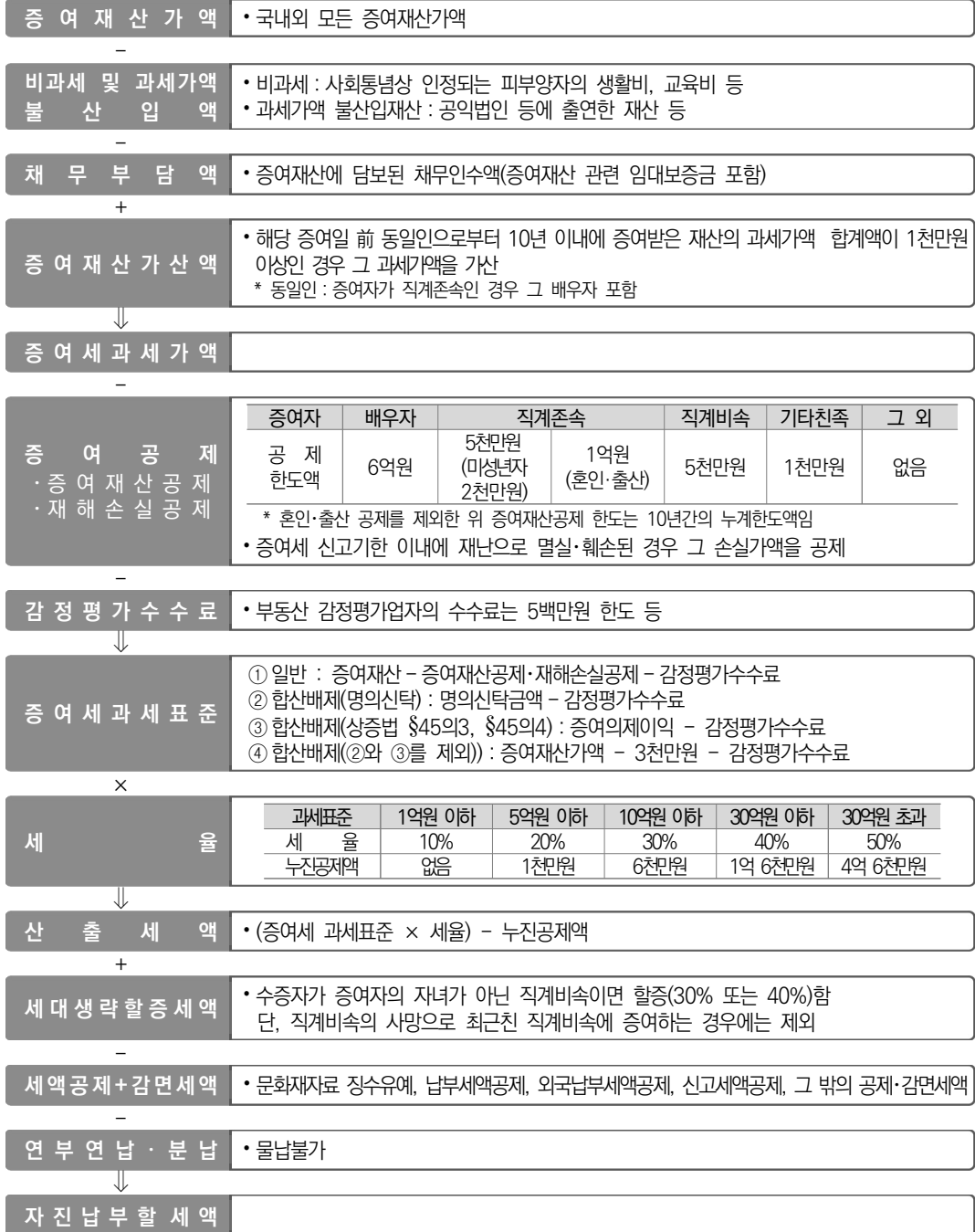
*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 = MIN(기초공제 2억원,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구 분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법 §18) (2억원) + (가업·영농 상속공제액)	- 기초공제액 :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최대 600억원 한도)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 (공제한도 : 30억원)
② 배우자공제(법 §19) * 신고기한 익일부터 9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해야 공제 가능 * 최소 5억원은 공제됨	- 배우자공제액 = Max [Min (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해당분 (= 본래·간주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공과금) ② 공제한도액 :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합산대상 증여재산중 배우자가 증여 받은재산의 과세표준) ㉡ 30억원 •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과금·채무)
③ 그 밖의 인적공제(법 §20)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	- 자녀수(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와 중복공제가능 - 미성년자수(태아 포함)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자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가능
④ 일괄공제(법 §21)	- Max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일괄공제 적용안됨 •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원 적용
⑤ 금융재산상속공제(법 §22) * 상속재산만 적용가능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 2천만원 초과시 : Min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 2천만원 미만시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차명 금융재산은 공제배제
⑥ 재해손실공제(법 §23)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⑦ 동거주택상속공제(법 §23의2)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100%(6억원 한도)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법 §24)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차감)]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2000.1.1. 이후 상속·증여분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추정배제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30세 이상인 자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3. 40세 이상인 자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 재산 종류별 기준시가 요약

구 분	기준시가	고시(공시)대상	고시(공시)기관	고시일	적 용
주택	공동 주택가격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교통부장관	매년 4.30.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7, 9월 부과 ● 종부세 12월 부과
	개별 주택가격	단독주택 (다가구·다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 시·군·구청장 	매년 1월말 매년 4.30.까지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구분소유된 상가와 오피스텔	국세청장	매년 12.31.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세) 에만 적용
기타건물	건물 기준시가	주택· 오피스텔 등 외 일반 건축물	국세청장	매년 12.31.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세) 에만 적용
	건물 시가표준액	주택외 일반 건축물	행정안전부 시·군·구청장	매년 1.1.까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에만 적용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토지 (단독주택부수토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매년 2월말 매년 5.31.까지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9월 부과 ● 종부세 12월 부과
시설물 이용권	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매년 1.1. (수시 조정 고시)	국세(양도·상속·증여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 **상증법상 이자율(1)**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증령 §54①)**

일 자	이자율(연)	적 용 시 기	비 고
2010.11.5.	10%	2010.11.5.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6.3.21.	10%	2016.3.2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규칙 §17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증규칙 §18의3)**

일 자	이자율(연)	적 용 시 기	비 고
2010.11.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환사채 등 : 2010.11.5.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장기채권 할인시 적용할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7.31.~ 2011.7.25. : 6.5% - 2011.7.26. 이후 : 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016.3.21.	8%	2016.3.2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규칙 §18의3

☑ **금전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상증령 §31의4)**

일 자	이자율(연)	적 용 시 기	비 고
2001.12.31. 2002.12.31. 2009.7.31.	9%	2002.1.1.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제2002-41호 제2009-27호
2010.11.5.	8.5%	2010.11.5.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6.3.21.	4.6%	2016.3.2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규칙 §10의5

* 2014.2.21. 이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 ③항의 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적용

* 2016.3.21. 상증규칙 §10의5는 법인규칙 §43②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 상증법상 이자율(2)

☑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부동산 등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상증규칙 §15의2)

일 자	이자율(연)	적 용 시 기	비 고
1997.4.19.	18%	1997.1.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규칙 §15의2
2009.4.23.	12%	2009.4.23.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규칙 §15의2

☑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상증규칙 §19의2)

일 자	이자율(연)	적 용 시 기	비 고
2004.11.17. 2009.7.31.	6.5%	2004.1.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고시 제2004-3호 제2009-30호
2010.11.5.	6.5%	2010.11.5.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1호
2016.3.21.	3.5%	2016.3.2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규칙 §19의2
2017.3.10.	3.0%	2017.3.10.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상증규칙 §19의2

* 신탁의 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3.0%(종전 10%)를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상증령 제69조)

적 용 시 기	일 자	이자율(연)	비 고
2018. 3. 19. 이후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18.3.19.	연 1.8%	국기규칙 §19의3
	2019.3.20.	연 2.1%	
2020 2. 11. 이후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3.13.	연 1.8%	국기규칙 §19의3
	2021.3.16.	연 1.2%	
	2023.3.20.	연 2.9%	
	2024.3.22.	연 3.5%	

* 2020.2.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2.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함(2020.2.11. 상증령 부칙 §12)

* 2023.2.2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직전 납부기한 다음날 ~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 적용(단, 2023.2.28.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3.2.28. 이후 납부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가능)

제 1 편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상 속 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11
제2장	상속세 총설	33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53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70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85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92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148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상속, 유증, 상속인, 상속개시, 실종선고, 상속분, 상속포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등 다양한 민법상 용어가 등장하므로, 민법의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상속세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집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5편 상속규정의 구조 (민법 §997~§1118)

제1장 상속(§997~§1059)

제1절 총칙(§997~§999)

제2절 상속인(§1000~§1004)

제3절 상속의 효력(§1005~§1018) : 일반적 효력,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1019~§1044) : 총칙,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1045~§1052)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1053~§1059)

제2장 유언(§1060~§1111) : 총칙,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 유언의 집행,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1112~§1118)

제2절

상속의 효과

1 상속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서 일어나므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사망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다.

2 상속의 효과

-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소극적 재산 포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
- 사망 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부동산의 등기 등과 같은 대항요건을 위한 별도 행위 필요 없음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1005).

우리나라의 상속법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 승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채권자 및 상속인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민법 §1005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2003헌가13, 2004.10.28.).

상속의 효력은 사망 순간에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을 위하여 사망하기 전에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부동산의 등기¹⁾나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대항요건을 위한 별도 행위도 필요 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 승계된다. 이와 같이 상속은 법률에 따른 재산의 이전·변동이므로,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유증·사인증여와 구별된다.

또한, 상속은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든 상속인들에게 자동 승계된다. 이는 매매나 증여 등이 특정인과 특정된 재산을 지정하여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거쳐 이전시키는 것과는 대비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공동상속인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 재산을 승계하게 된다. 상속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 순간에 생기므로,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1006).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자 개인의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음은 물론,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분할 시까지는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아니한다. 일신전속권이란 피상속인에게만 귀속하고 상속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권리·의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인격권으로서의 성격권, 교수계약에 따른 권리, 부양의 권리·의무 등이 있다.

1)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187).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유 증

가. 유증의 개념

유증(遺贈)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유언자를 유증자(遺贈者)라 하고 유증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증자(受贈者)²⁾라고 한다.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임에서는 같으나,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계약³⁾인 데 반해, 유증은 사인행위⁴⁾이고, 유언자의 단독행위⁵⁾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속과 유증은 사후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증은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상속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한편,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류분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5종임)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1060).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2006다25103, 2006.9.8.).

2) 상증법에서는 수유자(受遺者)라 한다.

3)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4) 유언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에 효력과 이행의무가 발생한다.

5) 유증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할 필요 없다.

나. 유증의 종류

1) 포괄적 유증

“내 재산의 1/5은 손자에게 준다”와 같이 상속재산 전부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 하고, 유증을 받는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1078).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이 유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유증 목적인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취득한다. 이런 점에서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특정 유증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예 : A아파트)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이 특정 유증이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로 소급한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증여계약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이 점에서 특정 유증과 사인증여(예 : 갑은 을에게 A아파트를 증여한다. 다만, 그 효력은 갑의 사망시 발생한다)는 매우 유사하다.

한편, 특정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상속인(수증 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부담부 유증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부담 시키는 유증을 말한다. 부담부 유증에서의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반대급부가 아니라, 부담부 유증에 따른 수유자가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담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사인증여

가. 사인증여의 개념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즉, “내가 죽으면 A아파트는 이온유에게 준다”는 내용의 무상계약을 말한다.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단지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 상속편 중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

나. 사인증여의 법적성질

- ①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 ② 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不要式行爲)이다.
- ③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수증의무자)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제1편

상속세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개시의 원인	용어의 이해	근거 법률
자연사망	다수설에 의하면 생리적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상태	민법 §997
인정사망	수해, 화재, 폭발, 침몰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가 통보한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7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내리는 선고	민법 §28
부재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잔류자)에 한하여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거쳐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서 부재선고를 한다. 부재선고시 민법상 상속 및 혼인 규정 적용시 실종선고로 간주 → 잔류자가 이북에 생존한 경우에도 사망자로 간주됨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동시사망	2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음	민법 §30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997). 상속개시 원인은 사망이고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한 때라는 뜻이다.

상속개시 원인에는 사망 외에 사망으로 간주하는 인정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가 있다.

민법에서 상속개시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속 및 유언의 효력 발생시기, 상속재산 및 유류분 산정 기준시점 등이 된다. 상증법에서도 상속개시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기한의 결정, 재산평가의 기준일,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 법령의 적용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자연사망

자연사망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은 “사실상 사망한 때”이다. 사람의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에 관하여는 맥박(심장)정지설·호흡정지설·뇌사설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나, 이 중 맥박(심장)정지설이 다수 견해의 입장이다.

사망시점은 보통 의사의 진단으로 확정된다.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는 동거친족 등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의사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⁶⁾를 하면, 담당 공무원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사고사의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보고 망인의 ‘사망 연월일시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한다.

이와 같이 공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은 “사망의 시점(상속개시의 시점)”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부과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2 인정사망

사체가 발견되면 사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재·수해, 폭발 등 재해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인정사망의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보고서·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의 일·시이다. 다만, 인정사망은 사망을 추정하는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중에 사체가 발견되어 ‘추정 사망 시점’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기재된 인정사망 내용은 그 효력을 잃고 다시 신고한 ‘추정 사망시’가 ‘사망시’로 새롭게 추정된다.

인정사망 시점의 추정적 효력은 법률상 사망으로 의제되는 실종신고와는 다른 점이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5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가. 실종선고의 개념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이다(민법 §27)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보통실종은 실종일(최후소식일)부터 5년, 특별실종은 위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다(상증법 §2(2))

나. 부재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대해서는 가족·검사의 청구에 따라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 부재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상속·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부재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재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본다고 해석된다.

4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30). 지진·홍수 등과 같이 동일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 사람의 사망시점이 불분명하고 서로 달라 상속개시의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추정 규정이므로 사망일시가 명백하면 번복될 수 있다.

동시사망의 경우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사망자들이 친자간이라도 상속은 개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개시된다(대법원 99다13157, 2001.3.9.).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그 손자는 아버지를 대습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5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소멸한다면 불합리하므로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민법 §999·§1117).

구 분	상속개시의 시기
사 망 일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
실종선고	실종기간 만료일(상증법은 실종선고일)
인정사망	관공서의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시·분(단,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은 추정적 효력만 있어 반복 가능)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일자가 같은 것으로 추정(민법 §30)

6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

사망일자 등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종류가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

가. 가족관계증명서

-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3)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기본증명서

-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다. 혼인관계증명서

-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3)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라. 입양관계증명서

-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3)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2)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3)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을 말한다.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 1/3과 같이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유증받는 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지나쳐 수인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을 지정하였을 경우 침해를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115).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1113).

2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가. 상속의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0·§1003).

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 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4 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 제1순위 :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⁷⁾이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고, 이 역시 직계비속의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동 순위 대습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

직계비속에는 법정혈족(養子)⁸⁾,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도 포함하며,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혼인 중 출생자·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 남자·여자, 기혼·미혼, 동거·별거, 장남·차남 등에 의하여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7) 자연혈족·법정혈족, 기혼·미혼, 남·여, 장남·차남, 동거·별거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민법은 혈족상속 원칙이며, 계모 사망시 계자(전처 자녀)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007헌마1424, 2009.11.26.).

8) 양자는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친양자는 양가의 상속권만을 가진다.

2) 제2순위 : 직계존속

제1순위의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제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에는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제도 도입(2008.1.1. 이후 시행)으로 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가 사망한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친족관계가 없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3순위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同腹)과 이복(異腹)의 차별을 묻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예 : 조카, 질녀)과 배우자가 사망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한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⁹⁾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3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및 조카가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다.

5)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는 혈족이 아닌 상속인이다.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¹⁰⁾

9)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10)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003은 합헌임(헌재2013헌바119, 2014.8.28.)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나.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승계할 관념적·분량적인 몫의 비율(계수적 비율)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다.
- 2)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1008).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여한다면 생전의 증여분(또는 유증)과 사후의 재산 분할로 2중의 이익을 얻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도록 규정하고,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3 대습상속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前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1, §1003).

또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다. 이 경우 피대습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 그 상속분은 피대습 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한다(민법 §1009·§1010).¹¹⁾

4 기여분

기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한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12스156, 2014.11.25.).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나,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기여분보다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법정(대습)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계산한다(민법 §1008의2).

11) 재혼자녀의 대습상속여부 : 피대습자(사망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98다64318, 1999.7.9.).

유류분과 기여분은 같이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는 취지가 달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2013다60753, 2015.10.29.).

5 협의에 따른 분할

유언에 따른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1013).

다만,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2014스122, 2016.5.4.).

6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 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¹²⁾¹³⁾¹⁴⁾을 가진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민법 §1112).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으며,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 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다51887, 2005.6.23.).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¹⁵⁾

7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민법 §1053,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하여야 한다.

- 12) 유류분의 산정(민법 §1113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의 증여액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특별수익분)은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한다.
- 1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수원지법2017가합408489, 2020.1.10.).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가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 14)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수원지법2017가합408489, 2020.1.10.).
- 15) 자세한 내용은 제2편의 제1장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사례 참고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1056,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1057, 상속인수색의 공고).

이와 같이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재산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만료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1057의2).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②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 ③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사실혼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종사자)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자이다.

8 국 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도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¹⁶⁾된다(민법 §1058).

16) 민법 §1058①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1).

제6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증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승인하였는지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이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 자기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단순승인을 본래의 형태로 보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법 §1026).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를 법정 단순승인이라 한다(민법 §1026).

-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1028).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그 채무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1030).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증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1019).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3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포기의 소급효가 발생하여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대법원2013다48852, 2015.5.14.)는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판례(대법원2020그42, 2023.3.23. 전원합의체 결정)는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과 동일하게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예시

- 피상속인 A에게는 배우자, 자녀 B(손자 F, G), 자녀 C(손자 D)가 있음.
- B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 본위상속 배우자(3/5), C(2/5)
- B와 C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 본위상속 배우자 단독상속
- B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 대습상속 배우자(3/7), F(1/7), G(1/7), C(2/7)

한편, 상증법에서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이는 취소를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되어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종전 한정치산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종전 금치산자)이 한 경우, 사기·강박에 따른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1024).

제2장

상속세 총설

제1편

상속세

제1절

상속세의 의의(상증법 §2)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형태로 무상 이전 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세대 간 부(富)의 무상 이전으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富)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의 제고 효과를 지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상속세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기간 과세와 달리 재산 이전에 대한 시점과세를 하며,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1 상속세의 특성

상속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즉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 ② 초과 누진세율로 세부담을 하게 되므로 부의 크기에 상응한 응능부담이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 ③ 생전에 탈루되거나 비과세·감면 등으로 소득세 과세가 안 된 부분, 사망일까지의 재산 보유 과정에서 얻은 자본이득 등이 사망시점에서 상속세로 부과됨에 따라 소득세 기능을 보완하거나 강화시킨다.
- ④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 기회균등 효과를 제고한다.
- 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부의 집중을 분산하려는 자산 유동화 효과가 있다.

2 상속세의 과세체계

다른 나라의 상속세 과세 입법례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유산세 과세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세 과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이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무상이전을 한 자(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미국,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나.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란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유산 취득자 각자가 취득한 유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속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는 먼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고, 이와 같이 분할된 각자의 몫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방식으로 주로 대륙법계 국가(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 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증법 §2 상속재산의 정의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또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각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상증법 §3의2), 유산세 과세 방식을 중심으로 일부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가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유산세 과세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의 비교

구 분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과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 - 담세력을 무상이전자(피상속인) 기준으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분할한 후 그 분할된 각 지분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 - 담세력을 무상취득자(상속인) 기준으로 계산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든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하든 조세 총액이 동일 - 세수가 상대적으로 큼 - 조세 행정이 용이함 ■ 각 상속인이 실제 얻는 재산의 다소에 관계 없이 모두 같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 발생 -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세부담이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이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될수록 상속세 부담액이 작음 - 세수가 상대적으로 작음 - 조세 행정이 복잡함 ■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응한 한계세율 적용 가능 ■富力 분산 유인 효과를 가지나 유산의 거짓 위장 분할이 가속화되어 변칙상속 우려
채택 국가	미국, 영국, 한국	독일, 일본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상증법 §3)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용어의 정의

- (상속)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
- (사인증여) 민법상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함, 상증법상 사인증여에는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도 포함
- (상속개시일) 사망일, 인정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함
- (상속재산) 상속으로 인한 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1 상속의 범위

상증법에서는 상속의 범위에 ①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 ② 민법 §1057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③ 유증, ④ 민법 §562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라 한다), ⑤ 신탁법 §59에 따른 유언대용신탁¹⁷⁾, ⑥ 신탁법 §60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¹⁸⁾을 포함한다.

17) 신탁법 §59(유언대용신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증법에서는 ‘민법에 따른 상속과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를 상속인이라고 하고, ‘유증 받은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무상이전 원인별 과세구분

세법상 취급	구 분	개 념
상속세 과세	상속	민법 규정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일정한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증	유언자의 유언(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증여하는 사인법률행위
	사인 증여	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민법 §562)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신탁법 §59)
	수익자연속 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신탁법 §60)
증여세 과세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상증법 §2)

2 상속세 과세범위와 상속개시일

가. 상속세 과세대상

1)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 18) 신탁법 §60(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상속인	과 세 대 상
거 주 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범위나 세액계산시 상속공제액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상증법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령 §2, §4①·② 및 ④에 따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령 §2의2 및 §3에 따르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관련 사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령 §4① 및 ②에 의하는 것으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재산세과-160, 2011.3.28.)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피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1. 과세관할(납세지) ¹⁹⁾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서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서
2.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3. 상속세 과세 범위	국내·국외 소재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국내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제한 납세의무)
4. 과세가액 차감항목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공제 - 공제안됨 -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공제 - 사망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 공제
5. 과세표준 계산 - 기초, 배우자,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 영농상속, - 금융재산·동거주택·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적용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모든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공제가능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 2억 + 감정평가수수료)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가능 공제안됨 공제가능 적용
6. 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안됨 공제가능 공제가능 공제가능
7. 연부연납, 물납	가능	가능

19) “과세관할(납세지)”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에 따라 구분(상증법 §6, §67)

나.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의 시기(상속개시일)이다.

- ① 자연적 사망 :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추정 효력)
- ②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 (추정 효력)
- ③ 실종선고 : 실종선고일 (간주 효력)
- ④ 부재선고 : 선고일(간주 효력)
- ⑤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시, 동시사망으로 추정 (추정 효력)

민법에서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일이다(민법 §28). 보통실종은 실종일(최후소식일)로부터 5년, 특별실종(선박, 항공기 사고등)은 위난발생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상증법에서는 민법 규정을 따를 경우 국세부과제척 기간(15년 등)이 경과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과 다르게 실종선고일을 사망일(상속개시일)로 본다(상증법 §2(2)).



예시

- 2010.5.1. 거리에서 행방불명(보통실종)되어 2018.9.1. 실종선고 신청이 있었고, 2021.3.1.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민법과 상증법상 상속개시일은
 (민법상 상속개시일) 2015.5.1. (∵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일이므로 행방불명일인 2010.5.1. 부터 5년이 되는 날)
 (상증법상 상속개시일) 2021.3.1. (∵ 실종선고일)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상증법 §3의2)

상속인	법정상속인(민법 §1000), 대습상속인(민법 §1001), 피상속인의 배우자(민법 §1003), 결격상속인(민법 §1004), 상속포기자(민법 §1019), 특별연고자(민법 §1057의2)
수유자	유증을 받는 자,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 포함)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 등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합산대상 증여재산과 추정 상속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상속세 납부의무자 구분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로 상속인과 수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3의2).

1) 상속인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결격 상속인

- ② 상속 포기한 상속인
- ③ 민법상 특별연고자

2) 수유자

- ④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자
- ⑤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
(상증법 §2. 1호)
- ⑥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증법 §2. 5호)

3) 특례

- ⑦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하는 경우로서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상증집행기준 13-0-3).

가. 자연인

원칙적으로 자연인(태아 포함)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1) 태 아

태아는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이미 출생한 자연인과 같은 상속의 권리·의무를 취득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체(死體)로 출산되면 상속능력을 잃는다.

2)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 결격 상속인

민법상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포기를 한 자는 당연히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상속개시 前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 합산과세를 통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될 수 있어 생전의 증여로 상속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증법에서는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를 부여 하였다(상증법 §3의2).

결격 상속인도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3) 특별연고자 분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 그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나. 자연인 외의 법인 등

1) 영리법인

2014.1.1. 이후 유증 또는 사인 증여분부터는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②).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비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상증법 §3의2①). 법인격 없는 단체도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상증법 §4의2⑧).

이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상증령 §12에 따른 공익법인 등(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에 해당되면 그 공익법인 등이 유증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납부의무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합산대상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과세표준이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begin{array}{l}
 \text{상속인별}^{20)} \\
 \text{상속세} \\
 \text{납부의무} \\
 \text{비율}
 \end{array}
 = \frac{\begin{array}{l} \text{가산한} \\ \text{상속인별} \\ \text{증여재산} \\ \text{과세표준} \end{array} + \left(\frac{\begin{array}{l} \text{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가액} \\ \text{증여재산 과세표준} \end{array} \times \frac{\begin{array}{l} \text{(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 -} \\ \text{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가액)} \\ \text{(상속세 과세가액 - 가산한} \\ \text{증여재산가액)} \end{array}}{\begin{array}{l} \text{(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 \text{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21)} \text{ 과세표준]} \end{array}} \right)}{\begin{array}{l} \text{(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 \text{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21)} \text{ 과세표준]} \end{array}}
 \end{array}$$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배분할 상속세액(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증여세액 공제액)에 위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 상속인별이란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을 말한다.

21) 상속인도 아니고 유증·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자로서 상속개시 전에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수증자(즉,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관련 사례

제1편

상속세

1)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 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 또는 수익자 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의무를 짐(재산세과-1517, 2009.7.23.)

2)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은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 했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국심2001부3083, 2002.6.5.)

3) 사전증여만 받은 손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재산세과-149, 2010.3.10.)

나. 영리법인의 주주등

특별연고자 또는 수익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②).

$$\text{지 분 상 당 액} = \left[\begin{array}{l} \text{영리법인이 받았거나} \\ \text{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 \text{상속세 상당액} \end{array} - \left(\begin{array}{l} \text{영리법인이} \\ \text{받았거나 받을} \\ \text{상속재산} \end{array} \times 10\% \right) \right] \times \begin{array}{l} \text{상속인·그} \\ \text{직계비속의} \\ \text{주식 지분을} \end{array}$$

다.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²²⁾·유언집행자²³⁾ 또는 상속재산관리인²⁴⁾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납부의무를 지을 수 있다(국기법 §82⑤).

22) 추정 상속인이란 현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

23)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1093).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1095)

24)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야 한다(민법 §1023, §1053).

라. 연대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차감하는 상속세액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된다.

제4절

납세지(상증법 §6)

-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주소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시: 피상속인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는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즉, 결정·경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여기에서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소득령 §2).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이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란 과세관할 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3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납세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관할세무서의 결정기준도 된다.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증법 §5)

-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의 소재지
-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 : 광구의 소재지
- ③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 :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
- ④ 선박 : 선적의 소재지
- ⑤ 항공기 :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
- ⑥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 :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은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 ⑦ 금전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 :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 ⑧ 금융재산(⑥, ⑦ 제외) :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 ⑨ 금전채권 :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⑥부터 ⑧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⑩ 위 ① ~ ⑨를 제외한 유형재산 또는 동산 :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 ⑪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 ⑫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포함) : 저작물의 목적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 ⑬ ① ~ ⑫를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 그 영업장의 소재지
- ⑭ 그 밖의 재산 :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일정한 특례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국기법 §26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징수권(확정된 조세채권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이 진행된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증여세의 부과권이 소멸된다.

1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9)개월]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2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간으로 한다.

-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²⁵⁾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②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래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부분만 해당, 국기령 §12의2②)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5) 조세범처벌법 §3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1999.7.1. 이후 상속분부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② 계약이행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생략되고 상속인이 직접 취득
- ③ 국외 소재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
- ④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
-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 사용·수익한 경우(2013.1.1. 이후)
- 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7.1.1. 이후)
- ⑦ 상증법 §45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2020.1.1. 이후)
- ⑧ 상속·증여재산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23.1.1. 이후)

4 판결 등에 따른 제척기간 특례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 포함)·심판청구·소송에 대한 결정과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국기법 §26의2⑥).



관련 사례

1) 재처분의 범위

판결에서 세액산정의 불능을 이유로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기법 §26의2②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허용되는 처분의 범위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법규과-1894, 2007.4.20.)

2)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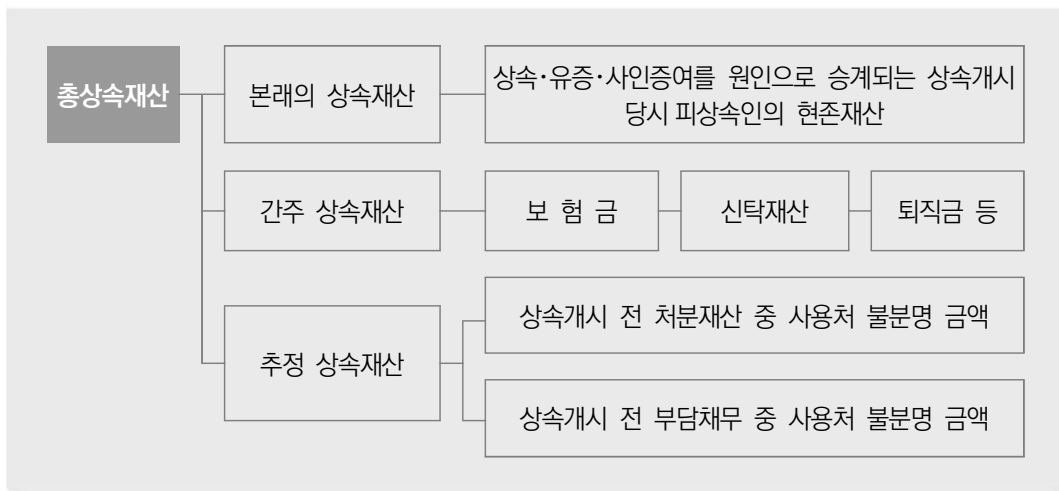
납세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국가 패소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국기법 §26의2②에 의해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93누4885, 1996.5.10.)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1절

총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상증법 §2)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상속재산 포함 관련 사례

1) 양도·양수계약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범위

(부동산 양도)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며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평가함(대법원2001두5040, 2002.2.26.)

(부동산 양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채권)에 포함함(재삼46014-2646, 1996.11.28.)

2) 영업권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상속증여세과-746, 2021.11.30.)

3) 인정상여,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함(상증 통칙 2-0...1)



상속재산 제외 관련 사례

제1편

상
속
세

1) 질권·저당권 등 종된 권리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²⁶⁾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상증통칙 2-0·1)

2)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사망 시 배당금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서면4팀-701, 2004.5.19.)

3) 명의수탁한 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수탁한 재산임이 명백할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재산세과-1052, 2009.5.29.)

4)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 등

(회수불가능 채권)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재산세과-2663, 2008.9.4.)

5)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배상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 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3.13.)

26) (질권)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저당권)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 위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약정 담보물권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제3절

간주 상속재산(상증법 §8 등)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보험금”,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신탁재산” 및 “퇴직금 등”이 있다.

간주 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 사실의 결과로서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1 보험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는 것 외에 상속인은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보험금지급청구권)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무상 이전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상증법 §8).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요건 (①+②+③전부 충족)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보험금에는 소득령 §25②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상증통칙 8-0...1).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

- ③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이 경우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text{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text{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을 말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관련 사례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재산세과-418, 2012.11.22.)

2)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을 협의분할한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지정수익자”)이 지급받는 생명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14-법령해석과-1672, 2015.7.13.)

3)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재산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증법 §8②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4.25.)

4)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익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조심2020전7882, 2020.12.11.)

2**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신탁법²⁷⁾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와 재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재산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지정된 수익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이나 그 이익을 관리·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신탁하는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9).

27) 상증법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신탁재산가액. 다만, 타인이 신탁이익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외
- 2)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 :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3)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유시기의 판정기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 여부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다음의 경우는 그 소유시기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구 분	소유시기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시	위탁자의 사망일
② 신탁계약상 지급 약정일까지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수익)의 지급 약정일
③ 원본(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	해당 원본(수익)의 최초 분할 지급일
④ 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고, 분할하여 지급	해당 원본(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신탁 계약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종료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위탁자가 보유)	해당 원본(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제적인 거래관계(증여계약 등) 없이 매매 등의 형식을 빌려 목적 재산의 명의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은닉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10).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
- ②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 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③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 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 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⑥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관련 사례

1)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유족위로금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재산세과-367, 2011.8.1.)

2) 퇴직금 포기

(피상속인 생전에 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포기하였다면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조심2013서2501, 2013.9.16.)

(상속인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제도46014-12214, 2001.7.18.)

제4절

추정 상속재산(상증법 §15)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신고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예금 인출 포함)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인출)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용처 소명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15).

이 경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4.29.)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국심2003중302, 2003.5.21.).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가. 처분재산 또는 인출금액의 사용처 규명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그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한다.

-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 기간 계산

민법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한다(재삼46014-1691, 1996.7.13.).

다. 재산종류별로 일정기간 내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계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규명 대상인 바, 해당 2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



예시

- 2022.1.1. 사망하였고, 2020.3.5. A토지 4.5억, 2021.2.1. B건물 1억, 2021.6.1. C분양권 2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은?

답 A, B, C 전체 소명대상 (부동산 2년 내 5.7억원 (4.5억원 + 1억원 + 0.2억원))

- 2022.1.1. 사망하였고, 2020.3.5. D토지 2억, 2021.2.1. E건물 1.5억, 2021.6.1. F분양권 1억원에 매도한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은?

답 E, F 소명대상 (부동산 등 1년 내 2.5억원(1.5억 + 1억), 2년내 처분 가액 4.5억원이므로 1년이 지난 D토지 2억원은 소명대상 아님)



예시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은 1억원, 부동산처분금액은 3억원인 경우 재산종류별 추정상속 재산 대상여부?

답 예금인출액 1억원(x) :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님
부동산처분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

○ 1년 전에 토지를 50억원에 처분, 50억원 중 10억원은 통장에 입금하고 20억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며, 입금된 10억원은 3개월 후 전액 인출되었으나 그 중 1억원만 사용처가 확인됨 (다른 입·출금 내역은 없음). 상속추정가액은?

답 ① 부동산(토지) 18억원, ② 예금 7억원

① 토지 처분액 중 상속추정가액 : 18억원

• 용도불분명 금액 : 50억 - 10억 - 20억 = 20억 ... ① (처분대금 중 예금한 10억원은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봄)

• 상속추정가액 : ① - Min(50억원의 20%, 2억원) = 18억원

② 예금인출액 중 상속추정가액 : 7억원

• 상속추정가액 : 10억 - 1억 - Min(인출금액의 20%, 2억원) = 7억원



관련 사례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가액”의 판단은 해당 2년 기간 동안에 실제 수입한 금액(상증령 §11① 1호)을 말하므로, 매매계약은 상속개시 전 2년 전에 이루어져 계약금을 2년 전에 수령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면 소명대상인 2년 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은 중도금, 잔금임(재산세과-209, 2009.9.14.)

2) 임대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또는 채무)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에 2억원(또는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명대상 여부를 판단함. 이 경우 차감한 임대보증금(또는 채무)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서면 4팀-1790, 2004.11.4.)

3) 매매계약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 등의 사용처를 규명하여 용도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서면4팀-3080, 2006.9.7.)

4)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5) 부동산 처분대금을 추후 인출한 경우

NEW

부동산 처분대금 중 예금으로 입금한 후에 추후 인출한 금액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 2024.1.30.선고, 2023구합71315)

라. 재산 처분가액과 예금 인출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①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 재산의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②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전 등 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

이 경우 해당 금전 등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를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 있어서 실제 인출한 금전 등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전체를 기준)한다.

$$\text{실제 인출한 금전등 가액(순인출금)} = \left(\begin{array}{l} \text{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 \text{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 \text{합계액}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해당 기간 중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해당 통장} \\ \text{예입된 금전 -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 \text{등의 합계액} \quad \text{금전이 아닌 것} \end{array} \right)$$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가.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무에는 미지급이자나 미지급 리스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4팀-1608, 2004.10.11.).

나.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사례

1) 상속세 신고서에 현금으로 기재한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현금을 기재했다 하여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재상 46014-2557, 1998.12.31.)

2)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음(서면4팀-2458, 2007.8.17.)

3) 차명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용도가 불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명의만 빌린 타인 소유의 예금인 차명계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서 불산입됨(대법원98두 18350, 1999.1.25.)

4) 인출 후 재입금된 금액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975, 2007.3.23.)

4 추정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추정의 배제

구 분	입증 금액	추정상속금액
①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 금액 - Min(처분 등 재산 × 20%, 2억원)	미입증금액 - Min(처분 등 재산 × 20%, 2억원)
②-1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에 2(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②-2 (국가·지자체·금융회사등 아닌 자로부터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입증여부 무관	관련 채무액 전액 (기한, 금액에 관계없음)

가. 상속추정 요건과 추정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채무액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재산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전 등의 상속추정

① 상속추정 요건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 처분·인출 금액 × 20%, 2억원)
② 추정상속 재산가액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 처분·인출 금액 × 20%, 2억원)

2-1)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

① 상속추정 요건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 × 20%, 2억원)
② 추정상속 재산가액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	(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 × 20%, 2억원)

2-2)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외의 채무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① 상속추정 요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추정 상속재산가액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전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에 유의(2억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님)하여야 한다.

추정 제도의 비교

구 분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추정
입증 금액	양도금액 전체	취득금액 등 - Min (취득재산 등 20%, 2억원)	처분금액 - Min (처분재산 20%, 2억원)
추정 금액	미입증 금액 (차감없음)	미입증 금액 (차감없음)	미입증 금액 - Min (처분재산 20%, 2억원) * 변제무 없는 채무액 전체(차감없음)

나. 상속추정의 배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부담채무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처 미입증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배제

① 추정배제 요건 : $(\text{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text{Min} (\text{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 처분·인출금액} \times 20\%, 2\text{억원})$

2)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의 상속추정 배제

② 추정배제 요건 : $(\text{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text{Min} (\text{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 \times 20\%, 2\text{억원})$



예시

○ (상속개시일 2020.3.1)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① 해명대상금액	② 사용처입증	입증비율 (② / ①)	용도불분명 (① - ②)
합 계	1,710	886	52%	824
부동산 처분대금	345	280	81%	65
금융기관 채무부담액	1,365	606	44%	759

답 55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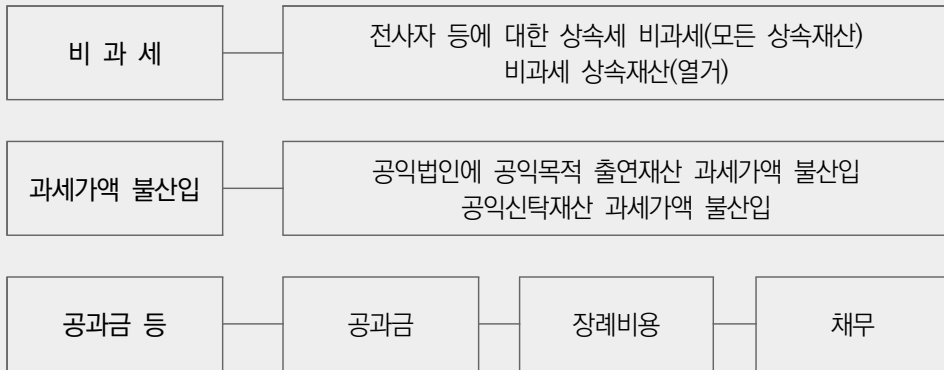
(∵) 부동산 처분대금은 80% 이상이 해명되고 미해명액도 2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추정에서 제외하며, 채무부담액은 해명비율이 80%에 미달하여 상속추정 적용

559백만원 = 759백만(1,365백만원 - 606백만원) - Min(1,365백만 × 20%, 2억원)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비과세 등



상증법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상증법 §12)

상속세 비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원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상증법 §11)과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증법 §12)이 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전쟁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전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서면4팀-2462, 2006.7.26. ; 조심2009서3928, 2009.12.31.).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²⁸⁾을 한 재산의 비과세

- 1)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2) 피상속인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3) 피상속인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4)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8) “유증 등”은 유증 및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증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 받은 자(정당 또는 정치인 등)의 몰수·추징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76, 2005.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나.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의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

다.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라. 금양임야 등의 비과세

「민법」 §1008의3에 규정된 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 주재시 그 공동주재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1) 금양임야와 묘토(2억원 한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해당 금양임야 + 묘토 합계액 2억원 한도).

다만, 상속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대법원97누15753, 1997.12.26.).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1008의3).

금양임야는 그 소유권이 제사주재자인 상대방에게 귀속될 뿐 분할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1스145, 2012.9.13.).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상증령 §8③ 각 호에 따른 면적을 한도로 한다.



금양임야·묘토 관련 사례

1) 금양임야의 범위

(사망당시 분묘가 없는 경우) 금양임야란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해당 임야에 그 선대의 분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고,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며, 해당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06스140, 2008.10.27.)

2) 분묘

분묘란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임(재삼01254- 2652, 1992.10.22.)

3) 상속개시전에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금양임야’라 해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심2000구514, 2000.9.22.)

4) 제사를 주재하는 자

(범위)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2016.12.30.)

5) 묘토의 범위

(의미) 묘토란 그 지상의 수확물로서 제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토지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는 토지이면 족하고, 그 취지상 반드시 제주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라면 묘토에 해당함(대법원39다24568, 1993.9.24. ; 국심99경728, 1999.9.2. 같은 뜻)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

- 공익법인 등에 공익목적 출연재산
 - 공익법인 등이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공익사업은 상증령 §12에 열거된 사업임
- 공익신탁재산

문화, 예술, 환경, 교육, 장학 등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하여야 할 사업이나 예산 또는 행정력 등의 한계로 공익법인 등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은 후에 그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등 편법적인 상속 행위를 규제하고자 여러 가지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상속·증여세를 추징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²⁹⁾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29) 공익법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발간 책자 「공익법인 세무안내」 참고

나.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의 유언·사인증여 없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른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②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해당하였으나, 이사에서 물러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상증령 §12)

공익법인 등이란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46014-2483, 1995.11.1.).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통대 등을 말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⑤ 법인법 §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⑥ 법인령 §39①1호 각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령 §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⑦ 법인령 §39①2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라.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1) 출연시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란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와 같이 권리의 이전과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공익법인 등의 명의로 이전된 때를 말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대상 물건을 인도받은 때를 말한다.

2) 출연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마.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5%, 20%) 초과 출연시 과세가액 산입

1) 과세가액 산입요건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해당 공익법인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을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5%,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초과출연시 과세가액 산입 예외사유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사후관리요건(상증법 §48⑪)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20)%를 초과하여 출연받고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0(20)%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2017.1.1. 이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초과출연여부 판단기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5%, 20%) 초과 여부는 아래 주식을 모두 합하여 판단한다.

- ①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③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④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바.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2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³⁰⁾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7).

해당 공익신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 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30)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공익신탁법 §2).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상증법 §14)

제1편

상
속
세

거 주 자	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한도 없음)
	장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비용 총한도액 15백만원 (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봉안시설(자연장지 포함) 사용비용(공제한도액 5백만원)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한도 없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불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1 공과금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상증집행기준 14-9-1).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 ② 공공요금
- ③ 공과금 : 국징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외의 것

- 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비과세 받은 후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결정된 경우에 해당 경정·결정된 조세
- ⑤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을 공제한다.



관련 사례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재산세과-393, 2011.8.23.)

2) 증여세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 등에 해당함(서면4팀-1474, 2004.9.20.)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후 양도세 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이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피상속인이 비과세 결정받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재산세과-169, 2009.9.9.)

4) 주식과세이연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채무 해당 여부

NEW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2978, 2023.12.28.)

5)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에 해당함(재산세과-1661, 2009.8.10.)

2 장례비용

가. 장례비용의 범위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골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말한다.

나. 공제금액(최소 5백만원 최대 15백만원 한도)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 증빙에 따른 장례비가 5백만원 미만시 : 무조건 5백만원을 공제
 - 증빙에 따른 장례비가 5백만원 이상 : Min (증빙에 따른 장례비용, 1천만원)
- ②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Min (증빙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비용, 5백만원)

3 채 무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부채)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이나 유증 등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받은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다.

“채무”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채무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공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채무는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또는 변칙적인 수단에 의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도 납세자와의 분쟁 발생 소지가 가장 많은 공제 항목 중 하나이다.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 및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가.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를 말한다(상증령 §10).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³¹⁾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증여채무

증여채무를 이용하여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증여채무 중에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10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증여채무는 객관적 확인 여부에 불구하고 채무로 공제가 불가하며, 일정 기간 이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증여채무는 그 증여채무를 진 사실이 서면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다(서면4팀-3099, 2006.9.11.).

증여계약 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및 채무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증여계약(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하고 사망한 경우

상증법상 상속재산(상증법상 사인증여)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유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②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증여계약(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전)하고 사망한 경우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함

상증법상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아래 채무를 공제한다.

- ①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②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록한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관련 사례

1) 공제대상 채무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국심2007서3500, 2008.5.1.)

2) 타인명의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음(재삼46014-2341, 1997.10.1.)

3)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³²⁾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함(상증통칙 14-0··3)

4) 임대보증금

(공동소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임대차계약 체결시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됨(서면4팀-2640, 2007.9.10.)

32)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되는 채무를 말함

5) 한정승인

상속인 전원이 「민법」 §1019①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제외)을 한도로 공제함(서면4팀-2105, 2005.11.8.)

6) 가지급금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변제 의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함 (법규과-2647, 2006.6.28.)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상증법 §13)

I. 총상속재산가액 (상증법 §8~§10, §15)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유증·사인증여) ○ 간주 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 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2년) 내 처분·인출·채무부담액 중 용도 불분명한 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상증법 §11~§12)	○ 전사자 등 비과세 ○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금양임야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증법 §16~§17)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제금액(상증법 §14)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0"으로 함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상증법 §13)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II. 상속세 과세가액	

1 총상속재산가액 및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공제금액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증법 §60부터 §66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과금 등 공제금액은 앞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에 따른다.

2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정 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2005헌가4, 2006.7.27.).

이 경우, 증여 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가.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조특법 §30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합산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한다.

1) 수증받은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의 구분방법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에 따라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대상 기간이 각각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 상속인 여부 판단시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조심2017서3396, 2018.1.31. ;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예시**

○ 祖父가 손자에게 2016년에 증여한 후, 2021년 父 사망 후 2022년 祖父가 사망한 경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답 가산하여야 함

(∴) 증여당시는 상속인이 아니었으나, 祖父 사망시에는 상속인에 해당함

나)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민법 §1000부터 §1003까지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민법 §1000에 따른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증여 분은 이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 외의 자로 보기 때문에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다) 상속포기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한다(대법원93누8092, 1993.9.28.)

2) 증여재산의 합산기간 계산

기간계산 방법에 대하여 상증법에 정한 바가 없어 국세기본법 §4에 따라 기산일 초일은 불산입하고 만료일을 포함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말한다.

3)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가액**가) 가산하는 가액은 당초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함**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 §61부터 §65까지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증통칙 13-0...3).

나) 부담부 증여재산은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가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므로 부담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다(재삼46014-237, 1999.2.3 ; 서면4팀-2637, 2005.12.27.).

다) 제3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체가액을 합산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칙 47-36...6).

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사례

1) 증여추정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도 포함됨 (대법원96누13361, 1997.7.25.)

2)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가산여부)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나 채무 면제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재삼 46014-784, 1996.3.25. ; 재삼46014-432, 1998.3.12.)

(저가양도)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됨(재재산46014-18, 2000.1.20.)

(주식가치 증가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대상에 해당함(재재산-899, 2011.10.24.)

3)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현행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서면4팀-1976, 2004.12.3.)

4) 증여재산 반환과 사전증여재산 합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합산대상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재산46014-286, 2000.10.5.)

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구 분	재 산 종 류
비과세	상증법 §46(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증법 §48(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① 상증법 §52(공익신탁한 재산) 상증법 §52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①
합산배제 증여재산	상증법 §31(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①3호 상증법 §40(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2호, 3호 상증법 §41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법 §42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증법 §45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3(특수관계법인과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 여 세 감면 등	조특법 §71(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⑤ * 구 조감법 §57③, §58④의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음
기 타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재산상속46014-473, 2000.4.17.)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재재산46014-284, 2000.10.5.)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상증법 §1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소나 거소 등이 국외에 있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상증법 §13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 ②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③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관련 사례

1) 비거주자 사전증여 합산 여부

(국내재산)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8, 2020.12.9.)

(국외재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1, 2022.8.30.)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구 분	거 주 자	비 거 주 자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	Min(공제의 합계, 공제적용 한도액)	Min(기초공제 2억원, 공제적용 한도액)

상속공제 (요약)

구 분	상 속 공 제
①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 : 2억원 - 기업상속공제액 : 기업상속재산가액(최대 600억원 한도)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공제 * 신고기한 익일부터 9개월까지 분할등기 등을 해야 공제 가능 * 최소 5억원은 공제됨	- 배우자공제액 = Max [Min (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② 공제한도액 :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30억원
③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자녀수(태아 포함)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수(태아 포함)×1천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수×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④ 일괄공제	- Max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일괄공제 적용안됨 *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5억원) 적용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 2천만원 초과시 : Min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 2천만원 이하시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⑥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시 그 손실가액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부수도지 포함)의 100% (단, 6억원 한도)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차감)]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상증법 §25)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인지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그 계산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1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세협력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상증법 §25).

가.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

- 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5백만원 한도)
- 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³³⁾의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③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감정기관 감정수수료(5백만원 한도)

나. 서류의 제출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과세최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제2절

상속공제(상증법 §18 등)

상속인의 인적 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금액은 공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는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고 있다.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며, 이를 기초공제라 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상증법 §18).

공제금액의 개정연혁

상속개시일	기초공제	기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16.1.1. 이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 2억원	기업상속재산가액 × 100% (200억원~500억원 한도)	영농상속 재산가액 (15억원 한도)
'22.1.1. 이후			영농상속 재산가액 (20억원 한도)
'23.1.1. 이후		기업상속재산가액 × 100% (300억원~600억원 한도)	영농상속 재산가액 (30억원 한도)

2

가업상속공제

제1편

상
속
세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	계속 경영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 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계산 및 공제 한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 기업상속공제 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기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금액(단, 피상속인의 기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1) 기업상속재산(상증령 §15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 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text{기업상속재산 (법인기업)} = \text{기업법인 주식가액} \times \frac{(\text{총자산가액} - \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2) 사업무관자산

- ① 법인법 §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비사업용 토지 등)
- ② 법인령 §49【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③ 법인령 §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편, 동일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 가능하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3.22.), 기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8의4).

가업상속공제 주요 개정내용

상속개시일	기업상속공제액	피상속인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14.1.1.~ 2017.12.31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	10년 미만	적용안됨
		10년이상~15년미만	200억원
		15년이상~20년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2018.1.1.~ 2022.12.31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	10년 미만	적용안됨
		10년이상~20년미만	200억원
		20년이상~30년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2023.1.1.~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	10년 미만	적용안됨
		10년이상~20년미만	300억원
		20년이상~30년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관련 사례

1) 임차보증금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기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2) 정기예금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 여부

NEW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함(서울행정법원 2023.5.18.선고, 2022구합54863)



배치 쟁점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

- 기재부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 대법원 판결 (대법원-2018두-39713, 2018.7.1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3) 2 이상의 가업상속시 상속공제금액 계산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상증규칙 §5)³⁴⁾

4) 가업승계 주식을 수증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하는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서면법 규과-173, 2014.2.26.).

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1)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34) 상증규칙 신설 전에는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5, 2014.3.11.)으로 운용하였다.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한편, 2022.2.15. 이후 상속부터 가업의 영위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③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나)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② 조특령 §9④1,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③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매출액은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업상속공제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상증령 별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 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70)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서비스업(70 ~ 73)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 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기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가업 해당 업종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사례

1)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의 범위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 매출액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재산세과-214, 2009.9.14.)

(중견기업 종속기업 매출액 포함여부 - 2016.12.20. 개정 이후) 조특법 시행령(2017.2.7. 개정된 것) §9④1호 및 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상증법(2016.12.20. 개정된 것) §18②1호 및 상증령 §15②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함(서면-2017-법령해석 재산-0299, 2017.4.12.)

2) 2개 이상의 가업

2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재산세과-1253, 2009.6.23.)

3) 가업과 경영의 의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고(재산세과-1135, 2009.6.9.),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4) 가업영위기간 계산

(조부 가업영위기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상증법 §15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전 가업 경영자(조부)의 가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4, 2014.10.15.)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5)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법규과-909, 2014.8.22.)

6) 가업의 경영기간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1.21.)

7) 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 2022.12.20.)

2) 피상속인 요건 (모두 충족)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상증령 §15③).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을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상속증여세과-154, 2014.5.23.),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을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한다(법규과-1088, 2014.10.14.).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재산세제과

-385, 2014.5.14.),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 §18②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43, 2015.10.1.)

주식보유비율 개정연혁

구 분	2010.12.31. 이전	2011~2022년	2023.1.1.~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40%	30%	20%
상장법인 외	50%	50%	40%

- ③ 2014.2.21. 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또는 전체 사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령 §15③ 후단).



관련 사례

1) 가업영위 판단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재산세과-211, 2009.9.14.)

2) 가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 §30의6①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안됨(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2016.6.23.)

⇒ (2020.2.11. 이후 상속부터) 기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조특령 §27의6①호 개정)

3) 10년 보유하지 않은 주식

(기재부) 기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22.1.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4)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재산-0561, 2017.6.30.)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기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5.30.)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상속인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등)가 ①~③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2022.2.15.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천재지변, 인재(人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2014.2.21.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은 제외한다. 이는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유지 발전시키려면 상속인 1인이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이 불가피하므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 것이다.

2016.2.5. 이후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상속이 허용되었다.



관련 사례

1)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의미) 상증령 §15④ 2 다목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재산세과-166, 2010.3.18.)

(공동대표이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495, 2009.10.19.)

(상속개시전 공동대표이사)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1662, 2009.8.10.)

2) 공동상속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0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상속증여-3616, 2016.5.17.)

⇨ (2020.1.1. 이후 증여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3)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NEW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3-법규재산-0515, 2023.9.25.)

4) 납부요건(2019.1.1. 이후 상속)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
 - ㉠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포함)
 - ㉡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시행령 §10①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
 - ㉢ 해당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 ②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 초과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

5)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공제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 또는 추징한다.

- ①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공제 적용 전)
- ②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증령 제15조 제20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공제 적용 후)
- ③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
 - ㉠ (조세포탈)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㉔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탈세·회계부정행위 시기	형 확정시기	효과
공제 전 행위	가업상속공제 전	공제배제
	가업상속공제 후	추징
사후관리기간 중 행위	사후관리기간 중	추징
	사후관리기간 이후	추징

6) 가업상속공제 신청(상증규칙 제1호 서식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아래와 같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인 가업인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주식평가내역과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 ② 기타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 5년]

(가업 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 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이상 처분 제한

(고용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 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90% 이상

2018.1.1. 이후부터는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기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사후관리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020.1.1.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 경우 201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3.1.1.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0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상증법 부칙 <제19195호, 2022.12.31.> 제7조의 기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 및 2022.12.31.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3.1.1. 이후 기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2.12.31.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기업용자산 처분유지 위반)에만 해당하여 기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① 및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 ① 2022.12.31.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 ② 2023.1.1.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7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규정 위반 등), 같은 항 제1호마목(고용유지 요건)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③ 2022.12.31.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기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기업상속공제 후 상속인에 대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이 확정되어 기업상속공제가 배제)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종전의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종전의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한다.

1) 사후관리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용 자산”이란 소득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업상속 재산을 말하며, 법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을 말한다.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frac{\text{[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text{(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times 100}$$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4.2.29. 이후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였으며, 대분류 외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도 허용하였다.

2020.2.11. 이후 중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였으며, 중분류 외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도 허용하였다.

업종변경 개정연혁

2016.2.5.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2020.2.11. 이후	2024.2.29. 이후
소분류 내 변경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외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① 대분류 내 변경 ② 대분류 외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및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200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상증법 §73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증법 §22 ②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5년간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이 감소된 경우(㉠, ㉡ 모두 충족시)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2020.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미 확인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며, 기준고용인원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말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019.12.31. 이전 정규직 근로자란 「통계법」 §17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상 급여액과 상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해당 인원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2022.12.31. 이전에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100분의 80 이상, 7년간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9.2.12. 이후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며,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개정연혁

구 분	고용유지 요건		
	2019.12.31. 이전	2020.1.1. 이후	2023.1.1. 이후
중견기업	10년간 평균 1.2배 이상(10년 후 판단)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 연도의 80%이상(매년 판단)	7년간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이상 또는 7년간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이상(7년후 판단) + 각 사업연도 말 기준고용 인원의 80%이상 또는 각 사업연도 말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90% 이상 +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90% 이상
중소기업	10년간 평균 1.0배 이상(10년 후 판단)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 연도의 80%이상(매년 판단)		
* 기준연도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 총급여액의 평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 (사업연도)

⑤ 상기 ④항의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상속부터 적용하며, 2022.12.31. 이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고용유지 의무 요건 중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유지 요건 규정을 적용한다.

- ㉠ 2023.1.1.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 ㉡ 2023.1.1.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 ㉢ 2023.1.1. 전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후관리 추징세액의 계산 및 신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3)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사유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므로 추징을 배제한다.

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⑥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⑦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 ⑥항과 ⑦항의 개정규정은 2020.2.11.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으로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⑤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73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
- ⑥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①에 따른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상장요건이란 소액주주 수가 1천명(코스닥 500명)이상이고, 지분율 합계는 2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⑦ 2019.2.12. 이후 감자 또는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라.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종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업종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적용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2024.2.29.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함)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를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관련 사례

1)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 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아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을 계산함 (재산세과-163, 2011.3.30.)

2) 대체취득

(의미)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재산세과-140, 2011.3.17.)

(취득시기)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2015.4.21.)

3) 업종변경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 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270, 2012.7.24.)

4) 정규직 근로자 수

(합병)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기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9.28.)

(인적분할)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 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8.30.)

(최대주주 및 친족) 기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서면-2021-법규재산-8408, 2023.3.24.)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8408, 2023.3.24.)

5)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NEW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 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업상속공제 사후 관리규정(상증법 §18의2⑥)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1704, 2023.9.1.)

6)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상속공제 신청 못한 경우

기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기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5, 2022.9.20.)

7)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NEW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1789, 2023.7.6.)

참고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소득세법 §97의2, 상증령 §15②)

- (도입취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도입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

父(피상속인) 주식 취득시	父(피상속인) 사망시	子(상속인) 주식양도시
1억	100억원 ※ 가업상속공제 70억원*	150억원 ※ 주식양도차익 50억원**

* 가업상속공제 7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고

** 50억원(150억원-100억원)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부담

- (적용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 적용대상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 취득가액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적용사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재산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등(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피상속인 취득가액 (10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100억원)	상속인 양도가액 (120억원)
[양도차익 구성]	← 피상속인분 양도차익 → 90억원(100-10)	← 상속인분 양도차익 → 20억원(120-100)

※ 가업상속공제분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100억원)으로 가정하면 100억원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 110억원(①+②)

①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 : 90억원 × 100% = 90억원

② 상속인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 : 20억원

- (적용시기) 20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재산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 상속공제 금액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18의3①).

영농상속공제 한도 개정연혁

2016~2021년	2022년	2023.1.1. 이후
15억원	20억원	30억원

나. 영농상속공제요건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營農)[(양축(養畜)·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가. 「농지법」 §2.1호 가목에 따른 농지³⁵⁾

나. 「초지법」 §5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³⁶⁾ (2014.2.20. 이전 상속분은 「초지법」 §2 1호에 따른 초지)

35) 농지법 §2 1 가목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36)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계획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산지관리법」 §4①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28 특수산림 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이 조립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 라. 「어선법」 §2.1호에 따른 어선
- 마. 「내수면어업법」 §7, 「수산업법」 §8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8① 6호 및 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
-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2015. 2. 3.상속부터)
- 사. 소금산업진흥법 §2. 3호³⁷⁾에 따른 염전(2020.2.11. 상속부터)
-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상증령 §15⑤ 2호를 준용한다.

$$\text{영농상속재산 (법인가액)} = \text{영농법인 주가가액} \times \frac{(\text{총자산가액} - \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총자산가액}}$$

2) 피상속인 요건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①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②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②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

37)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 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2.2. 이전에는 20km) 이내에 거주하거나(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2.2. 이전에는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이 경우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 ②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3) 영농상속인 요건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② 위 2)의 가) ②에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0.2.11. 이후 상속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한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본다.

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 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4) 영농종사 및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법 §19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45②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소득령 §9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소득법 §20②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①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②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2 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③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④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28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 영농상속 입증서류의 제출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②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 ③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 ④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 ⑤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기한 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하다(재삼46014-1179, 1999.6.17).

라.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공제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8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 또는 추징한다.

- ① 상증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공제 적용 전)

- ②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증령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공제 적용 후)
- ③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는 별금형의 범위
 - ㉠ (조세포탈)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마.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사항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를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서일 46014-10884, 2002.7.5.).

2) 정당한 사유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상속세 추징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①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②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③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 ④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⑤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다만, 주식 등을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상증법 §73에 따라 물납한 경우
 - 상증령 §15⑥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⑦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증규칙 §6).
-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대체농지 취득시 까지의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함).

3)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시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상증통칙 18-0...3).

$$\text{영농상속공제금액} \times \left\{ \frac{\text{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 재산가액(상속개시 당시 평가액)}}{\text{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right\}$$

2018.1.1. 이후부터는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text{결정한 상속세액} \times \text{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times \text{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5\%)} / 365$$



관련 사례

제1편

상속세

1) 영농상속공제 대상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 2015.1.9.)

(상속개시일 농지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89, 2014.10.6.)

2) 재배작물 변경시 사후관리 위반 해당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17-법령해석재산-2202, 2018.7.2.)

3)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 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사전-2022-법규재산-0922, 2022.12.6.)

4 그 밖의 인적공제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 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 로 자 공 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 애 인 공 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공제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의 공제대상인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대상인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 자녀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인원에 관계 없음)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밖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적용의 한도(상증법 §24)” 규정은 적용된다(재삼46014-2622, 1997.11.6.).

2023.1.1. 이후 자녀공제 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며,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나. 미성년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동거부양시 미성년자공제 대상은 될 수 있다(재삼46014-2244, 1994.8.17.).

2023.1.1. 이후 미성년자 공제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며,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연로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인원에 관계 없음)을 공제한다. 이 경우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라. 장애인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 §2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32①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할 수 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2020.12.8.).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2) 장애인 증명서 제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상증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3) 기대여명 연수 계산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18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마. 중복공제 여부

- ① (중복공제 가능)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 ② (중복공제 가능)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 ③ (중복공제 불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서면4팀-2934, 2007.10.12.)

5 일괄공제

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등인 경우

1)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자 및 기한 후 신고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자녀 + 미성년 + 연로자 + 장애인 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일괄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0.1.1.이후 신고분부터는 기한내 신고와 동일하게 선택 가능하다.

$$\bullet \text{ Max } \left\{ \begin{array}{l} \textcircled{1} \text{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textcircled{2} \text{ 일괄공제액 (5억원)} \end{array} \right.$$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무신고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즉,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5억원)는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1003의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재삼46014-2485, 1997.10.20.).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로 적용한다.

6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공제액 = Min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Min (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공제액 = 5억원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음)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3)

배우자가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 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재삼46014-2622, 1997.11.6.).

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Min(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한도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가) 원칙적인 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분할기한

원칙적인 분할기한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하는 분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상속인 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198, 2008.1.23.).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분과 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납세자신고)

+) 신고누락 하였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 및 분할 등기 등을 완료한 재산가액

+) 신고된 재산이 과소평가되어 결정시 증액된 재산가액

-) 신고된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결정시 감액된 재산가액

-) 조사시 추가 확인된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공과금, 비과세재산 등 가액

=)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정부 결정)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재재산-537, 2007.5.1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상속 추정되는 재산의 가액도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재산-566, 2007.5.15.).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한다(서면4팀-1252, 2005.7.19.).

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 Min (①, ②)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법 §55①))

* 아래 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

② 30억원

가)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영 §17)

계 산 방 법	유 의 사 항
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제외
(-) 상속인이 아닌 수익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	상속인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은 차감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증법 §12 비과세 상속재산을 말함
(-) 공과금·채무	장례비는 차감대상이 아님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증법 §16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및 상증법 §17의 공익신탁재산
= 상속재산의 가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계산시에 적용

* (취지)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누락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배우자 법정상속분

민법 §1009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재삼46014-2138, 1997.9.8.).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시

○ 상속인으로 배우자, 장남, 차남이 있고 차남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답 배우자 3/7 (장남 2/7, 차남 2/7)

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때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

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시 유의사항

- ①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 ②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 중 일부만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분할된 재산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된다.
-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시 상속 개시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에서 결정시 확인된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신고시 공제액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 ④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는 신고 누락한 재산을 포함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⑤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 선 사망자는 그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
 - 후 사망자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 배우자공제 배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함
 - 동시 사망의 경우 : 각자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없이 상속세를 계산(재삼46014-88, 1999.1.15.)



예시

○ 아래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구분	상속 재산가액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법정 상속분	비고	
신고내용	35억	16억	15억	*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	
결정 내용	①	42억	16억	18억	배우자 상속재산 7억 신고누락 적출 (분할기한 내 신고 및 등기 등 안함)
	②	33억	14억	14.1억	배우자 상속재산 중 2억을 과대평가

○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3/7)

○ ①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 16억원

배우자가 받은 신고누락재산(7억)을 포함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당초 신고금액 15억원에서 → 18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신고누락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받았더라도 기한 내 분할신고·등기가 안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공제가 되지 않음

○ ②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 14억원

배우자 상속재산이 과대평가(2억)되어 이를 차감한 금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14억), 과대평가 분을 차감하여 계산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14.1억원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내에 해당하여 14억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임



관련 사례

1) 상속재산분할의 의미

(기재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2020.9.3.)

2) 피상속인이 매매 중 사망한 경우(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고 당해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72 [법령해석과-3926], 2021.11.11.)

3) 피상속인이 매매 중 사망한 경우(공동상속)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 로의 등기가 필요)(대법원2023두44061, 2023.11.2.)

4) 중복공제와 한도계산

(기업상속공제)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기업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2018.3.22.)
 (영농상속공제) 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5.29.)

5) 상속개시일 현재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사소송법 §50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호적정리 여부에 불구하고 배우자공제가 적용 안됨(서면4팀-1012, 2008.4.20.)

6) 실제 상속받은 재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됨(서면4팀-1252, 2005.7.19.)

7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2억원 한도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제외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가. 공제대상인 금융재산의 범위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 ③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④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2016.1.1. 이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³⁸⁾

 **예시**

○ 아래의 경우 최대주주는?

A주식회사		B주식회사		C주식회사	
주 주	지분비율	주 주	지분비율	주 주	지분비율
甲(개인)	25%	甲(개인)	40%	甲(개인)	9%
乙(")	25%	乙(")	20%	乙(")	6.5%
丙(")	25%	丙(")	20%	丙(")	4.5%
丁(")	25%	丁(")	20%	丁 외 19	각각 4%
계	100%	계	100%	계	100%
최대주주 등	甲,乙,丙,丁	최대주주 등	甲	최대주주 등	甲

나. 순금융재산의 가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38) 상증법의 최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지만, 상증법 §41의3 등처럼 최대주주등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다. 적용시 유의사항

상속개시일 현재 조사 확인된 예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text{예금상당액} = \text{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 \text{미수이자상당액} - \text{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상증법 §76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증법 §22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재산세과-2098, 2008.8.1.).



관련 사례

1)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

(신고누락)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무신고, 신고 누락한 금융재산에 대하여도 공제가능함(재산세과-2098, 2008.8.1.)

(차명재산)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예금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함(재삼46014-1962, 1998.10.12.)

⇒ (2016.1.1. 이후 상속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하는 것임(서면-542, 2008.3.4.)

2) 금융재산상속공제 불가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공제 안됨(재산46017-1754, 1999.9.29. ; 감삼2002-86, 2002.7.9.)

(현금, 수표) 상속개시 당시 현금 또는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안됨(재삼 46014-3030, 1997.12.26.)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부재산46014-249, 2001.10.10.)

(퇴직금)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재삼46014-1609, 1999.8.28.)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피상속인이 소유한 농지가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809, 2005.9.30.)

(교직원공제회 예치금) 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산세과-357, 2011.7.25.)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3) 최대주주등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3.24.).

8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補填) 가능한 금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 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상증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해당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 100% (공제한도액 6억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200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보유·동거 가능 여부, 상속인의 범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0.1.1. 이후 상속부터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100%(6억원 한도)이다.

가.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22.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3.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었으나, 2014.1.1. 이후에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봉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16.1.1. 이후 상속부터는 10년 이상 판단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2022.1.1.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포함한다.

-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2019.12.31.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나. 동거기간의 예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징집
-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③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④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1세대 1주택

1) 1세대 1주택

소득법 §88.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법 §89① 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2)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³⁹⁾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9) 1세대가 상증령 §20의2①각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5, 2020.12.14.)

-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53①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 ④ 피상속인이 소득령 §155⑦ 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⑤ 피상속인이 소득령 §155⑦ 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⑥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⑦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⑧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요 사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21	2022~
해당 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보유·동거여부	보유·동거 해야 공제	보유·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이사 가능)					
동거기간 10년 중 전세동거에 대한 동거기간 인정 여부	인정안함 (공제불가)	인정함 (공제 가능)					
동거기간 10년 중 도중에 무주택자도 공제가능여부	공제 불가		공제 가능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직계비속만 공제가능)			공제 불가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공제가능)	
10년 판단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포함				제외		
주택가액에서 채무차감여부	차감하지 않음				차감		



관련 사례

1) 1세대 1주택

(입주권)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3.22.)

(공동소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재산세과-97, 2010.2.16.)

(상속주택외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상증령 §20의2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57, 2010.2.1.)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소득령 §154③에 따라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51, 2010.1.26.)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 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2) 동거기간

(재건축)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증법 §23의2① 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재산세과-248, 2012.7.4.)

(통산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505, 2011.10.27.)

(사업상 형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상 형편은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재산세과-506, 2011.10.27.)

3) 보유요건

상증법 §23의2①(2) 및 (3)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2.20.)

4)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5.2.)

⇒ 2022.1.1 이후 결정·경정부터는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5)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6)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NEW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 §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23-법규재산-0247, 2023.4.27.)



배치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받는 경우)

- 기재부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7, 2022.9.28.)
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703, 2023.8.2.)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수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0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액 (상증법 §24)

-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⁴⁰⁾을 한 재산가액
 -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함
 - 증여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 주식 등(조특법 §30의5 및 §30의6)은 불포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 기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합계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액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다.

공제한도조항은 증여의 형태로 재산분할 등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의 취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재2003헌가4, 2003.6.6.).

40) “유증 등”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상증법 §12).

**예시**

- 상속개시일 2022.3.1. 상속재산 6억원, 상속개시일 1년 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3억원, 상속재산 6억원 중 3억원은 유언에 의하여 동생에게 상속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자녀 1인임.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속공제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① 상속공제액 = $\text{Min}(\text{㉠}, \text{㉡}) = 3.5\text{억원}$

㉠ 상속공제액 =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9억원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2.5억원 (3억원 - 5천만원)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3억원 = 3.5억원

② 상속세 과세표준 = 9억원 - 3.5억원 = 5.5억원

③ 상속세 산출세액 = 5.5억원 \times 30% - 6천만원 = 105백만원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등(상증법 §26)

1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율 개정연혁

1995.1.1.~ 1996.12.31.			1997.1.1.~ 1999.12.31.			2000.1.1. 이후 상속·증여분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5천만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	20	500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2억 5천만원 초과 5억 5천만원 이하	30	3,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5억 5천만원 초과	40	8,500만원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50억원 초과	45	4억 1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3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text{할증과세액} = \frac{\text{상속세}}{\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text{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포함)}} \times 30\%(40\%)$$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처분 자유를 존중하여 유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조부가 자(子)의 세대를 건너뛰어 손(孫)의 세대에게 직접 유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子)의 세대에서 손(孫)의 세대로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0%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2016.1.1. 이후부터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과세한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민법 §1001에 따른 대습상속⁴¹⁾의 경우에는 할증을 제외한다.



관련 사례

1) 조부의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부친이 사망한 경우

조부가 사망한 후 그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부의 사망으로 인해 조부 및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조부 및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음(서일46014-10361, 2002.3.19.)

2) 직계존비속의 범위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서면4팀-3616, 2006.11.1.)

3) 직계비속 외의 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친정조카의 아들에게 유증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재삼46014-1119, 1999.6.10.)

4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이라 함)이 된다.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상증법 §28 등)

자진 신고·납부할 상속세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 포함)에서 제 공제세액(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공제)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증여세액공제 (상증법 §28)

- 증여세액공제 = Min (a, b)
- 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 ② 공제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상증법 §13).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시 이미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다음의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액 공제를 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 공제한도액의 계산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아래의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별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text{증여세액 공제 한도액} = \text{①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text{②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재재산46014-247, 2000.8.26.).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비율

$$= \text{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text{상속세 과세표준} - \text{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과세표준})]$$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text{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text{㉗} \times \text{㉘} / \text{㉙})$$

㉗ 상속세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즉, 배분대상 과표)

㉘ 상속세 과세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즉, 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말함)

㉙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은 다음의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총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text{증여세액 공제 한도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가산한 증여재산의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text{상속세 과세표준(사전증여재산포함)}}$$



관련 사례

1) 할증과세액 공제 여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등)인 경우 기납부 증여세 공제는 증여당시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국심2001서104, 2001.4.3.)

2)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그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서면4팀-171, 2005.1.24.)

3)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하는 것이나,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기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서면4팀-1976, 2004.12.3.)

4) 2차 증여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이 공제대상임(서면4팀-916, 2004.6.22.)

2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29)

○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 Min(㉓, ㉔)

㉓ 상속세 산출세액 × $\frac{\text{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text{상속세 과세표준}}$

㉔ 한도액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므로 외국에 상속재산이 소재하면 그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증법 §30)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text{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 = \text{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times \left\{ \frac{\text{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사전증여 포함)} \times \frac{\text{전의 상속세과세가액}}{\text{전의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 포함)}}}{\text{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right\} \times \text{공제율}$$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공제율

재상속기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관련 사례

1) 재산종류

(토지 ⇒ 예금) 당초 상속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수령 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서면4팀-975, 2006.4.14.)

(매각대금 일부만 상속) 1차 상속시 상속받은 부동산(8억원)을 양도(20억원)하고 해당 매각대금 중 일부만 재상속(10억원)된 때에는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재산세과-902, 2010.1.4.)

(현금)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재산세과-258, 2012.7.13.)

4 신고세액공제 (상증법 §69)

$$[(\text{상속세 산출세액} + \text{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text{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 + \text{증여세액공제} + \text{외국납부세액공제} + \text{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 + \text{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세액})] \times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록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상증통칙 69-0·1).

공제율 개정연혁

2016.12.31. 이전	2017.1.1.~12.31	2018.1.1~2018.12.31.	2019.1.1. 이후
10%	7%	5%	3%

5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상증법 §74)

$$\text{문화재자료 등의 상속세 징수유예} = \text{상속세산출세액} \times [(\text{문화재자료 등} + \text{박물관 자료}) \text{의 가액} / \text{상속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가. 징수유예 대상 지정문화재 등

상속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자료 등”)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등인 경우에 한함)에 전시·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 등”)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이하 “국가지정 문화재 등”)

나. 징수유예한 상속세 즉시 징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자료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래의 사유로 자료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문화재자료 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유상으로 양도
-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 징수유예의 사후관리

징수유예의 기간 중에 즉시 징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자료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시까지 징수유예를 유지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시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화재 종류별 과세방법⁴²⁾

구 분	개 념	과 세 방 법
국가 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 문화재	비과세 → 징수유예
시·도 지정문화재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문화재 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징수유예
국가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박물관 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문화재자료 등이 속해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시·도 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재	과세

라. 상속세 징수유예와 담보제공 여부

1) 문화재자료 등과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시 담보제공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담보제공 규정을 준용한다.

42) 기재위 검토보고서(2022.11월)

2)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징수유예시 담보제공 면제 등

가) 상속세 징수유예시 담보제공 면제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유현황 제출 및 점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 전 사전신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국가지정문화재 등 양도거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유현황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불이익

세무서장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3절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상증법 §72의2)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은 기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1 납부유예 신청대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상속인이 기업(중소기업으로 한정)을 상속받았을 것
- ② 기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신청절차 및 허가절차

가. 신청절차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포함)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1) 납부유예신청서
- 2) 기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증자가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4) 기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나. 허가절차

납부유예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 3)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재차 납부유예 신청하는 경우 6개월)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납부유예 허가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가. 피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나.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공제 준용

다. 납부유예 가능세액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가액}}{\text{총 상속재산가액}}$$

4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요건 및 추정세액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text{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
 -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

$$\text{세액} = A \times (B \div C)$$

- A: 납부유예된 세액
 B: 감소한 지분율
 C: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 4)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및 총급여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및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유예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⑤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⑥ 가업용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다.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

$$\begin{aligned} & \text{상속세 납부액} \times \text{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 \times \text{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5\%)} / 365 \end{aligned}$$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은 상속세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이자상당액의 50%를 경감한다.

5 납부유예 취소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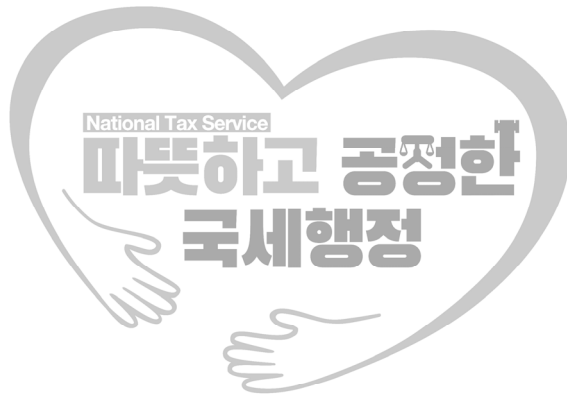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가 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증령 제69조의3 제9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차 납부유예

지분이 감소 또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 2)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제2편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167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99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6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218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236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251
제7장 유형별 증여예시	274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399

제1장

증여세 총설

제1절

증여와 증여세(상증법 §2)

- 민법상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상증법상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은 제외)

1

민법상 증여

민법에서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54). 재산의 무상이전 방식에는 상속(相續), 증여(贈與), 유증(遺贈),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이 있는데, 이 중 증여는 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가. 증여계약의 법적 성질

- ① 무상(無償)계약이다.
- ② 낙성(諾成)계약이다. 낙성계약이란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¹⁾이다.

- ③ 편무(片務)계약이다.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 ④ 불요식(不要式)행위이므로 서면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나. 증여계약의 해제(解除)

증여계약의 해제는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② 망은행위(忘恩行爲) ③ 재산 상태의 변화 등 3가지의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하더라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555 ~ §558).

✓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소급효가 없다.

다. 특수한 형태의 증여

1) 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민법 §561)로 수증자가 재산과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2) 정기증여

정기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이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560).

3) 사인증여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이다. 사인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1) 증여계약 후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채무가, 수증자에게 증여채권이 발생함

2 상증법상 증여

2003.12.31. 이전에는 상증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554)의 증여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여 왔고,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실질이 부(富)의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의제나 증여추정 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다.

2004.1.1. 이후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증법 §2 6호 (중전 상증법 §2③)에 증여 개념을 신설하였다.

가. 상증법상 증여와 증여세

상증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기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본다(국기법 §14).

증여세는 이러한 상증법상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얻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나. 증여세의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자·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을 누적과세한다.

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자연인(개인)인 경우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증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여부에 관계없으며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므로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한다.

라.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부동산 등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²⁾으로 하고 있다(소득령 §163⑨, ⑩).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높으면 양도차익이 작아져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증여세 과세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증여세는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열거주의란 소득세와 같이 과세대상을 세법에 일일이 열거한 후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 가능한 방식을 말하고, 포괄주의란 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이나 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2)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가액이 아니다.

2000년도까지는 과거 민법상의 증여재산과 상증법상 열거한 증여의제 또는 증여 추정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6가지 유형의 자본거래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법령보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나머지 8가지 증여의제 유형에 대하여도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다가 2004.1.1. 이후부터는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을 새로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모든 변칙증여행위를 과세규정으로 일일이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사전 대처가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4조 제1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4두47945, 2015.10.15)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2016.1.1. 이후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하였으며,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기업집단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활용하여, 상속대상자인 자녀 등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종전 상증법 §42 그 밖의 이익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였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상증법 §4)

 증여세 과세대상(상증법 §4)

-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②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③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④ 예시규정(상증법 §33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⑤ 각 예시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⑥ 추정규정(상증법 §44, §45)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⑦ 의제규정(상증법 §45의2부터 §45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
- ⑧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
- ⑨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1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을 말한다. 증여 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201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였다(상증법 §2 7호).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상증법 §4),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상증법 §31(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포괄적 증여재산(아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재산 포함)

-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②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여 예시규정 (17가지)

- ① 상증법 §33에 따른 「신탁이익의 증여」
- ② 상증법 §34에 따른 「보험금의 증여」
- ③ 상증법 §35에 따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④ 상증법 §36에 따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⑤ 상증법 §37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⑥ 상증법 §38에 따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⑦ 상증법 §39에 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⑧ 상증법 §39의2에 따른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⑨ 상증법 §39의3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⑩ 상증법 §40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⑪ 상증법 §41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⑫ 상증법 §41의3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⑬ 상증법 §41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⑭ 상증법 §41의5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⑮ 상증법 §42에 따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⑯ 상증법 §42의2에 따른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⑰ 상증법 §42의3에 따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의 증여재산

증여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라. 증여추정 (2가지)

- ① 상증법 §44에 따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② 상증법 §45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마. 증여의제 (4가지)

- ① 상증법 §45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② 상증법 §45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③ 상증법 §45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④ 상증법 §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사례

1) 증여 해당 여부

(신주)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①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44, 2019.2.25.)

(재배정받은 실권주 등이 상장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 상증법상 포괄주의(§2, §4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가상자산 무상지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 2022.77.25.)

2)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국외재산을 국내 반입)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46014-721, 1999.4.15.)

(취득원인 무효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재산세과-3911, 2008.11.21.)

3)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서면4팀-1753, 2007.5.29.)

(위자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서면4팀-825, 2005.5.27.)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증법 §36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453, 2012.12.20.)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재분할의 경우

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다(민법 §1013).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해당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나. 재분할로 상속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증여가 아닌 경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상증법 §4③ 단서3); 재재산46014-308, 2001.12.28)
- 2) 상속회복청구의 소⁴⁾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3) 채권자 대위권(민법 §404)⁵⁾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 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민법 §1009)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예시

- 2021.4.15. 상속개시, 2021.10.31.상속세 신고
 - 2021.9.15.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한 후 2021.10.15. 재협의하여 분할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 답)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 2021.9.15.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한 후 2021.11.15. 재협의하여 분할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 답) 증여세 과세대상임
 - 2021.11.15. 상속재산 최초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 답)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3) 2015.12.31. 이전 상증법 §31③이며, 부칙상 2003.1.1. 이후 적용이나 재경부예규로 2001.12.28.부터 시행하였음.

4)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

5)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사례

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한 경우

(최초)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서면4탐-815, 2007.3.8.)

2)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재삼46014-2068, 1997.8.30.)

3)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국세청)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증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재산세과-054, 2012.2.10.)

(심판원) 청구인 등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개시당시 및 상속등기당시까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분쟁이 없었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없으며 (생략)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한 상속등기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이라고 인정됨(조심2008중3711, 2009.3.5.)

(법원)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망인의 처인 이○○이 나머지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것이고, (생략) 위 각 등기는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06두3162, 2007.2.22.)

4)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후 재분할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등으로 물납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5, 2022.7.27.)

3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 반환·재증여 시기별 증여세 과세여부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 증여분	반환 또는 재증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과세제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과 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후	과 세	과 세
금전(시기에 관계없음)	과 세	과 세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

즉,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2000헌바35, 2002.01.31.).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⁶⁾·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6)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헌재2013헌바117, 2015.12.23.).

또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시

- 2022.7.5. 부동산(3억원)을 자에게 증여한 후, 2022.10.20.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음
- 2022.7.5. 부동산(3억원)을 자에게 증여한 후, 2022.11.10.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초 증여재산 3억원은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관련 사례

1)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으로 반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1115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751, 2010.10.13.)

(유증받은 재산으로 반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반환받은 현금은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에 포함된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384, 2010.6.8.)

(증여재산으로 반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1115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재산세과-35, 2012.2.2.)

(증여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민법 §1115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90, 2010.11.18.)

(증여재산으로 반환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1115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332, 2011.7.11.)

2)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NEW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2319, 2024.3.7.)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시 당초 증여세 취소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12.23.)

4)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NEW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478, 2023.10.31.)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상증법 §4의2)

수증자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	관계 법령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 국내·국외에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상증법 §4의2	수증자 (거주자)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국조법 §35
	○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 ○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유사한 조세 포함)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	증여자 (거주자)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다.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가 달라진다.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019.1.1. 이후부터는 상증법 §45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 수 있다.

7)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가. 증여재산에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그 가액을 개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대법원94누15189, 1995.5.2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2016.1.1. 이후부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증법 §45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5(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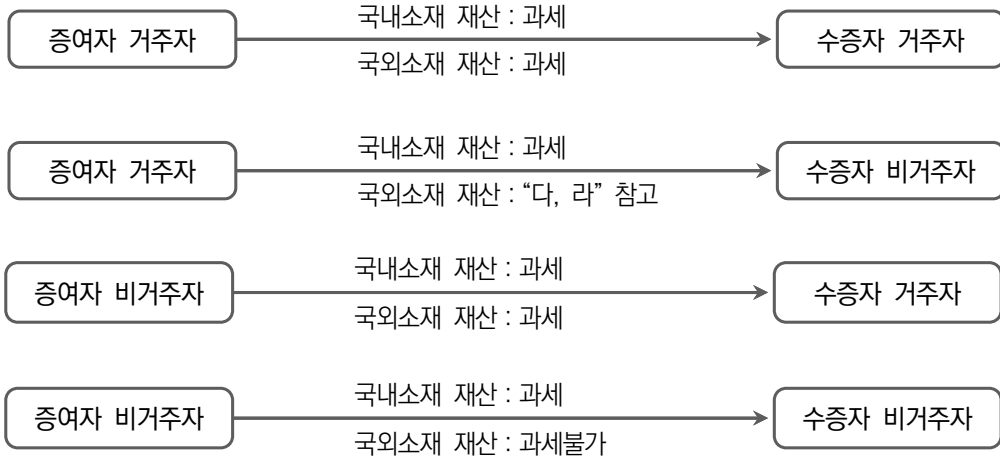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세목

증 여 자	수 증 자	구 분	증여세 납세의무(수증자)
개 인	개인(비영리법인포함)	무상이전	○
개 인	개인(비영리법인포함)	수증자의 사업관련	× (소득·법인세 대상)
법 인	개인(비영리법인포함)	무상이전	○
개 인	영리법인	무상이전	× (법인세 대상)
법 인	영리법인	무상이전	× (법인세 대상)

2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의 범위

구 분	수 증 자	
	거 주 자	비 거 주 자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서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서
과세대상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포함)
증여재산공제	공 제 됨	공제안됨
감면·과세특례 - 영농자녀 증여감면(조특법 §71) -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30의6)	감면가능 적용가능	감면안됨 적용안됨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공제가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시 주소, 거소 등은 소득령에 따라 판단한다.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주소지라 한다.

2)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령 §2(주소와 거소의 판정), §4(거주기간의 계산)①·② 및 ④에 따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령 §2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3(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등(그 외 자산은 ‘라’ 참조)

2013.1.1.~ 2016.12.31.까지 상증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과세하였으나 2017.1.1. 이후 국조법⁸⁾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국외예금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 포함)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 나)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라.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과세특례의 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 국조법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기법 §2 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국조법 §35③).

국조법 적용방법

2014년 이전	2015년 이후
○ 외국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	○ 외국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
○ 외국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 외국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②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국조령 §71①).

- ①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⁹⁾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 ②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 ③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증법 §61부터 §6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증법 §63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9) 상증법의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과 다름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비과세·면제 포함)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바.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기법 §13④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

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다음의 유형에 해당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상증법 §4의2⑤)

- ①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상증법 §35)
-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이는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저가 양수자, 채무자, 부동산 무상사용자, 금전무상 차입자까지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상기유형의 경우에는 증여자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되므로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 후 강제징수를

통해 결손처분의 절차를 밟게 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있어 신설된 것이다.

2019.12.31. 개정시 '종전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¹⁰⁾

4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연대납부의무 대상 : 민법상 증여재산, 증여예시(신탁이익, 보험금), 증여추정, 증여재산으로 보는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재산으로 보는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지만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해당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통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며, 납세고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재경부재산 46014-103, 1995.3.20.).

2016.1.1. 이후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10) (2019.12.31. 이전) 법원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으로 보았다(대법원2014두43516, 2016.7.14.).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한다(서면4팀-88, 2004.2.19.).

또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연대납부의무 없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어 대신 납부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1050, 2008.4.29.).

가. 증여자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①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003.1.1. 이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는 수증자의 담세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동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신고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증여로는 일반적 증여,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등의 증여추정이 있으며, 다음의 증여유형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도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증여유형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상증법 §4①2호)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상증법 §4①3호)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법 §35)
- 채무면제 등에 다른 증여 (상증법 §36)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37)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38)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39)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39의2)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39의3)
-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0)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의2)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의3)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의4)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의5)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2의2)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2의3)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법 §45)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4)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5)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상증령 §3의3②에 해당시



관련 사례

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567, 2011. 11. 28.)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삼46014-135, 1997. 1. 24.).

2) 증여세 고지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국세청)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징세46101-932, 2000.6.26.)

3)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NEW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8.30.)

5 명의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분으로서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상증법 §4의2⑨).

다만, 2019.1.1.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6, 2018.12.31.).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상증법 §6)

과 세 관 할	구 분
수증자의 주소지	○ 수증자가 거주자로 주소(거소)가 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2019.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재산 소재지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상증법 §38②, §39②, §39의3②, §45의3 및 §45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상증법 §45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상증법 §6).

그러나 1) 수증자 및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 및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상증법 §38(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39의3(현물출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②의 경우 및 §45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5의4(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의제된 경우¹¹⁾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세 신고 당시의 증여세 과세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증여세의 결정은 결정 당시의 증여세 과세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해야 한다.

11) 증자 및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 등에서 소액주주 1인을 증여자로 보는 경우와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함

1 신고 관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기법 §43). 증여세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란 법 §6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국기법 통칙 43-0-1).

그러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결정·경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국기법 §44). 증여세의 경우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증여세 과세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여재산의 소재지

증여자·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어느 곳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관할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다.

상증법 §5에서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증여재산 종류에 따른 증여재산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별 증여재산 소재지는 상속재산 소재지와 동일하며 상속세편 제2장 제4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5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세와 동일하며, 상속세편 제2장 제5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

1 특수관계인 규정

2012.2.1.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을 각 상증령 개별 규정에서 상증령 §19②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각각 규정하여 왔으나, 국기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비함에 따라 상증법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2012.2.2. 신설하여 본인과 상증령 §12의2①(현재 §2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하였다.

2016.1.1. 이후 상증법 §2 정의 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상증령 §12의2 규정이 상증령 §2의2로 조문을 이동하였다. 정의 규정 신설로 종전의 상증령 각 해당규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모두 정비되었다(상증령 §2의2). 예를 들어 종전의 상증령 §26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1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의 규정이 현재 상증령 §26에 없다.

2019.2.12. 상증령 §2의2의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5년을 유지하였다.

2 특수관계인 범위

세법의 특수관계인은 크게 국기법의 특수관계인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범위가 각각 다르다.

상증법의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국기령 §1의2①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친족¹²⁾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국기령 §1의2①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으로 구분하기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며,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민법 §768)

2) 3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혼인의 무효,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나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한다.

12) 민법의 친족 범위와 다르다. 민법은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친족으로 본다 (민법 §777)

-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친족 관련 개정 연혁

2012.2.1. 이전 (상증령 §13⑨)	2012.2.2. 이후 (상증령 §2의2①)	2023.3.1. 이후
□ 국기령 §20 1호부터 8호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 ¹³⁾ 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국기령 §1의2①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기령 §1의2①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사용자(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자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자(임원·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을 포함한다. 임원은 법인령 §40①1항¹⁴⁾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13) 부계혈족 : 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부, 고모 등), 모계혈족 : 외가의 혈족들(외조부모, 외숙부, 이모 등)을 말한다.

14)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상증령 §2의2 ③).

- 1) 상증령 §2의2① 6호 해당 법인 (30% 이상 출자법인)
- 2) 상증령 §2의2① 7호 해당 법인 (50% 이상 출자법인)
- 3) 상증령 §2의2① 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임원의 범위 개정 연혁

2014.2.20. 이전	2014.2.21. 결정분부터	2019.2.12.
① 법인령 임원 ② 퇴직임원(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전직임원)	① (좌동) ② 퇴직임원(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전직 임원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임원)	① (좌동) ② (제외)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령 §40 ①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9. 2. 12. 개정)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가.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라. 본인, 가.부터 다.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가.부터 다.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마. 다.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바. 본인, 가.부터 마.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가.부터 마.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사. 본인, 가.부터 바.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가.부터 바.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아. 본인, 가.부터 사.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가.부터 사.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관련 사례

1)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NEW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7.27.)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편

증
여
세

제1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증법 §32)

증여일은 재산평가의 기준일, 신고기한의 계산, 부과제척기간의 계산, 개정 법령의 적용시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¹⁵⁾를 가진다. 또한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져 세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증여일)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고 있으며, 크게 일반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예시·추정·의제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예시(상증법 §33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증여추정(상증법 §44, §45) 및 증여의제(상증법 §45의2부터 §45의5)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따른다(상증법 §32).

15)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다. 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중 장기미명의개서의 경우에는 증여시기와 재산평가시기와 차이가 있다.

▶ 재산종류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등록일
「민법」 §187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다음 ①, ②, ③ 중 빠른 날 ①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시 그 사용일 ③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개발구역지정 고시일, 형질변경 허가일, 분할등기일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 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증여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항공기·건설기계 등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이 경우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상증통칙 32-24...1). 다만, 민법 §187¹⁶⁾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나. 증여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 등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또는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의 증여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16) (민법 §187)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다.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증령 §24①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의 증여시점을 명확화한 규정으로 2015.2.3.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증 여 시 기
①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②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③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④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⑤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⑥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⑦ 위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상법 §33717) 또는 §55718)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17) (상법 §337 ①,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18) (상법 §557,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마. 무기명채권

무기명채권은 증서상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으로서 무기명수표, 무기명주식, 무기명사채, 상품권 등이 있다.

무기명 채권인 경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바. 위 외의 증여재산

상기 외의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2 증여예시·추정·의제 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각 해당 규정에서 그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법 §31)

1 의 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포괄적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증여이의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칙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상증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3.1.1. 법률개정(11609호)을 통해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신설(상증법 §31)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한 것으로 2013. 1.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3억원이상 또는 30%이상」이라는 과세기준이의 등 일반원칙의 적용한도를 두어 완전포괄주의 확대 적용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였다.

2016.1.1. 이후부터는 상증법 §4①4호부터 6호까지 및 §4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 증여재산가액 계산

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¹⁹⁾에 상당하는 금액

19)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31, §35 및 §42에서 같다.

나.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이익과 관련하여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금액 기준을 계산한다(상증법 §43②, 상증령 §32의4)

- ▶ 과세요건 : (시가 - 대가) ≥ 시가 × 30% 또는 (시가 - 대가) ≥ 3억원
- ▶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또는 (대가 - 시가)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나)+(다)+(라)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 과세요건 : 재산가치상승금액 ≥ {(나) + (다) + (라)} × 30% 또는 재산가치상승금액 ≥ 3억원
- $$\begin{aligned} \text{증여재산가액} &= \text{(가) 해당 재산가액} - \{ \text{(나) 취득가액} + \text{(다) 통상적인가치상승분} \\ \text{(재산가치상승금액)} & \qquad \qquad \qquad + \text{(라) 가치상승기여분} \end{aligned}$$

(가)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라)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라.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증여이익

위 가, 나, 다에 불구하고, 해당 증여재산이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와 경제적 실질이 증여예시와 유사한 경우 등으로서 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상증법 §4①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법 §46)

증여재산의 범위가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나 면제,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재산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상증법상 비과세 재산과 기타 법률에 따른 면제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받게 되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나.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하며,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증령 §29⑤).

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05.1.1.이후 기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그 외 정치자금(불법정치자금)은 몰수·추징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76③).

라.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²⁰⁾·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2) 기념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그 금품은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칙 46-35...1).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92, 2009.11.9.). 비과세 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업수행을 위해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증받은 재산을 말한다(상증통칙 46-35...1).

- 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20) (민법 §97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민법 §975)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4)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²¹⁾
- 5) 무주택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임차보조금 중 취득가액 5% 또는 전세가격 10% 이하의 것
- 6)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바. 다음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같은 법 §35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3) 「예금자보호법」 §24①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같은 법 §26의3①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5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같은 법 §59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 5) 2021.2.17. 이후 증여세 결정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46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공공단체란 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을 말한다(상증령 §8).

아. 소득령 §107① 각 호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21) 무환수입물품을 말한다. 즉, 거래의 대가없이 들어온 물품 등을 말한다.

✔ 장애인에 대한 상증법 규정

- 장애인 상속공제(상증법 §20①4호)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46.8호) : 한도 연간 4천만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의2) : 한도 5억원

자. 2016.1.1. 이후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차.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2017.1.1. 이후 증여부터)



관련 사례

1)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함(상증법 §46)

2) 혼수용품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서면4팀-1642, 2005.9.12.)

3) 부의금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됨(서면4팀-358, 2005.3.10.)

4)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증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4.20.)

5) 부모급여

NEW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사전-2024-법규재산-0146, 2024.3.21.)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4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10%, 20%)를 초과하여 받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48).

1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법인 등은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12).

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46014-2483, 1995. 11.1.).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등을 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통대 등을 말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마. 법인법 §24②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바. 법인령 §39①1호 각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령 §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사. 법인령 §39①2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 사업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 중 상증령 §12에서 열거한 사업을 하는 자(2018.12.31. 현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0.12.31.까지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한 후, 공익사업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사후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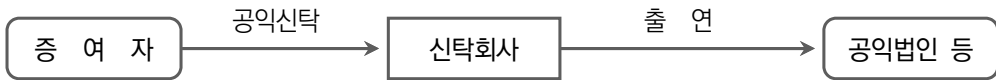
이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은 제외)의 10%(5%, 20%)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익법인등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발간 책자 「공익법인 세무 안내」 참고하기 바란다.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²²⁾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이 증여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직접 출연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기 때문이다.



1 공익신탁의 요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증령 §12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나.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다.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2 공익신탁의 이행시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22)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공익신탁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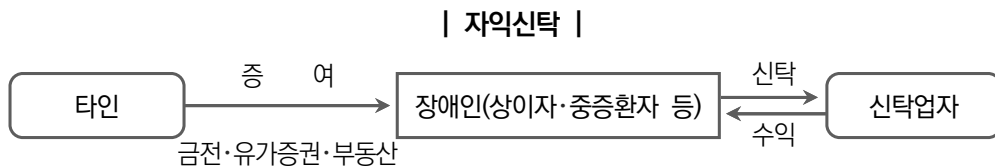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52의2)

장애인이 타인(2016.12.31. 이전에는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한도 5억원)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증법 §52의2).

2020.1.1. 이후 신탁부터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타익신탁(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을 추가하였다.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그 날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애인의 범위

그 범위는 소득령 §107①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가. 신탁 요건

1) 자익신탁[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

- 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나)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다)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2) 타익신탁(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요건을 충족한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 나)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②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③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신탁요건 개정연혁

2016.12.31. 이전	2017~2019년	2020.1.1. 이후
① 자익신탁 (증여자 :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	① 자익신탁 (증여자 : 타인)	① 자익신탁 (증여자 : 타인) ② 타익신탁

나. 불산입 재산가액

자익신탁(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 불산입한다.

다. 불산입 신고요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 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3)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증여세 과세

세무서장 등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 과세 유형	과세시기
①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날
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날
④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령 §45의2).

- 가.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 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신탁을 중도 해지한 때에는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에 다른 종류 또는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 나.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재개발·재건축²³⁾ 등으로 인해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

▶ 신탁 재가입의 개정연혁

2017.2.6.이전	2017.2.7.이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만 추정배제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정배제

다.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등 용도로 지출하기 위하여 중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20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1)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장애인의 범위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정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의료비 등 범위

- 가) 소득령 §118의5① 및 ②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20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 나) 소득령 §118의6①에 따른 특수교육비(2018.4.1.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 다)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2020.2.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4 증여세 추정세액의 계산

- 가.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해지일, 신탁기간의 만료일, 수익자를 변경한 날 현재의 해당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 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현재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 다.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현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text{신탁재산의 가액} \times \frac{\text{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text{신탁이익의 전액}}$$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포함) + 증여재산가산액(해당 증여전 10년 내의 동일인 증여분 합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등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상증법 §47)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금액 및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상증법 §47).

1 채 무

구 분	세 부 사 항
공제요건(상증령 §36)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인 경우 (상증령 §47③)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채무인수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 인정
양도세 관련 (소득법 §88 ①)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한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고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야 한다.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시점에서 해당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자 채무가 아닌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더라도 그 채무액은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서면4팀-1299, 2005.7.25.).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 채무(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나.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제 인수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채무자 명의 변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서면4팀-811, 2007.3.8.).

증여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서면4팀-1131, 2005.7.5.).



관련 사례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이 임대자산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보증금 공제는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여 안분함(상증 집행기준 47-36-4)

2) 공동담보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재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함(서면4팀-1727, 2004.10.26.)

3)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증법 §36에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614, 2009.2.23.)

4)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6.29.)

2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을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가. 10년 이내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한다(재산46014-1691, 1996.7.13.).

**예시**

- 2013.6월 父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고, 2023.5월에 母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답 5억원 (∵ '12년 6월 증여분은 10년간 합산대상임)
- 2018.9월 父로부터 5백만원을 증여받고, 2023.3월에 父로부터 12백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답 12백만원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을 의미)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가산)
- 2018.9월 父로부터 3천만원(채무 2.5천만원)을 증여받고, 2023.3월에 父로부터 12백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답 12백만원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합산)
- 2017.9월 父로부터 10억원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2023.3월에 父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답 2억원 (∵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자금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나.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시**

- 2018. 1월 母로부터 증여받고, 2023. 10월 父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여부
답 합산 (母증여분 ⇒ 父와 母는 동일인으로 봄)
- 2018. 2월 祖父로부터 증여받고, 2023. 4월 父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여부
답 합산대상 아님 (祖父증여분 ⇒ 祖父와 父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2016. 3월 父로부터 증여받고, 父母 이혼 후 2023. 11월 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여부
답 합산대상 아님 (父증여분 ⇒ 이혼한 父와 母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2017. 4월 母로부터 증여받고, 母 사망 후 2023. 3월 父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여부
답 합산대상 아님 (母증여분 ⇒ 夫婦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따른다(상증통칙 47-0...2).

라. 동일인 증여 시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비 고
합산배제증여재산(상증법 §47①)	
창업자금(조특법 §30의5⑩)	5억원 공제
중소기업 기업승계 주식 등(조특법 §30의6③)	10억원 공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조특법 §71⑥)	상증법 §53 공제
직계존속의 배우자 이혼·사망 등	
증여세 비과세재산(상증법 §4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상증법 §48)	
- 공익신탁재산(상증법 §5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상증법 §52의2)	

합산배제증여재산(상증법 §47①)은 증여자 또는 증여재산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상증법 §31①3호(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40(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항2호 및 3호, §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2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5(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45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45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 재산을 말한다.

2019.1.1. 이후 증여분부터 §45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22.1.1. 증여분부터 §45(재산 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추가되었다.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2004.1.1. 이후)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과세표준계산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창업자금 및 기업승계 주식 등(조특법 §30의5 및 §30의6)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 증여세 과세특례재산은 다른 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음(창업자금과 기업승계 주식 등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 5억원(기업승계 10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뺀 후 10%(기업승계는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시 20%)의 특례세율을 적용



관련 사례

1) 동일한 재산의 합산여부

(반환 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서면4팀-807, 2004.6.7.)

(합의해제 후 증여받은 경우) 민법상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초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초 증여는 없고 재차 증여만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1서2867, 2011.12.14.)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상증법 §55)

구 분	증여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증여재산외	거주자(수증자)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비거주자(수증자) : 증여세과세가액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 증여재산	①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상증법 §45의2) - 감정평가수수료 ②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상증법 §45의3)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상증법 §45의4)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증여재산(① 및 ② 제외)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2004.1.1. 이후 증여 분부터 일반증여재산, 명의신탁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다(상증법 §55).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시

- 자가 자(성년,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없음)
 [답] 4억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 주식 등의 상장이익(합산배제 증여재산)이 3억원인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감정평가 수수료 없음)
 [답] (3억원 - 3천만원) = 2억 7천만원

1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거주자가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③ 직계비속, ④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친족 중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²⁴⁾한다(상증법 §53). 그 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중전 3천만원)으로,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을 1천만원(중전 5백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상증법 §53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절에서 별도로 기술하였다.

증 여 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 타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억원 (혼인·출산)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재산 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뺀다.

조특법 §30의5(창업자금)·§30의6(가업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자금의 경우 5억원, 가업주식의 경우 10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2010.1.1. 이후 증여분부터 계부·계모와 자간의 증여시 직계존비속간의 공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4)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하며, 증여세 과세가액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합산한다.

증여재산공제 개정연혁

증 여 자	1999~2002	2003~2007	2008~2013	2014~2015	2016.1.1.이후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천만원 (15백만원)	3천만원 (15백만원)	3천만원 (15백만원)	5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5천만원
배 우 자	5억원	3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기타친족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가.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1) 증여재산공제액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상증 집행 기준 53-0-2)를 말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2) 종전 증여 합산 시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공제받을 금액(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예시

○ 2006.5월 배우자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고, 2012.9월에 배우자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재산공제액은 (증여받은 배우자는 거주자임)?



답 2006년 증여분 : 3억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

2012년 증여분 : 2006년 증여분 4억과 해당 증여분 2억의 합계에서 5억원 공제

(∵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3억원+2억원(해당 증여가액 한도))



관련 사례

1)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 (재산상속 46014-439, 2004.4.8.)

2)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가능함 (재산상속 46014-1704, 1999.9.18.)

나.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1) 증여재산공제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 민법 §4)이면 2천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로 본다.

201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의 범위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 공제를 허용한다.



예시

- 父가 자(성년, 거주자)에게, 2013.7.15.에 증여하고, 2023.5.15.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일	①		②		③	
	재산가액	공제금액	재산가액	공제금액	재산가액	공제금액
2013.7.15.	5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2023.5.15.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	4천만원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6천만원	4천만원	9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2) 직계존속의 판단

직계존속은 혈족을 말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출양한 자의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 모두 해당한다.

✓ 친자·친양자

- 친자는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법정혈족인 양자로 구분된다. 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구분할 수 있다.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한다.
- 친양자란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생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 양자는 본래 친가와 양가의 상속권을 가지지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가의 상속권만을 가지고 친가의 상속권은 없다.

다.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한다.

2010.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직계비속의 범위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관련 사례

1) 성년자가 된 후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1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되어 20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5백만원은 성년자가 된 후 증여받은 각각의 증여가액으로 안분함(재산상속46014-1664, 1999. 9.10.)

라. 증여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한다.

마.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수증자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과세가액에서 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예시

- 父가 子1(성년, 거주자), 子2(성년, 거주자)에게 동시에 각각 1억원씩 2023년 증여시 子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답 子1 5천만원 공제, 子2 5천만원 각각 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기준으로 계산)

- 子(성년, 거주자)에게 父가 2억원, 母가 3억원을 동시에 2023년 증여한 경우 과세가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은?

답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 증여세 과세가액은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임(각각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부 : 5천만원 × 2억원 / 5억원 = 2천만원

모 : 5천만원 × 3억원 / 5억원 = 3천만원

- 子(성년, 거주자)가 2019.10월 祖父로부터 1억원, 2023.4월 父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2023.4월분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은?

답 증여세 과세가액 : 1억원 (조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안함), 증여재산공제액 : 0원 (祖父 증여분에서 이미 5천만원을 기공제)

2 재해손실공제

타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된 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54).

이 경우 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다만, 해당 손실금액에 대해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수증자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해당 손실가액 및 명세와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2004.1.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한다.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수수료로서 해당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백만원으로 한다.

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액의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한다.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서화·골동품 등의 전문가 감정수수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2014. 2.2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백만원으로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범위 개정연혁

2015.2.2. 이전	2015.2.3.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2022.1.21. 명칭변경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자(개인+법인)	감정평가법인등

제3절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법 §53의2)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1.1.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였다.

1 공제내용

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함)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53의2②(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및 동법 §53 제2호에 따른 공제(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증여받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혼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함)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함)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53의2①(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및 동법 §53 제2호에 따른 공제(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증여받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출산 등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공제한도

혼인 및 출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 아래의 증여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적용된다.

상증법 조문	증여재산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4조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 반환특례

거주자가 혼인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약혼자의 사망
- 2) 「민법」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5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면제 특례 등

아래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1) 혼인 전에 혼인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2) 혼인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 가산세 면제 범위

무신고 가산세(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과소신고 가산세(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상당액

$$= \text{증여세액} \times \text{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times 22/100,00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2022.2.15.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율)

6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등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며, 해당 규정은 2024.1.1.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 부터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시

- 2023.4.1.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2024.1.1.부터 2025.4.1.까지
- 2025.6.1. 혼인예정인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2024.1.1.부터 2027.6.1.까지
- 2023.4.1. 출생한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2024.1.1.부터 2025.4.1.까지
- 2024.6.1. 출생한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2024.6.1.부터 2026.6.1.까지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되나 이 산출세액이 그대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 결정세액이 수증자가 신고납부할 총세액이 되는 것이다.

증여세 결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감면되는 세액은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²⁵⁾,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상증법 §56)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상증법 §56).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상증법 §57).

$$\text{증여세 산출세액} = (\text{증여세 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세대생략 증여세 할증세액}$$

25) 문화재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제도는 상속세만 적용한다.

1 세 율

증여재산에 따라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된다.

가. 기본세율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누진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1996.12.31. 이전에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달랐으나 1997.1.1. 이후부터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1997.1.1. ~ 1999.12.31. ²⁶⁾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5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50억원 초과	45	4억 1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나. 특례세율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금(조특법 §30의5) 및 가업승계 주식 등(조특법 §30의6)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분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승계 중소기업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57 및 상증령 §46의3)

26) 세율 경과조치는 1999.12.28. 상증법 부칙 §5에 따른다.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47②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left(\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 부모 외 직계존속 증여재산가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times 40\% \right)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2) 1)외 경우

$$\left(\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 부모 외 직계존속 증여재산가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times 30\% \right)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3) 경과규정(상증령 제26960호, 2016.2.5., 부칙 §9)

2016.2.5.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left(\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 부모 외 직계존속 증여재산가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times 30\% \right)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예시

- 2023년 祖父가 성년 손자에게 부동산 3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은? (증여시父는 살아있음)
 [답] 52백만원 (∴ [(3억원 - 5천만원) × 20% - 1천만원] × (100% + 30%))
- 2023년 祖父가 미성년 손자에게 부동산 50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은? (증여시父는 살아있음)
 [답] 2,842백만원 (∴ [(50억원 - 2천만원) × 50% - 4.6억원] × (100% + 40%))



관련 사례

1) 할증과세 대상

(조카와 삼촌) 수증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음
(서일46014-11008, 2002.8.2.)

(외조모와 외손자) 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외손자가 증여받으면 할증과세하지 않음(재삼46014-2574, 1997.10.31.)

2) 합병상장

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1.6.)

3)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경우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해당 재산은 조부 상속 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음(서면4팀-3410, 2006.10.11.)

4) 기할증과세액의 계산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시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재경부재산-610, 2007.5.23.)

5)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 재산-2641, 2017.12.18.)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상증법 §58 등)

1 납부세액공제

- 납부세액공제 = MIN (㉠, ㉡)
-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한도액
- 공제한도액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text{해당 증여재산} + \text{가산한 증여재산})\text{의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상증법 §58). 산출세액은 세대생략으로 인한 할증세액은 제외한다.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 기간)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 (㉠, ㉡)
- ㉠ 공제액 ㉡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
- 공제액

$$\text{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text{증여세 과세표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59). 다만,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text{박물관자료 등의 증여세 징수유예} = \text{증여세산출세액} \times \frac{\text{박물관 자료 등의 가액}}{\text{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 포함)}}$$

증여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의 기간 중에 또는 박물관자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증여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증여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7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 등인 경우에 한함)에 전시·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증여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 등을 수증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한 증여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text{증여세 산출세액} + \text{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text{박물관자료등의 징수유예세액} + \text{납부세액공제} + \text{외국납부세액공제} + \text{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세액})] \times \text{공제율}(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상증법 §69).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록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창업자금(조특법 §30의5) 및 가업승계 주식(조특법 §30의6)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30의5⑩)

공제율 개정연혁

2016.12.31. 이전	2017.1.1.~12.31	2018.1.1~2018.12.31.	2019.1.1. 이후
10%	7%	5%	3%



관련 사례

1) 과다신고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다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증집행기준 69-65의2-2)

2) 경정시 신고세액공제 계산

(질의) 상속재산 일부 신고누락시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답설) 당초 신고한 신고산출세액 기준

(을설) 신고 누락분을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한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기준

(회신) '을설'이 타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2.12.)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조특법 §71)

- (요건)
 - (증여자 - 자경농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수증자 - 영농자녀)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 (대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업용토지(어선, 어업권), 염전 또는 축사용지
- (한도) 5년간 1억원,
- (사후관리) 5년

2007.1.1. 이후부터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 감면한도는 5년간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조특법 §133).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 증여자(자경농민) 요건

자경농민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한다.

- 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2015.2.2. 이전 증여분은 20km) 이내에 거주할 것
- 나.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령 §16④를 준용한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다.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법 §19②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45②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소득령 §9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소득법 §20②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²⁷⁾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①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②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2 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③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④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28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수증자(영농자녀) 요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상증법 §68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할 것

27) 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함

수증자 개정연혁

2015.2.2. 이전	2015.2.3. 이후
<input type="checkbox"/> 영농자녀(수증자) 요건 ① 18세 이상 ② 농지 등 소재·연접지역 재촌 ③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 종사자(자경 요건)	<input type="checkbox"/> 영농자녀(수증자) 요건 ① (좌동) <②, ③ 삭제> *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촌 및 영농종사

3 감면대상 증여농지 등의 범위

다음 가.~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1) 농지 : 농지법 §2 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2014.12.31. 이전 증여분은 29,700㎡) 이내의 것
- 2) 초지 : 초지법 §5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2015.12.31. 이전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3) 산림지 : 산지관리법 §4①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7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으로 한다.
- 4)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55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5) 어선: 「어선법」 §13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16.1.1.이후)
 - 6) 어업권: 「수산업법」 §2 또는 「내수면어업법」 §7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18.1.1.이후)
 - 7) 어업용 토지등: 40,000㎡ 이내의 것('18.1.1.이후)
 - 8)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2.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20.1.1.이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4 감면세액의 한도

2025.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영농자녀가 직계비속인 손자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재산세과-2292, 2008.8.18.).

이 경우,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5년간 감면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조특법 §133②).

5 감면세액의 징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거나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text{이자상당액} = \text{납부하여야 할 세액} \times \text{납부일}^{28}\text{까지의 기간} \times (22/100,000)$$

다만, 5년 내 양도하거나 영농 미종사 사유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5년 내 양도)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다)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라)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마) 소득법 §89①2 및 조특법 §70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영농 미종사)

- 가)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받는 경우
- 나)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따라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28) 조특법 §66⑥준용. 조특령 §63⑨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66⑤ 또는 ⑨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6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증여세 계산 특례

가. 상속세 계산특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증여세 계산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증법 §47(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과세특례 배제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1)의 금액에
2)의 기간과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1일 10만분의 22)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 1) (조세포탈)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8 감면신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9.1.1. 이후 증여부터는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고(조특법 §71⑦). 2008.12.31. 이전에는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감면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 다) 해당 농지 등의 증여계약서 사본
- 라)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 마)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출자한 증서
- 바)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관련 사례

1) 한도액 초과시 납부할 증여세액 및 감면 받은 농지의 가액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이 조특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분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3.18.)

2) 면적한도의 계산기준

농지·초지·산림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조특법 §133(감면의 종합한도)②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적용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04, 2014.8.12.)

3) 영농종사여부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서면-2023-법규재산-1233, 2024.1.19.)

4) 5년 내 양도에 증여 포함여부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재산세과-380, 2012.10.18.)

5) 축사만 증여

영농자녀들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사전-2020-법령-1188, 2021.10.22.)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2편

증
여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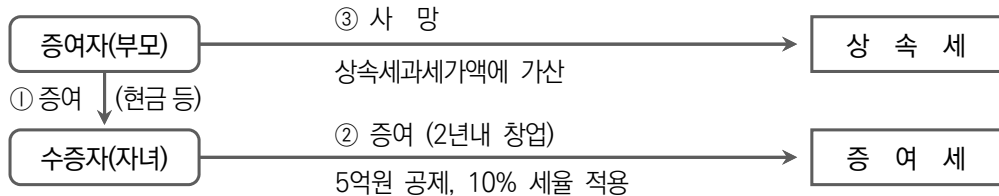
거주자가 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²⁹⁾를 두고 있다.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아니라 5억원 또는 10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 또는 20%)을 적용하며,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 차액에 대해 상속세로 납부한다.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 (요건)
 -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등
 -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 등)으로 창업중소기업 창업
 - 창업: 사업자등록,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용 자산취득 등
- (한도) 50억원(2016년부터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 (과세특례)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 적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 (사후관리)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 등

29) 조특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조특법 §30의5).

1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 증여자 및 수증자

1)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2)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나. 창업자금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³⁰⁾이 아닌 재산(예 : 현금)으로, 조특령 §5¹³⁾에 따른 사업용자산³¹⁾의 취득자금 및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94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기타자산(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31) 조특령 §5¹³⁾에 따른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령 §24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것은 동 부동산 등의 경우 증여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토지 그 자체를 증여할 경우 시가 30억원의 토지를 현금화하여 증여할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의 부담분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중소기업 창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6③에 따른 창업중소기업³²⁾을 말한다.

창업이란 소득법 §168(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법인법 §111(사업자등록)① 또는 부가법 §8(사업자등록)① 및 ⑤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2016.2.5. 증여분부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본다.

창업 개정연혁

2016.2.4. 이전	2016.2.5. 이후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 사업확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창업 기한 개정연혁

2019.12.31. 이전	2020.1.1. 이후
1년	2년 (2019.12.31. 이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부과받은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부칙 §43)

32)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한다.(조특법 §6)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토지와 법인령 §24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 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마)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특례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신청서(「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 과세특례 내용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특법 §30의5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증법에 따른다.

가.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즉,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14.12.31. 이전 증여분은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계산특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창업자금은 해당 자금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3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 가.~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1일 22/10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가. 2년(2019.12.31. 이전은 1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 나.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 중소기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 다.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 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2019.12.31. 이전은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 마.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등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 바.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 :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2)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사.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근로자는 조특령 §27의3④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text{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text{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text{명})$$

2023.1.1. 이후 위 가. ~ 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父가 자에게 창업자금 30억원을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은?

답 2억5천만원 = (증여재산 30억원 - 창업자금 공제 5억원) × 10%

- * 상속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총부담세액 : 8억4천만원
 상속세 : (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40% - 누진공제1억6천만원 = 5억9천만원 납부
 ⇒ 총부담세액 8억4천만원 (= 증여세 2억5천만원 + 상속세 5억9천만원)
- * 30억원을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한 경우 상속세 : 8억4천만원
 상속세 : (상속재산 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40% - 누진공제1억6천만원
- * 30억원을 일반증여한 후 상속한 경우
 증여세 : (증여재산 30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40% - 누진공제1억6천만원
 = 10억2천만원
 상속세 : (상속재산 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40% - 누진공제1억6천만원
 - 10억2천만원 = 0 (환급은 하지 아니함)
 ⇒ 총부담세액 10억2천만원 (= 증여세 10억2천만원 + 상속세 0)

**관련 사례****1) 창업**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해당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재산세과-291, 2012.8.21.)

2) 합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재산세과-4455, 2008.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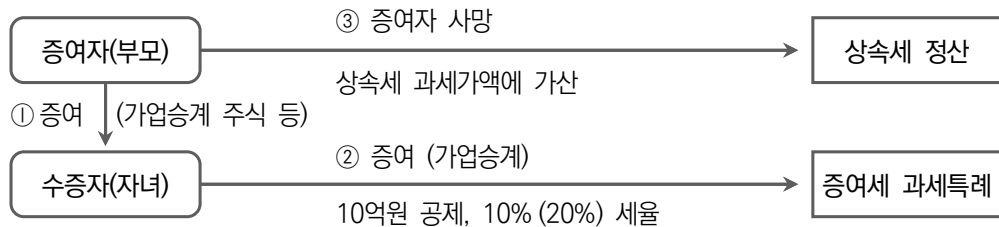
3)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종결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조특법 §30의5④, ⑥(사후관리)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11.8.22.)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 (요건)
 -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등
 -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 (대상)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
- (한도) 600억원
- (과세특례)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20%) 세율 적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 (사후관리)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이내 가업미종사, 휴폐업 등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조특법 §30의6).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한도로 하며,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 증여자 및 수증자

1) 증여자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상증법 §18의2①(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관련 사례

1)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父母로부터 증여받는 주식 모두에 적용(상속증여세과-32, 2013.4.9.)

2) 경영의 의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3)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여부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재산세과-779, 2009.11.19.)

4) 가업승계 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NEW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함(서면-2022-상속증여-2863, 2022.7.18.)

5) 최대주주등의 범위 NEW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2-상속증여-4263, 2024.1.19.)

2) 수증자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를 말하며,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2020.1.1. 이후 증여부터 2인 이상이 기업을 승계한 경우 기업승계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인 이상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액은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와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②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조특법 §30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2인이상 승계 개정연혁

2010.12.31. 이전	2011 ~ 2019년	2020.1.1.이후
2인 이상 기업승계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 2010. 7.12.)	수증자 1인	2인 이상 기업승계 가능

2010.12.31. 이전에는 최대주주 등의 각각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 2010. 7.12.),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 1명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증자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조특법 §30의6①단서). 다만, 최초 증여받은 자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로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가능하다.



관련 사례

1)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세과-2081, 2008.8.1.)

(증여받기 전 대표이사 취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2389, 2008.8.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2016.10.26. 같은 뜻)

2) 두 개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두 개의 기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재산세과-358, 2010.6.3.)

3) 기업주식의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NEW

기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 §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사전-2023-법규재산-0563, 2023.8.30.)

나. 증여물건

수증자가 해당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으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³³⁾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지분이나 부동산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세과-1556, 2009.7.27.).

다. 승계대상 “기업”의 의미

기업이란 상증법 §18의2①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의미는 상속세편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2. 기업상속공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33) 상증령 §15⑤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업무무관자산 비율 상당액은 제외한다

라. 신 청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과세특례 내용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가.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도, 세율 개정연혁

2015.1.1. 이후	2023.1.1. 이후	2024.1.1. 이후
(한도) 과세가액 100억원 (세율)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한도) 과세가액 600억원 (세율) 10%,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한도) 과세가액 600억원 (세율)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 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계산특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주식 등은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증법 §41의3·§41의534)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그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합산배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특법 §30의5⑧ 및 ⑨, 조특법 §30의6④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상증법 §18의2①)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1) 해당법인이 상증령 §15③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증령 §15③1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2020.2.11. 이후 상속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증령 §15③1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본다.

2020.2.11. 이전에는 자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³⁵⁾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는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40, 2016.6.23.).

-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34)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35) 사망일 현재 부는 최대주주가 아니다.

다.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 과세특례 배제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거주자 또는 부모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1)의 금액에 2)의 기간과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1일 10만분의 22)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 1) (조세포탈)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3 사후관리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종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자상당액

= (증여당시 기본세율에 의해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 주식의 증여세신고기한 익일부터 추정사유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0)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및 2022.12.31.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2023.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칙(법률 제19199호, 2022.12.31.) §35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적용한다.

2018.1.1. 이후부터는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일로부터 5년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2.11. 이후 업종변경부터 적용하되, 종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 외의 경우로서 상증령 §49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업종분류 개정연혁

2016.2.5. ~ 2020.2.11.	2020.2.11.이후	2024.2.29.이후
소분류 내 변경[2016.2.5.이 속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세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이상]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종변경	① 대분류 내 변경 ② (대분류 이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종변경

3) 해당 기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기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증령 §15③에 따른 최대주주 중에 해당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①에 따른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인(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2.13. 이후부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가 출자 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를 추가 하였다(조특령 §27의6⑦).

다)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외의 자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재산세과-821, 2009.4.29.).

다. 정당한 사유 (추징 배제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기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사례

1) 기업상속과 기업승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업승계 사후관리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2021.6.30.)

2) 보유비율 계산과 업무무관자산 판단 기준일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업자산 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2020.9.8.)

3) 부친 사망 후 모친의 가업주식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NEW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3.5.25.)

제3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1 납부유예 신청대상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거주자가 가업(상증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는 중소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았을 것
- ②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2 신청절차 및 허가절차

가. 신청절차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포함)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1) 납부유예신청서
-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증자가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3)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재차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나. 허가절차

납부유예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 3)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재차 납부유예 신청하는 경우 6개월)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납부유예 허가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가. 피상속인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나. 상속인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다. 납부유예 가능세액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자산 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4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요건 및 추정세액

-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다음의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 ①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증여일 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
- ②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

- 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②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

$$\text{세액} = A \times (B \div C)$$

A: 납부유예된 세액

B: 감소한 지분율

C: 증여일 현재 지분율

3)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및 총급여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및 총급여액 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
- ②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다.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

$$\text{증여세 납부액} \times \text{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times \text{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5\%)} / 365$$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은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납부유예기간 중에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이자상당액의 50%를 경감한다.

5 납부유예 취소 및 변경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가 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차 납부유예

지분이 감소 또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 2)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제7장

유형별 증여예시

증여추정과 증여의제는 제8장에서 구분하여 다루고, 본장에서는 개별적인 증여예시 유형에 대하여 증여시기,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개별적인 증여예시규정을 다루기 전에 하나의 증여에 동시에 여러 규정이 적용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을 때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

1 하나의 증여에 2 이상 증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할 증여규정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33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 §44, §45 및 §45의3부터 §45의5까지의 규정³⁶⁾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상증법 §43①).

36) 증여예시(§33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 증여추정(§44, §45)·증여의제(§45의3부터 §45의5)규정(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1년간 동일한 이익의 합산

상증법 §31①2호, §35, §37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4, §42 및 §45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증법 §43②).

2019.12.31. 개정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41의2)를 추가하였다.
2019.12.31. 이전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부칙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상증령 §32의4).

- ① 상증법 §31①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 ② 상증법 §35① 및 ②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 ③ 상증법 §37①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 ④ 상증법 §37②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 ⑤ 상증법 §38①의 합병에 따른 이익
- ⑥ 상증법 §39①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 ⑦ 상증법 §39의2①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 ⑧ 상증법 §39의3①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 ⑨ 상증법 §40①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 ⑩ 상증법 §41의2①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 ⑪ 상증법 §41의4①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 ⑫ 상증법 §42①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 ⑬ 상증법 §45의5①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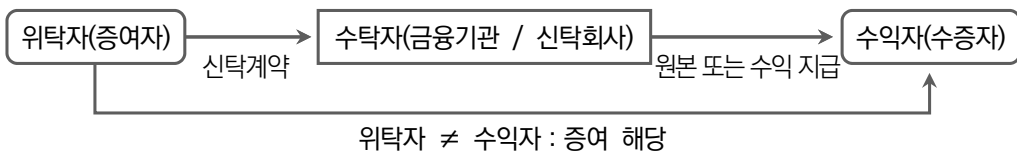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증법 §39의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43② 및 상증령 §32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 기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2019.7.18.).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 (과세요건) 신탁계약에 따라서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납세의무자) 수익자
- (과세대상)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증여시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 등(예외 있음)
- (증여재산가액)

$$\text{신탁이익} = \sum_{n=1}^n \frac{\text{각 연도의 수입금액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액)} - \text{원천징수세액}}{(1+0.03)^n}$$



신탁계약³⁷⁾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의 원본이나 수익을 재산 위탁자가 아닌 타인(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수익자(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이익(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아닌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상증법 §33).

원본과 수익의 이익이란 원본은 신탁재산을, 수익은 원본으로 인하여 얻은 과실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전신탁에서 신탁한 원본을 나누어서 받으면 이는 원본의 이익에 해당하고, 부동산 신탁으로 임대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37)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1).

✔ 신탁계약과 명의신탁의 차이

신탁계약으로 수익자가 무상으로 얻은 신탁이익은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실질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는 공부 등 재산의 소유명이 수탁자로 표시되지만 대내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위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의 소유명의만 빌릴 뿐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실질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위반시에는 벌금·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또한,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 건물 제외)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때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실질증여가 아니므로)하여 증여세를 부과(상증법 §45의2)하는 것이며, 실질 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이익의 증여 규정은 명의신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과세요건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원본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도 그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익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자이다. 그러나 그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되, 향후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증여시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해당시기를 증여시기로 한다.

- 가.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 위탁자의 사망일
- 나. 신탁계약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신탁이익의 지급약정일

다.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단,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

- 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가 지정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2021.2.17. 이후 증여부터)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신탁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상증령 §6138)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원본 및 수익의 이익 가액이 확정된 경우

$$\text{평가액} = \sum_{n=1}^n \frac{(\text{각 연도의 수입금액} - \text{원천징수세액})}{(1+0.03)^n}, \quad n: \text{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나.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text{평가액} = \sum_{n=1}^n \frac{\text{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추정액}(\text{원본액} \times 3\% - \text{원천징수세액})}{(1+0.03)^n}, \quad n: \text{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38) Max(평가액, 일시금)



예시

○ 甲은 A신탁회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계약(2018.1.1. ~ 2020.12.31.)을 2018. 1. 1. 체결하고 신탁이익을 매년말 지급하고, 원본은 신탁종료일에 乙에게 귀속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신탁계약 : 위탁자 甲. 수익자 乙(甲의 아들), 신탁재산 : 5억원, 계약기간 : 3년, 신탁이자율 : 10%, 이자원천징수율 : 20%, 수익자는 신탁계약 철회등의 권리가 없음)

답 609,421천원 (5억 + 109,421천원)

- ① 수익의 이익(증여시기 2018.1. 1.) : 109,421천원 = (40,000 + 36,363 + 33,058)
 2018. 12. 31. : 40,000천원(5억 × 10% × (1-20%))
 2019. 12. 31. : 36,363천원(할인율 3% 현재가치 : 0.9709)
 2020. 12. 31. : 33,058천원(할인율 3% 현재가치 : 0.9426)

※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최초지급일에 전체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봄. 지급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금액은 '지급이자액 × 할인율'임

- ② 원본의 이익(증여시기 2020. 12. 31.) : 5억원



관련 사례

1) 이중과세 여부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이자소득인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재산46014-446, 1995.12.4., 국심1997서2952, 1998.6.22.)

2) 신탁된 유가증권의 배당금만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상장법인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그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령 §25①3호에 따라 그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배당금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3, 2011.7.26.)

3) 비상장주식(원본)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신탁이익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해당 원본의 평가액이 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5.14.)

4) 신탁계약 해지시

수익자가 증여시기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증여시기에 계산한 증여의제가액은 재계산하지 아니함(재삼46014-537, 1999. 3.17.)

제3절

보험금의 증여(상증법 §34)

○ (과세대상)

- ①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 (증여재산가액)

- ① (납부자 ≠ 수령인)

$$\text{보험금} \times \frac{\text{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text{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 ② (납부자 = 수령인)

$$\left(\text{보험금} \times \frac{\text{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text{총 납부한 보험료}} \right) - \text{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그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액의 수령인이 서로 다르다면 보험금의 수령인은 해당 보험금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결과를 갖게 되므로 이는 실질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서로 같은 경우라도 해당 보험료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하면 역시 보험금 수령인에게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상증법 §34).

보험계약에서 나오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의의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638).

(보험료) 보험계약으로 보험사에 지급하는 요금이다.

(보험금)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여 보험사가 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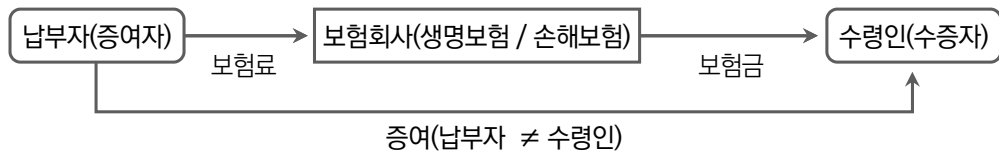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보통은 보험계약자가 불입자이다.

(보험료 납부자)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이다.

(보험금 수익자)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수령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보험금 수익자는 만기수익자·사고수익자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인이란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자를 말한다.

1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대상)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과세대상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³⁹⁾이 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생긴 보험사고를 보상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를 말한다.

39) 상법상 보험은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구분된다.

2) (과세요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3) (증여시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보험금액의 수령시점이 증여시기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상증통칙 34-0...1) 하지만 보험계약의 해제나 중도해지 등으로 받는 반환금 등은 보험금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환금이 당초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면 현금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시

- 父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된 경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父, 수익자는 子, 母는 생존) 父가 납부한 경우와 母가 납부한 경우의 재산(보험금) 구분은?

답 父가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母가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재산

4) (증여재산가액) 보험금상당액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보험금} \times \frac{\text{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text{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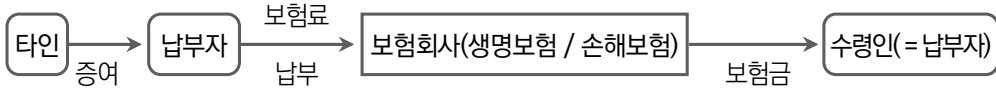


예시

- 보험계약(계약자 및 수익자는 子, 피보험자는 父)을 2022.4.1.체결, 총 보험료는 1억 6천만원(父가 납부한 보험료는 1억원)이고, 수령인 子가 만기 수령한 보험금이 2억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답 2억원 × (1억원 / 1억 6천만원) = 1억 2천 5백만원

2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자와 수령인이 동일하므로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2003.1.1. 이후 보험금 수령인이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즉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고, 2004.1.1. 이후부터는 금전을 재산으로 개정하였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이다.

가. 보험계약기간 내

보험계약 기간 내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보험금} \times \frac{\text{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text{총 납부한 보험료}} - \text{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예시

- 보험계약을 2021.1.10. 체결(계약자 및 수익자는 자, 피보험자는 父), 자는 父로부터 2021.7.1. 증여받은 재산 1억원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2022.4.1.)하여 자가 보험금 2억원 (총보험료 1억6천만원)을 수령할 때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답 증여시기는 2022.4.1.

증여재산가액은 25백만원 [= (2억원 × 1억원 / 1억 6천만원) - 1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1억 25백만원 (= 25백만원 + 1억원)

나. 보험계약기간 밖

보험계약기간 밖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한다(서면4팀-1186, 2007.4.11.).



관련 사례

1)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2) 연금개시 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국세청)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법원)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대법원 2015두59303, 2016.10.13.)

(기재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3) 연금 개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국세청 : 정기금 평가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가액) 상증법 §2에 따라 변경시점에 변경 후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할인평가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152, 2014.5.22.)

(심판원 : 정기금평가)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 법령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은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서0198, 2014.8.11.)

제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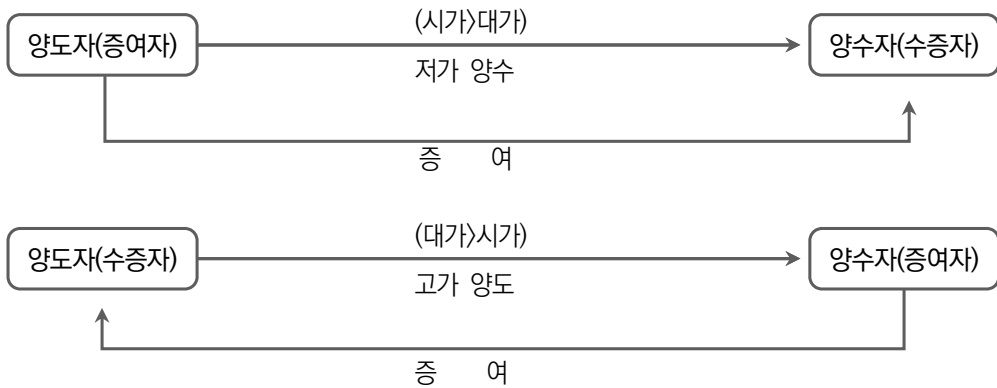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5)

○ 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수증자	과 세 요 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양수자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시가-대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양도	양도자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대가-시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 비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수증자	과 세 요 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양수자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시가-대가)-3억원
고가양도	양도자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대가-시가)-3억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에서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양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저가, 고가 이전으로 증여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003.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고가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2004.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하게 저가·고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법 §35).

1 특수관계인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가. 수증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
-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

나.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2의2에 따라 판단하며, 이 경우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2.3.).

다. 적용대상 재산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하고 해당 재산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35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포함)·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증법 §40①)
이 경우,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함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35 규정을 적용한다(재산세과-285, 2011.6.15.).

- 2) 상장된 주식·출자지분으로 거래소⁴⁰⁾에서 거래된 주식 및 출자지분
이 경우,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된
것(당일 증가로 매매된 것은 과세제외함)에 대해서는 상증법 §35 규정을 적용
한다(상증령 §26①).
-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
증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5.)
- 3)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법
§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52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2021.2.17. 이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 §101(§87의27 금융투자소득 관련 포함. 다만, 2025.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에 대하여 같은 법
§101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령 §162①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⁴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급격한 변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②에 따른 거래소(거래소 정의는 상증령 §15③에서 규정하고
있다)

4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마. 증여세 과세요건

구 분	2003.12.31. 이전	2004. 1. 1. 이후
저 가 양 수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1억원 이상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고 가 양 도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1억원 이상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해당 거래 뿐 아니라, 해당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증법 §43, 상증령 §32의4).

합산 대상 개정 연혁

2016.2.4. 이전	2016.2.5. 이후
특수관계인간	특수관계인간 비특수관계인간

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구 분	2003.12.31. 이전	2004. 1. 1. 이후
저 가 양 수	(시가-대가)-(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금액)	(시가-대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 가 양 도	(대가-시가)-(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금액)	(대가-시가) -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사. 시 가

상증법 §60부터 §66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예시

- 2023.3월 배우자에게 10억원(시가 15억원)에 주택을 양도(대금지급은 불분명)등기한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15억원(상증법 §44에 따른 증여추정)
- 2023.3월 자에게 9억원(시가 5억원)에 주택을 양도(대금지급은 분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2억 5천만원 [= (9억원 - 5억원) - MIN(시가30%, 3억원)], 양도자의 양도세는 별도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고가 거래시 증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가. 수증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2) 타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에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면4팀-403, 2008.2.20.)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고가양도양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3두24495, 2015.2.12.).

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 (과세요건)

구 분	2003.12.31. 이전	2004. 1. 1. 이후 양도·양수분
저가 양수	과세 제외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고가 양도	과세 제외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라. 증여재산가액

구 분	2003.12.31. 이전	2004. 1. 1. 이후 양도·양수분
저가 양수	과세 제외	(시가-대가)-3억원
고가 양도	과세 제외	(대가-시가)-3억원

제2편

증
여
세

마. 저가·고가 양도거래 시 이익분여자에 대한 과세문제

1) 이익을 분여한 자가 법인인 경우

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이익분여자(법인)의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구 분	적용 요건	익금산입(소득처분) 금액
저 가 양도시	(시가 - 대가)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인 경우	(시가 - 대가)
고 가 양수시	(대가 - 시가)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인 경우	(대가 - 시가)

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시 이익분여자(법인)의 기부금의제 검토

구 분	적용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음 충족)	기부금의제금액(소득처분)
저가 양도시	(시가 - 대가)이 시가의 30% 이상	(시가 × 70%) - 대가
고가 양수시	(대가 - 시가)이 시가의 30% 이상	대가 - (시가 × 130%)

2)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인 경우

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이익분여자(개인)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검토

구 분	적용 요건	양도소득 계산방법
저 가 양도시	(시가 - 양도대가)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함
고 가 양수시	(취득대가 - 시가)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인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함

예시 1과 예시2의 특수관계인 판단은 각 개별세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며, 각각의 적용여부는 개별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시 1

- 토지의 양수·양도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은?
(을과 정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거래시기 : 2022. 1. 1.)

구 분	거래상대방	거래형태	거래금액	시 가
① 갑	개인, 특수관계인	양수	150백만원	180백만원
② 을	개인, 비특수관계인	양수	460백만원	800백만원
③ 병	개인, 특수관계인	양도	500백만원	350백만원
④ 정	개인, 비특수관계인	양도	2,000백만원	1,600백만원

답 ① (갑)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180백만원 - 150백만원) ÷ 180백만원 = 16.6%로 시가의 30% 이상이 아니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도 3억원 미만임

- ② (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40백만원
(800백만원 - 460백만원) ÷ 800백만원 = 42.5%로 시가의 30% 이상
증여재산가액 40백만원 = (800백만원 - 460백만원) - 300백만원
- ③ (병)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45백만원
(500백만원 - 350백만원) ÷ 350백만원 = 42.8%로 시가의 30% 이상
증여재산가액 45백만원 = (500백만원 - 350백만원) - Min(350백만원 × 30%, 3억원)
- ④ (정)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2,000백만원 - 1,600백만원) ÷ 1,600백만원 = 25%로서 시가의 30% 이상이 아님



예시 2

□ 시가가 9억원인 비상장주식을 대가 5억원에 거래하였음(양도자는 당초 2억원에 취득)

○ (저가 1-1)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거래당사자 유형에 따른 세금문제는?

거래 당사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행위 : 시가과세 양도차익 9억 - 2억 = 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가액 1.3억 (= 9억 - 5억 - Min (9억×30%, 3억)) 처분시 취득가액 : 5억 + 1.3억
개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행위 : 시가과세 양도차익 9억 - 2억 = 7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 양수시 4억 익금산입 (유보처분)
법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행위 : 4억 익금산입 4억 상여등 소득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과세 (증여세 과세제외) 처분시취득가액 : 5억 + 4억
법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행위 : 4억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 (저가 1-2)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음), 거래 당사자 유형에 따른 세금문제는?

거래 당사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차익 : 5억 - 2억 = 3억 (부당행위 적용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가액 1억 (= 9억 - 5억 - 3억) 처분시 취득가액 : 5억 + 1억
개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차익 : 5억 - 2억 = 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법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 1.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가액 1억 (= 9억 - 5억 - 3억) 처분시 취득가액 : 5억 + 1억
법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 1.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 시가가 5억원인 비상장주식을 대가 9억원에 거래하였음(양도자는 당초 2억원에 취득)

○ (고가 2-1)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거래당사자 유형에 따른 세금문제는?

거래 당사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가액 : 2.5억 9억 - 5억 - 1.5억 [min(5억×30%, 3억)] 양도차익 : 4.5억 (= 9억 - 2.5억 - 2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세(x), 증여세(x)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면 처분시 취득가액을 5억원(시가)으로 함
개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억원 중소세과세 양도차익 : 5억 - 2억 = 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행위 : 4억 익금산입(4억 상여등 소득처분) 손금산입 주식4억(△유보)
법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억원 기준 법인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면 처분시 취득가액을 5억원(시가)으로 함
법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억원 기준 법인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행위 : 4억 익금산입 (4억 기타사외유출처분) 및 손금산입 주식4억(△유보)

○ (고가 2-2)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음, 거래 당사자 유형에 따른 세금문제는?)

거래 당사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가액 : 9억 - 5억 - 3억 = 1억 ◦ 양도차익 : (9억 - 1억) - 2억 = 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문제 없음 ◦ 처분시 취득가액 : 9억
개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가액 : 9억 - 5억 - 3억 = 1억 ◦ 양도차익 : (9억 - 1억) - 2억 = 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 9억 - 5억 - 1.5억 = 2.5억 ◦ 익금산입 2.5억(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 2.5억(△유보)
법인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억원 기준 법인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시 취득가액 : 9억
법인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억원 기준 법인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 9억 - 5억 - 1.5억 = 2.5억 ◦ 익금산입 2.5억(기타사외유출) ◦ 손금산입 2.5억(△유보)



관련 사례

1) 사용인과 특수관계 여부

(‘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국기령상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상속증여세과-561, 2013.9.26.)

(30%미만으로 출자한 공동대표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 상증법 §35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 지분 8%를 출자한 공동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법규과-1085, 2013.10.4.)

2) 시가 산정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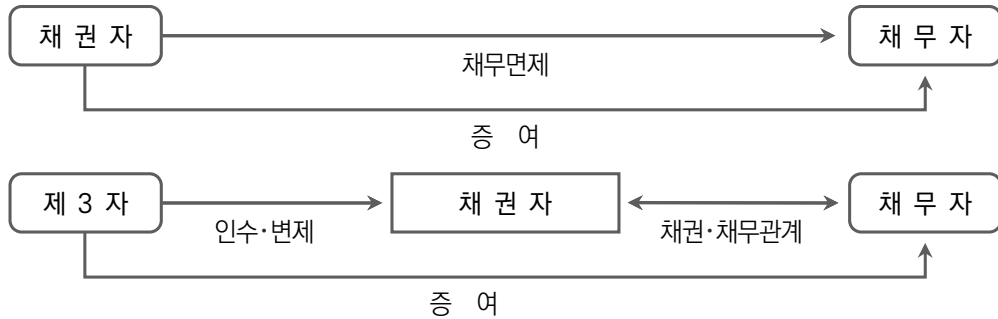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서면4팀-939, 2008.4.1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조특법 §101) 규정이 적용됨 (재경부재산-614, 2007.5.28.)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36)

-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또는 제3자가 채무인수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납세의무자)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
- (과세대상) 해당 채무면제 등 이익
- (증여시기) 채무면제 의사표시, 제3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인수계약 체결시
- (증여재산가액) 해당 채무면제액 - 채무면제(인수)에 따른 보상가액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액으로 소득금액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본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상증법 §36).

1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및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3가지이다.

2 증여재산가액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증여시기

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관련 사례

1)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경우

양수자의 지급할 양수대금을 제3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수자는 채무면제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제3자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4팀-1677, 2007.5.21.)

2) 시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이혼위자료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증법 §36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453, 2012.12.20.)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① 부동산 무상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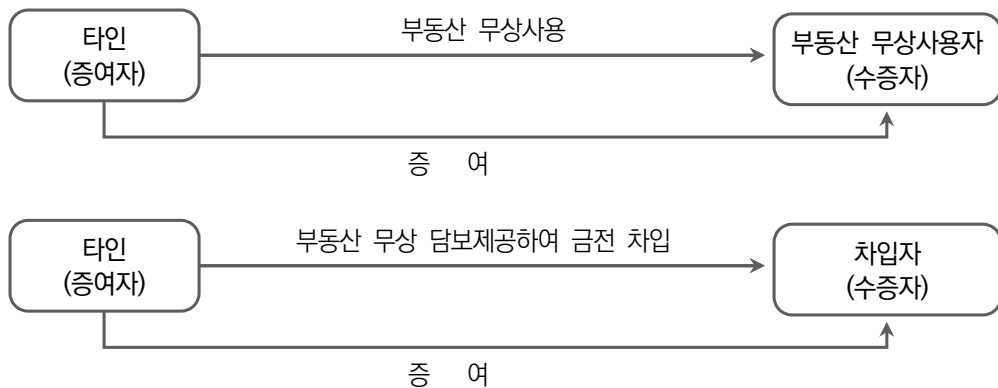
- (과세요건) 타인의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부동산 무상사용자
- (증여시기) 사실상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5년 주기
- (증여재산가액) 1억원 이상

$$\sum_{n=1}^5 \frac{(\text{부동산가액} \times \text{년 } 2\%)}{(1+0.1)^n}$$

② 부동산 담보제공

- (과세요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
 -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이익을 얻은 자
- (증여시기)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1년 주기
-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

차입금 × 적정이자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7).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가.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무상사용자가 수인인 경우 연혁

2019.2.11. 이전 증여분	2019.2.12. 이후 증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지사용자 ○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 근친관계등을 고려하여 실지 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친인 사람(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최연장자)을 대표사용자 지정 ○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사용면적이 분명한 경우 : 실제 사용면적별로 계산 - 실제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나. 과세대상

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 무상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 증여재산가액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text{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sum_{n=1}^n \frac{(\text{부동산가액} \times \text{연 } 2\%)}{(1+0.1)^n}, n = \text{평가기준일 경과년수}$$

부동산가액은 상증법 §60 ~ §66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경과년수는 5년 단위로 계산하며, 환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마. 경정 등의 청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단위로 과세하나,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으로 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차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증법 §79).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3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4.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특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가. 수증자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증여재산가액

해당 증여이익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text{증여이익} = \text{차입금} \times \text{적정이자} - \text{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다. 증여시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관련 사례

1)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NEW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서울행정법원 2023.11.2.선고, 2022구합78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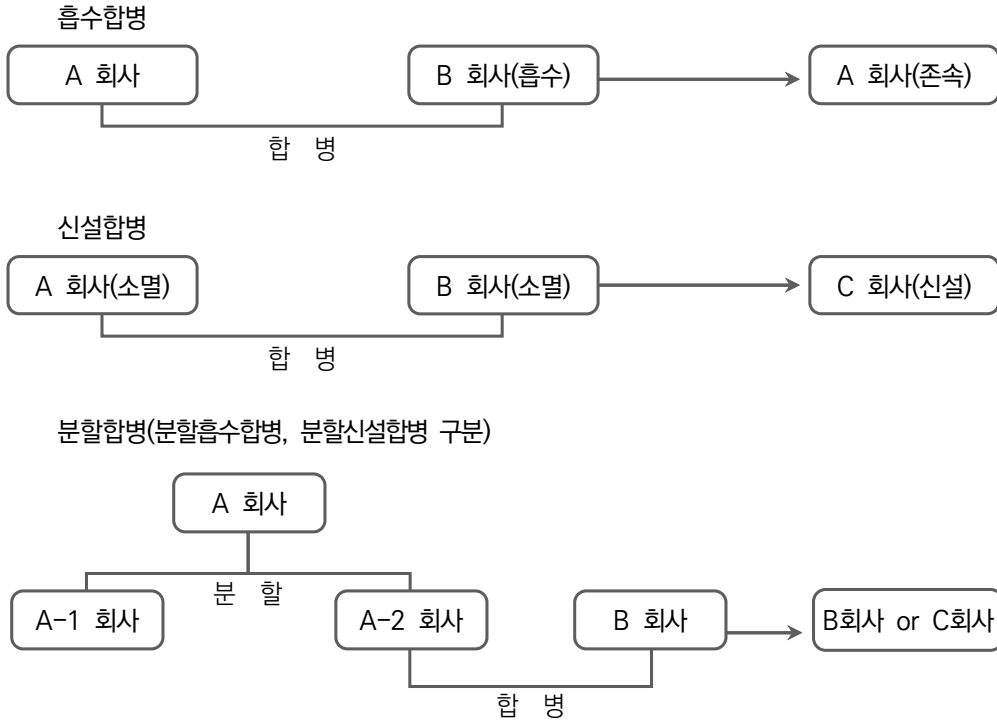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8)

- (과세요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납세의무자) 대주주등
- (증여시기) 합병등기일
- (증여재산가액)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한다.
 - ①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 $(가 - 나) \times$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times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 ②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합병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 일방의 주주가 상대방 법인의 주주로부터 경제적 이익(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 시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상대방법인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8).

합병이란 2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따라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요건

-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일 것, ②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등의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일 것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날을 말함)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① 법인령 §2⑤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② 기업집단소속기업의 다른 기업(상증령 §2의2① 3 나)
- ③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합병당사법인이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1회라도 특수관계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상증 집행기준 38-2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⁴²⁾과 같은 법 §165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의5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⁴³⁾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

대주주등이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다. 대주주등이 얻는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

기준금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시

-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을 1:1로 한 경우 과대평가여부
 - 갑법인 : @20,000원(총 발행주식수 : 100주)
 - 을법인 : @10,000원(총 발행주식수 : 100주)
 - 공정합병을 위해서는 합병비율을 1:0.5로 하여 을법인 주식 2주당 존속법인 갑법인 주식 1주를 교부하여야 하나, 합병비율을 1:1로 산정함으로써 을법인주식 1주당 갑법인주식 1주를 교부하여 을법인 주식가액을 과대평가한 결과가 됨
 - 이 경우 을법인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에 해당함

42) 다른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한다.

43)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제한을 받는 등 다른 법률에서 통제를 받고 있어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2 증여재산가액

가.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아래 1)와 2)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 2] \times \text{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1)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인 경우

아래 ①, ② 중 적은 가액을 말한다.

① 합병등기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frac{\text{(과대평가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 과소평가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text{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

나) 그 외 비상장법인인 경우 → 위 1)의 ② 가액

이 경우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522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및 같은 법 시행령 §129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이며, 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522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을 적용한다.

상증령 §28에 따라 대주주등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3⑧ 3호).

계산한 금액에 소득법 §17② 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증통칙 38-28...2)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상증법 §63①1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6.2.5.에 신설된 규정으로 기존에 시행규칙에서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을 분할사업부분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던 것을 특정분할 사업부분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⁴⁴⁾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사업부문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으로 시행령에 새로이 규정했다.

-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아래와 같다.

가)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공시일 등 이전 2월간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증가평균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시일 등 이전 2월간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증가평균액과 아래 비상장법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비상장법인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상증법 §60(시가) 및 상증법 §63① 1호 다목(보충적평가액)에 따른 평가액

상증령 §28에 따라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3⑧ 3호). 다만,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재삼46014-1411, 1999.7.23).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수를 말한다.

44) 예를 들어, 개발사업부분의 경우 소프트웨어 인력의 노하우 등의 가치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기준금액

Min(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 × 30%, 3억원)

①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액(A)

구 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	그 외 법인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Min[①, ②] ①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단순평균 = $\frac{\text{합병 전 합병·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text{합병 후 주식수}}$	② 단순평균액

② 합병비율 반영한 주가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B)

$$B = \text{주가과대평가법인 합병 전 1주당가치} \times \text{합병 전 주식수} \div (\text{합병 전 주식수} \times \text{합병비율}^*)$$

$$= \text{주가과대평가법인 합병 전 주식가치} \div \text{합병 후 주식수}$$

* 합병비율 : 주가 과대평가법인 1주당 합병법인주식 교부비율

구 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	그 외 법인
주가 과대평가 법인 합병 전 1주당가치	Max[①, ②] ① 다음 중 빠른날 이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 ㉡ 금융감독위원회 합병신고서 제출일 ②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

나.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1\text{주당 합병대가} - 1\text{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수}$

2)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text{주당 액면가액} - 1\text{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수}$$

3) 기준금액 : 3억원

3 증여시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당해 합병등기일(합병등기를 한 날)이다.

4 증여세 납세의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이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하며,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자에게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



예시

○ 합병비율이 1 : 1인 경우

(1)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A·B : 비상장법인)

(2) 합병 전·후 주주구성 및 주식평가액

구 분	A(합병법인)			B(피합병법인)			A'(합병후 존속법인)		
총발행주식수	2,000,000주			2,000,000주			4,000,000주		
1주당평가액	25,000원			15,000원			20,000원		
총주식평가액	500억원			300억원			800억원		
주 주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甲	1,000,000	50%	丙	1,200,000	60%	甲	1,000,000	25%
	乙	600,000	30%	丁	800,000	40%	乙	600,000	15%
	소액 주주	400,000	20%				丙	1,200,000	30%
							丁	800,000	20%
							소액 주주	400,000	10%

(3) 합병비율(1 : 1) : B법인 주식1주당 합병 후 A' 법인의 주식을 1주씩 교부함

(4)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frac{(25,000\text{원} \times 2,000,000\text{주}) + (15,000\text{원} \times 2,000,000\text{주})}{2,000,000\text{주} + 2,000,000\text{주}} = 20,000\text{원}$$

② 1주당 평가가액 차이비율

$$\frac{(20,000\text{원} - 15,000\text{원})}{20,000\text{원}} = 25\% \leq 30\%$$

③ B 법인의 각 주주가 얻은 이익

$$\text{丙} : (20,000\text{원} - 15,000\text{원}) \times 1,200,000\text{주} = 6,000,000,000\text{원}$$

$$\text{丁} : (20,000\text{원} - 15,000\text{원}) \times 800,000\text{주} = 4,000,000,000\text{원}$$

* 1주당 평가가액 차이비율이 25%로서 30% 미만으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대주주 丙·丁이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5) 증여세 과세방법

- 丙이 얻은 60억원은 甲으로부터 30억원(50%)을, 乙로부터 18억원(30%)을, 소액주주로부터 12억원(20%)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丁이 얻은 40억원은 甲으로부터 20억원(50%)을, 乙로부터 12억원(30%)을, 소액주주로부터 8억원(20%)을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시

○ 합병비율이 1 : 0.5인 경우

- (1)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A·B : 비상장법인)
 (2) 합병 전·후 주주구성 및 주식평가액

구 분	A(합병법인)			B(피합병법인)			A'(합병후 존속법인)		
총발행주식수	2,000,000주			2,000,000주			3,000,000주		
1주당평가액	40,000원			10,000원			33,330원		
총주식평가액	800억원			200억원			1,000억원		
주 주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주	주식수	지분율
	甲	800,000	40%	甲	1,400,000	70%	甲	1,500,000	50%
	乙	800,000	40%	丙	600,000	30%	乙	800,000	26.7%
	소액 주주	400,000	20%				丙	300,000	10%
							소액 주주	400,000	13.3%

(3) 합병비율(1 : 0.5) : B법인 주식 2주당 합병 후 A법인의 주식을 1주씩 교부함

(4)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B법인의 합병 전 주식평가액 환산금액

$$10,000\text{원(합병전 1주가액)} \times \frac{2,000,000\text{주 (합병후 총주식수)}}{1,000,000\text{주 (합병전 총주식수)}} = 20,000\text{원}$$

②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합병전 A+B 총주식가치 / 합병후발행주식총수)

$$\frac{(40,000\text{원} \times 2,000,000\text{주}) + (10,000\text{원} \times 2,000,000\text{주})}{2,000,000\text{주} + 1,000,000\text{주}} = 33,333\text{원}$$

③ 1주당 평가가액 차이비율 : $\frac{(33,333\text{원} - 20,000\text{원})}{33,333\text{원}} = 39.9\% \geq 30\%$

④ B법인의 각 주주가 얻은 이익

$$\text{甲} : (33,333\text{원} - 20,000\text{원}) \times 700,000\text{주} (= 1,400,000\text{주} \times 0.5) = 9,333,100,000\text{원}$$

$$\text{丙} : (33,333\text{원} - 20,000\text{원}) \times 300,000\text{주} (= 600,000\text{주} \times 0.5) = 3,999,900,000\text{원}$$

⑤ '甲'이 자기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차감(재재산46014-46,97.2.12,국심2001서245,01.7.4)

$$\bullet 9,333,100,000\text{원} \times \frac{\text{A법인 갑 지분율 } 40\%}{\text{B법인 갑 지분율 } 70\%} = 5,333,200,000\text{원}$$

$$\bullet 9,333,100,000\text{원} - 5,333,200,000\text{원} = 3,999,900,000\text{원}$$

(5) 증여세 과세방법 :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하기 위해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 구분

甲은 乙로부터 2,666,600,000(주1)원을, 소액주주로부터 1,333,300,000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甲지분 상당액을 차감하였으므로 乙과 소액주주의 주식 지분 비율로 안분한 것임)

$$\text{(주1)} 3,999,900,000\text{원} \times \frac{800,000\text{주 (乙, 40\%)}}{800,000\text{주(을, 40\%)} + 400,000\text{주(소액주주)}}$$

丙은 甲으로부터 1,599,960,000원(주2)을, 乙로부터 1,599,960,000원을, 소액주주로부터 799,980,000원을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text{(주2)} 3,999,900,000\text{원} \times 40\%\text{(을)}$$



예시

○ 검산

주주	① 합병 후 주식가치	② 합병 전의 주식가치			전·후 손익 (①-②)
		A법인	B법인	계	
갑	1,500,000주×@33,333 = 49,999,900,000	800,000×@40,000 = 32,000,000,000	1,400,000×@10,000 = 14,000,000,000	46,000,000,000	3,999,900,000
을	800,000주×@33,333 = 26,666,400,000	800,000×@40,000 = 32,000,000,000		32,000,000,000	△5,333,600,000
병	300,000주×@33,333 = 9,999,900,000		600,000×@10,000 = 6,000,000,000		3,999,900,000
소액	400,000주×@33,333 = 13,333,200,000	400,000×@40,000 = 16,000,000,000			△2,666,800,000

○ 동시 보유시 甲이 얻은 이익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과대평가법인의
전체 합병차액 발생액 × (과대평가 법인의 甲 지분율 - 과소평가 법인의 甲 지분율)

甲의 합병차익 : @13,333,000,000 × (B법인지분 70% - A법인지분 40%) = 3,999,900,000

丙의 합병차익 : @13,333,000,000 × (B법인지분 30% - A법인지분 0%) = 3,999,900,000

* 합병차익계산의 또다른 방법1주당 합병차익(33,333 - 20,000) × (B법인 교부주식수(1,000,000주))
= 13,333,000,000

* 甲의 소유지분율이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보다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이 높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없고, 오히려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결과가 됨



관련 사례

1) 포함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 §63③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재경부재산-23, 2007.1.5.)

2)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증여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상증법 §38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가가 과소평가된 상대방 법인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31④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서면4팀-1085, 2007.4.3.)

3)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평가기준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상증령 §28⑤ 1호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며, 동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날을 말함) 또는 합병신고일(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날을 말함) 중 빠른 날임(재경부재산46014-68, 2002.3.28.)

4)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계산방법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함(재경부재산46014-67, 2002.3.28.)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前 A법인이 보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합병 後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합병 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에서 합병 前 주식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소각된 피합병법인의 주식수를 합병 前 피합병법인의 주식수*에서 차감하여 계산

$$\frac{(\text{합병법인 1주당가액} \times \text{합병 前 주식수}) + (\text{피합병법인 1주당가액} \times \text{합병 前 주식수})}{\text{합병 後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 이익의 계산

(동일인 보유) 동일인 갑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전후 차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서일 46014-10427, 2002.3.30.)

(3억원 판단) 대주주 1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함(재삼46014-1974, 1999.11.15.)

(다자간 합병시)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그 비율을 산정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경우에도 합병당사법인별로 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함(대법원2011두18427, 2013.10.31.)

6) 동일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합병하는 A사와 B사에 甲이 동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甲)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이때 제외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⁴⁵⁾함

(재경부 재산46014-46, 1997.2.12.)

$$\text{甲이 얻은 전체 증여이익} \times \frac{\text{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甲 소유지분율}}{\text{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甲 소유지분율}}$$

45) 甲이 얻은 전체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합병 후 순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타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타인에게 준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가액이 부수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

① 저가발행

- (실권주 재배정)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중에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실권주 실권처리) 실권주를 실권처리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
- (제3자 배정·주주 초과배정) 제3자 직접배정이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고가발행

- (실권주 재배정) 실권주를 재배정함으로써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
- (실권주 실권처리) 실권주를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
- (제3자 배정·주주 초과배정) 제3자 직접배정이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주식회사는 그 설립 후 소위 수권자본제도에 의하여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을 증자 또는 신주의 발행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주식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구 주식의 가액은 증자액의 비율에 따라 희석되어 감소되고 신 주식의 가액은 거꾸로 증가하게 되므로 증자하기 전의 주식비율에 따른 신주인수를 하지 아니하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 주식의 가액은 증자를 한 비율만큼 감소되고 반면에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 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실권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에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가 배정받게 함으로써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민법상의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권주를 포기한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위에서 본 가액 만큼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헌재2001헌바 13, 2002.1.31.).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⁴⁶⁾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들의 증자 전 주식소유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감됨으로 인하여 무상이전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자 유형 및 신주인수가액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39).

증자 전·후에 주주간 이전된 이익이 있는지 비교

【1】 균등증자의 경우

구분	증자 전	신주발행	증자 후	증자 후 주식가액 차이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1주당 가액	100,000	5,000	52,500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주 주 甲	6주	6주	12주	630,000*	630,000**	0
주 주 乙	4주	4주	8주	420,000	420,000	0
합 계	10주	10주	20주	1,050,000	1,050,000	0

* $100,000 \times 6 + 5,000 \times 6$

** $52,500 \times 12$

【2】 증자전 주식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이 동일한 증자

구분	증자 전	신주발행	증자 후	증자 후 주식가액 차이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1주당 가액	100,000	100,000	100,000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주 주 甲	6주	10주	16주	1,600,000	1,600,000	0
주 주 乙	4주	-	4주	400,000	400,000	0
합 계	10주	10주	20주	2,000,000	2,000,000	0

46) 2015.12.31. 이전에는 자본

【3】 증자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한 불균등증자

구분	증자 전	신주발행	증자 후	증자 후 주식가액 차이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1주당 가액	100,000	5,000	52,500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주 주 甲	6주	10주	16주	650,000	840,000	190,000
주 주 乙	4주	-	4주	400,000	210,000	-190,000
합 계	10주	10주	20주	1,050,000	1,050,000	0

【4】 증자전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한 불균등증자

구분	증자 전	신주발행	증자 후	증자 후 주식가액 차이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1주당 가액	100,000	200,000	150,000	증자 시	증자 후	차 이
주 주 甲	6주	10주	16주	2,600,000	2,400,000	-200,000
주 주 乙	4주	-	4주	400,000	600,000	200,000
합 계	10주	10주	20주	3,000,000	3,000,000	0

1 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47)

구 분	증여 요건		납세자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식
	특수관계	30%요건		
① 저가 실권주 재배정(1호 가목)	×	×	실권주 인수자	$(a - b) \times$ 배정받은 실권주수
②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1호 나목)	○	○	신 주 인수자	$(a - b) \times$ 실권주총수 \times 증자 후 신주인수자 지분비율 \times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div 실권주 총수)

47) ① ~ ⑥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수증자	비고
배정 (직접 이익) (재배정, 제3자 배정, 초과배정)	저가 : 인수자 고가 : 포기자	특수관계 \times 특수관계○
실권처리(간접 이익)	저가 : 인수자 고가 : 포기자	특수관계○, 30% 요건 적용 특수관계○, 30% 요건 적용

구 분	증여 요건		납세자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식
	특수관계	30%요건		
③ • 저가 신주 제3자 직접 배정(1호 다목) • 주주 초과배정 (1호 라목)	×	×	신 주 인수자	$(a - b) \times$ 균등조건 초과 인수한 신주수
④ 고가 실권주 재배정 (2호 가목)	○	×	신 주 인 수 포기자	$(b - a) \times$ 신주인수 포기자의 실권주수 \times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div 실권주 총수)
⑤ 고가 실권주 실권처리 (2호 나목)	○	○	신 주 인 수 포기자	$(b - a) \times$ 신주인수 포기자의 실권주수 \times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div 당초 증자 주식 총수)
⑥ 고가 신주 제3자 직접배정(2호 다목)· 주주 초과배정(2호 라목)	○	×	신 주 인 수 포기자	$(b - a) \times$ 균등증자시보다 미달하게 배정받은 신주수 \times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div 균등 증자시 주식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⑦ 전환주식 저가발행	×	×	교부 받은자	참여주주의 증여재산가액 \times 교부받은 주식수
⑧ 전환주식 고가발행	○	×	교부 받은자의 특수 관계인	실권주주의 증여재산가액 \times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times 증자 전 지분비율

가. 용어에 대한 설명(㉠ 증자 後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되, ①·②·③의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액주주 1인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증법 §39②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2014헌바468, 2016.6.30.).

이는 증여자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고 그 증여가액이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여 과세를 못하게 되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2014두14976, 2017.5.17.)

- ① 신주인수권이란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다.
- ② 시가를 상증법 §60와 §63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③ 실권주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말한다.
- ④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 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⁴⁸⁾일 전 2월간의 증가평균액에 의하며, 비상장주식은 증자일 현재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을 말한다.
- ⑥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란 아래 산식에 따른 이론주가에 의하되, 2001.1.1. 이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증자시에는 권리락일 이후 2월간의 증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작은 금액(고가증자의 경우에는 높은 금액)에 따른다.

$$\frac{(\text{증자 前 1주당가액} \times \text{증자 前 주식수}) + (\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증자 주식수})}{\text{증자 前 주식수} + \text{증자 주식수}}$$

- ⑦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을 말한다.
- ⑧ 30%·3억원 요건이란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됨을 말한다.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48)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어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권리부 가격과 권리락 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말하며, 권리락 조치 시기는 신주 배정기준일의 전일임. 예를 들어 신주배정기준일이 9월 3일이면, 권리락일은 9월 2일임 (우리나라의 주식매수대금 결제일은 D+2일이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 D-2일까지 매수한 경우에 신주 배정권리가 발생)

- 저가증자시 : $\frac{\text{㉑} - \text{㉒}}{\text{㉑}} \geq 30\%$ 또는 주주 1인 총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고가증자시 : $\frac{\text{㉒} - \text{㉑}}{\text{㉑}} \geq 30\%$ 또는 주주 1인 총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⑨ “실권주 재배정”은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⑩ “직접배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⑪ “실권주 실권처리”란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처리한 주식수 만큼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⑫ “전환주식”은 상법 §346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하며,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의결권 행사 등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 등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식 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할 수 있다.
- ⑬ 증자의 증여이익 계산시에는 최대주주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증여시기

- 1)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해당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권리락이 있는 날
- 2)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 전환한 날(17.1.1.이후 신주 발행분부터 적용)
- 3) 그 외의 경우 :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 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

다. 과세제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신주배정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⑦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같은 법 시행령 §11③에 따라 모집(“간주모집”)하는 경우 제외)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과다 또는 지분을 변동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 증자분은 모집방법에 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2001. 1. 1. 이후 증자분은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이다(상증법 §46 2호).

3)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서면4팀-1155, 2005.7.8.).



관련 사례

1) 균등증자

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4팀-513, 2004.4.19.)

2)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증자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서면4팀-200, 2006.2.6.)

3) 법인이 고가로 증자를 실시한 경우 법인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여 당해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서면4팀-3720, 2007.12.28.)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증자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4팀-55, 2008.1.9.)

2 저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저가의 신주발행(실권주 재배정)은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특수관계인을 요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도 포함)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공모배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실권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실권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가. 과세요건

- ①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를 위한 신주 배정이어야 한다.
- ②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③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여야 한다.
- ④ 재배정은 연고배정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일반공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실권주의 재배정방법에 관계없이 주식의 시가와 증자대금 납입금액에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있을 것
 -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간에 특수관계의 요건은 필요 없다.

- 30% Rule[현저한 이익(30% 이상 이익과 증여재산가액 3억원 이상) 요건도 필요 없다.

⑥ 본래의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있을 것

나. 증여재산가액

$$[\text{㉑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text{㉒ 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배정받은 실권주수}$$

1)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비상장주식은 아래 산식에 따른 ㉑ 주식평가액에 의하되,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인 증자한 경우에는 ㉑과 ㉒ 중 작은 금액에 따른다.

㉑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frac{(\text{증자 전 1주당가액} \times \text{증자 전 주식수}) + (\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증자 주식수})}{\text{증자 전 주식수} + \text{증자 주식수}}$$

㉒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예시

(1) A사의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20,000주(자본금 2억원)

(2) A사의 유상증자 내용

- 유상증자일 : 201x. 10. 31.
- 증자금액 : 2억원 (증자주식수 : 20,000주, 1주당 인수가액 : 10,000원)
- 甲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10,000주의 인수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乙이 모두 인수

주 주	증 자 전		당초배정 (주식수)	당초인수 (주식수)	재배정 (주식수)	증 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	10,000	50%	10,000	(실 권)		10,000	25%
乙	5,000	25	5,000	5,000	10,000	20,000	50
丙	2,000	10	2,000	2,000	-	4,000	10
소액주주	3,000	15	3,000	3,000	-	6,000	15
합 계	20,000	100	20,000	10,000	10,000	40,000	100

(3) A사의 증자 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격	권리락일 전 2개월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최종시세가격 평균가격 : 20,000원	보통적평가액 : 15,000원

(4) A사의 증자 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후 1주당 평가가격	①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 : 18,000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15,000원 $= \frac{20,000원 \times 20,000주 + 10,000원 \times 20,000주}{20,000주 + 20,000주}$ $= 15,000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12,500원 $= \frac{15,000원 \times 20,000주 + 10,000원 \times 20,000주}{20,000주 + 20,000주}$ $= 12,500원$

(5) 증여이익의 계산

가. 상장법인의 경우

$$\text{乙의 증여이익} = (15,000원(\text{Min}[\text{①}, \text{②}]) - 10,000원) \times 10,000주 = 50,000,000원$$

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text{乙의 증여이익} = (12,500원 - 10,000원) \times 10,000주 = 25,000,000원$$

$$\frac{(15,000원 \times 20,000주) + (10,000원 \times 20,000주)}{20,000주 + 20,000주} = 12,500원$$

3 저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기존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이를 증여 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변칙적인 출자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형성된 반사적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 과세요건

- ① 법인의 증자를 위한 신주의 발행이 있을 것
- ②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할 것
- ③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것
- ④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할 것
- ⑤ 1주당 추가차액이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나. 증여재산가액

$$\text{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text{⑤ 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실권주 총수} \times \text{증자 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비율} \times \frac{\text{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text{실권주 총수}}$$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른 ㉠ 주식평가액에 의하되,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증자한 경우에는 ㉠과 ㉡ 중 작은 금액에 따른다.〉

㉠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frac{\left(\text{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증자 전의 발행 주식 총수} \right) + \left(\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증자전 지분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right)}{\text{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증자전 지분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상증법 §39①에 따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 중 일부를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증여이익은 상증령 §29② 1호 및 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2호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다목의 '증자 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비율'은 재배정받은 주식을 차감한 신주인수자의 주식수를 증자 후의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재산세과-60, 2010.2.1.).



예시

(1) A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 총수 : 100,000주(자본금 10억원)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40,000원

(2) A사의 유상증자 내용

- 유상증자일 : 201×. 10. 31.
- 증자금액 : 10억원(증자주식수 : 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 : 10,000원)
- 甲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40,000주 인수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음

주 주	증 자 전		당초배정 (주식수)	당초인수 (주식수)	재배정 (주식수)	증 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父)	40,000	40%	40,000	(실권)	-	40,000	25%
乙(子)	30,000	30	30,000	30,000	-	60,000	37.5
丙(子)	20,000	20	20,000	20,000	-	40,000	25
소액주주	10,000	10	10,000	10,000	-	20,000	12.5
합 계	100,000	100	100,000	60,000	0	160,000	100

(3) A사의 증자 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격	권리락일 전 2개월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최종시세가격 평균가격 : 30,000원	보충적 평가액 : 40,000원

(4) A사의 증자 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 후 1 주당 평 가 가 격	①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격의 평균액 : 18,000원	② 이론적 권리락 증가
	② 이론적 권리락 증가 $= \frac{3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 + 1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100,000\text{주} + 100,000\text{주}}$ = 20,000원	$= \frac{4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 + 1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100,000\text{주} + 100,000\text{주}}$ = 25,000원

(5) 증여이익의 계산

구 분	상장법인인 경우	비상장법인인 경우
30% 요건 검토	$(18,000 - 10,000) / 18,000 = 44.4\% \geq 30\%$ 충족	$(25,000 - 10,000) / 25,000 = 60\% \geq 30\%$ 충족
乙의 증여이익	증여이익 : 120,000,000원 ① A : $(18,000 - 10,000) \times 40,000 = 320,000,000$ 원 ② B : $320,000,000 \times 37.5\% = 120,000,000$ 원 ③ C : $120,000,000 \times 40,000 / 40,000 = 120,000,000$ 원	증여이익 : 225,000,000원 ① A : $(25,000 - 10,000) \times 40,000 = 600,000,000$ 원 ② B : $600,000,000 \times 37.5\% = 225,000,000$ 원 ③ C : $225,000,000 \times 40,000 / 40,000 = 225,000,000$ 원
丙의 증여이익	증여이익 : 80,000,000원 ① A : $(18,000 - 10,000) \times 40,000 = 320,000,000$ 원 ② B : $320,000,000 \times 25\% = 80,000,000$ 원 ③ C : $80,000,000 \times 40,000 / 40,000 = 80,000,000$ 원	증여이익 : 150,000,000원 ① A : $(25,000 - 10,000) \times 40,000 = 600,000,000$ 원 ② B : $600,000,000 \times 25\% = 150,000,000$ 원 ③ C : $150,000,000 \times 40,000 / 40,000 = 150,000,000$ 원

4 저가의 신주를 직접배정·초과배정한 경우

직접배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정관상 규정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래 신주인수권은 구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해당 주식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2017.1.1. 이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 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경우에는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난다.

가. 과세요건

2.의 가. 과세요건과 같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직접배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⑫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⁴⁹⁾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미달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39②).

나. 증여재산가액

$$[\text{㉑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text{㉒ 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배정받은 신주수}$$

신주 수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신주 수를 말한다.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㉑주식평가액에 의하되, 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증자한 경우에는 ㉑과 ㉒중 작은 금액에 따른다.

㉑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frac{\left(\begin{array}{l} \text{증자 前 1주당} \\ \text{평가가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증자 前의 발행} \\ \text{주식 총수}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신주 1주당} \\ \text{인수가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증자에 의하여} \\ \text{증가한 주식수} \end{array} \right)}{\text{증자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㉒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49) 2017.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예시 1

(1) A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 총수 : 100,000주(자본금 10억원)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40,000원

(2) A사의 유상증자 내용

- 유상증자일 : 201×. 10. 31.
- 증자금액 : 10억원(증자주식수 : 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 : 10,000원)
- 甲주주에게 배정될 신주 60,000주를 乙에게 20,000주를, 丙에게 40,000주를 직접 배정

주 주	증 자 전		당초배정 (주식수)	초과배정 (주식수)	증 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父)	60,000	60%	-	-	60,000	30%
乙(子)	30,000	30	50,000	20,000	80,000	40
丙(子)		-	40,000	40,000	40,000	20
소액주주	10,000	10	10,000	-	20,000	10
합 계	100,000	100	100,000	60,000	200,000	100

(3)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frac{(4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 + (1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100,000\text{주} + 100,000\text{주}} = 25,000\text{원}$$

② 증여세 과세가액

- 乙 = (25,000원 - 10,000원) × 20,000주 = 300,000천원
- 丙 = (25,000원 - 10,000원) × 40,000주 = 600,000천원



예시 2

(1) 증자내역 : 父에게 배정될 신주 5,000주를 장남 1,000주, 차남 4,000주 직접배정함

주 주 별	증 자 전	증 자	증 자 후
부	5,000주	×	5,000주
장남	3,000주	4,000주	7,000주
차남	×	4,000주	4,000주
타인	2,000주	2,000주	4,000주
계	10,000주	10,000주	20,000주

(2) 주식가치 변동내역

구 분	증 자 전	증자금액	증 자 후
1주당가액	@30,000	@10,000	@20,000
주식가액	3억원	1억원	4억원

○ 장남, 차남이 추가 배정된 신주에 의하여 얻은 이익

1) 장남의 경우 : $(@20,000 - @10,000) \times 1,000\text{주} = 10,000,000\text{원(과세)}$

2) 차남의 경우 : $(@20,000 - @10,000) \times 4,000\text{주} = 40,000,000\text{원(과세)}$

5 고가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시가보다 고가의 발행가액으로 증자하면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와는 반대로 증자 前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정받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後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가. 과세요건

- ①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있을 것
- ③ 본래의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있을 것
- ④ 이익을 얻은 신주인수 포기자는 실권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인 일 것
: 현저한 이익(30% 이상 이익과 증여재산가액 3억원) 요건은 필요없다.

나. 증여재산가액

$$\left(\begin{array}{l} \text{㉞ 신주} \\ \text{1주당인수} \\ \text{가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㉞ 증자 後} \\ \text{1주당평가액} \end{array} \right) \times \text{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times \frac{\text{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text{실권주 총수}}$$

증자 後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른 ㉠ 주식평가액에 의하되,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증자한 경우에는 ㉠과 ㉡ 중 큰 금액에 따른다.

㉠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frac{\left(\begin{array}{l} \text{증자 前 1주당} \times \text{증자 前의 발행} \\ \text{평가액} \quad \quad \quad \text{주식 총수}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신주 1주당} \times \text{증자에 의하여} \\ \text{인수가액} \quad \times \text{증가한 주식수} \end{array} \right)}{\text{증자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권리락일 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6 고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증자 前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後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가. 과세요건

- ① 법인의 증자를 위한 신주의 발행이 있어야 한다.
- ②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할 것
- ④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것
- ⑤ 해당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야 한다.
- ⑥ 1주당 주가차액이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일 것

$$\frac{\text{㉠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text{㉡ 증자 後 1주당 평가가액}}{\text{㉡ 증자 後 1주당 평가가액}} \geq 30\%$$

나. 증여재산가액

$$\left(\text{㉞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text{㉠ 증자 後 1주당 평가가액} \right) \times \frac{\text{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text{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times \frac{\text{증자 前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 총수}}{\text{증자 前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 後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른 ㉠ 주식평가액에 의하되,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증자한 경우에는 ㉠과 ㉡ 중 큰 금액에 따른다.

㉠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frac{\left(\text{증자 前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증자 前의 발행 주식 총수} \right) + \left(\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right)}{\text{증자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예시

(1) A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 총수 : 100,000주(자본금 10억원)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5,000원

(2) A사의 유사증자 내용

- 유사증자일 : 201×. 10. 31.
- 증자금액 : 8억원(증자주식수 : 80,000주, 1주당 인수가액 : 10,000원)
- 丙주주에게 배정된 신주 20,000주의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함

주 주	증 자 전		당초배정 (주식수)	당초인수 (주식수)	재배정 (주식수)	증 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父)	40,000	40%	40,000	40,000	-	80,000	44.5%
乙(子)	30,000	30	30,000	30,000	-	60,000	33.3
丙(子)	20,000	20	20,000	(실 권)	-	20,000	11.1
소액주주	10,000	10	10,000	10,000	-	20,000	11.1
합 계	100,000	100	100,000	80,000	0	180,000	100

(3)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frac{(5,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 + (10,000\text{원} \times 80,000\text{주})}{100,000\text{주} + 80,000\text{주}} = 7,222\text{원}$$

② 30% 요건에 해당 여부 :

$$\frac{(10,000\text{원} - 7,220\text{원})}{7,220\text{원}} = 38.5\% \geq 30\%$$

③ 丙의 증여세 과세가액 = 38,888,880원

$$(10,000\text{원} - 7,220\text{원}) \times 20,000\text{주} \times \frac{40,000\text{주(甲)} + 30,000\text{주(乙)}}{100,000\text{주}}$$

7

고가의 신주를 직접배정·초과배정한 경우

증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들이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인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배정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균등하게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도 증자 後 주식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가. 과세요건

- ① 법인의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이어야 한다.
- ②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하여야 한다.
- ③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않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에 미달하게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현저한 이익(30% 이상 이익과 증여재산가액 3억원 이상) 요건은 필요 없다]

나. 증여재산가액

$$\left(\begin{array}{l} \text{㉞} \text{ 신주} \\ \text{1주당} \\ \text{인수} \\ \text{가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㉟} \text{ 증자 後} \\ \text{1주당} \\ \text{평가} \\ \text{가액}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l} \text{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 \text{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 \text{받을 신주수에 미달하게 신주를} \\ \text{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 \text{아니하거나 그 미달하게 배정} \\ \text{받은 부분의 신주수} \end{array} \times \frac{\begin{array}{l} \text{신주인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 \text{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 \\ \text{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text{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 \text{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 \text{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 \text{인수한 신주의 총수} \end{array}}{\begin{array}{l} \text{증자 前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증자 前의 발행} \\ \text{주식 총수} \end{array}} + \frac{\begin{array}{l} \text{신주 1주당} \\ \text{인수가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증자에 의하여} \\ \text{증가한 주식수} \end{array}}{\begin{array}{l} \text{증자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end{array}}$$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른 ㉟ 주식평가액에 의하되, 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이 증자한 경우에는 ㉟과 ㉞ 중 큰 금액에 따른다.

㉟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frac{\left(\begin{array}{l} \text{증자 前 1주당} \\ \text{평가가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증자 前의 발행} \\ \text{주식 총수}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신주 1주당} \\ \text{인수가액} \end{array} \times \begin{array}{l} \text{증자에 의하여} \\ \text{증가한 주식수} \end{array} \right)}{\begin{array}{l} \text{증자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end{array}}$$

㉞ 권리락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예시 1

(1) A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 총수 : 100,000주(자본금 10억원)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10,000원

(2) A사의 유상증자 내용

- 유상증자일 : 201x. 10. 31.
- 증자금액 : 30억원 (증자주식수 : 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 : 30,000원)
- 丙주주에게 배정할 신주 60,000주를 甲에게 직접 배정함

주 주	증 자 전		당초배정 (주식수)	당초인수 (주식수)	초과배정 (주식수)	증 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父)	×	-		60,000	60,000	60,000	30%
乙(子)	30,000	30%	30,000	30,000	-	60,000	30
丙(子)	60,000	60	60,000	-	-	60,000	30
소액주주	10,000	10	10,000	10,000	-	20,000	10
합 계	100,000	100	100,000	100,000	60,000	200,000	100

(3)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frac{(1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 + (30,000\text{원} \times 100,000\text{주})}{(100,000\text{주} + 100,000\text{주})} = 20,000\text{원}$$

② 丙의 증여세 과세가액

$$(30,000\text{원} - 20,000\text{원}) \times 60,000\text{주} \times (60,000\text{주} \div 60,000\text{주}) = 600,000,000\text{원}$$



예시 2

○ 長男에게 배정될 신주 3,000주를 父에게 2,000주, 他人에게 1,000주를 직접배정함

(1) 증자내역

주 주 별	증 자 전	증 자	증 자 후
부	2,000주	4,000주	6,000주
장남	3,000주	×	3,000주
차남	3,000주	3,000주	6,000주
타인	2,000주	3,000주	5,000주
합 계	10,000주	10,000주	20,000주

(2) 주식가치 변동내역

구 분	증 자 전	증자금액	증 자 후
1주당가액	@10,000	@30,000	@20,000
주식가액	1억원	3억원	4억원

○ 장남이 얻은 이익 = 20,000,000원

$$= (@30,000 - @20,000) \times 3,000\text{주} \times \frac{2,000\text{주}}{3,000\text{주}}$$

8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증여세 과세한다.

가. 과세요건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증여가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 증여재산가액(① - ②)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상증령 §29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 ② 전환주식 발행 당시 상증령 §29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9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증여세 과세한다.

가. 과세요건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증여재산가액(① - ②)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상증령 §29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 ② 전환주식 발행 당시 상증령 §29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관련 사례

1) 자기주식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균등증자한 경우)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 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39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계산시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임(대법원2007두5363, 2009.11.26.)

2) 간주모집

간주모집도 상장주식 신주저가인수 이익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함(간주모집 해당여부는 청약 권유 받은 자의 수가 아닌 전매 가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2012두14866, 2014.3.13., 대법원2011두198, 2014.2.27.)

⇒ 상증법 §39①1가목 개정 및 상증령 §29③을 개정하여 2016.1.1.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③(간주모집)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실제 투자인원이 50명을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수리되지 않아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시 증자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됨(대법원2015두41531, 2015.12.10.)

3) 과세대상

(우선주 불균등 증자)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상증법 §39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이익은 상증령 §29④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증령 §29③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는 발행당시 보통주 전환 비율을 반영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 2015.2.9.)

(외국소재 법인의 유상증자)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실권주를 포함한다)를 배정받음에 따라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자 또는 당해 법인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39 및 §42① 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1582, 2008.7.10.)

(입사조건으로 배정) 임원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서일46014-10040, 2003.1.14.)

(포기 후 지분 초과한 경우) 종전의 증자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증자에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 의제 적용함(대법원93누1343, 1993.7.27.)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신주 발행한 경우)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서면4팀-200, 2006.2.6.)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 신주의 20%를 조합원이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대표이사(기존주주) 1인이 전부 인수한 경우에 증여자는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 신주인수를 포기한 조합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국심90중209, 1990.5.8; 대법원90누8473 1991.2.12. 같은 뜻)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증법 §39① 1호의 규정이 적용됨(재삼46014-2619, 1997.11.6)

4) 우선주 불균등 증자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상증법 §39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이익은 상증령 §29④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증령 §29③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는 발행당시 보통주 전환비율을 반영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 2015.2.9.)

5) 외국소재 법인의 유상증자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실권주를 포함한다)를 배정받음에 따라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자 또는 당해 법인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39 및 §42① 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1582, 2008.7.10.)

6)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사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 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대법원99두8039, 2001.3.27.)

7)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 후 거래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2007두5110, 2009.6.25.)

(기준일) 제3차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이 상당함(대법원2007두7949, 2009.8.20.)

8) 증여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상증법 §39②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서울고법2014누60377, 2015.3.17.)

9) 입사조건으로 배정받은 경우

임원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서일46014-10040, 2003.1.14.)

1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기한 경우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증법 §39① 1호의 규정이 적용됨(재삼46014-2619, 1997.11.6)

11) 개인투자조합 VS 조합원

개인투자조합과 개인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상증법 §39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조합원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8, 2022.11.17.)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2)

〈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 ①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납세의무자) 대주주등
 - (증여시기) 주주총회결의일
 - (증여재산가액) Min(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 × 30%, 3억원) 이상인 경우
(a - b) × c
 - a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b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c $\frac{\text{총감자 주식수} \times \text{대주주의 감자 後 지분비율} \times \text{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text{총 감자주식수}}$
- ②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납세의무자)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
 - (증여시기) 주주총회결의일
 - (증여재산가액) Min(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30%, 3억원) 이상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감자란 자본 감소, 즉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 감자의 방법에는 주식금액의 감소방법(주식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법과 주식금액의 일부를 버리는 방법이 있음)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실질상의 감자는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며, 형식상의 감자는 기업의 순자산 감소없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주식소각은 주식수를 소각하는 경우이며, 주식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소각은 임의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며, 강제소각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소각을 말한다.

법인이 특정 주주의 주식을 감자전의 주식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소각한다면 주식을 소각하지 않거나 균등비율보다 적게 소각시킨 주주는 감자 후 지분율과 주식평가액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 때 해당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가. 과세대상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나. 대주주등

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⁵⁰⁾

다. 증여재산가액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text{증여재산가액} = (\text{a} - \text{b}) \times \text{c}$$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frac{\text{총감자 주식수}}{\text{주식수}} \times \frac{\text{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text{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times \frac{\text{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text{총 감자주식수}}$

50) “대주주등”의 범위는 상증법 §38(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와 상증령 §28(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②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자에 따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text{기준금액} = \text{Min}(\text{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 \times 30\%, 3\text{억원})$$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가. 과세대상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대주주등

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다. 증여재산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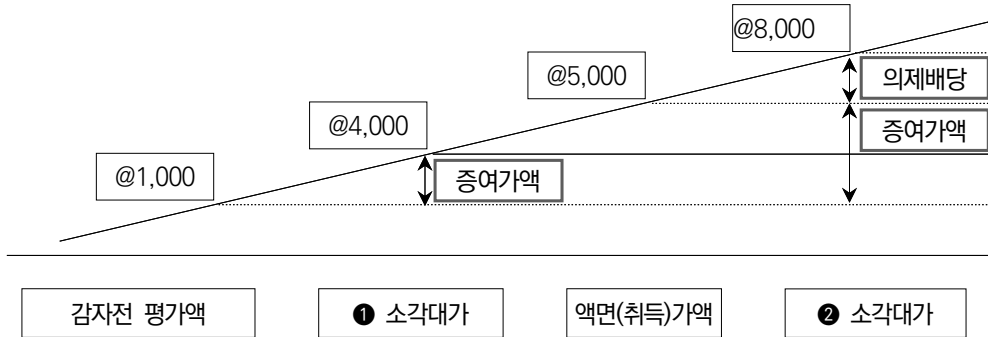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증여재산가액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 기준금액 = Min(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 × 30%, 3억원)



예시

○ 2004.1.1. 이후 주식평가액보다 소각대가를 많이 지급한 경우 과세방법



- ① 소각대가(4,000원)가 액면(취득)가액(5,000원) 이하인 경우
 - 2003.12.31. 이전 :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 2004.1.1. 이후 : 평가액(1,000원)을 초과하는 소각대가 3,000원(①)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 ② 소각대가(8,000원)가 액면(취득)가액(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초 취득가액 초과부분 3,000원(②)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 평가액(1,000원)과 액면(취득)가액(5,000원)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용 (2003.12.31. 이전) 증여세 과세제외 (2004.1.1. 이후)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4,000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3 증여시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한다.



예시 1

- 무상으로 감자한 경우
 - (1) 乙주주의 소유주식 500주를 무상으로 감자
 -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15,000원
 - (3) 증자 전·후 주주의 지분을 현황

구 분	당 초		乙주식 감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父)	1,200	60.0	1,200	80.0
乙(子)	500	25.0	0	0
丙(子)	300	15.0	300	20.0
합 계	2,000	100.0	1,500	100.0
1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액면가액합계(원)	10,000,000		7,500,000	

답 1) 과세요건 검토

- ① 특정주주인 乙주주만 불균등감자하여 다른 특수관계 있는 甲, 丙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甲 60% → 80%, 丙 15% → 20%)
- ② 소각시 지급대가 없는 무상감자로 차액비율이 100%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임

2) 증여가액의 계산

① 甲의 수증가액

$$(15,000\text{원} - 0) \times 500\text{주} \times \frac{80}{100} \times \frac{500\text{주}}{500\text{주}} = 6,000,000\text{원}$$

② 丙의 수증가액

$$(15,000\text{원} - 0) \times 500\text{주} \times \frac{20}{100} \times \frac{500\text{주}}{500\text{주}} = 1,500,000\text{원}$$



예시 2

○ 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경우

- (1) 甲주주의 소유주식 1,500주(지분율 50%) 감자
-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15,000원
- (3) 감자 전·후 주주의 지분율 현황

구 분	당 초		甲주식 액면가액으로 감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父)	1,500	50.0	0	0
乙(子)	900	30.0	900	60.0
丙(子)	600	20.0	600	40.0
합 계	3,000	100.0	1,500	100.0
1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액면가액 합계(원)	15,000,000		7,500,000	



1) 과세요건 검토

- ① 특정주주인 甲주주만 불균등감자하여 다른 특수관계있는 乙, 丙의 소유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乙 30% → 60%, 丙 20% → 40%)
- ② 소각시 지급대가가 1주당 5,000원(액면가액)으로 주당 평가액 15,000원과의 차액 10,000원은 평가액의 66%이므로 증여에 해당함

2) 증여가액의 계산

① 乙의 수증가액

$$(15,000\text{원} - 5,000\text{원}) \times 1,500\text{주} \times \frac{60}{100} \times \frac{1,500\text{주}}{1,500\text{주}} = 9,000,000\text{원}$$

② 丙의 수증가액

$$(15,000\text{원} - 5,000\text{원}) \times 1,500\text{주} \times \frac{40}{100} \times \frac{1,500\text{주}}{1,500\text{주}} = 6,000,000\text{원}$$



관련 사례

1) 평가기준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 §60 및 §63①에 따라 평가함(서면4탐-1698, 2004.10.22.)

2) 과세대상

법인이 자분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39의2 및 법 §4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서면4탐-3248, 2006.9.25.)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재경부재산-745, 2007.6.27.)

3) 자기주식 소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343)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증법 §39의 2 및 상증법 §4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재경부재산-767, 2007.6.29.)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39의 2 및 같은법 §42①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재경부재산-745, 2007.6.27.)

4) 이익의 계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상증법 §39의2①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 2017.8.1.)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9의3)

① 저가인수

- (납세의무자) 현물출자자
- (증여시기) 현물출자 납입일
- (증여재산가액)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소액주주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봄

$$\text{증여재산가액} = (\text{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

② 고가인도

- (납세의무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
- (증여시기) 현물출자 납입일
- (증여재산가액) 30%, 3억원 조건 있음

$$(\text{a} - \text{b}) \times \text{c}$$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현물출자자의 인수신주수 \times $\frac{\text{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자전 주식수}}{\text{출자전 발행주식총수}}$

현물출자란 금전 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출자를 말한다. 현물출자는 그 출자재산의 평가문제가 발생하고, 평가액에 따라 자본평가와 주주·채권자에게 손해를 해할 우려가 있어 상법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하여 엄격한 검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규정**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295②).
-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299①).

현물출자를 할 때에 신주의 인수가액이 현물출자 전의 주식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음에 따라 현물출자자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9의3).

2003년 12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예시규정으로 신설하였다.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계산방식이 증자에 따른 이익과 같고 2004.1.1 이후 현물출자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3.2.15.이후 현물출자분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165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상증령 §29의3①1).

2014.1.1.이후 증여 분부터는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소액주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동일하게 저가 신주 배정 시는 차이비율 및 차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 이며, 신주 고가 배정 시는 현물출자 전 1주당 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이비율이 30%이상이거나 주주 1인이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

구 분	증여 요건		납세자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식
	특수 관계	30% 요건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인수한 경우	×	×	저가 인수자	(㉗) - (㉜) ×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고가인수한 경우	○	○	특수 관계인	(㉜) - (㉗) ×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주식수 ×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현물출자전 지분비율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때에도 적용된다.

$$\text{증여재산가액} = \text{㉗} - \text{㉜} \times \text{현물 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

2013.2.15.이후부터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주식 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아래의 가액을 말한다.

$$\frac{(\text{현물출자 前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현물출자 前 발행주식 총수}) + (\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현물출자로 증가한 주식수})}{(\text{현물출자 前 발행주식수} + \text{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자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위 산식에 의한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주식평가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자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39의3②).

소액주주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현물출자자와 상증령 §2의2① 각호의 관계에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가. 과세요건

㉔ - ㉕의 금액이 ㉖의 30% 이상 또는 $(\text{㉔} - \text{㉕}) \times \text{㉔} \geq 3\text{억원}$ 인 경우

㉖ 아래의 가액을 말한다.

$$\frac{(\text{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현물출자 전 발행주식 총수}) + (\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현물출자로 증가한 주식수})}{(\text{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수} + \text{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㉔ 신주 1주당 인수가액

㉕ $\text{현물출자자의 인수주식수} \times \frac{\text{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현물출자전 주식수}}{\text{현물출자 전 발행주식 총수}}$

나. 증여재산가액

$$(\text{㉔} - \text{㉕}) \times \text{㉔}$$

㉓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frac{(\text{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현물출자 전 발행주식 총수}) + (\text{신주 1주당 인수가액} \times \text{현물출자로 증가한 주식수})}{(\text{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수} + \text{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㉔ 신주 1주당 인수가액

$$\text{㉓ 현물출자자의 인수주식수} \times \frac{\text{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현물출자전 주식수}}{\text{현물출자 전 발행주식 총수}}$$

2013.2.15.이후부터 현물출자자가 인수주식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주식평가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증여시기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다만, 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다(서면4팀-4140, 2006.12.21.).



예시

① 신주 저가발행

- 발행주식총수 : 20,000주
- 출자전 1주당 평가가액 : 25,000원
- 출자내용 : 1억원을 현물출자하면서 1주당 ㉔10,000원에 ㉓10,000주 발행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계산>
-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상증령 §29③1가목 산식으로 계산)

$$[(25,000\text{원} \times 20,000\text{주}) + (10,000\text{원} \times 10,000\text{주})] / (20,000\text{주} + 10,000\text{주}) = \text{㉓ } 20,000\text{원}$$
-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증여재산가액)

$$(\text{㉓ } 20,000\text{원} - \text{㉔ } 10,000\text{원}) \times \text{㉓ } 10,000\text{주} = 100,000,000\text{원}$$

② 신주 고가발행

- 발행주식총수 : 20,000주(甲 10,000주, 甲의 자 10,000주 소유)
- 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 : 10,000원
- 출자내용 : 甲은 8억원의 현물출자하면서 1주당 ㉠ 40,000원에 ㉡ 20,000주 발행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얻은 이익〉
- 출자 후 1주당 가액(상증령 §29③3가목 산식으로 계산)

$$[(10,000원 \times 20,000주 + (40,000원 \times 20,000주)] / (20,000주 + 20,000주) = ㉢ 25,000원$$
-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 자가 얻은 이익

$$(㉠ 40,000원 - ㉢ 25,000원) \times 20,000주 \times 10,000주 / 20,000주 = 150,000,000원$$



관련 사례

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할증평가 여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서면4팀-1284, 2004.8.13.)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 (과세대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이익
- (유형별 과세요건)
 - ①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 (시가 - 인수·취득가액) ≥ 1억원 or 시가의 30% 이상
 - ② 전환사채 등을 양도: ①과 동일
 - ③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가액) × 주식수
- (이자손실분 + ①에 따른 이익) ≥ 1억원
 - ④ 고가 주식전환: 아래 산식에 따른 증여이익이 '0'이상이면 과세
* (전환가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 × 증가 주식수 × 특수관계인의 전환전 지분비율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및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전환사채 등을 양도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법 §40).

과세대상 개정 연혁

구 분	내 용
1997.1.1. 이후	당초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
1997.11.10. 이후	과세대상 사채에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추가하고,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도 증여의제로 과세
2001. 1. 1. 이후 전환사채 등 취득분부터	①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수·취득시점의 가액보다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② 증자시에 고가 신주를 배정한 경우와 같이 전환가액 등이 전환사채 등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보다 높아 당해 주식을 교부받지 아니한 주주의 주식평가액이 주식전환 후에 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 추가

1

거래단계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거래단계 및 수증자		증여재산가액
인수 취득	1항 1호 가목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
	나목	② 발행회사로부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인 주주가 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저가로 인수·취득
	다목	③ 발행회사로부터, 주주 외의 자로서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인수·취득
		(㉓시가-㉔인수·취득가액)이 기준금액 (30% or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요건
주식 전환	2호 가목	④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양도하여 얻은 이익
	나목	⑤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
	다목	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외의 자 로서 발행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
	라목	⑦ 전환가액 등이 주식평균가액보다 높아 전환 사채 등으로 주식을 교부받지 않은 자가 얻은 이익
		[(㉑-㉒) × 교부받은 주식수] - ㉑ - 기과세 된 가액(①의 증여가액)기준금액(1억원) 이상 요건
		[(㉑-㉒) × 자기 지분 초과하여 교부받은 주식수] - ㉑ - 기과세된 가액(②의 증여 가액), 기준금액(1억원)이상 요건
		[(㉑-㉒) × 교부받은 주식수] - ㉑ - 기과세 된 가액(③의 증여가액), 기준금액(1억원) 이상 요건
		(㉒-㉑)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의 전환전 지분비율)
양도	3호	⑧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 등의 시가를 뺀 금액이 기준금액(30% or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요건

㉓ 전환사채 등의 시가

㉔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

㉑ 교부받은 주식가액

㉒ 교부받을 주식가액

㉑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㉑ 이자손실분

가. 전환사채 등

전환사채 등이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 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전환사채(CB)란 일정기간 후에 사채권자가 주식 전환을 청구하면 사채가 소멸하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반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사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교환사채(EB)란 사채권 보유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발행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사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나. 용어에 대한 설명

㉠ 전환사채 등의 시가

상증법 §60 및 상증법 §63① 2호(국채·공채·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시 지급한 금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상증령 §30④ 1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전환 등”)한 경우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상증법 §40① 2호 라목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함)에는 그 적은 가액을 말함

$$\frac{[(\text{전환 등 前의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전환 등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times \text{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text{전환 등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교부받을 주식가액(상증령 §30④ 2호)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을 말함.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가액을 말함

$$\frac{[(\text{양도 前의 1주당 평가가액} \times \text{양도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times \text{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text{양도 前의 발행주식 총수} + \text{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㉔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주식 1주당 전환가액·교환가액·인수가액을 말함

㉕ 이자손실분(상증규칙 §10의2)

주권 전환 등에 의한 증여이익(상증법 §40① 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은 아래 ㉖의 가액에서 ㉗의 가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 등을 한 경우에는 상증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㉖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한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상증령 §58의2②1나목의 만기상환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자가 발행 조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10.7.14.).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 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1.12.2)

㉗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상증규칙 §18의3에 따른 이자율(현재 연 8%)에 의해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㉘ 기준금액(상증령 §30②)

㉙ 전환사채 등 인수·취득·양도시 :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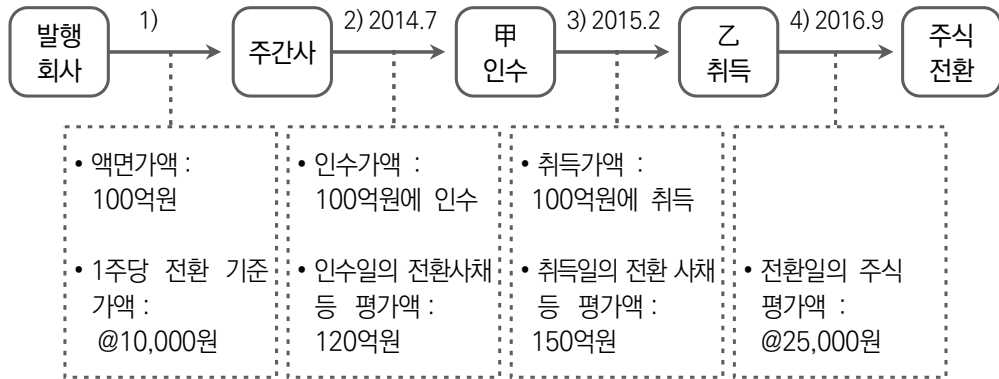
$$\frac{\text{㉚ 시가} - \text{㉛ 인수·취득가액}}{\text{㉚ 시가}} \geq 30\%$$

또는 (㉚ 시가 - ㉛ 인수·취득가액)이 1억원

㉠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 1억원

㉡ 고가 주식전환 : 0원

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취득·전환 과정별 과세여부 요약



㉢ 이자손실분 : 1억원(가정)

1) 시점 : 과세문제 발생안함(주간회사는 수수료만 받음)

2) 시점 : 甲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 과세 (1997. 11. 10. 이후 인수·취득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하여 과세가능)

증여재산 가액 = 120억원 - 100억(인수가액) = 20억 앞의 ㉡

3) 시점 : 乙이 甲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 차액 50억 과세

(1997. 1. 1. 이후 취득한 전환사채, 1997. 11. 10. 이후 취득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에 대해 과세 가능)

증여재산 가액 = 150억원 - 100억(취득가액) = 50억 앞의 ㉠

4) 시점 :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 99억 과세

(2001. 1. 1. 이후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여 전환한 경우에 추가 이익 과세가능) [(@25,000 - @10,000) × (100억 / @10,000)] - 1억 - 50억(기과세된 금액) = 99억

..... 앞의 ㉣

라. 증여세 과세제외

2001. 1. 1. 이후부터 주권상장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⑦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모집의 경우 제외)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

구 분	전 환 사 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교 환 사 채 (EB)
공 통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정한 조건(전환·행사·교환가격, 배당률)과 비율(전환·행사·교환·참가비율)에 의거 사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 보통주를 구입할 수 있는 옵션(call option)을 갖고 있음 • 이자율이 일반사채보다 저렴 • 만기시 원금에 일정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지급 		
권리행사시 신주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가 소멸 •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는 만기까지 존속 • 신주 구입시 주금 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법인이 발행 하는 회사채 • 교환권 청구시 자금 납입 안함
신주발행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발행가격 = 전환사채최초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발행가액 ≤ 최초의 발행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가격 ≥ 기준가격 × 90%
주주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주주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의 주금납입시 주주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상장회사의 주식 교환시 교환을 청구한 때
상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의무가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의무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의무가 소멸
외화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화폐성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성 항목 	-
자본금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이 증가안됨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등을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0① 1호 가목). 전환사채는 1997.1.1. 이후부터 과세대상이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1997.11.10.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가. 과세요건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것

전환사채 등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것

$$\text{가) } \frac{\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 전환사채 등의 취득가액)}}{\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geq 30\%$$

나) 취득한 자가 얻은 총이익이 1억원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때(즉, 사채대금 청산일, 청산일 전에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이다.

다. 증여재산가액

$$= \text{㉠ 전환사채 등의 시가} - \text{㉡ 전환사채 등의 취득가액}$$

3 주주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등을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인수 등”)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0①1나목). 인수·취득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51⁵¹⁾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할 경우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⁵²⁾를 포함한다.

가. 과세요건

1)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인수 등을 할 것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최대주주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상증령 §30③)

2)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것

가)
$$\frac{\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 \text{전환사채 등의 취득가액}}{\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geq 30\%$$

나) 취득한 자가 얻은 총이익이 1억원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때(즉, 사채대금 청산일. 청산일 전에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이다.

-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약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52) 2017.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증여재산가액

㉑ 전환사채 등의 시가-㉒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의 가액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말한다.

4

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40① 1호 다목). 1997. 11. 10.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가. 과세요건

1) 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 등을 할 것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최대주주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자가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것

가) $\frac{\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 전환사채 등의 취득가액)}}{\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geq 30\%$

나) 취득한 자가 얻은 총이익이 1억원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때(즉, 사채대금 청산일. 청산일 전에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이다.

다. 증여재산가액

$$\text{㉑ 전환사채 등의 시가} - \text{㉒ 전환사채 등의 인수가액 등}$$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40① 2호 가목). 2001. 1. 1.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가. 과세요건

- 1)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일 것
- 2) 전환 등을 한 시점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이익이 1억원 이상 일 것(30%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1억원 요건은 2004.1.1. 이후에 적용)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때이다.

다. 증여재산가액

$$[\text{㉓ 교부받은 주식가액} - \text{㉔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times \text{교부받은 주식수} - \text{㉕ 이자손실분} - \text{취득시점에서 과세된 금액}$$

6 초과인수 주주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균등한 조건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

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40① 2호 나목).

2001. 1. 1.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가. 과세요건

- 1)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일 것
- 2)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초과인수한 주주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1억원 이상 요건은 2004.1.1.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때이다.

다. 증여재산가액

③ 교부받은 주식가액 - ⑥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주식수
- ① 이자손실분 - 인수 등 시점에서 과세된 금액

7 주주 아닌 자가 인수 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회사로부터 인수 등을 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외의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40① 2호 다목).
2001.1.1.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가. 과세요건

-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외의 자가 전환 등을 할 것

- 2) 전환 등을 한 시점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일 것
(1억원 이상 요건은 2004.1.1. 이후부터 적용)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때이다.

다. 증여재산가액

$$[\text{㉔ 교부받은 주식가액} - \text{㉔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times \text{교부받은 주식수} - \text{㉔ 이자 손실분} - \text{인수 등 시점에서 과세된 금액}$$

8 전환가액 등이 주식가액보다 높은 경우

전환가액 등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전환 등을 한 주식가액보다 높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40① 2호 라목). 2001.1.1.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가. 과세요건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자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주식전환 등 시점에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때이다.

다. 증여재산가액

$$[\text{㉔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text{㉔ 교부받은 주식가액}] \times \text{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times \text{전환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전환 前 지분비율}$$

9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0① 3호). 1998.12.31.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설·규정하였다.

가. 과세요건

1)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일 것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증령 §2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자가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것

$$\text{가) } \frac{(\text{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 - \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geq 30\%$$

$$\text{나) } (\text{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 - \text{전환사채 등의 시가}) \geq 1\text{억원}$$

나. 증여시기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때이다.

다. 증여재산가액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 - 전환사채 등의 시가

‘전환사채 등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0 과세표준과 연대납세의무 면제

가. 증여세 과세표준 및 동일인 합산배제

상증법 §40①2호·3호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3천 만원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해당 이익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2004.1.1. 이후).

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면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상증법 §4의2⑤).



관련 사례

1)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서면-2014-상속증여-21000, 2015.5.19.)

2) 초과인수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서면4팀-3398, 2007.11.23.)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세과-9, 2011.1.5.)

3) 비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2조 및 §42①3호·③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 계산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상증령 §31의9②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재산세과-401, 2011.8.26.)

4)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상장·코스닥상장 법인인 경우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전환일부터 전환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재산-456, 2010.6.28., 서면4팀-880, 2004.6.16.)

5) 주식 전환 시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 상증령 §30①(2)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이자손실분을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등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0, 2022.10.17.)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2)

-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배당 등을 얻은 경우
- (납세의무자) 이익을 얻은 자(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 (과세대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 소득세 상당액
(2021.1.1. 이후는 비교과세 없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
- (증여시기)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21.12.21. 명확화)
- (증여재산가액)
 - 2021.1.1. 전 : 초과배당금액
 -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공제
 -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2021.1.1. 이후 : 초과배당금액 - 실제소득세액*
 - *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세액
 -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 (정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당초 증여세액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정산(납부, 환급 가능)
 - 정산 증여세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5.1. ~ 6.30.)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등을 포기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받은 자는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나,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초과배당금액은 형식상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지만, 실질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 2016.1.1. 이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신설하였다(상증법 §41의2).

2016.1.1. 이후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가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과세하였다가 2021.1.1. 이후 초과배당분

부터 종전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1 과세요건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배당등”)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최대주주등”)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은 상증령 §19②에 따른 최대주주등⁵³⁾을 말한다.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초과배당금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2020.12.31. 이전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과세하므로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임

가. 초과배당금액

$$\text{특수관계인의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times \frac{\text{최대주주 등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text{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53)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종 전(2021.1.1. 이후 증여분)		현 행(2024.3.22. 이후 증여분)	
①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①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5,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4%	5,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4%
5,220~8,800만원	731만원 + (5,220만원 초과액 × 24%)	5,760~8,800만원	806만원 + (5,76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1.5억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8,800만원~1.5억원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5~3억원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 × 38%)	1.5~3억원	3,706만원 + (1.5억원 초과액 × 38%)
3~5억원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3~5억원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10억원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5~10억원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②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②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	
구 분	소득세액	구 분	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 ¹⁾	0	초과배당금액이 비과세된 경우 ¹⁾	0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세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Max(㉠ - ㉡, 초과배당금액×14%) * ㉠ :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Max(㉠ - ㉡, 초과배당금액×14%) * ㉠ :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	
1) 소득령 §26의3⑥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		1) 소득령 §26의3⑥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	

참고로, 2018.1.1. 이후부터 2020.12.31.이전 증여분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5,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4%
5,220~8,800만원	731만원 + (5,22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1.5억원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5~3억원	3,760만원 + (1.5억원 초과액 × 38%)
3~5억원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2017.12.19. 상증법 개정(§41의2②)을 통해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은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함을 명확화 하였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상증법 §57에 따라 증여재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과세방법 및 증여세 정산신고

20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⁵⁴⁾·증여세⁵⁵⁾를 모두 과세(증여세 가계산)한다.

이후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할 때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뺀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54)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55)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액)에 대한 증여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로 한다. 소득법 §70의2①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6.30. 이다.

4 납세의무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다.

5 증여시기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로 한다.

초과배당금액 이익 증여 개정연혁

구분	2016.1.1. ~ 2020.12.31.	2021.1.1. 이후
과세방식	Max(증여세, 소득세)	증여세, 소득세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상당액
증여세액	증여세액 - 소득세 상당액	증여세액
정산여부	부	여



관련 사례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을 매년 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증법 §41의2 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10.25.)

2)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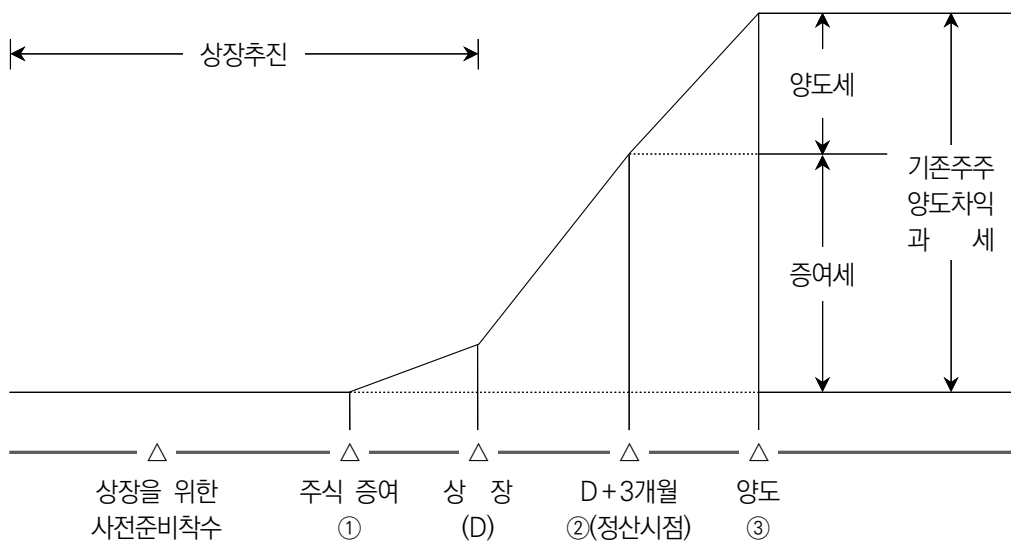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본인이 분배받을 금액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분배를 받는 경우 그 최대주주의 자녀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법 §17②3호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2020.9.29.).

제13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 (과세요건) 증여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할 것
 -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
- (납세의무자) 취득자(수증자, 유상취득자)
-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 Min(①, ②)
 - ①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 증여·유상 취득주식수 × 30%
 - ② 3억원
- (정산시기)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재산가액)

$$\text{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 \left\{ \text{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등} + \text{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right\} \times \text{증여·유상 취득주식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시점과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3).

기업의 상장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상장 전에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하여 거액의 이익, 이른바 '상장 프리미엄'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연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는 상장 후에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므로, 그 상장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위와 같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 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2012헌가5, 2015.9.24.).

1 과세요건

가. 증여 또는 유상취득

1) 취득유형

- 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
- 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2) 취득의 범위

주식 등의 취득에는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최대주주 등이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

나. 5년 이내 상장 요건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 2016.12.31. 이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⁵⁶⁾되어야 한다.⁵⁷⁾

2 정산기준일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장일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④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56)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57) 법률 제14388호 부칙 제16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증여재산가액

$$\left\{ \begin{array}{l} \text{정산기준일 현재} \\ \text{1주당 평가액} \end{array} - \left(\begin{array}{l} \text{증여일 현재 1주당} \\ \text{증여세과세가액 등} \end{array} + \begin{array}{l} \text{1주당 기업가치} \\ \text{실질증가액} \end{array} \right) \right\} \times \text{증여·유상 취득주식수}$$

위 금액이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 증여·유상 취득주식수 × 30%
- ② 3억원

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63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나.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이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액 : 1) × 2)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가) 해당 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 나) 순손익액은 상증령 §56④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 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2(12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수)]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

-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 3)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그 밖의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령 §55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해당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의 발행주식 총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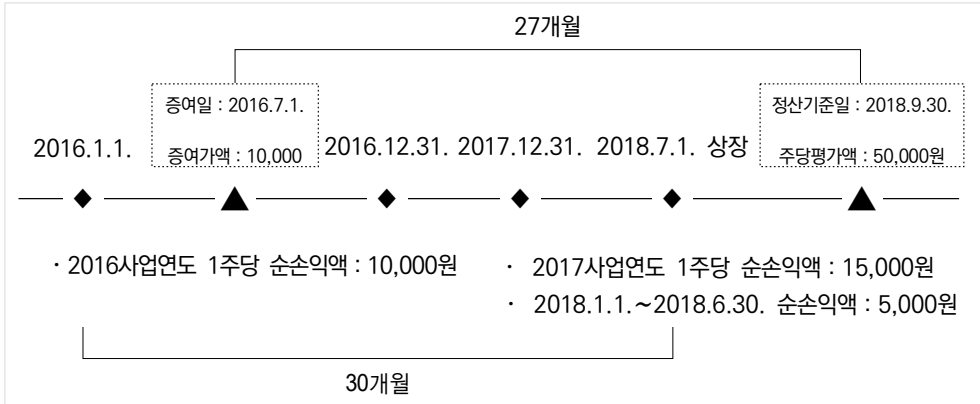
증여이익의 계산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나,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前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를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상증령 §31의3⑥).

$$\text{무상증자 前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 \times \frac{(\text{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 말 주식수} + \text{무상증자 주식수})}{\text{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 말 주식수}}$$



예시 58)

○ 아래의 경우 증여이익은?



- ① 정산기준일 주당 평가액 : 50,000원
 - ② 증여일 현재 주당 증여재산가액 : 10,000원
 - ③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27,000원
 - ㉠ 1개월당 순손익액 = $(10,000 + 15,000 + 5,000) \div 30\text{개월} = 1,000\text{원}$
 -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분 = $1,000 \times 27\text{개월} = 27,000\text{원}$
 - ④ 증여이익 = $50,000 - 10,000 - 27,000 = 13,000\text{원}$
- * $13,000\text{원} \geq (10,000 + 27,000) \times 30\%$: 기준요건 충족



관련 사례

1) 주식수의 계산

(국세청) 상증법 §41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 상장일부터 정산기준일 사이에 상법 §461에 따른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상증령 §31의6④ 각 호의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는 상증령 §56③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153, 2014.7.2.)

(심판원) 문언상 주식 등의 증여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발행한 무상주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고, 상장 후에는 재무자료가 모두 공개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상증자된 주식을 상장 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조심2014중5737, 2015.5.18.)

58) 상증집행기준 41의3-31의3-6 참고

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에 관한 규정(5년 내 상장)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42의3③).

4 증여세액의 정산 등

가. 증여세 정산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

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건별로 과세하고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한다(상증법 §47②, §55① 3).⁵⁹⁾

5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 포함)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식 등으로 전환된

59) 서면4팀-3984, 2006.12.8. 같은 뜻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상증법 §41의3⑧).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고, 해당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관련 사례

1) 취득의 범위 - 취득 후 유상증자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2012두25187, 2015.10.29.)

2) 취득의 범위 - 무상주

협회등록 전 5년 이내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수에 당해 무상증자 신주배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수의 신주는 상증법 §41의3의 규정이 적용됨(서면4팀-335, 2007.1.24.)

3) 최대주주 등의 범위

(특수관계인 포함여부)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관련법에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 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두11559, 2012.05.10.)

(위임입법 무효여부) 구 상증령 §19②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을 합하여 구 상증법 §41의3①2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구 상증령 §31의6②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2두25187, 2015.10.29.)

4)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5)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경우

법인의 주주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저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894, 2009.12.2.)

6) 상증법 §42 적용대상여부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상장으로 인한 상장차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타인의 재산증여로 취득한 재산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유상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4, 2010.10.28.)

⇒ 2015.12.15. 상증법 §42의3으로 개정하면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상장은 제외되었다.

7) (2016.12.31. 이전) 코넥스 상장 후 코스닥상장(이전상장)하는 경우

상증법 §41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 2017.1.17)

⇒ 2017.1.1. 이후 개정하여 상장시장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명확히 함

8) 수회에 걸쳐 취득·증여받은 경우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 2015.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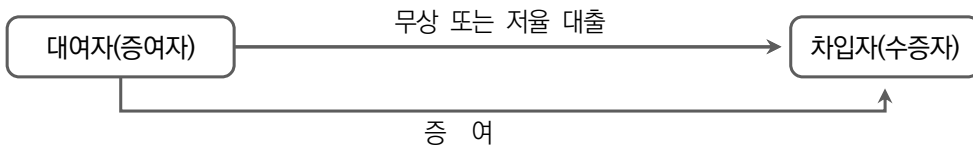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만 적용 (종전에는 무상(저율)대출금액 1억원)
 - ① (무상대출)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4.6%, 2016.3.20. 이전 8.5%)
 - ② (저율대출)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증여시기)
 -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타인(2012.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는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4).

과세대상은 2015.12.31. 이전에는 무상(저율)대출금액 1억원이었으나 2016.1.1. 이후부터는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1 과세요건

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나.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할 것

적정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증규칙 §10의5)을 말하며, 기획재정부령은 정하는 이자율은 법인규칙 §43②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1의4③).

2 증여시기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한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대법원2011두10959, 2012.7.26.).

3 증여재산가액

대출기간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금전무상대출금을 대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출이익으로 본다(재산세과-623, 2009.3.25.).



예시 1

○ 父로부터 2022.5.10. 3억5천만원(지급이자율 3.6%), 2022.7.20. 1억원(무상), 2022.8.10. 1억원(지급이자율 1%)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은?

답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11,700,000원

각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1년 내⁶⁰⁾ 그 이자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시기 : 2022.8.10.

$$2022.5.10. 350,000,000원 \times (4.6\% - 3.6\%) = 3,500,000원$$

$$2022.7.20. 100,000,000원 \times 4.6\% = 4,600,000원$$

$$2022.8.10. 100,000,000원 \times (4.6\% - 1.0\%) = 3,600,000원$$



예시 2

- 자가 부모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이익은?
 - 금전대출현황(대출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음)

대출일자	대출금액	지급이자율
2022. 5. 4.	350,000,000원	3.6%
2022. 9.20.	100,000,000원	무상
2022.12.25.	1,000,000,000원	1.0%

- ① 증여시기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날 ⇨ 2022.12.25.
 ㉠ $350,000,000 \times (4.6\% - 3.6\%) = 3,500,000\text{원}$
 ㉡ $100,000,000 \times 4.6\% = 4,600,000\text{원}$
 ㉢ $1,000,000,000 \times (4.6\% - 1.0\%) = 36,000,000\text{원}$
 ② 증여이익 계산(㉠ + ㉡ + ㉢) : 44,100,000원

4 경정 등의 특례 (상증법 §79②2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⁶¹⁾.

60) 상증법 §43②에 따라 동일한 거래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61) 2010.1.1.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 (과세요건) 증여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취득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할 것
 -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할 것
 -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
- (납세의무자) 취득자(수증자, 유상취득자)
-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geq Min(①, ②)
 - ① (증여일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times 증여·유상 취득주식수 \times 30%
 - ② 3억원
- (정산시기) 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재산가액)

$$\left\{ \begin{array}{l} \text{합병등기일} \\ \text{1주당 평가액} \end{array} - \left(\begin{array}{l} \text{증여일 1주당} \\ \text{증여세과세가액등} \end{array} + \begin{array}{l} \text{1주당 기업가치} \\ \text{실질증가액} \end{array} \right) \right\} \times \text{증여·유상 취득주식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시점과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5).⁶²⁾

6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상증법 §41의5②)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과세요건

가. 증여받거나 유상취득

1) 취득유형

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을 증여 또는 유상취득

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취득의 범위

주식 등의 취득에는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최대주주 등이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을 합하여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

2012.2.2. 상증령 개정 전 “최대주주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증여자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8.3.).

4)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상증령 §31의5③).

가) 상증법 §41의5①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나) 상증령 §28① 2호에 따른 법인⁶³⁾

다) 상증령 §28① 3호에 따른 법인⁶⁴⁾



관련 사례

1) 취득

(법인 설립 전)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40941, 2018.12.23.)

(근로 제공)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16두39726, 2016.10.27.)

63) 상증령 §2의2①3나목에 따른 법인

64)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나. 5년 내 상장 등 요건

증여·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합병하여야 한다.

다. 증여·취득시점과 상장 후 주식가액의 차액 요건

2 정산기준일

해당 주식 등의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사례

1) 합산배제 증여재산 판정일

합병상장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대법원2015 두3096, 2017.9.26.)

3 증여재산가액

$$\left\{ \begin{array}{l} \text{합병등기일 현재} \\ \text{1주당 평가액} \end{array} - \left(\begin{array}{l} \text{증여일 현재 1주당} \\ \text{증여세과세가액 등} \end{array} + \begin{array}{l} \text{1주당 기업가치} \\ \text{실질증가액} \end{array} \right) \right\} \times \text{증여·유상 취득주식수}$$

위의 금액이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 증여·유상 취득주식수 × 30%
- ② 3억원

가. 합병등기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합병등기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63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나.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등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이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액 : 1) × 2)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가) 해당 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일까지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나) 순손익액은 상증령 §56④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2(12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수)]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의 전일까지의 월수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3)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그 밖의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령 §55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해당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의 발행주식 총수 계산

증여이익의 계산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나,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 前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를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상증령 §31의3⑥).

$$\text{무상증자 前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 \times \frac{(\text{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 말 주식수} + \text{무상증자 주식수})}{\text{무상증자 직전사업연도 말 주식수}}$$

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에 관한 규정(5년 내 합병)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42의3③).

4 증여세액의 정산 등

가. 증여세 정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

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주식 등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이익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건별로 과세하고 다른 증여 재산가액과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3천만원을 공제한다(상증법 §47②, §55① 3).

5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 포함)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상증법 §41의3⑧).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

- (과세요건)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증여시기) 재산사용일 또는 용역제공일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증여재산가액) ① \geq 1천만원, ②·③ \geq (시가 \times 30%)
 - ①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 용역 제공
 -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 차입한 경우: 차입금 \times 적정이자율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그 외: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 ②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사용·용역제공: 시가 - 대가
 - ③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사용·용역제공: 대가 - 시가

2004.1.1. 이후 증여예시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을 제외한 재산·용역의 무상이전 등에 대한 증여예시규정인 상증법 §42(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를 신설하였고, 2016.1.1. 이후 상증법 §42를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조문을 세분화⁶⁵⁾하였다.

1 과세대상 거래유형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65) 종전의 상증법 §42는 증여예시규정, 증여추정규정 외의 경우 같은 조 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 조문 규정(상증법 §42, §42의2, §42의3)은 증여예시규정 중 하나인 점이 다르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①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 ②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 ③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④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증여시기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기준금액 금액 미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은 “가”의 경우는 1천만원, “나”와 “다”의 경우에는 시가 × 30%를 말한다.

가.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1)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차입금} \times \text{적정이자율}(4.6\%)) - \text{지급이자}]$$

2) 1)을 제외한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시가} - \text{대가}$$

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대가} - \text{시가}$$

한편, 2016.1.1. 현재 1억원 미만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그 재산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종전의 상증법 §42②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4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16.1.1. 현재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미만인 용역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종전의 상증법 §42②에 따라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상증법 §4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용역의 시가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비슷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의 통상적인 지급 대가에 따른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상증법 평가액) × 연 2%

나.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령 §89④ 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용역제공의 원가+(원가 × 수익률 [(매출액 - 원가)/원가])

5 경정 등의 청구특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상증법 §42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증법 §79).



관련 사례

1) 용역의 제공

부가 자신의 정기에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자에게 정기에금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대법원2011두18458, 2013.11.14.)

2)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42①2호·③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세과-259, 2012.7.13.)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2)

- (과세요건) 주식의 포괄적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geq Min(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 \times 30%, 3억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
 - ①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times 지분변동 후 1주당 가액
 - ②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2004.1.1. 이후 증여예시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을 제외한 재산·용역의 무상이전 등에 대한 증여예시규정인 상증법 §42(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를 신설하였고, 2016.1.1. 이후 상증법 §42를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조문을 세분화⁶⁶⁾하였다.

1 과세대상 거래유형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6) 종전의 상증법 §42는 증여예시규정, 증여추정규정 외의 경우 같은 조 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 조문 규정(상증법 §42, §42의2, §42의3)은 증여예시규정 중 하나인 점이 다르다.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법 §42③(현재 §42의2)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3두24495, 2015.2.12.),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기준금액 금액 미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은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기준금액 = Min(①, ②)

- ①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 ② 3억원

가.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text{변동 후 지분} - \text{변동 전 지분}) \times \text{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은 상증령 §28(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증령 §29(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증령 §29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및 상증령 §29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변동 후 가액} - \text{변동 전 가액}$$



관련 사례

1) 조직변경 등 해당여부

(100% 주식 증여)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증법 §42①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6두285, 2016.6.23.)

(100% 미만 주식 증여)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2③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에 대한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는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할 뿐, 상증법 §42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4두1864, 2015.10.29.)

(주식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서면4탐-1778, 2007.5.30.)

2) 입증책임

구 상증법 §42①3호, ③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으며, 향후 신주인수권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부산고법2013누1761, 2014.8.21.)

3) 제3자배정 등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기재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지 않고, 재배정 실권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신주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구 상증법상 포괄주의(제2조,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1, 2018.10.3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법 §35①2호, ②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법 §39①1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법 §42조①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1두23047, 2014.4.24.)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2의3)

○ (과세요건)

-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 ② 재산취득 유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③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재산취득유형

-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 : 개발사업의 시행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특수관계 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 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해당재산가액 -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적용제외 : 증여재산가액 < Min(①, 3억원)

- ①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30%

2004.1.1. 이후 증여예시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을 제외한 재산·용역의 무상이전 등에 대한 증여예시규정인 상증법 §42(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를 신설하였고, 2016.1.1. 이후 상증법 §42를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조문을 세분화⁶⁷⁾하였다.

67) 종전의 상증법 §42는 증여예시규정, 증여추정규정 외의 경우 같은 조 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 조문 규정(상증법 §42, §42의2, §42의3)은 증여예시규정 중 하나인 점이 다르다.

1 과세요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인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5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주체요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나. 재산취득 유형 <재산취득 요건>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 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 3) 그 밖에 1) 및 2)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해당 재산가액 -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기준금액 금액 미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은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기준금액 = Min(①, ②)

- ①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30%
- ② 3억원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상증령 §32의3③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 지가 상승률·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4) 가치상승 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관련 사례

1) 개발사업의 의미

(심판원) '개발사업'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조심2014서1982, 2015.12.3., 조심2020중1104, 2020.12.2.)

(법원) '개발사업'이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서울고법 2017누86721, 2018.12.12.)

2) 주주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기재부 - 2016년 이후) 상증법 §42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상증령 §32의3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7.)

(법원 - 2015년 이전)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 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미공표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주주로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부산고법2017누23841, 2018.4.6.)

3) 합병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합병인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합병등기를 한 날임(서면4팀-1411, 2008.6.12.)

4) 신축분양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NEW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서울고법2022누 38665, 2024.2.7.)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증여추정)
 - ①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②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증여의제)
 - 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④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⁶⁸⁾하는 것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다.

증여의제란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증여로 간주한 것을 말하며 납세자가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여로 본다.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으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1.12.31. 신설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6.12.15. 신설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증여예시규정에서의 의제규정으로 전환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있다.

68) 의제는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의 본질에 관계없이 정해진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더라도 법률효과가 번복되지 아니한다. 추정은 분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법률효과가 번복된다.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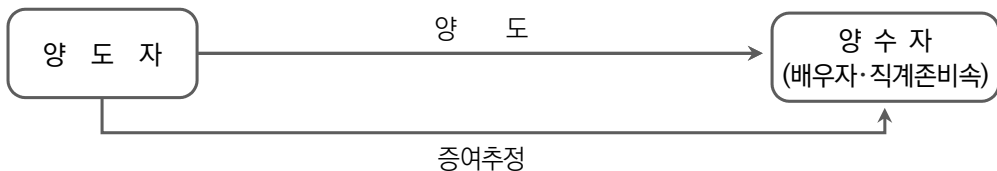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증법 §44)

- (대상)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 (적용배제) (양도자+양수자의 소득세 결정세액) > 증여세액
- (증여시기)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등기접수일)
- (재산평가) 상증법 §60 ~ §66에 따라 평가

외형상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4).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 집행기준 44-33-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를 말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법정혈족(양자)을 포함한다.

가. 증여추정의 배제(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④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3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5) 배우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登記·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나)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재산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나. 증여시기 :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登記접수일이다(재일46014-1813, 1997.7.24.). 대금 청산일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다. 증여추정가액

증여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60 ~ §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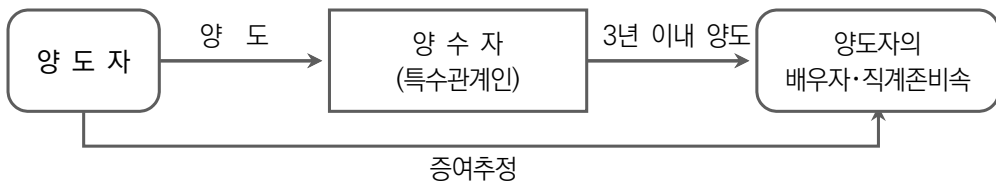
1)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상증령 §33③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35(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441, 2011.9.27.)

2) 거래의 입증책임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서면4팀-4069, 2006.12.14.)

2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45)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 금액 ≤ Min (취득재산등 × 20%, 2억원)
증여추정 과세	미입증 금액 > Min (취득재산등 × 20%, 2억원)
	증여재산가액 = 미입증 금액(취득재산의 가액 등 - 입증된 금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5)

이 경우,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가. 재산의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text{취득재산의 가액} - \text{입증된 금액}) \geq \text{MIN}(\text{취득재산} \times 20\%, 2\text{억원})$$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취득재산의 가액이란 그 재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의 경우, 거래가액에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증여추정 배제	미입증 금액 ≤ Min (취득재산 × 20%, 2억원)
증여추정 과세	미입증 금액 > Min (취득재산 × 20%, 2억원)
	증여재산가액 = 미입증 금액(취득재산의 가액 - 입증된 금액)

1) 입증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나)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다)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서일46014-11461, 2003.10.16.).

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상증통칙 45-34...1)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60부터 §66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증령 §10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1) 부터 5) 까지 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예시

재산취득가액 (①)	자금출처 입증금액	미입증금액	증여추정판정기준 Min(①×20%, 2억원)	과세여부 (증여재산가액)
8억원	7억원	1억원	1.6억원	추징배제
8억원	5억원	3억원	1.6억원	추정 과세(3억원)
25억원	21억원	4억원	2억원	추정 과세(4억원)

다.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34①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통칙 45-34...1).



예시

- 재산취득자금이 10억원, 자금출처 입증시 8억원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는 경우
 전체 10억원(8억원+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재산취득자금이 15억원, 입증금액 11억원, 2억원은 증여받았다고 소명하는 경우
 4억원(15억원 - 1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라.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45①(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한다(상증법 §45④). 이 경우,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곤란한 점이 있었으나, 2013.1.1.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부터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금시점에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1) 차명계좌의 연장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이 금융자산을 포함 차명재산이 50억원 초과한 경우에 한함)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였다(국기법 §26의2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 2014.11.29. 시행)의 개정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세 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불법행위⁶⁹⁾ 목적의 차명 금융거래 금지(다만, 善意의 차명계좌는 허용)
위반시 차명계좌 실소유자·명의자 및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종사자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
- 다)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text{채무상환금액} - \text{입증된 금액}) \geq \text{MIN}(\text{채무상환금액} \times 20\%, 2\text{억원})$$

6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FIU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채무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입증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 2)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상증통칙 45-34...1)

앞의 경우와 같다.

다.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34①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45-34...-1).

3 증여추정의 배제기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5①과 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42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3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3. 40세 이상인 자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예시

○ 甲, 乙은 각각의 재산취득에 자금출처를 아래와 같이 해명한 경우에 甲과 乙의 증여추정 적용여부 (백만원)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	甲의 소명내용			乙의 소명내용		
			입증금액	미입증액	입증률	입증금액	미입증액	입증률
재산(a)	2022. 6. 21.	500	410	90	82.0%	450	50	90.0%
재산(b)	2022. 7. 5.	100	0	100	0%	70	30	70.0%
재산(c)	2022. 12. 4.	95	0	95	0%	50	45	52.6%
재산(d)	2023. 3. 8.	550	500	50	90.9%	400	150	72.7%
재산(e)	2023. 7. 1.	480	330	150	68.7%	600	-120	100%
합 계		1,725	1,240	485	71.9%	1,570	155	91.0%



답 (甲) (b), (c), (e) 345백만원 / (乙) (b) (c) (d) 225백만원

증여재산취득시기별로 그에 대응 되는 자금을 해명받아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일정기간의 총 취득재산가액과 총 해명금액을 가지고서 입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서일 46014-10766, 2003.6.1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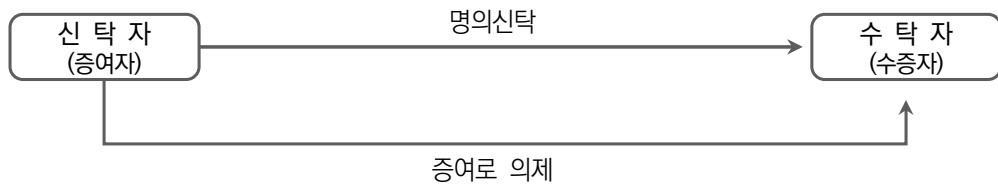
증여시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가 증여시기이다.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 (과세대상)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
- (과세요건) 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함
 ③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증여시기) ① 명의개서를 한 날
 ② 장기미명의개서 -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 장기미명의개서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재산 평가
- (과세표준 계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기법 §14(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상증법 §45의2).

1995.7.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는다.

2003.1.1. 이후 소유권 취득분부터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2016.1.1. 이후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함께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부터 장기미명의개서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부터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다(상증법 §4의2②). 이에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6, 2018.12.31.).

1 증여의제 대상

등기 등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말하며, 등기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말한다(대법원84누341, 1987.3.24.).

가. 등 기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등기되어야 할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이다. 1995.7.1. 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나. 등 록

행정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등이다.

다. 명의개서 등

명부 등에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주권과 사채권 등이 있다.

라. 장기미명의개서⁷⁰⁾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사례

1) 합병신주

(기재부 - 증여의제대상)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외)

(법원 - 증여의제 대상 아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이미 과세되었던 舊주식에 대하여 합병에 따라 新주식이 배정된 경우, 이 합병신주에 대해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대법원 2016두30644, 2019.1.31.)

2) 잉여금 자본전입(증여의제 대상 아님)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09두21352, 2011.7.14.)

(자본잉여금)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⁷¹⁾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증여의제 대상)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는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새로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임(대법원2013두5791, 2013.8.23.)

70) 상증법에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이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장기미명의개서라고 표현한다 (법원은 명의개서해태라고 한다)

71) 종전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07.7.27.)를 변경하였다. 변경 후 예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는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의제 대상 아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 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대법원2012두27787, 2018.3.29.)

4) ELS와 ELW

(ELW)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차익실현 목적으로 만기 이전에 단기매매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은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과-1281, 2013.11.27.)

(EL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⑦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추가연계증권(ELS)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31, 2015.11.18.)

5) 기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재산

(보험금, 예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보험금, 예금은 포함 안 됨 (재삼46014-166, 1997.1.29.)

(지명채권)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지명채권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국심83서1177, 1983.8.6.)

(보통예금청구권) 은행의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님 (대법원84누613, 1984.12.26.)

(아파트당첨권) 아파트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7누118, 1987.10.13.)

(담보권) '명의'란 '소유권 명의'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 명의는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85누934, 1986.9.9.)

(무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함(상증 집행기준45의2-0-7)

6)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신탁한 경우

(기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한 명의로 명의 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17.8.25.)

(법원)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한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대법원2011두10232, 2017.2.21.)

7) 할증평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그 제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7두48451, 2018.2.8.)

8) 유상증자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추가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5두38238, 2018.2.8.)

2**증여의제 제외**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을 실명전환한 경우 등에는 과세제외된다.

- 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다.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 라.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을 실명 전환한 경우

주식 등 중 1996.12.3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7.1.1. 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유예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인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장기미명의개서재산으로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1.1.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004.12.31.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증여의제 요건

과 세 요 건	입 증 책 임
①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登記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명의신탁여부는 과세관청 입증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조세회피목적 없음은 명의자가 입증
③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	명의도용은 명의자가 입증

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실제소유자란 애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나이·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한다 (재경부재산46014-145, 1997.5.1.).

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조세회피 유형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2004헌바40, 2005.6.30.)는 아래와 같이 보았다. ①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다. ②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③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면 누진적 소득세부담을 경감,

회피할 수 있다. ⑤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 과점주주로서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담할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⑥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을 회피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 ⑦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를 회피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조세의 범위

조세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정하지 않고, 국기법 §2 1호 및 7호의 국세, 지방세,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말한다.

2) 입증책임

차명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할 책임을 지며(대법원2005두3882, 2005.7.22.),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5351, 2002.9.10.).

3) 판단시기 등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2004두7733, 2006.5.12),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2012두546, 2013.11.28.).

4) 조세회피 추정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법 §105 및 §110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10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다(재산세과-1408, 2009.7.10.)

- ② 2016.1.1. 이후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신고(상증법 §67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국기법 §45에 따른 수정신고, 국기법 §45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90누5023, 1990.10.10.).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2000다49091, 2001.1.5.).

4 증여의제 시기

-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타인명으로 명의개서 한 경우 → 그 명의개서일
(甲이 乙로부터 취득하여 丙명으로 개서)
-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종전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
(甲이 乙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乙명의 그대로 둔 경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러나 주식 등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종전소유자의 명의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 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본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실질상 명의신탁임에도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증여시기를 2002.12.18. 개정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3.1.1.(의제 취득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5.1.1.에 명의신탁 증여한 것으로 본다(법률 제6780호, 부칙 §9).

또한, 2003.1.1.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예 : 2006.4.3.)하고 실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예 : 2008.1.1.)에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예시

- 주식을 [갑]이 2015.10.1. [을]로부터 취득하였으나 2015.10.5. [정]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시기는?
→ 실소유자가 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므로 2015.10.5 [정]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본다.
- [갑]이 2002.4.1. [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갑]의 명의로 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일과 증여시기는?
→ 소유권 취득일 : 2003.1.1. 증여시기 : 2005.1.1.
- [갑]이 2013.4.3. [을]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갑]의 명의로 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15.1.1.임

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이는 상법 §337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6에 따른 실질주주⁷²) 명부를 포함)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상증통칙 45의2-0...3).

상장주식의 명의신탁(타인 명의의 증권 예탁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증여의제 시기는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한 날(상장주식 취득일 또는 예탁계좌에 입고한 날이 아님)이다(재재산-1721, 2004.12.30.).

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를 한 경우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상증법 §60 및 §63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서면4팀-109, 2008.1.14., 대법원2014두2331, 2020.4.29.).

72)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주소·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말한다.

다.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법 §109① 및 §119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200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한다.

이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2020.1.1. 이후 증여시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이다.

- 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5 증여의제 재산가액

가. 증여의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의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법 §60부터 §66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부터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과세표준계산 특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분부터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상증법 §47).

다.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2016.2.5.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증령 §53⑥8호)⁷³⁾

예시

○ 2022. 3. 2. 을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시기	증여재산	비고(을은 갑의 배우자)
2022. 1. 3.	부동산 3억원	갑이 을에게 증여함
2022. 3. 2.	주식 2억원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함

답 2억원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6 명의신탁의 해지(환원)

가. 의의 및 과세여부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의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이 실제소유자 앞으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해당 환원 행위에 대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통칙 45의2-0...2).

명의신탁된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⁷⁴⁾이 되며,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재산의 취득일이다.

73) 종전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였다(재경부재산46014-39, 2002.2.15., 수원지법2008 구합10912, 2009.9.9.

74)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국기법 통칙 14-0...6).

나.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3개월 내에 주식매각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의제 재산은 금전(매각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므로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2005두10200, 2007.2.8.).



관련 사례

1) 증여시기

(명의개서를 한 날)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함 (재삼46014-166, 1997.1.29.)

(장기미명의개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증법 §45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2.4.20.)

2)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

(국세청)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를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86, 2013.3.19.)

(법원)

① (주금납입일) 신주의 인수에 있어서는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상법 §423①) 주식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99두3843, 1999.9.3., 서울고법2009누33289, 2010.10.7.)

② (명의개서일)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그 증여의제과세의 과세표준시기는 그 주식의 명의개서일이라고 할 것임(부산지법2011구합3303, 2012.8.17)

3) 명의신탁자 사망시 장기미명의 사유에 상속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대법원2014두43653, 2017.1.12.)

⇒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2016.1.1. 이후 과세하며 20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19.12.27.).

4)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 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384, 2008.6.10.)⁷⁵⁾

5) 재산평가

주식의 가액은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현재 상증법 §60 및 §6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서면4팀-2171, 2007.7.13.)

6) 신탁자가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재삼46014-1128, 1997.5.8.)

7) (2018.12.31. 이전)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여부

(법원 - 합산대상)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적용됨(대법원2016두50792, 2019.6.13.)

8)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국세청)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징세과-469, 2011.5.16.)

(심판원)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임(조심2013중4791, 2014.3.25., 조심2016전3654, 2016.11.28.)

(법원) 명의신탁의 결과 명의수탁자가 부담할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7두69977, 2021.7.8.)

9)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형식상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동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법령운용과-122, 2016.3.14.)

10)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자를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를 실제소유자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국세청) 신고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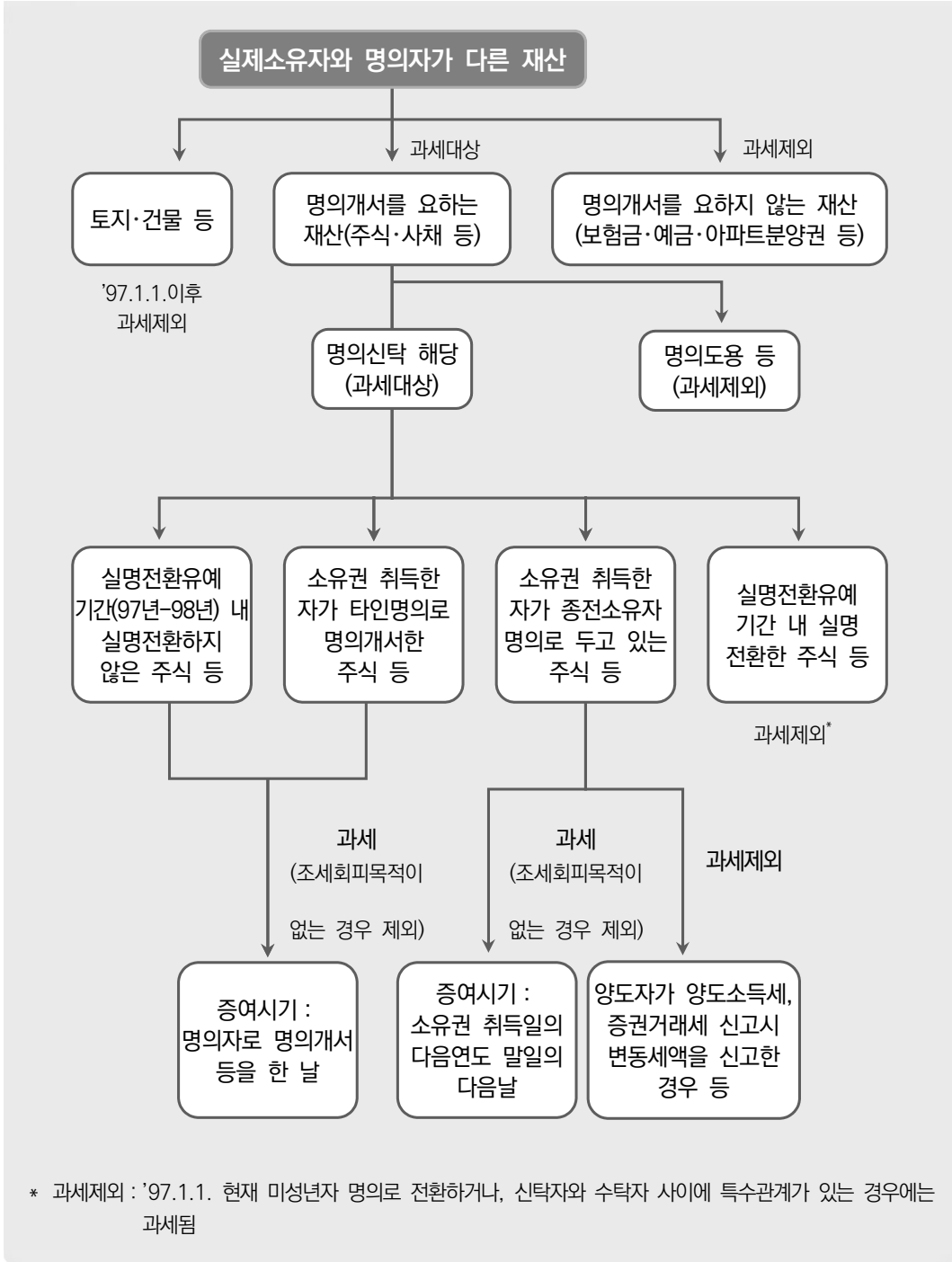
75) 관련 판례 부산고법2012누2702, 2013.1.30.

가산세를, 무납부·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법규과-1575, 2011.11.29.)
(법원) 과소신고(대법원2017두68417, 2019.7.11.)

11) 명의신탁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개서하는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 매도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경우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면,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될 수 없음 (대법원 2011두10232, 2017. 2. 21.)

7 명의신탁재산의 판정 흐름도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⁷⁶⁾(상증법 §45의3)

|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01 지배주주의 확정

- ① 최대주주(그룹) 확정
-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주식보유비율이 사용인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본인과 본인의 친족 중에서 지배주주 선정

02 특수관계법인과와의 매출액 정상거래비율 초과여부 확인

- 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선정
- ② 특수관계법인과와의 매출액 중 과세제외매출액 포함여부 확인
- ③ 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중소기업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비율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은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

30%(중소 50%·중견 40%) 초과 ↓ 이하 과세 제외

03 수증자가 한계보유비율 초과여부 확인

-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 ② 그들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3%(중소, 중견 10%) 초과 ↓ 이하 과세 제외

04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이익 : ① × ② × ③
 - ① 세후영업이익
 - ②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 - 5%(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 ③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주식 직·간접보유 구분에 따라 계산(㉠+㉡)
 -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 신고기한내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
 - 수혜법인 배당 : ㉠에서 차감, 간접출자법인 배당 : ㉡에서 차감

76) 상증법 §45의3를 일감몰아주기, 상증법 §45의4를 일감떼어주기, 언론 등에서 표현하며,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관련은 국세청 발간책자를 참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해 특수관계 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2011.12.31. 신설하여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상증법 §45의3).

이 제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 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려는 것이다(헌재2016헌바347, 2018.6.28.).

2014.1.1. 상증법 개정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였다.

한편, 2017.12.19. 상증법 개정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담합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축소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

1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기업*은 50%·중견기업**은 40%) 초과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 중소기업 : 조특법 §6①(조특령 §2)에 따른 중소기업.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기업은 제외

** 중견기업 : 조특령 §9④에 따른 중견기업(상증령 §34의2⑤).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기업은 제외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아래와 법인을 말한다.

- ① 외국법인
- ②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등의 50% 이상 소유하는 법인)

2023.1.1. 이후 수혜법인이 사업부분별로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부분별로 과세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으며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① 사업부분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여야 한다.

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손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후 가액(이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이라 함)을 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공제·감면세액) × $\frac{\text{세무조정 후 영업손익}}{\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비율이 30%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해야 한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상증법 §45의3①).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정상거래비율 : 30%(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 40%) (상증령 §34의2⑤)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금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시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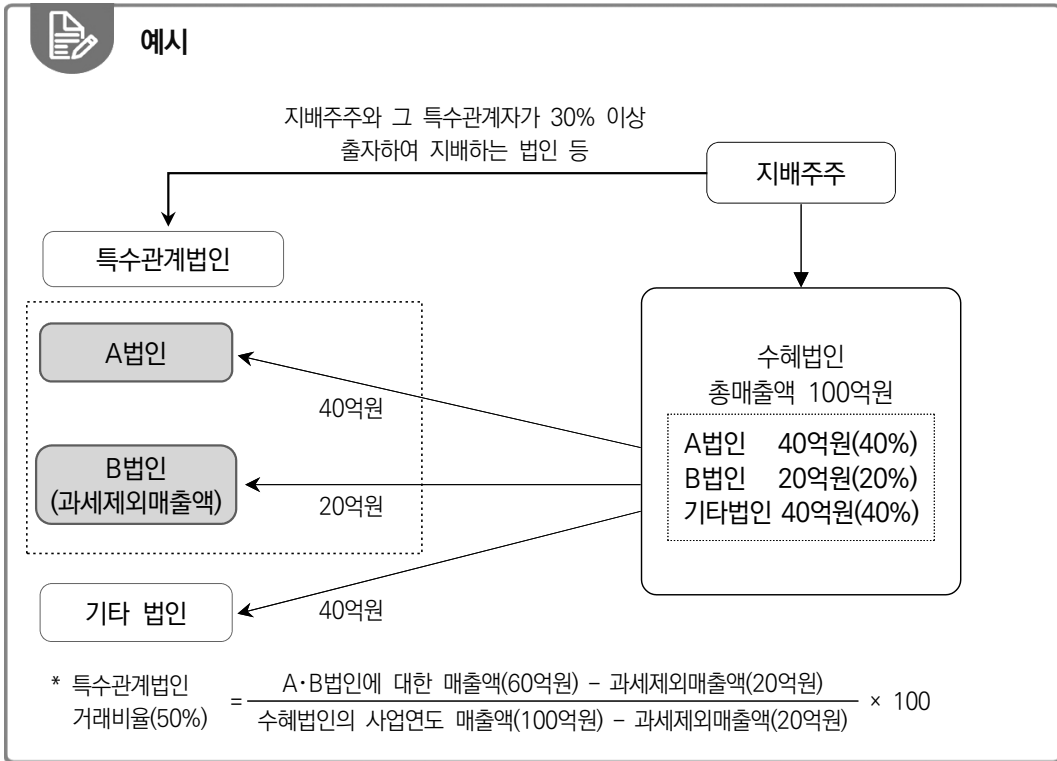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개정연혁

구 분	정상거래비율 (영 §34의2⑤)			한계보유비율 (영 §34의2⑦)	
	12.1.1.이후 개시사업연도분	14.1.1.이후 신고기한도래분	17.2.7.이후 개시사업연도분	12.1.1.이후 개시사업연도분	14.1.1.이후 신고기한도래분
대 기 업	30%	30%	30%	3%	3%
중견기업	30%	50%	40%	3%	10%
중소기업	30%	50%	50%	3%	10%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거래비율을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2⑧, 7가지 유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한다(상증령 §34의2⑨, 2014.2.21. 개정).



가) 2014년 상증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특수관계법인이서 제외

2014년 개정 상증법 시행령 부칙 §14(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34의2③3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4.2.2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과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품·상품 수출 목적의 국외거래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

2014년 개정 상증령 부칙 §14(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②항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34의2⑧ 및 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개정규정인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직접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부칙의 적용시기는 201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직접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비율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에서만 제외하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분모)에서는 제외하지 않음에 유의

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그 법인과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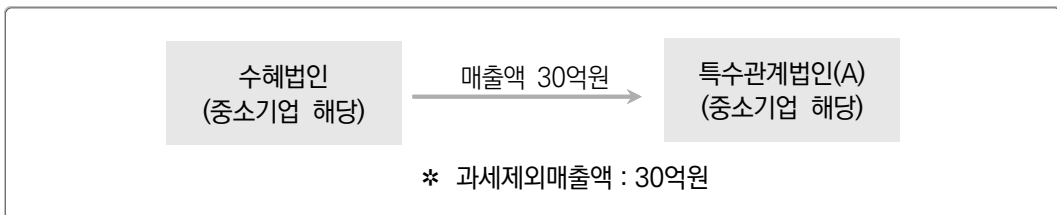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상증령 §34의3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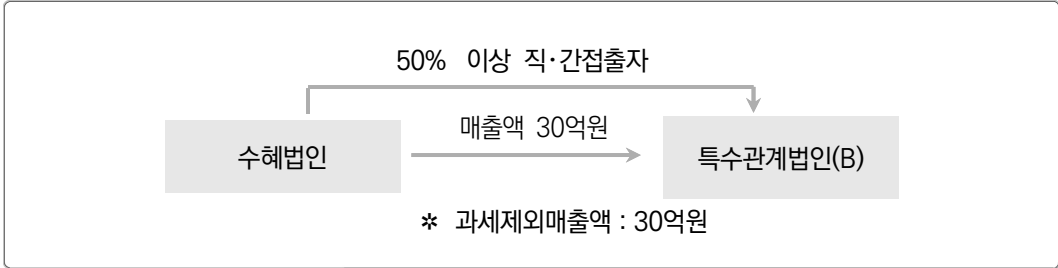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7호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2 8호에 따른 자회사(“자회사”) 및 같은 법 §2 9호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18⑤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 ⑤-1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법 §21②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⑤-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법 §2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⑤-3 수혜법인이 부가법 §24①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법 §33②1다 또는 마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⑧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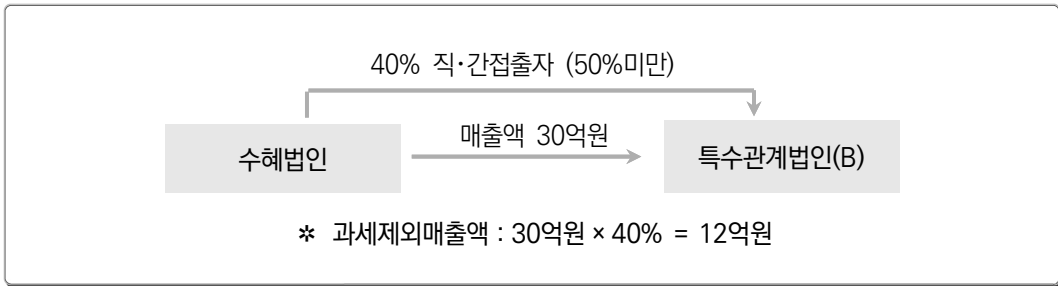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을 분모, 분자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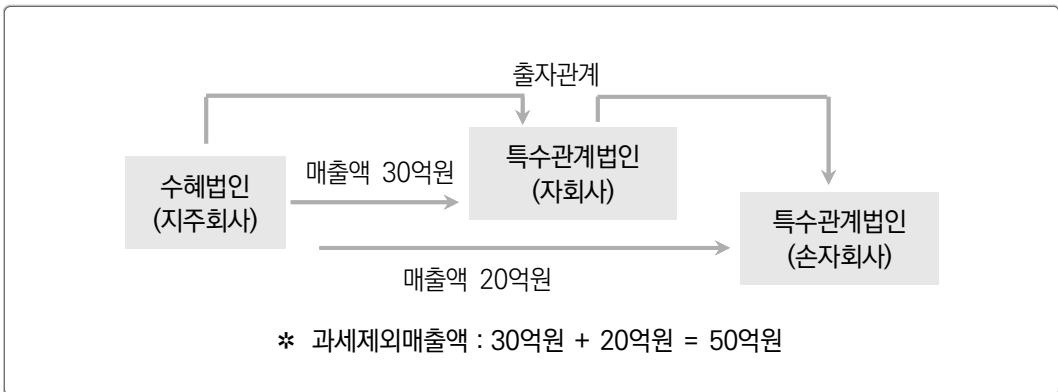
나)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50%이상 직·간접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 제외한다('14년 개정 전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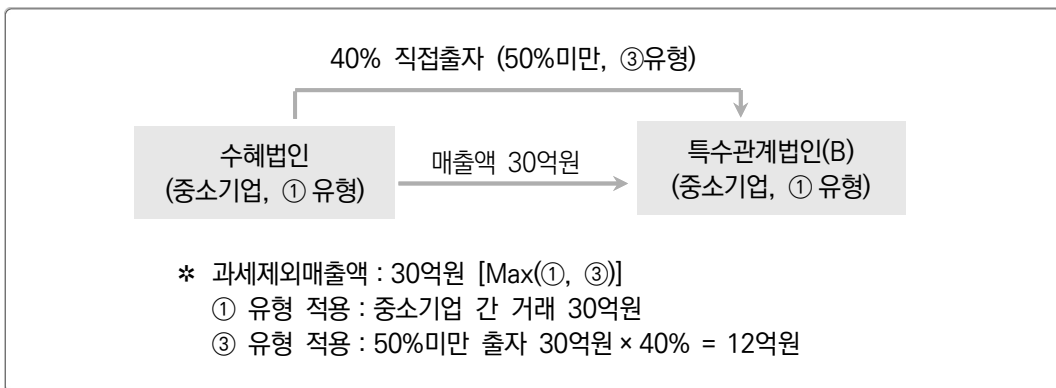
다)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라)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7호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이 같은 법 §2 8호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2 9호에 따른 손자회사
 (같은 법 §18⑥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 마)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법 §21②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바)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법 §2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사) 수혜법인이 부가법 §24①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령 §33 ②1다 또는 마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아)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 위 7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여 해당 매출액을 제외한다.
- 차)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2020.2.11. 이후 신고부터)



3) 지배주주의 판정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판단기준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주식보유비율(직접보유비율 +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자기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상속증여세과-383, 2013.07.22.).

가) 지배주주 : 아래 ① 또는 ②의 자(상증령 §34의2①)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해당 개인주주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친족, 사용인 등 포함)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친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상증령 §2의2①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i)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ii)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법인주주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이는 실질 지배력이 없는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비율

나)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 자를 지배주주로 본다(상증령 §34의2① 후단, 상증규칙 §10의7).

*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①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높은 경우의 그 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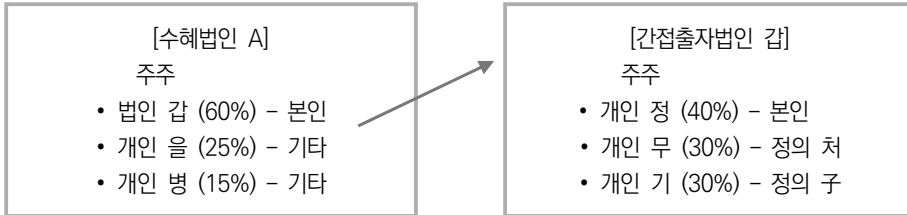
②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많은 경우의 그 본인

③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지배주주 판정 사례



사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직·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면,

- 개인 을 : 25%, 개인 병 : 15%
- 개인 정 : $40\% \times 60\% = 24\%$
- 개인 무 : $30\% \times 60\% = 18\%$

-개인 기 : $30\% \times 60\% = 18\%$ 이며, 전체 지분은 개인 [을]이 가장 높으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는 개인 [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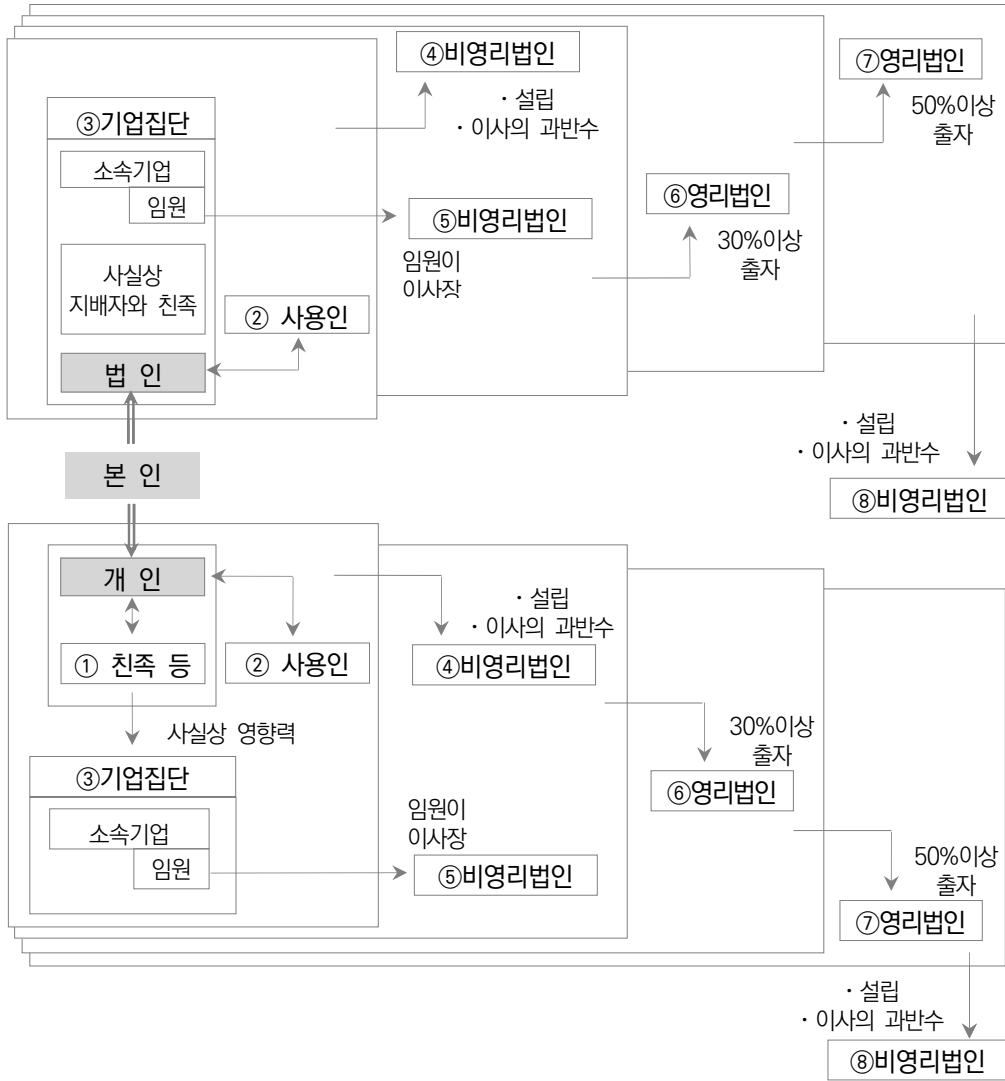
제2편

증
여
제

4) 특수관계법인

- 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증령 §2의2① 3호~8호에 해당하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한다.
- ② 상증령 §2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구분 (번호는 동 시행령 호수와 동일함)



5)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지배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란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를 말한다(상증령 §34의3②).

* 지배주주 판정 시의 간접출자법인은 증여의제이의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 시의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와 달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10)%를 초과하여야 한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계보유비율이란 3%를 말하는 것이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로 한다(상증령 §34의3⑦).

한편, 한계보유비율 초과여부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은 상증령 §34의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30% 이상 출자법인 등)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되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까지 확대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미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아래와 같은 일정 범위의 법인으로 제한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법과 구분해야 한다.

☑ 수증자 해당여부 판단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다음 법인(상증령 §34의3 ⑩)

- ①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② 지배주주 등 및 ①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 증여시기

특수관계법인과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는 수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다(상증법 §45의3③).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법 §6【사업연도】, §7【사업연도의 변경】, §8【사업연도의 의제】를 준용하므로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등이 증여시기가 된다.

3 증여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2의2① 3호 부터 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50%)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들이 증여자에 해당되며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4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10%)을 초과하는 자이다.

5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2018.1.1.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① - ②) × ③)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다음 ①의 가액에서 ②의 가액을 뺀 금액에 ③의 과세 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⑩).

①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43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 법인법 §23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법 §33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법 §34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법 §40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법 §41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령 §44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령 §74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② 다음 ㉧의 세액에 ㉨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법인법 §55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법인법 §55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14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해당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③ 과세매출비율

$$1 - (\text{과세제외매출액} \div \text{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위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과세제외매출액” 8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증령 §34의3②)

증여의제이의 계산식에서 상증령 §34의3⑫ 각 호의 “추가되는 과세제의 매출액”은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의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모두 같은 조 ⑧의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㉔ 간접출자법인(상증령 §34의3⑬)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2020.2.11. 이후 신고부터)

- ㉕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 ㉖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 ㉗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2)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계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법 §43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5%를 차감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 5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 20%(정상거래비율 40%의 1/2)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 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상증령 §34의2①).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초과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주별 ①과 ②를 합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이익은 ①과 ②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다.

- ① 직접출자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② 간접출자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각 수증자별 한계보유비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빼는 순서

- ① 직접출자와 간접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뺀다.
- ②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이 작은것에서 부터 뺀다.

4) 지배주주 등의 간접보유비율이 0.1% 미만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제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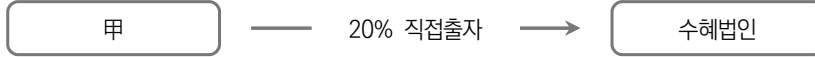
즉, 2013.2.15. 상증령 §34의2② 2호를 개정하여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각 간접보유비율이 0.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의제이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2013.2.15.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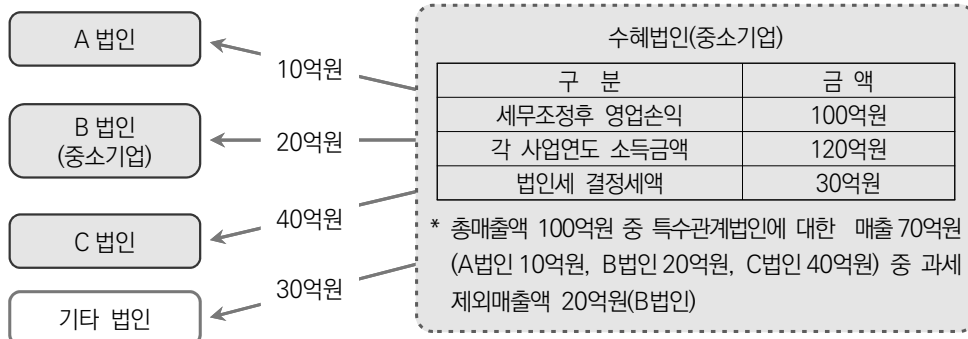
예시 1

○ 수혜법인에 20% 출자한 주주(甲)의 증여재산가액(2014.1.1 이후 신고분)

① 출자관계 : 甲은 수혜법인에 20% 출자한 대주주



[거래관계 및 영업손익 등]



* A, B, C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② 甲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62.5%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70억원 - 과세제외매출액 20억원) / (총매출액 100억 - 과세제외매출액 20억원) \times 100 = 62.5\%$$

③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60억원

$$[100억원 - 30억원 \times (100억원 / 120억원)] \times [1 - (20억원 / 100억원)]^*$$

* 1 - (과세제외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매출액)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②) - 50%(중소기업) = 12.5%

$$62.5\% - 50\% = 12.5\%$$

- 주식보유비율 - 10%(중소기업) = 10%

$$20\%(직접출자비율) - 10\% = 10\%$$

- 증여의제이익 = 60억원 \times 12.5% \times 10% = 0.75억원

5)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상증령 §34의3⑬)

-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 §86의2①에 따른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한다.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상증령 §34의2⑪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②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배당 소득} \times \frac{\text{상증령 §34의2⑫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left[\begin{array}{l} \text{간접출자법인의} \\ \text{사업연도 말일} + \left(\begin{array}{l} \text{수혜법인의} \\ \text{사업연도 말일} \times \text{수혜법인에 대한} \\ \text{배당가능이익} \end{array} \right) \times \left(\begin{array}{l} \text{간접출자법인의} \\ \text{주식보유비율}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 \text{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예시 2

○ (2014.1.1.이후 신고분)

〈사실관계〉

- 지배주주인 [갑]은 수혜법인(A)에 대하여 40% 직접출자하고 있으며
- 간접출자법인(B)에는 40%, B법인은 수혜법인에 50% 출자하고 있음
- 증여의제이익
 - 직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 20억원
 - 간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 10억원
- 증여세 신고기한 전인 2014년 3월에 수혜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이 각각 배당을 실시함
 - A법인 : 배당소득 10억원, 전체 배당가능이익 100억원
 - B법인 : 배당소득 5억원, 전체 배당가능이익 80억원
- 1. 수혜법인(A)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직접 증여의제이익 20억원 - [배당소득 10억원 × (직접증여의제이익 20억원 / (A법인배당가능이익 100억원 × 직접보유비율 40%))]
 - 20억원 - [10억원 × (20억원/40억원)] = 15억원

2. 간접출자법인(B)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간접 증여의제이익 10억원 - [배당소득 5억원 × [간접증여의제이익 10억원 / {B법인배당
가능이익 80억원 + (A법인 배당가능이익 100억원 × B법인의 A법인 지분율 50%)}] × 지배
주주의 B법인 지분율 40%]
- 10억원 - [5억원 × [10억원 / {80억원 + (100억원 × 50%)}] × 40%] = 9.04억원

6)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상증령 §34의3⑤).

7)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어느 한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한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6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1)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상증법 §47②),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개별 건별로 과세하는 합산 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7①).

2) 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55① 2호).

7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60①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상증법 §68①).

* 2017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18.4.2.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8.7.31.이다.

8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소득법 §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1호(취득가액) 가목 본문은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상증법 §3의2②, §33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 §45의3부터 §45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상증법 §45의3부터 §45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소득령 §163⑩ 1).

$$\text{양도차익} = \text{양도가액} - \left\{ \text{취득가액} + \left(\text{증여의제이익} \times \frac{\text{양도 주식수}}{\text{보유 주식수}} \right) \right\}$$



관련 사례

1)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서면법규과-1301, 2013.11.29.)

2) 특수관계법인

구 상증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의3① 및 구 상증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의2③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①에 따른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같은 령 §12의2①3호부터 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乙(을)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甲(갑)법인의 지배주주가 乙(을)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을)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34의2③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2016.5.2.)

3) 주식보유비율

상증령 §34의2⑧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 ⑩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임(재산세제과-4, 2016.1.4.)

4)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일 경우(2019.2.12.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상증령 §34의2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

5) 매출액계산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산입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법령해석과-3724], 2021.10.27.)

6) 중복적용 여부

NEW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77)(상증법 §45의4)

- (과세대상) 특수관계법인(중소기업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
- (사업기회제공)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 방법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
- (증여이익)
 - ①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 ×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 ②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 (증여세 신고기한)
 - ①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②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분부터 특수관계법인(중소기업은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였다(상증법 §45의4).

1 사업기회제공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방법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77) 상증법 §45의3를 일감몰아주기로, 상증법 §45의4를 일감떼어주기로 언론 등에서 표현한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관련은 국세청 발간책자를 참고

2 과세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됨을 2020.1.1. 개정시 명확히 하였다.

가.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상증법 §45의3①에 따른다.

나.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상증령 §2의2①3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조특법 §6①에 따른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은 제외한다.

3 증여의제이익

$$\begin{aligned}
 &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quad - \text{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end{aligned}$$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법인법 §43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에 법인법 §23·§33·§34·§40·§41 및 법인령 §44의2·§74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2017. 2. 7.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세무조정 이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은 ①의 세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① 법인법 §55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법인법 §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 ② 위의 영업이익이 수혜법인의 법인법 §14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text{배당소득} \times \frac{\text{상증법 §45의4①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left(\begin{array}{c} \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 \text{법인법 §86의2①에 따른} \\ \text{배당가능이익} \end{array} \right) \times \left(\begin{array}{c} \text{지배주주등의} \\ \text{수혜법인에 대한} \\ \text{주식보유비율} \end{array} \right)}$$

증여의제이익

상증법 §45의3	상증법 §45의4
(수혜법인 영업이익 -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관련 법인세 × [특수 관계법인거래비율 - 15%(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 [주식보유비율 - 0%(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액 중 상당액

4 정 산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당초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액 중 상당액}$$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상증법 §45의4①에 따른 개시 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조⑥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상증법 §45의4③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
		수혜법인의 상증법 §45의4①에 따른 개시 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조③에 따른 정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령 §86의2①에 따른 배당가능 이익의 합계		

5 증여세 신고기한

개시사업연도의 법인법 §60①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정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법 §60①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관련 사례

1) 사업기회

(의미)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19.12.27.)

(임대차계약)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그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45의4 적용되는 것임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5)

-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거래유형)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
- (증여이익)

$$[\text{해당 거래이익} - (\text{법인세산출세액} \times \frac{\text{해당 거래이익}}{\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times \text{주주 등의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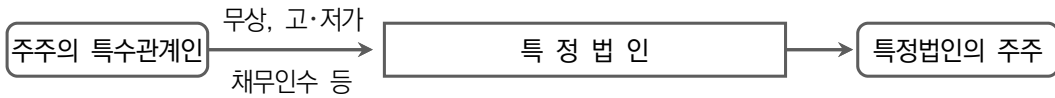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게 재산(용역)을 증여하거나 현저한 저가·고가거래 등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5의5)78).

이는 결손법인이나 휴면법인 등의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취득시킨 후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대신변제 해주는 방법을 통해 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켜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6.12.30. 신설되었다. 그 후 과세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으나, 법원의 무효 판결이 있었으며, 2016.1.1. 이후 증여예시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2014.1.1. ~ 2019.12.31.에는 흑자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특정법인을 ①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휴·폐업 상태인 법인으로만 정하였으나,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추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0.1.1. 이후에는 특정범위의 범위를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하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개정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하였다.

78) 2015.12.31. 이전에는 상증법 §41



✔ **특정법인 및 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연혁**

□ (2003년 - 2015년 결손법인 관련)

- (1997년 신설) 증여의제규정으로 신설
- (대법원 패소)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대법원2003두4249, 2003.11.28.)
- (2004년 개정) 증여의제규정에서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 이익 계산방법 변경
 - (변경전) 채무면제 등으로 증가된 1주당 가액 × 주식수
 - (변경후) 채무면제이익 등 × 출자비율
- (대법원 패소)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31⑥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대법원 2006두19693, 2009.3.19.)
- (2010년 개정) '이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변경
- (대법원 패소)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31⑥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대법원2015두 45700, 2017.4.20.)

〈 구 상증령 §31⑥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 불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8.6.14.) 〉

- 구 상증령 §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 §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 §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 2014.2.21부터 2016.2.5.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령 §31⑥(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 (2014년)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영리법인을 추가

- 결손금 한도규정을 삭제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익계산

□ (2016년) 증여예시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

□ (2020년) 특정법인의 범위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하고, 한도를 신설

1 과세요건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

특정법인은 2020.1.1. 이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상증령 §34의3(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①에 따라 판단한다.

2019.12.31. 이전 특정법인은 아래와 같다.

-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령 §18① 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 3) 증여일 현재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상증법 §45의3①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직접보유비율 + 간접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19.12.31. 이전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7.22.).

2014.2.20. 이전에는 상장법인을 제외하였으나, 2014.2.21. 이후에는 상장법인을 제외하지 않는다.

나. 과세대상

-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
-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 4)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것

다.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의 범위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41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른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특수관계인 개정연혁

2019.12.31. 이전	2020.1.1. 이후
① 결손 ② 휴폐업법인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③ 흑자영리법인 :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 등으로 있는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3 증여재산가액

가.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각 주주의 증여이익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각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020.1.1.

이후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left[\text{특정법인의 이익} - \left(\frac{\text{법인세산출세액}}{\text{(공제·감면액 차감)}} \times \frac{\text{특정법인의 이익}}{\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right) \right] \times \text{주주 등의 지분율}$$

법인세 산출세액은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유형별로 산식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고, 법인세상당액을 계산할 때(해당 거래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상당액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을 볼 때의 증여세를 말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해당 거래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5 ⑨).

증여재산가액 개정연혁

구분	'13.12.31.이전	'14.1.1.이후	'20.1.1.이후	'22.2.15.이후
증여의제 이익	특정법인의 이익 × 지분율	(특정법인의 이익 - 법인세상당액) × 지분율	(특정법인의 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 지분율	(특정법인의 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 지분율
과세요건	결손금 한도	삭제	증여의제이익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 0	직접 증여 증여세액 - 법인세 상당액 > 0

* 직접증여 증여세액 : 특정법인의 이익 × 지분율 × 증여세율

* 법인세상당액 :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 지분율

이 경우,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 제과-434, 2019.6.18.).

1) 재산증여

$$\text{증여이익} = (\text{해당 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 - \text{법인세상당액}) \times \text{지분율}$$

2) 채무면제·인수·변제

$$\text{증여이익} = (\text{해당 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 - \text{법인세상당액}) \times \text{지분율}$$

3) 저가양도

$$\text{증여이익} = (\text{시가} - \text{대가} - \text{법인세상당액}) \times \text{지분율}$$

4) 고가양수

$$\text{증여이익} = (\text{대가} - \text{시가} - \text{법인세상당액}) \times \text{지분율}$$

5) 저가 현물출자

$$\text{증여이익} = (\text{시가} - \text{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 \text{법인세상당액}) \times \text{지분율}$$

나. 주주 등의 지분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



예시

○ 아래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 2020. 10. 31. 甲이 A법인에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함
- A법인은 2018, 2019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15억원이 있음
 - 甲 20,000주, 乙(甲의 장남) 40,000주, 丙(甲의 차남) 5,000주, 丁(타인) 35,000주
 - 법인세 상당액은 1억으로 가정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①)	증여가액(②)	증여금액(② × ①)
甲	본인	20,000	20%	9억 (10억-1억)	과세제외(본인)
乙	장남	40,000	40%		3.6억
丙	차남	5,000	5%		과세제외(1억 미만)
丁	타인	35,000	35%		과세제외(타인)
합 계		100,000	100%		

- 갑은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고, 병은 1억원 미만으로, 정은 갑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제외함
-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서면4팀-1078, 2007.4.3.)

4 증여시기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유형, 즉 재산의 증여, 무상제공, 채무의 면제·인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증여시기를 판단한다.

5 증여세 신고기한

특정법인의 법인법 §60①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관련 사례

1) 본인 증여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제외(서면4팀-328, 2006.2.17.)

2) 과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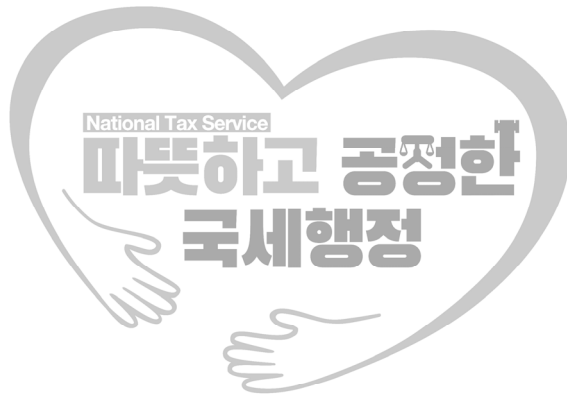
(초과배당)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4, 2019.6.18.)

(불균등유상증자)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 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17.5.17.)

(불균등유상감자)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1-자본거래-0666, 2021.3.23.)

3)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NEW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23.5.19.)



제3편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463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479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510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520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조세의 납세의무 확정방식에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자동으로 확정되는 신고주의와 정부가 과세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부과주의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부과 과세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상속이 개시 되거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속·증여세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정부는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에서의 신고행위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 하는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91다16952, 1991.9.10.).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상증법 §67)

1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상증법 §67)

- (신고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특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가. 신고 의무자¹⁾

1) 상속세 신고의무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민법상의 법정상속인·대습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자·특별연고자 등을 말하며, ‘수유자(受遺者)’는 유증(遺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사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그 영리법인의 주주등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3의2).

2) 상속 포기자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를 할 수 있으며(민법 §1019),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1) 상속인이 상속신고서를 요구할 때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제공하여야 함(법규과-4811, 2006.11.9.)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1042) 민법상으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증법상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주소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	국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국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지정·선임된 경우에는 지정·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는 위의 신고기한 내 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재산세과-2095, 2008.8.1.).

다. 상속세 신고서와 첨부할 서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상속세 신고서와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신고서식

① 본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2018.1.1. 이후부터는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 한다. 다만, 신고·납부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text{결정한 상속세액}^* \times \text{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발생일까지의 일수} \\ \times \text{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5\%)} / 365$$

* (사후관리 위반한 가업(영농)상속공제금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상속세액

② 부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2)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3)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3의2)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4(갑),(을))

2)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① 해당시 추가 제출서식

-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2③)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부표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부표 가업용자산명세
- 영농상속공제(상증법 §18의3②) →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 §19②)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장애인공제(상증법 §20) → 장애인증명서
- 금융재산상속공제(상증법 §22)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동거주택상속공제(상증법 §23의2)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
- 재해손실공제(상증법 §23) →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29)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연부연납(상증법 §71)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물납(상증법 §73) →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 신청서

② 사실관계 증빙제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상속인이 행정정보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가업상속공제 등 공제요건 입증서류
- 공과금, 장례비, 평가수수료 등 증빙서류

2 상속세 자진납부(상증법 §70)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가. 상속세 자진납부시기

상속세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자진납부세액 계산

$$\text{자진납부할 세액} = (\text{상속세 산출세액}) - (\text{다음의 금액})$$

- ①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상증법 §74)
- ② 증여세액공제(상증법 §28)
- ③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29)
- ④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증법 §30)
- ⑤ 신고세액공제(상증법 §69①)
- ⑥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상증법 §71)
- ⑦ 물납을 신청한 금액(상증법 §73)

다. 상속인별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상증법 §3의2(상속세 납부의무)에 따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전체 상속 세액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 상속세의 분할납부

분할납부제도란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세금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세금납부 편의제도이다.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할납부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나)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제2절

증여세 신고 납부(상증법 §68)

-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기한 특례)
 - ① 상증법 §41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 §41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정산기준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② 상증법 §45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4(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상증법 §68)

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의 특례

1) 정산기준일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및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만약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해당 주식 등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다.

2) 증여세 정산과 관련된 신고기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정산사업연도”)까지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법 §60①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할 때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로 한다. 소득법 §70의2①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6.30.이다.

다. 증여세 신고서와 첨부할 서류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2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고서 그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첨부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누락 기재한 증여재산은 무신고한 것으로 본다(서면4팀-2926, 2006.8.24.).

1)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②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 서식)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 서식부표)
- ③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3 서식)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부표 1, 2, 3)
- ④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4 서식)와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4 서식부표 1, 2, 3, 4)

2)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가) 해당시 추가제출 서식

- ① 재해손실공제(상증령 §47) →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②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59)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③ 연부연납신청(상증법 §71)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나) 사실관계 증빙 제출

- 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②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경우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그 밖의 입증할 서류

2 증여세 자진납부(상증법 §70)

가. 증여세 자진납부 시기

증여세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자진납부세액 계산

$$\text{자진납부할 세액} = (\text{증여세 산출세액}) - (1) \sim (6) \text{의 금액}$$

- 1) 박물관자료의 징수유예(상증법 §75)
- 2) 납부세액공제(상증법 §58)
- 3)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59)
- 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감면세액(조특법 §71)
- 5) 신고세액공제(상증법 §69②)
- 6)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상증법 §71)

다. 증여세의 분납

분납은 별도의 분납신청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납신청을 대신한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이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가)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분납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국기법 §45)

가. 수정신고 대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 2) 수정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 3)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수정신고의 효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그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감면한다(국기법 §48②, 2020.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한 후 신고(국기법 §45의3)

가. 기한 후 신고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한 후 신고의 효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해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기한후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국기법 §48②, 2020.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기한 후 신고의 결정통지

납세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45의3).

3 경정 등의 청구(국기법 §45의2)

가.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45의2①).

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결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45의2②, 국기령 §25의2).

-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 5)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아래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정 등의 통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특례(상증법 §79)

가. 경정청구 특례 대상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경정 등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37), 금전무상대출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 및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른 이익(상증법 §42)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경정 등 청구사유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가)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민사집행법상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나) 상증법 §63③에 따라 주식 등을 할증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 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실제 매각가액”이 아닌 “할증 평가 전의 주식 등 평가가액”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주식 등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할증 평가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위의 경정청구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2021.2.17.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상속재산이 다음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아래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하도록 하였다.

- 3)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증법 §37)는 부동산 무상사용 개시시점에서 5년간 임대료 상당액을 先 과세하는 바, 5년의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 나)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라)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4) 금전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상증법 §41의4)는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5)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상증법 §42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 사례

1) 확정판결의 의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서 ‘확정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2015.8.19.)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

연부연납(상증법 §71)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91누9374, 1992.4.10.).

1

연부연납 신청요건

-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②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 신청
- ③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국기법 §45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0.2.11. 이후 연부연납 신청하는 분부터는 국기법 §45에 따른 수정신고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수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수정 신고시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 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증법 §4의2⑥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담보물 (국징법 §18.1~4호)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가.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속세는 9월, 증여세는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나. 수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2020. 2. 11. 이후 상속·증여세 수정 신고분부터는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정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는 9월, 증여세는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는 9월, 증여세는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라.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통지한다.

이와 같이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증여세 연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임)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하지 않았으나, 2010.2.18. 이후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를 서면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기본법상 제47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 특정 납세담보제공과 함께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연납 자동허가

2009.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국징법 §18 1호부터 4호까지의 납세담보²⁾(금전, 국채·지방채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를 제공하면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71 ① 후단).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허가일자가 되고, 별도로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불필요하다.

2) '21.1.1. 시행 규정이며 이전에는 국기법 제29조제1호 ~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

바.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방법 개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므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2013.2.23. 이후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를 받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부연납과 납세담보의 제공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 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징법 §18부터 §2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연부연납기간

가. 증여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부터 15년³⁾, 이외의 증여재산은 연부연납을 허가일부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3) 2024.1.1. 이후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상속세 중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은 기업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 상속세 중 기업상속재산이 포함된 경우

1) 2023.1.1. 이후

기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기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포함)은 연부연납 허가일부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한다. 2023.1.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특례 연부연납

2019.12.31. 이전의 연부연납 특례(10년 등)를 적용받기 위한 기업상속재산은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이며 신설된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2019.1.1. 상속분부터 적용)'은 제외한다. 기업상속재산에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유아교육법 §7.3호에 따른 교지, 실습지, 교사 등의 상속재산을 포함한다.

기업상속재산의 비율은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 중 기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0.1.1.이후 상속부터 연부연납 기간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증법 §18의2①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아래의 가)의 상속재산을 아래의 나)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중견기업 판정시 매출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 기업상속재산

기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아래 나)의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 ① 소득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2021.1.1. 이후 상속부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② 법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① 조특령 §2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9④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②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3) 2022.12.31. 이전 연부연납기간

가) 기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은 분부터 적용)

나) 기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은 분부터 적용)

라. 연부연납기간의 변경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상증통칙 71-0...1).

5 연부연납에 의한 분할 납부세액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 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한다(상증령 §68).

가. 증여세 및 일반 상속재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나. (2022.12.31. 이전 상속세) 기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다. (2022.12.31. 이전 상속세) 기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나’와 ‘다’에 따른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 (\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6 연부연납기간 중 경정으로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의 방법

연부연납 기간 중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상증통칙 71-68…4).

7 연부연납의 취소와 징수

가. 연부연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사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신청하여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납부예정일자를 말한다.
-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납기 전 징수사유(국징법 §9① 각 호)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다음의 가업상속공제 금액 추징사유(상증령 §68⑥)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동일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 가) 상증령 §68④에 따른 상속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증령 §15⑧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만, 상증령 §15⑧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다)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상증령 §15⑧3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5)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가)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 나)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연부연납허가 취소 또는 변경 방법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허가취소 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 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의 4) 또는 가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허가일부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 ② (2023.2.28.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변경하는 경우부터)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상증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상증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상증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 ③ 그 밖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8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 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이자율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2020.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2023.2.28. 이후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직전 납부기한 다음날 ~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단, 2023.2.28.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3.2.28. 이후 납부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연부연납 허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계산한다(재삼46014-1793, 1998.9.18.).

가. 연부연납이자율

연부연납 이자율은 2020.2.10. 이전까지는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2020. 2.11. 이후 신청분 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기령 §43의3②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5.3.6. ~'16.3.6.	'16.3.7. ~'17.3.14.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3.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연 2.5%	연 1.8%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2020.2.10. 이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상증령 §69의 개정규정(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상증령 부칙 제30391호, 2020.2.11.).

이 경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신청(다만, 2020.4.30.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부일 현재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상증규칙 부칙 §5).

이자율 관련 개정연혁

2010.2.18.	2016.2.5.	2020.2.11.	2023.2.28. 이후
국세청 고시에서 국기령으로 이관	신청일 현재 이자율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2.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가능)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 적용)

나.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① 첫회분 납부할 가산금

$$\text{연부연납허가 총 세액} \times \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times \text{납부일 현재 이자율}$$

② 2회분부터 납부할 가산금

$$\left(\text{연부연납허가 총 세액}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right) \times \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times \text{납부일 현재 이자율}$$



관련 사례

1) (2016.2.4. 이전)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기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 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법원)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대법원2019다228247, 2019.8.14.)

⇒ 2016.2.5. 이후 신청일 현재 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2020.2.11. 이후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2)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재산 납세담보 제공 가능

내국인이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2.27.)

제2절

물납 제도(상증법 §73)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인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납부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가격이 낮아 국고손실이 발생하거나 물납 허가를 받은 수증자가 이러한 가격차이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2016.1.1. 이후부터는 증여세 전체가 물납을 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하지 못하여 그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야 한다거나 수증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하지 못하게 된 결과 세금납부를 그 원칙적인 방법인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헌재2013헌바137, 2015.4.30.).

2018.4.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과 상장주식등을 초과하는 세액만 물납을 허용하였고, 선순위 물납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대신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액이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가액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20.2.11.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 물납 신청 후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물납 불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의무와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의무를 부여하여 납세자의 자기시정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였다.

1 물납 신청요건

- ①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1/2 초과
-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증여세는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는 물납을 할 수 없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다.

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①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하고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74② 1호부터 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상속인·수유자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다.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불포함)의 가액을 초과할 것

금융재산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2017.3.27.)

물납 대상 개정연혁

2007.12.31. 이전	2008.1.1. 이후	2016.1.1.이후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상속 - 비상장주식 물납 제한적으로 허용 증여 -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	증여세는 물납 불가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가. 물납 신청

물납의 신청기간은 연부연납 신청기간을 준용한다(상증령 §70).

1)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신청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물납신청

2020. 2. 11. 이후 상속세 수정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 신고와 함께 물납허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한 후 신고시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신청

기한 후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부고지세액의 물납 신청

신고기한 내 신고시 물납 신청한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해당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에는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납신청이 가능하지 않았으나, 2020.2.18. 이후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상증령 §67).

이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 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서면4팀-457, 2008.2.25).

5)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3.2.14.이전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3.2.15.이후 연부연납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허가하였다.

6) 물납신청 철회의무 부여

2020.2.11. 이후 물납신청 분부터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상증령 §71①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한다(상증령 § 70⑧, 2020.2.11. 신설).

7) 재평가 신청 의무 부여

2020.2.11. 이후 물납신청 분부터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 재산이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등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증령 §75①3호각목)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상증령 §70⑧, 2020.2.11. 신설).

나. 물납 허가

1)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허가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2) 수정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허가 기한

2020.2.11. 이후 상속세 수정신고 분에 대한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3) 기한 후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허가 기한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는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4) 납부고지세액의 물납허가 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5) 물납허가 기한의 연장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물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여 국유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자동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재산을 분할하여 물납해야 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물납 재산의 수납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상증령 §71).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서가 접수되면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징수사무처리 규정 §35).

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상증령 §71①)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재산별로 규정하였으며, 유가증권(②)의 경우 2020.2.11. 이후 물납신청부터 적용한다.

-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②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 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시부터 허가 시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나. 물납 재산의 변경 등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3월)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물납허가기간 내 물납 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물납 세액의 범위

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증령 §73①).

- 1)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이 때 유가증권의 범위에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①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함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74② 1호부터 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2)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물납한도 = MIN(①, ②)**

- ① 상속세 납부세액 × $\frac{\text{부동산} + \text{유가증권의 가액}}{\text{상속재산가액}}$
-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가증권가액(처분제한 주식은 제외)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예시 (2018.4.1. 이후 물납한도 계산)

- 상속세 납부세액 30억원, 상속재산 85억원 : 오피스텔 10억원, 토지 35억원, 금융재산 40억원
☞ Min(①, ②) = 물납불가
- ① 30억원 × (45억원* / 85억원) = 15.88억원
* 오피스텔 10억원 + 토지 35억원
- ② 30억원 - 40억원(금융재산) = △10억원
- 상속세 납부세액 45억원, 상속재산 100억원 : 토지 30억원, 비상장주식 30억원, 상장주식 10억원 (처분제한 없음), 금융재산 30억원
☞ Min(①, ②) = 5억원
- ① 45억원 × (60억원* / 100억원) = 27억원
* 토지 30억원 + 비상장주식 30억원
- ② 45억원 - (30억원 + 10억원)* = 5억원
* 현금전환이 용이한 (금융재산 30억원 + 상장주식 10억원)

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계산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한도 산정시 제외한다.

다. 비상장주식등 물납 가능 범위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까지 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text{비상장주식등 물납 가능 범위} = \text{상속세 납부세액} - \text{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



예시 (2018.4.1. 이후 비상장주식 물납가능여부)

- 상속세 납부세액 45억원, 상속재산 100억원 : 토지(30억원), 비상장주식(40억원), 기타 상속재산(30억원, 물납대상 아님)
 - ☞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60억원)으로 상속세(45억원) 납부가 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불가능
 - * 토지(30억원) + 기타 상속재산(30억원)
 - (종전) 토지(30억원)로 상속세(45억원) 총당이 안되므로 비상장주식 물납가능
- 상속세 납부세액 20억원, 상속재산 60억원 : 토지(30억원, 저당권 1억원 설정), 비상장주식(20억원), 기타 상속재산 (10억원, 물납대상 아님)
 - ☞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39억원)으로 상속세(20억원) 납부가 가능하므로 비상장 주식 물납 불가능
 - * 토지(30억원 - 저당권 설정액 1억원) + 기타 상속재산(10억)
 - (종전) 선순위 물납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가능

5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상증령 §74①).

- 1) 부동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 충당이 가능
- 2) 유가증권

가)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기타 아래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물납할 수 없다.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이 경우,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으로 충당 가능하다.

- 비상장주식

이 경우, 상속세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아래 “나. ① ~ ③”의 선 순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 가능하다.

나. 물납의 충당 순서

상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상증령 §74②)

- ① 국채 및 공채
- ② 물납 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위 ①재산은 제외)
- 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아래 ⑥의 재산을 제외)
- ④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위 ①, ②, 아래 ⑤ 재산은 제외)

- ⑤ 물납 충당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
-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관련 사례

1) 증여후 상장된 주식의 물납

상증법 §39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 당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된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상장된 그 해당 주식은 물납신청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증령 §75의 각 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4, 2011.9.27.)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물납신청에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임(재산세과-153, 2012.4.19.)

3)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 포함 여부

상증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상증령 제74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64, 2018.7.2.)

4) 물납신청 요건 중 유가증권의 범위

상속세의 물납 신청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상속증여세과-636, 2013.12.31.)

5)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 판정시기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를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조세법률운용과-1177, 2022.9.20.)

6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한다(상증령 §75).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주식의 경우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수의 변동에 따른 1주당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수납가액을 조정하여 조정 후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수납일 전에 주식발행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이란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상증령 §75①, 상증규칙 §20의2① 1호 및 2호).

1)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 배정 수}}$$

2)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text{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 \times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공모증자·조특법 §49에 의한 합병(금융기관구조조정법에 의한 합병)·특별법에 의한 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시에는 수납가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3)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4)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text{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text{주당 지급금액} \times \text{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1 - \text{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산식에 따른 수납가액 결정방식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상증령 §75①1호 단서 및 상증규칙 §20의2②),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할 때의 주당 평가액대로 수납하여야 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에 따라 공모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나) 특별법에 따라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예시

2020.8. 상속개시	① 무상증자	② 유상증자	2022.11. 물납수납
▲ 과세가액 @10,000 주식총수 100주	△ 1 : 0.5 신주 50주	△ 1 : 1 주금납입액 @5,000	▲

- 무상증자만 있는 경우

$$\frac{\text{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0,000}{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0.5} = @6,666$$

- 유상증자만 있는 경우

$$\frac{@10,000 + (@5,000 \times 1\text{주})}{1 + 1} = @7,500$$

- 무상증자 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frac{@6,666 + (@5,000 \times 1\text{주})}{1 + 1} = @5,833$$

나.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특령 §28①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상증법 §60②에 따라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 2) 상증법 §60③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까지는 연부연납에 의한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평가를 수납일 현재의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납허가 통지시점과 수납일 사이에 물납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환급(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과다 물납) 또는 추가 납부(가격이 하락한 경우 과소 물납) 등의 문제가 있어 물납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납허가 통지일 전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였다(1998.12.31. 개정).

다. 유가증권의 가액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 특례

물납재산인 유가증권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 당시의 평가 가액으로 수납함으로써 물납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물납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 연도의 배당금에 비해 증가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한다.

- 1) 상증법 §60②(시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 2) 상증법 §60③(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물납 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함)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 평가액에 가산한다.

물납 주식 재평가 개정연혁

2020.2.10. 이전	2020.2.11. 이후
물납기간 중 해당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50% 이상 하락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등 물납재산에 대해 수납가액을 재평가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격기준을 30%로 하향 조정

7 물납재산의 환급

납세자가 상증법 §73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한다(국기법 §51의2).

- 가.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순서에 따라 환급한다.
- 나.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령 §74②에서 규정한 물납충당 재산의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한다.

제3절

문화재 등의 물납(상증법 §73의2)

1 물납 요건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문화재 등')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상증법 §73의2, '21.12.21.개정).

-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 물납 대상

- ①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 ②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3 물납절차



가. 신청

납세의무자가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9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 통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물납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①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 ②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 ③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라. 허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기간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②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4 수납일 지정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한다.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물납 신청 한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 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가액과 상장 유가증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6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 상속재산의 가액

7 물납 불허 사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1)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2)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 3)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상증법 §76)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사 내용과 동일하다면 정부는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조사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된 내용으로 결정하고 조사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납세의무를 확정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정이란 납세의무를 정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정 시키는 행위(처분)를 말하는 것이다.

나. 수시 결정

아래 어느 하나의 수시부과 사유(국징법 §9(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다.

-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 5)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다. 신고 분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상증법 §76)

법정결정기한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재산세과-527, 2010.7.19.). 상증령 §78①2호는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가산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서울행법2011구합28509, 2012.2.3.).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정결정

세무서장 등은 당초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처음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결정 또는 당초 결정이라 하고, 당초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다시 고쳐 결정하는 처분을 경정 결정이라 한다.

1) 증액 경정의 효력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기법 §22의3①).

2) 감액 경정의 효력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기법 §22의3②).

2 고액 상속인 재산 사후관리

세무서장 등은 고액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당초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탈루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규정이다(상증법 §76⑤).

가. 사후관리대상

세무서장 등이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이라 함)까지의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사후관리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 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관리 대상 주요 재산의 범위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조사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현저히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주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부동산 ② 주식 ③ 금융재산 ④ 서화·골동품 ⑤ 그 밖의 유형재산
⑥ 무체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

다. 경정조사 적용 배제

상속인이 그 증가한 주요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다음의 1)~3)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사례

1) 상속포기

세무서장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통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과 통지의 효력은 변동이 없음. 다만, 당초 각 상속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중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이를 취소하고, 취소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추가 고지함(재삼46330-4573, 1993.12.21.)

2) 연대납세의무자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 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 상속인에게 저마다 교부한 납세처분은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효력을 갖는 것임(대법원93누10316, 1993.12.21.)

3)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납세고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국가 패소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국기법 §26의2②에 의해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93누4885, 1996.5.10.)

4)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통지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 신청자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2010.4.8.)

5)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범위 기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 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9.26.)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상증법 §83)

금융재산 일괄조회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⁴⁾할 수 있다(상증법 §83).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 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
- 나. 사용목적
- 다.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이 경우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금융재산의 개별 조회 법적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① 2호이다.

제3절

질문조사권(상증법 §84)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상증법 §84).

- 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 피상속인 또는 “가”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상증법 §82에 규정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1 조사원증의 제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상증법 §86).

2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증법 §84(질문·조사)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그 감정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상증통칙 84-0...1).

3 과태료 부과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2.15 국기령 별표1). 과태료의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대한 세법의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증법 제84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국기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부정 행위”)와 다음 구분에 따라 관련 된 경우 가목부터 바목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등으로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세의무자등이 아닌 자로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제4절

납세관리인

아래의 경우 상속세의 신고·납부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20의2①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국기법 §82).

- 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
- 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
- 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1 납세관리인의 업무 및 권한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 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나.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 다.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또한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국기통칙 82-0...1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 가.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 §128)
- 나. 납세자의 사망
- 다.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2 납세관리인의 설정·변경·해임의 신고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변경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납세

관리인 설정(변경, 해임) 신고서(국기규칙 §33의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설정시 :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소(거소), 설정의 이유

나. 변경시 : 납세자 및 변경 전·후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소(거소), 변경의 이유

그러나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하여진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고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서(국기규칙 §33의3의 별지 제43호의3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증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5 상속세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발급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려면 먼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국기규칙 서식 제43호의2)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 각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가산세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2007.1.1.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공통적인 가산세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신고 관련 가산세⁵⁾·납부지연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2015.7.1. 이후	○ 가산세 계산 기준을 납부세액으로 단순화
	- 가산세율 : 무신고납부세액의 $\frac{\text{일반}}{20\%}$ $\frac{\text{부정}}{40\%}$ $\frac{\text{부정(국제거래)}}{60\%}$

가. 일반무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증여세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기법 §47의2①).

5)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text{일반무신고가산세} = \text{무신고납부세액}^* \times 20\%$$

*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 포함) - 징수유예액 - 공제·감면세액

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국기법 §26의2①1호)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기법 §47의2①).

$$\text{부정 무신고가산세} = \text{무신고납부세액} \times 40\%(\text{국제거래 부정행위는 } 60\%)$$

다. 사전증여 및 재차증여 합산과세 누락 시 기납부세액 차감

2015.7.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때 기납부세액(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경우 : 상증법 §28(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 공제) 또는 §58(증여세 계산시 납부세액 공제)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국기법 §47의2②).

라.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국세청,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 2007. 참조)

-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록
 - 최대주주 등 이중장부의 작성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당해 이중장부를 근거로 주식·출자지분 등을 실질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된 장부를 실질거래 내용과 다르게 작성
- ②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이하 “거짓증빙 등”이라 함)
 -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작성하거나, 상속·증여계약서 등을 거짓 작성
 - 재산평가기관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한 감정 서류를 근거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대한 거짓계약서를 제출

- ③ 거짓증빙 등의 수취(단, 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거래사실 없이 또는 거래사실과 다르게 계약서, 입금표 등을 수취
-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장부, 기록·문서 및 증빙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등기원인 등을 다르게 하여 증여행위를 은폐
 -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미등기·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 행위를 매매 행위로 가장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 기타 위와 유사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은폐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⑥ 국세 포탈 및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당사자 간의 통정에 의해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판결문(결석 재판) 등을 근거로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2 과소신고 가산세

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함)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기법 §47의3①).

$$\text{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text{과소신고납부세액 등}^* \times 10\%$$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가산세·이자상당액 제외) =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 신고한 납부세액

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국기법 §26의2①1호)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기법 §47의3②1호).

1)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

$$\text{부정과소신고가산세} = \text{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times 40\% (\text{국제거래 부정행위는 } 60\%)$$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위 1)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총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text{일반과소신고가산세} = [\text{총과소신고납부세액} - \text{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times 10\%$$

3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제적용의 착오나, 평가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증여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7의3④).

이는 2009.2.6.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적용하며, 그 전에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증법 §18(기초공제)부터 §23(재해손실공제)까지, §23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24, §53(증여재산공제) 및 §54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증법 §60②(시가)·③(보충적평가액) 및 §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
- 라. 법인법 §66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법 §45의 3부터 §45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5.1.1. 이후 증여세 결정분부터 적용)

4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2015. 6. 30. 이전 상증법 §76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 국기법 §47의3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구 국기법 §47의2③ 1호)

이는 산출세액은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 관련 가산세

상속세·증여세 결정·경정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구 국기법 §47의2⑧, §47의3③).

→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가.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2010.12.27. 개정된 국기법 §47의2⑧, §47의3③은 국기법 부칙 §4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증법 §78①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증법 §78①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기법 §47의 2⑧(재차증여 합산과세무신고가산세 부과시 기납부세액 차감), §47의3③(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시 기납부세액 차감)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2011.6.3).

2012.1.1. 이후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여 조문을 개정하면서 위 내용을 국기법 §47의2⑤, §47의3⑤, 국기령 §27①4호로 규정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증법 §28(상속세 계산시의 증여세액 공제) 또는 §58(증여세 계산시의 납부세액 공제)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계산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고 가산세를 계산한다.

나.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증법 §28①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서면법규과-27, 2013.1.14.).

$$\left(\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text{결정 과세표준}} - \text{증여세액 공제액} \right) \times 10\%$$

6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국기법 §47의4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0.022%)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자율(1일 0.025%) 적용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2020.5.1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된다. 즉, 법인법 §66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법
§45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1) 평가차이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재부)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기재부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법원) (요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2013누6079, 2013.9.11.)

2) 평가심의위원회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기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조세
법령운용과-154, 2020.1.30.)

⇒ (2021.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부터) 국기법 §47의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에 상속세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자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산평가하여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를 추가함

3) 기한후신고 물납을 허가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457, 2008.2.25.)

7 가산세의 면제·감면(국기법 §48)

국기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기법 §6의 규정(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

(2007.2.28. 이후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 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의무위반의 정도나 원인 등을 살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또는 책임이 작다고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당한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

-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납세자에 있어서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며 과세객체(상속재산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실 등에 한정하고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의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나 착오 문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관청에 상담·질의 등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한 회신이나 납세지도가 잘못된 경우, 일관된 태도는 아니나 과세관청의 언동(행위)과 납세자의 귀책 사유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나. 기한연장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②)

1)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한다(국기법 §48②, 2020.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기한후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국기법 §48②, 2020.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경우

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 가산세 등에 한한다.
2007.1.1. 이후 최초로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가산세에 한한다.

8 가산세의 한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 위반의 종류 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상속·증여세법 상의 가산세(상증법 §78)

1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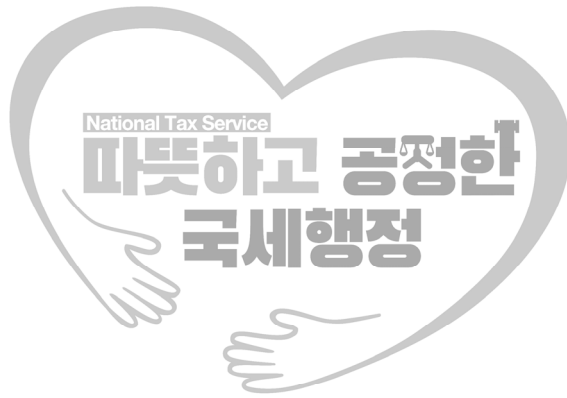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미(누락)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명세서 구분	미(누락)· 불분명 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보험, 퇴직금 등, 전환사채 (상증법 §82①·⑥)	2/1,000 2010.12.27 개정, 2011.1.1.이후 결정·경정분 부터 적용(중전 : 2/100, 1/100)	1/1,000
주식, 공채·사채·채권·특정시설물 (골프회원권 등), 신탁재산, (외국)집합투자증권(상증법 §82③·④),	2/10,000 (외국)집합투자증권은 2021.1.1.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0,000
금융투자업자 주식등 증권계좌 이체내역 (상증법 §82⑦)	- 2022.1.1.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

“불분명 제출”이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령 §80⑩).

-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 ② ①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 사후관리 관련 가산세는 국세청 발간 책자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4편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재산의 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533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541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556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597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669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1 재산평가의 의의

재산평가란 특정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하나의 공통의 척도로서 동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다양한 재산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객관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재산의 평가가액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증법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각 재산별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산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인데,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2 재산평가의 기준일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 가액
 - *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각각의 증여일 현재 가액

재산의 가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평가가액이 예측 가능하고 통일되려면 그 평가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시점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016.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장기미명의개서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란 통상 자연인의 사망일을 말하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일, 인정사망일도 상속개시일에 포함된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증여일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시기)를 재산 별로 구분하여 상증령 §24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탁이익의 증여 등 증여 예시 규정과 증여추정, 증여의제규정의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평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당초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전 일정기간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재산처분행위인 증여 당시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사이에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수증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외에 그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다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헌재96허가19, 1997.12.24.)

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처분(인출)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처분가액의 평가는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증법 §60 부터 §66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마. 합산되는 증여재산(재차증여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은 해당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가산되는 각각의 증여 재산의 평가가액은 각각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 따른다.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상증법 §60 등)

1 시가평가의 원칙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상증법 §60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2019.2.12. 이후 증여분부터) 후 3개월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시가산정 곤란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가.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보충적 평가방법¹⁾이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평가방법이다. 상증법 §61부터 §65까지 각 재산종류 별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요건과 입증 책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97누 8502, 1997.9.26.외 다수).

1) 상증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이지만, 이 책에서는 상증법 §60②에 따른 시가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2012두7905, 2015.2.12.).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①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text{재산평가액} = \text{Max}(\text{① 시가 or 보충적 평가가액}, \text{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4 기타재산(국외재산, 공유재산, 할부재산 등) 평가방법

가.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외국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8의3①).

그러나 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의 감정기관(주식 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포함)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5①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4, 2012.2.2. 신설).

나. 재산의 종류 별로 개별평가 및 재산 평가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 평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배율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 1주당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한다(예 : 250.22 → 250).

다. 원물(元物)과 과실(果實)

천연과실의 가액은 원물의 가액에 포함해서 평가하고, 법정과실의 가액은 원물과는 별개로 평가한다. 다만, 장래에 확정될 법정과실 등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이 있거나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관행 및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 ①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 ②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수익)
 -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하며, 자연적·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과수나무에 달린 과일 등)과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석재, 토사 등) 등이 있다.
 -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등(임대차 사용료 등)

라. 연부 또는 할부로 취득하여 상환 완료 전에 있는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통칙 65-0...1). 이 경우 그 뺀 가액이 음수(-)이면 “0”으로 한다.

마. 공유 재산의 평가

공유 재산은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 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타인 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계약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되어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칙 60-49...3).

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

상증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증법 §65①과 §60부터 §64까지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상증법 §65③).

5 2 이상의 재산에 포함된 경우 안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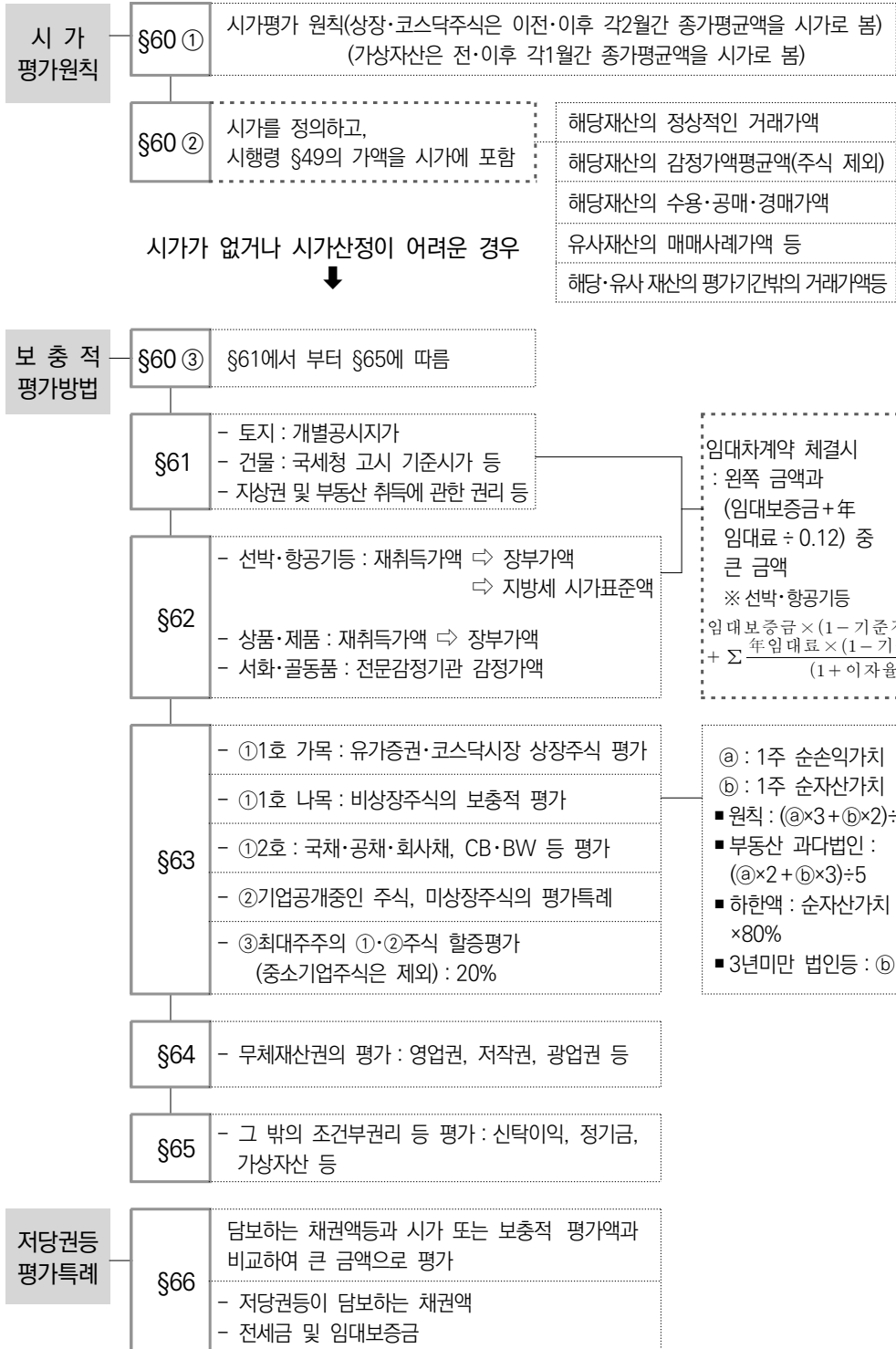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등이 2 이상의 재산에 일괄하여 거래 및 설정된 경우로서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상증법 §61부터 §65까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그러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 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2)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상증령 §49③).

2)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규정 요약〉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이해(상증법 §60)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
 - 동일·유사한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
 -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

1 시가의 개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상증법 §60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을 말한다.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의 개정연혁

2005.1.1. 이후	2011.1.1. 이후	2014.2.21. 이후	2016.2.5. 이후	2019.2.12. 이후
①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후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	①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후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	①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후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 + 자본적 지출액	①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후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 + 자본적 지출액	①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는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 + 자본적지출액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인된 금액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인된 금액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인된 금액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인된 금액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법정 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된 금액
③ 평가기간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	③ (①, ②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기간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	③ (①, ②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기간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	③ (①, ②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기간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	③ (①, ②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기간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

제2절

시가의 적용 기준(상증령 §49)

- 2개 이상의 시가 ⇒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 가장 가까운 날의 판단기준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수용·보상·경매가액 : 가액 결정일

1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증령 §49②).

2019.2.12. 상증령 개정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볼 수 있는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날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평가기간 내의 적용기준

매매거래가액 등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지, 밖에 있는 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아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② 감정가액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 ③ 수용·경매·공매 :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128에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757, 2015.6.12.).

제3절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상증령 §49)

- ①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
- ② ①이 없을 때
 - 동일·유사한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
 -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

시가로 보는 가액은 크게 평가대상인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과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동일·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만 적용한다.

다만, 이들 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령 §49①).

2014.2.21. 이후 평가분부터는 제2절 2. 평가기간 내의 적용기준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평가 등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상증령 §49⑤)

1 평가대상 자산의 거래가액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2012.2.2.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3억원



관련 사례

1) 시가의 판단기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거래연도 2000년)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서울고등법원 2005누24348, 2006.10.17.)

2)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거래가액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령 §49①1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2017.9.26.)

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NEW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무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경우로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상속증여-0747, 2022.2.23.)

2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이 경우, 2018.4.1. 이후 감정의뢰하는 분부터 소득법 §99①1에 따른 부동산(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코스닥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방법 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60②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4.2.21. 평가부터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21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

-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②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
- ③ 해당 감정가액 < 기준금액[Min(㉠ 법 §61·§62·§64 및 §65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동일·유사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의 100분의 90인 경우)]
- ④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기간 동안에 감정한 가액

①, ②에 해당하는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준금액이상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시가불인정감정기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60⑤). 이 경우 시가불인정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상증령 §49⑧)

세무서장 등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에 다음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 ② 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③ 의견제출기한
- ④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시가불인정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상증규칙 §15④)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

-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6월
 -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9월
 -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 1년



관련 사례

1) 소급감정

(심판원)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6월)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조심 2020중0085, 2020.3.10.)

(법원)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2014두3204, 2014.5.29.)

2) 10억원 이하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 재산-2719, 2020.2.4.)

3

평가대상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해당 재산에 수용·공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라 함은 수용보상계약 체결일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면4팀-2244, 2007.7.24.).

가.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매가격 등

- ① 상속·증여세 물납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의 해당 경매·공매가액

물납한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낮은 가액으로 공매를 받고, 그 이후에 해당 주식 등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다.

- ②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 < Min(㉠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원)
- ③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
- ④ 최대주주 등의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2020.2.11. 이후 상속개시·증여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4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도 있겠으나, 통상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시각각 변화하여 특정 시점의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공평과세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법 §63① 1 가목)

5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상속·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1.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은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0.3.2.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0.6.30.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2020.3.31.에 한 경우 2020.4.1.부터 2020.6.30.까지의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2012.2.2. 보완하였다.

또한,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령 §49① 단서).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상증법의 시가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8두8505, 2010.1.28. 외).

2017.3.10.부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상증규칙 §15③).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2019.3.20. 단서신설).

-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019.3.20. 이후 상속·증여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나. “가”외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 개정연혁

기 간 별	내 용
2004.1.1 이후	평가대상재산과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 시가 적용
2011.1.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 적용
2017.3.10. 이후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성의 판단기준 마련(동일단지 내, 전용면적·차이가 5% 내, 공동주택 가격차이가 5% 내)
2019.3.20. 이후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관련 사례

1)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

(국세청)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3948, 2020.4.21.)

(법원_국승) 시세는 2005.2월경부터 2007.4월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 비록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와 달리 그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면적, 용도, 방향이 같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 2018.12.5.선고, 2008구합34481)

(법원_국승)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통상적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수원지방법원 2015.9.9.선고, 2014구합51396)

(조심_국승)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보험 내지 하락폭이 각 2.9%, 3.9%로 미미하여 상증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조심2012서2786, 2012.9.11.)

(법원_국패)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매매계약 상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13.4.24.선고, 2012누35940)

(법원_국패)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2010년도 시지역 6.25%하락)에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변 상가에도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3.4.12.선고, 2012구합31298)

(조심_국패) 부동산 매매계약일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조심2012서 0956, 2012.3.30.)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2이상일 때

(2017.3.10.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재산세과-1665, 2009.8.12.)

(2017.3.10. 이후) 상증규칙 §15③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준2018 법령해석재산-0197, 2018.9.3.)

3)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수용보상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재산세과-4169, 2008.12.10.)

4)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상증령 §49④에 따라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같은 조 ①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3, 2021.3.8.)

5)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76, 2021.10.29.)

6)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의 의미 NEW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서면-2021-법규재산-8421, 2022.9.7.)

6

평가심의위원회

아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상증령 §49의2).

- ① 상증령 §49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 ② 상증령 §54①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 방법(2017.7.1. 이후 상속증여부터)
- ③ 상증령 §49⑦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017.7.1. 이후 세무서장 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 ④ 가업상속, 가업승계 사후관리 시 업종의 변경(2020.2.11. 신설)
- ⑤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2020.2.11. 신설)
- ⑥ 상증령 §49①1호나목에 따라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납세자는 위의 대상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증법 §67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상증법 §68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에 해당하는 경우 :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②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상증령 §54①·④, §55 및 §56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상증령 §54⑥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④에 해당하는 경우 :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①, ②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령 §56②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매매등의 가액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자 범위 개정연혁

2016.2.4. 이전	2016.2.5. 이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납세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관련 사례

1) 평가기간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의 심의대상 여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 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61부터 §65까지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재산 종류 별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다(상증법 §60③).

평가원칙	시 가	상증법 §60①·②, 상증령 §49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종류	근 거 법 령
부 동 산	토 지	상증법 §61① 1, 상증령 §50①
	건 물	상증법 §61① 2~4, 상증령 §50③, ④
	구 축 물	상증법 §61④, 상증령 §51④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상증법 §61③, 상증령 §51①~③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록된 재산	상증법 §61⑤, 상증령 §50⑦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치, 입목 ³⁾	상증법 §62①, 상증령 §52①
	상품·제품 등	상증법 §62②, 상증령 §52② 1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상증법 §62②, 상증령 §52② 2
	소유권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자산	상증법 §62②, 상증령 §52②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록된 재산	상증법 §62③, 상증령 §50⑦

재산종류		근 거 법 령
유가증권	상장주식	상증법 §63① 1 가, 상증령 §52의2
	코스닥 상장 주식	상증법 §63① 1 나, 상증령 §52의2
	비상장 주식	상증법 §63① 1 다, 상증령 §54~56
	국·공채, 전환사채 등	상증법 §63① 2, 상증령 §58, §58의2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상증법 §②, 상증령 §57
	예금, 저금, 적금 등	상증법 §63④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상증법 §64
	영 업 권	상증법 §64, 상증령 §59②~③
	어업권 및 양식업권	상증법 §64, 상증령 §59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상증법 §64, 상증령 §59⑤
	광업권, 채석권 등	상증법 §64, 상증령 §59⑥
조건부 권리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상증법 §65①, 상증령 §60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상증법 §65①, 상증령 §61
	정기금을 받을 권리	상증법 §65①, 상증령 §62
	가상자산	상증법 §65②, 상증령 §60②
국 외 재 산	국외재산	상증령 §58의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저당권 등	상증법 §66, 상증령 §63① 1~4
	전 세 권	상증법 §66, 상증령 §63① 5

3)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말한다.

제1절

부동산 등의 평가(상증법 §61)

Max(임대료환산가액, ① ~ ⑥)

-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
- ② 건물(③, ④는 제외)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③ 오피스텔·상업용건물 : 고시가액(토지와 건물 일괄 고시, ㎡당 가액 고시)
- ④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
- ⑤ 분양권 : 불입금액 + 프리미엄
- ⑥ 시설물, 구축물 :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

1 토지의 평가

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재삼46014-1774, 1998.9.17.).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⑧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4①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50).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아래와 같다.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등록 토지
-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③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개정연혁

2016.2.4. 이전	2016.2.5. 이후
20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	지방세법 §4①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20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평가

다. 특수한 경우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⁴⁾

1)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평가시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분할 또는 합병 전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4) 상증 집행기준 61-50-2

- ① 분할된 토지 :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② 합병된 토지 :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3) 환지에정지

환지에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4) 도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 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5) 조성중인 토지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관련 사례

1) 증여일과 고시일이 같은 경우

증여일과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이 같은 날짜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재삼46014-35, 1999.1.7.)

2) 기준시가가 경정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 상증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②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12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재삼46014-1774, 1998.9.17.)

3)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따름(서면4팀-14, 2008.1.4.)

4) 검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그 검용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의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①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 §61①1호(개별공시지가) 및 2호(건물 기준시가)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 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②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①과 ②를 합하여 증여한 토지를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383, 2012.10.26.)

2 건물의 평가

시가가 없는 건물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서 평가한다.

가. 일반 건물의 평가

- ① 기준시가 = $\text{㎡당 금액} \times \text{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② $\text{㎡당 금액} = \text{건물신축가격 기준액} \times \text{구조지수} \times \text{용도지수} \times \text{위치지수} \times \text{경과연수별잔가율}$
 $\times \text{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일반건물은 공동주택, 개별주택, 고시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다.
 - ㎡당 금액 이 1,000원 단위미만은 절사하며, 건물의 면적은 전유,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임

일반건물(공동주택, 개별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제외)의 평가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고시가액은 토지가액을 포함한 건물가격이지만, 일반건물 기준시가는 토지가액은 제외된 건물가액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물기준시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천원 / ㎡) 연혁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50	660	670	690	710	730	740	780	820	830

▾ 건물기준시가 적용대상 연혁

연도별 (상속·증여일)	적용대상 지역 및 건물 유형
1998.1.1.~ 1998.12.31.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시내 위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 즉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 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
1999.1.1.~ 2000.6.30.	기준시가 적용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적용
2000.7.1.~ 2000.12.31.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추가 고시하여 적용
2001.1.1.~ 현 재	상업용 건물 등과 일반주택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통합하여 고시 따라서 현재는 공공업무시설, 발전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당 가액* × 건물면적(전유면적 + 공용면적)

* ㎡당 가액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당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 등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고시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다. 주택의 평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또한, 2010.1.1.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및 건축연면적 165㎡ 이상의 연립주택)을 별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③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거나 2014.1.1. 이후 상속·증여분으로서 주택가격 공시 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거나 지방세법 §4①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거나, 지방세법 §4①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관련 사례

1) 토지만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 평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서면4팀-1462, 2007.5.2., 서면4팀-858, 2008.3.31.)

2) 신축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증여일까지 불입한 부담금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임(서면4팀-969, 2008.4.17.)

라. 철거대상 건물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따라서 평가한다(상증통칙 61-50...2).

마. 건설(신축) 중인 건물의 평가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에 가산한다.



관련 사례

1) 멸실 후 신축 중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501, 2011.10.21.)

사.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와 건물 일괄평가 제외)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이하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함)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4①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51④). 또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상증령 §51⑤).

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 평가액 = Max (① 토지 또는 건물 평가가액, 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현재 12%)]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 12월

평가기준일 현재 법 §60②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은 위의 평가금액(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임대료”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금액과 건물 내 주차장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주차료는 임대료에 포함한다(재산세과-204, 2012. 5.24).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임차권에 대한 평가액도 시가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며, 임차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이 법률조항을 입법자의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헌재2005헌바39, 2006.6.29).

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 적용방법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상증법 §61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기준시가”)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 ②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예시**

- 시가(매매가액) 1억5천만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 1억원이고, 임대료가 3백만원일 때 재산 평가액은?

답 1억5천만원

(∴) 상증법 §60②에 따른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을 적용

- 상증법 §60②에 따른 시가가 없고,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1억5천만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 2억원이고, 월 임대료 1백만원일 때 재산평가액은?

답 3억원

(∴) Max = {1억5천만원, (2억원 + 1백만원 × 12 / 12%)}

- 시가(매매가액) 5억원,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채무 2억5천만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 3억원 및 월세 1백만원일 때 재산평가액은?

답 5억5천만원

(∴) Max = {5억원, (2억5천만원 + 3억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와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

-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5억원,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채무 4억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 3억원 및 월세 3백만원 일 때 재산평가액은?

답 7억원

(∴) Max = (①, ②)

- ①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비교 : 6억원

Max = {5억, (3억원 + 3백만원 × 12 / 12%)}

- 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채권액 비교 : 7억원

Max = {6억원, (4억원 + 3억원)}

**관련 사례****1) 구분등기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을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법 제61조제1항 및 상증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 2021.6.4.)

2) 일괄등기 건물 중 일부만 증여받은 경우

일괄하여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후에는 해당 건물을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따라서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각각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은 해당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전체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상증법 §61①부터 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서면4팀-2866, 2007.10.5.)

3) 임대료의 범위

임대료는 해당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제외되나, 간이고세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됨(서면4팀-3722, 2006.11.9.)

4) 임대료환산가액의 적용기준일

(평가기준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개시)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증여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⑦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며, 다만, 상속·증여일 현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내인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재재산-624, 2005.12.9.)

5) 상가분양권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후에 완성될 건물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61⑦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며, 이 때 상가 분양대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그 미지급한 금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서 뺀 금액으로 계산함(재산세과-21, 2013.1.17.)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상증법 §62 등)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등의 잔존 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상권의 평가

$$\sum_{n=1}^{\text{잔존연수}} \frac{\text{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액} \times 2\%}{(1 + 0.1)^n}, \quad n: \text{평가기준일로부터 잔존연수}$$

지상권⁵⁾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하며,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율 10%로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280 및 §281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상증령 §51①).

-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수목의 소유목적 : 30년
- ② 그 외 건물 소유 목적 : 15년
- ③ 건물 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 : 5년

5)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 점에서 타 물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과 차이가 있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령 §165③(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1②).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0.2.11. 신설).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가격 ×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 사례

1) 조합원 입주권

(국세청)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의 산정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서면 4팀-634, 2007.2.20)

2) 프리미엄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 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령」 §163⑤ 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 차손을 포함하는 것임(재산세과-119, 2009.9.3.)

3 선박·항공기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Max (①, 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①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차 적용
- 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text{임대보증금} \times (1 - \text{기준경비율}) + \sum \frac{\text{각연도의 임대료} \times (1 - \text{기준경비율})}{(1 + 30/1000)^n}$$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4①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상증령 §52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위의 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임대료환산가액은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는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외 유형자산은 부동산의 환산가액(부동산의 평가 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의 적용과 같다.

4 상품·제품 등의 평가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2② 제1호).

이 경우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 가액을 말하며,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상증통칙 62-52...1).

5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2② 2호).

- ① 서화·전적 ② 도자기·토기·철물 ③ 목공예·민속장신구
- ④ 선사유물 ⑤ 석공예 ⑥ 기타 골동품
- ⑦ 기타미술품

6 동물 및 별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유형재산의 평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2② 3).

7 미착상품의 평가

상속개시 당시 미착된 상품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상품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8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가.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 Max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 제외)(“국채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①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민주택채권의 가액은 상증령 §58①1호에 따라 평가한다(재삼46014-2451, 1997.10.16.)

나.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 그 외의 국채 = 처분예상금액.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들의 평가액의 평균액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상증령 §58① 2호).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이 경우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한다(상증령 §58① 2호)

② 그 외의 국채 등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 방법 등을 참작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투자매매업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9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의 평가

전환사채란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 전환사채의 평가액 = Max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①).

2)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 그 외의 전환사채 = 처분예상금액.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평가액의 평균액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전환사채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 이 경우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로 직접 매입한 것은 제외한다(상증령 §58① 2호)

② 그 외의 전환사채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 방법 등을 참작하여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

다음의 가액에 따라서 평가하되,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전환 금지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만기상환금액(이자 포함)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따라서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② 1, 나).

전환사채의 평가액 = {만기상환금액 / (1 + min(R, r))^n}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R : 사채발행이율

r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적정할인율") : 8%

2)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전환사채의 평가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과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뺀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사채의 평가액 = Max(①, ②)

① {만기상환금액 / (1 + min(R, r))^n} + 평가기준일까지의 이자상당액

R : 사채발행이율

r : 적정할인율

②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배당차익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배당기산일 前일까지의 일수] / 365

10 신주인수권증권(warrants)의 평가

신주인수권증권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떼어낸 것으로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①)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Max(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가액에 따라서 평가하되,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a) = {(만기상환금액 / (1 + R)ⁿ) - (만기상환금액 / (1 + r)ⁿ)} 만기상환금액(이자포함)
 R : 사채발행이율
 r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적정할인율), 8%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 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합계액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만기상환금액에는 상환할증금이 포함된다(재재산-1036, 2011.12.2., 재재산-678, 2010.7.14.).



예시

○ 발행가액 : 5,000백만원, 표면이자율 5%, 매년말 지급, 사채의 만기 : 발행후 2년
상환할증금 : 525백만원일 때 사채발행이율은?

답 사채발행이율 : 10%

(∴) 각 연도의 이자와 원금 +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가 발행가액인 5,000백만원에 일치되게 하는 이자율을 말함

$$- 5,775 \times \text{현재가계수} 0.8264 ((n=2, r=10\%) + 250 \times \text{현재가계수} 0.9091 ((n=1, r=10\%) = 5,000 \text{ (백만원)})$$

기 간 말	이 자	원금 + 할증금	합 계
1	250	-	250
2	250	5,525	5,775

2)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위 '1)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과 해당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뺀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② 2호).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b) = Max(①, ②)

① $\{(\text{만기상환금액} / (1+R)^n) - (\text{만기상환금액} / (1+r)^n)\}$

R : 사채발행이율. 만기상환금액 : 이자포함 금액

r : 적정할인율

②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II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의 평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 Max(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가액에 따라서 평가하되,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다.

1)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따라서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② 1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c) = {만기상환금액 / (1 + min(R, r))ⁿ} + 평가기준일까지 이자상당액
 만기상환금액 : 이자포함 금액
 R : 사채발행이율 r : 적정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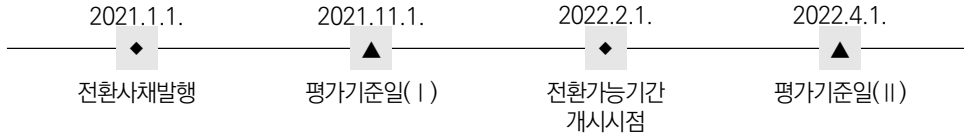
2)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 MAX(①, ②)

- ① (c)
- ② (c) - (a) + (b)
 - (a) 전환금지기간 중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10. 나 - 1))
 - (b) 전환가능기간 중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10. 나 - 2))
 - (c) 전환금지기간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11. 나 - 1))



예시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비분리형) 등의 평가사례



- 사채발행가액 : 10억 액면발행(액면금액 1좌당 10,000원) 상환할증조건 아님
-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 발행 후 3년
- 사채발행이자율 : 연3%
- 신주인수권 내용 : 발행 후 1년 후부터 사채 액면금액@10,000당 신주 1주를 8,000원에 매입할 수 있음.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 액면가액 : 100만주, @5,000
- 2022.4.1. 현재 법인의 주식의 시가 : @12,000
- 직전기 배당률 : 없음.

- 가. 평가기준일이 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에 있는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I)의 평가액
 = ①+②+③ = 1,024,986,301원
- ① 이자의 현재가치 : 10억 × 연3% × 연금현재가계수2.8286(n=3, r=3%) = 84,858,341
 - ② 원금의 현재가치 : 10억 × 현재가계수0.9151(n=3, r=3%) = 915,141,659
 - ③ 발행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21.1.1~11.1.)발생 이자상당액 : 10억 × 3% × 304/365 = 24,986,301
- 나. 평가기준일이 신주인수권행사 가능기간에 있는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II)의 평가액
 = max ((a), (b)) = 1,314,782,809
- (a) 평가기준일(2022.4.1.) 현재의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①+②) = 1,007,479,452
- ① 2021.1.1. 신주인수권부사채가액
 - i) 이자의 현재가치 : 10억 × 연3% × 연금현재가계수2.8286(n=3, r=3%) = 84,858,341
 - ii) 원금의 현재가치 : 10억 × 현재가계수0.9151(n=3, r=3%) = 915,141,659
 - iii) 발행일(2021.1.1.)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치 : 10억
 - ② 발행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22.1.1~22.4.1.) 발생 이자상당액 : 10억 × 3% × 91/365 = 7,479,452
- (b)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차이)
 = (①-②+③) = 1,278,592,452
-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위 나 의 (a)) = 1,007,479,452
 - ② 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 중의 비상장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① - ⑥ = 128,887,000
 - ③ 사채발행이율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의 현재가치 : 10억(액면발행)
 - ④ 적정할인율(8%)을 적용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의 현재가치(i + ii) : 871,113,000
 - i) 원금의 현재가치 : 10억 × 현재가계수0.7938(n=3, r=8%) = 793,800,000
 - ii) 이자의 현재가치 : 10억 × 연3% × 연금현재가계수2.5771(n=3, r=8%) = 77,313,000

- ③ 신주인수권행사 가능기간 중의 비상장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Max[④, ⑥]
 = 400,000,000
- ④ 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 중의 비상장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위 ②) : 128,887,000
- ⑥ 신주 인수할 경우 자본소득 : $1,200,000,000 - 800,000,000 = 400,000,000$
- i) 인수할 경우 주식가액 : $@12,000 \times 100,000 = 1,200,000,000$
- ii) 배당차액 : 없음
- iii) 인수가액 : $@8,000 \times 100,000 = 800,000,000$

1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신주인수권증서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증서화한 것을 말한다.

다음의 가액에 따라서 평가하되,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다.

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한다.

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뺀 금액보다 작으면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text{Min}[\text{권리락 후 주식가액, (권리락 전 주식가액 - 배당차액)}] - \text{신주인수가액}$$

13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평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8②).

가.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text{평가액} = \sum \frac{\text{각 연도별로 회수할 금액(원본 + 이자상당액)}}{(1 + 8\%)^n}$$

n = 평가기준일로부터 회수일이 속하는 연수

대부금 등의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 + 이자상당액)을 이자율(8%)에 따라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상증규칙 §18의2). 이 경우 소득법 §94①4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나. 회수기간이 5년 이내인 대부금 등의 경우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규칙 §18의2②).



관련 사례

1) 5년 경과외 판단

(원본)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4팀-1981, 2007.6.26.)

(입회금·보증금 등)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봄(서면4팀-3537, 2007.12.11.).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입회금·보증금 등에는 잔금 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함(서면4팀-1083, 2007.4.3.)

2) 골프회원권

시설물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14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하며, 이러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③).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그 투자에 따른 배당, 이자 등을 가산하고 부채나 운용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투자한 총좌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준가격에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서일46014-10330, 2003.3.18.).

나. 뮤추얼펀드의 평가

뮤추얼펀드란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평가는 앞의 “가.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15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text{평가액} = \text{예입금액} + \text{미수이자상당액} - \text{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예금·저금(저축)·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한다.

1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 ②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무체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⁶⁾ 등을 말한다.

6) (특허권) 특허법에 따라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따라서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
 (상표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舊 의장권)

2014.1.1.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는 “가”와 “나”의 평가방법 중 큰 가액을 평가하며, 그 이전에는 매입한 경우에는 “가”의 방법으로,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

평가액 = 취득가액 -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상증법 §64①, 상증령 §59①)

감가상각비 상당액 = 매입가액 × {(매입시기에서 평가기준일까지 총월수)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총월수))}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한다.

나. 일반적인 평가방법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그 권리에 따라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sum_{n=1}^n \frac{\text{각 연도의 수입금액}}{\left(1 + \frac{10}{100}\right)^n}, n: \text{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평가기준일부서의 최종 경과연수는 해당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서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상증규칙 §19③).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사례

1) 전문가의 범위

(특허법인)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 §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한국발명진흥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재산세과-951, 2010.12.15.)

2) 각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

출판물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에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의 수입금액이란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수입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법규과-1271, 2012.10.31.)

3)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4.6.)

17 영업권의 평가

$$\text{영업권} = \sum_{n=1}^{\text{지속연수}} \frac{\text{자기자본 이익률 초과 순손익액}}{(1 + 0.1)^n} \quad * n : \text{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영업권의 평가는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한 환산가액에 따른다(상증령 §59②).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영업권을 매입한 경우로서 그 평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②).

$$\text{자기자본 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 = \left(\begin{array}{l} \text{최근 3년간(3년에 미달시는} \\ \text{해당 연수(①))의 순손익액의} \times \frac{50}{100} \\ \text{가중 평균액(②)}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평가기준일} \\ \text{현재의 자기} \times \frac{10}{100} \\ \text{자본(③)} \end{array} \right)$$

①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가 2개 또는 1개의 사업연도 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2개 또는 1개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영업권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가액은 0원이 되며,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인 자기자본이 0 이하인 경우에도 0으로 한다.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 자기자본이익률)과 (수입금액 / 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가액으로 한다.

법인전환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i), ii)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을 포함하며,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

i) '개인기업 + 법인'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ii)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소유·사업에 실제 사용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③ 자기자본은 상증령 §55①에 따라 계산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관련 사례

1) 영업장이 2개 이상일 때 영업권 평가액의 통산 여부

부수(-)의 영업권가액과 정수(+)의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없다. 즉, 영업권 평가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가액을 통산하여 산정할 수는 없음(대법원2000두7766, 2002.4.12.)

2) 자기자본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상증법 §60부터 §66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함(서면4팀-896, 2008.4.3.)

3)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계산방법)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서면4팀-3279, 2006.9.26.)

(상속재산 포함여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서면4팀-1282, 2005.7.21.)

18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평가

어업권 및 양식업권 가액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9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광업권 등의 평가

$$\text{환산가액} = \sum_{n=1}^n \frac{\text{평가기준일 前 3년간 평균소득}}{(1 + 0.1)^n}$$

n : 평가기준일부터 채굴 가능연수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 예상 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前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前 3년간 평균소득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광업권 등의 평가

조업할 가치가 없는 광산의 광업권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광산에 대한 가액은 그 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광업권 등의 평가

조업은 하고 있으나 소득은 얻지 못하는 광산, 탐광 중인 광산, 채광에 착수하지 않은 광산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소득을 얻을 전망이 있는 광업권과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산의 광업권 평가는 조업을 할 수 있는 광산의 광업권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다.

다만, 각 연도의 조광료 수입금액에서 광업권자가 부담할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평균 순소득을 계산한다.

라. 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광업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또는 조업을 할 수 있는 광산의 광업권 등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저당권이 설정된 광업권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상증령 §60).

- 가. 조건부 권리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
- 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
- 다.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6153, 2005.5.26.).

2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가. 원본과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신탁재산 가액
- ②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즉, 상증법 §60 ~ §65조에 따른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21.2.17.시행7))

나. 원본과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신탁재산 가액 - 신탁의 수익 평가액
- ②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신탁의 수익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가액으로 한다.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text{평가액} = \text{Max}(\text{①}, \text{②})$$

- ①
$$\sum_{n=1}^n \frac{\text{각 연도 받을 수익의 이익} - \text{원천징수상당액}}{[1 + \text{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n}$$

n :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②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7) '21.2.17.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영 시행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아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도 개정규정 적용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 연수는 20년 또는 기대 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의 정기금 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아래 현재가치할인 계산식에 따라서 할인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 평가시부터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아래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가. 유기정기금

$$\text{유기정기금 평가액} = \sum_{n=1}^n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 + 3\%]^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유기정기금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정기금의 급부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무기정기금

무기정기금이란 정기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래 무기한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하며, 그 1년 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이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종신정기금의 평가는 그 목적으로 된 자의 기대여명(2010.12.31.이전 상속·증여 분은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무기정기금 평가 계산식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3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3호의 가상자산⁸⁾을 말한다.

2022.1.1. 이후 상증법 §65②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60②).⁹⁾

-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 2021.3.25. 시행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9)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or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2) 그 밖의 가상자산 : 1)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2021-58호, 2021.12.28.

상호	서비스명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주식회사 코빗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코인원

가상자산의 평가 개정연혁

2021.12.31. 이전	2022.1.1. 이후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문1) 평가기준일이 2022. 2. 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 1. 5.(기산일)		2022. 2. 5.(평가기준일)		2022. 3. 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 자산	일평균 가액(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원)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250*	$\frac{12,250 + \dots + 21,750}{59\text{일}}$ = 15,500원(가정) 일평균액가액(‘22. 1. 5.~’22. 3. 4.)의 평균액으로 계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빗	A	13,000				
2022.1.5.	코인원	A	13,000				
⋮	⋮	⋮	⋮	⋮			
2022.3.4.	업비트	A	21,000	21,75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빗	A	23,000				
2022.3.4.	코인원	A	21,000				

* 2022. 1. 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 + 12,000 + 13,000 + 13,000) \div 4 = 12,250\text{원}$

(문2) 평가기준일이 2022. 2. 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간

		2022. 1. 5.(기산일)		2022. 2. 5.(평가기준일)		2022. 3. 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 자산	일평균 가액(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원)	A가상자산 평가액(원)		
2022.1.5.	업비트	A	11,000	12,000*	$\frac{12,000 + \dots + 22,000}{59\text{일}}$ = 15,000원(가정) 일평균액가액(‘22. 1. 5.~’22. 3. 4.)의 평균액으로 계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인원	A	13,000				
⋮	⋮	⋮	⋮	⋮			
2022.3.4.	업비트	A	21,000	22,00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인원	A	23,000				

* 2022. 1. 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 + 12,000 + 13,000) \div 3 = 12,000\text{원}$

24 국외재산의 평가

외국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60부터 §6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8의3①).

그러나 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5①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4, 2012.2.2.신설).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1

주식과 출자지분

가. 회사와 주식회사

상법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주권이라는 유가증권 형태로 대중 속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조달하고, 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이를 자유롭게 유통시킴으로써 필요할 때 환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자본의 세분화·자본의 증권화·증권의 양도성을 기초로 운영되어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어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주식과 출자지분

주식(Shares, Stock)이란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권을 말한다. 주식은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의 구성 부분을 말하고, 투자자인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기초인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과 회사경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그 지분소유 비율대로 갖게 된다.

한편, 출자지분이란 상법에 따라서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으로서 지위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의무를 말한다.

주식과 출자지분을 상증법에서는 “주식 등”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2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각각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가. 유가증권 시장

2005.1.27.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되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였고, 종전의 증권거래소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부르며, 동 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외국주권과 채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 주식워런트증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9.2.4.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코스닥시장

종전에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것을 2005.1.27. 출범한 한국거래소가 그 권한을 이어받았고, 코스닥시장 운영본부가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상증법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의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코넥스시장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증법에서는 일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서면법규과-1021, 2013.9.16)하도록 하고 있다.

라. K-OTC(한국장외시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을 말한다. 일반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보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마. 장외시장

장외시장이란 한국거래소등과 같이 조직화된 시장 외에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및 투자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등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을 뜻하며, 제도권시장과 비교되는 상대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유가증권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평가 기간 내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제2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상증법 §63)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에 증자 등의 사유발생시 고려하여 적용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1 원 칙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3① 1호 가목).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과세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래를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2월, 총 4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으로 보인다(헌재2014헌바363, 2016.2.25.)

상장주식의 경우는 위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60①).

- 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계산(초일산입)은 월력에 따라 계산한다.
- ②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에 상장되는 주식의 평가도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다(재삼46014-1263, 1994.5.9.).

- ③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된다.
- ④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더라도 그 전일이나 후일은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4팀-1646, 2004.10.18).
- ⑤ 상증법 §38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예시

- 평가기준일이 2022.1.2.인 경우 이전·이후 각 2개월은?



2022.11.3.부터 2022.3.1.까지(총 4개월간)임

(∴)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은 2022.3.2.의 전일인 3.1이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은 2022.11.2.의 다음날인 11.3임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

2017. 2. 7. 이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예시

- 평가기준일이 2020.4.11.(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인 경우 이전·이후 2개월 기간은?
 [답] 2020.2.11.~2020.6.9.
 (∴) 평가기준일은 전일인 2020.4.10.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이전 2개월은 2020.2.11., 이후 2개월은 2020.6.9.임
- 평가기준일이 2020.4.8.(거래가 있는 평일)인 경우 이전·이후 2개월 기간은?
 [답] 2020.2.9.(일요일)~2020.6.7.
 (∴) 2020.2.9.이 일요일이라도 이전 2개월은 2020.2.9.부터이며, 이후 2개월은 2020.6.7.(일요일)임
- 평가기준일(2001.12.31.)이 납회¹⁰⁾기간(2001.12.29.~2001.12.31.) 내에 있는 경우
 [답] 2001.10.29. ~ 2002.2.27.
 (∴) 평가기준일은 2001.12.28.이 되고, 이전 2개월은 2001.10.29.로, 이후 2개월은 2002.2.27.임(서일46014-10598, 2002.5.7.)

3 전·후 2개월 중에 증자 등의 사유발생시 평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권리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전과 그 후의 주가가 달라진다.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과 동일한 상태의 주식에 대한 최종시세가액평균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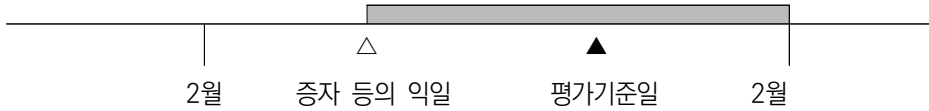
따라서 상장주식 평가 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의 기간 중에 증자·감자,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등의 사유 발생 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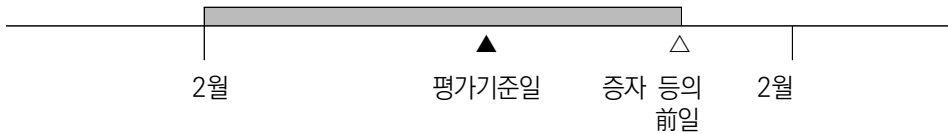
10) 증권거래소에서 1년 중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는 날

말함)의 다음 날(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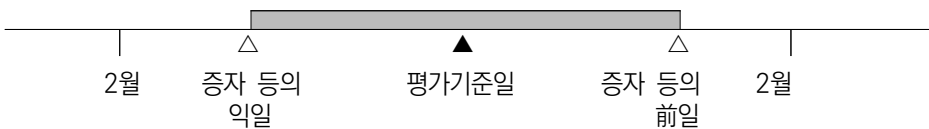
나.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前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前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시

○ 아래의 경우 증자 있는 날의 다음 날은?

- ① 평가기준일 : 2020. 4. 19.(공휴일)
- ② 증자절차
 - 신주배정 및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 2020. 4. 13.
 - 주금납입일 : 2020. 5. 10.
 - 신주상장예정일 : 2020. 6. 8.

답 2020.4.12. (권리락 시기는 배당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통거래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 배정기준일 전일임. 따라서 증자 있는 날의 다음날은 권리락 발생일인 2020. 4. 12.이 됨.)



관련 사례

1) 증자·합병 등의 사유

(액면분할 등)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상법 §530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함(상증통칙63-0...2, 서일46014-11315, 2002.10.9.)

2) 변경 상장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해당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으로 함(서일 46014- 10382, 2002.3.21.)

3) 1년간 보호예수된 주식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는 1년간 보호예수되지 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증법 §63①1가목과 나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없음(대법원2015두47362, 2015.12.10.)

4) 투자유의종목

주식분산 기준미달로 투자유의종목(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서면4팀-1720, 2004.10.26., 재재산 46014-95, 2003.4.4.)

제3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상증법 §63②)

1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Max (①, ②)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
(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법인이 기업공개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직은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은 비록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공모가액에 따라서 시가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평가한다(상증법 §63②).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코스닥상장 및 비상장법인 포함)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장추진 중에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공모가격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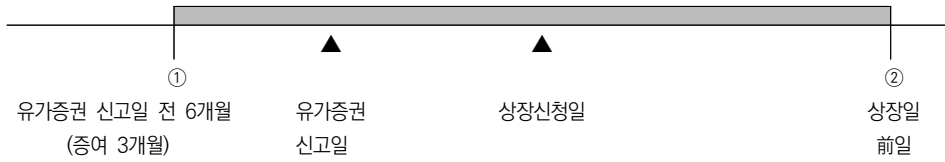
가. “상장 추진기간 중”이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일(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은 3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前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상장 추진기간 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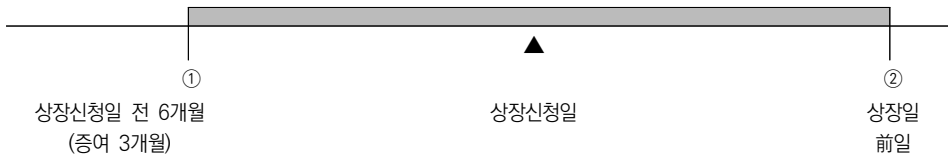
- ①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①~②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적용하여 평가

〈상장 추진기간 중 (①~②)〉



- ② 유가증권 신고 없이 직접 상장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①~②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본 규정에 적용하여 평가

〈기업공개 준비기간 중 (①~②)〉



2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Max (①, ②)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② 상증법 §63① 1호 다목(비상장주식)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가액

비상장주식 중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일(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은 3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3 미상장 주식 등의 평가

미상장주식의 평가액 = ①-②

- 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
- ② 배당차액(상증규칙 §18②)

$$\text{배당 차액} = \frac{\text{1주당 액면가액}}{\text{직전기 배당률}} \times \left(\begin{array}{l} \text{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text{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 \\ \text{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end{array} \right) \div 365$$

- ‘배당기산일’이란 신주발행 효력발생시기인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임(상법 §423①)
- 법인정관에 따라서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에 대한 이익을 배당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있는 해당법인의 주식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차액이 없는 것임

미상장 주식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되어있는 법인의 주식 중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가. 미상장 주식의 평가

미상장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7③).

나. 증자 기준일부터 상장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평가방법

1)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피상속인(증여자)이 납입한 후에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아직 상장되지 않은 신주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구주식 평가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② 신주식의 평가 : 구주식의 평가액 - 배당차액

2) 신주의 주금을 상속인(수증자)이 납입한 경우

상장법인이 유·무상증자를 하고 신주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개시(증여)가 이루어져 상속인(수증자)이 주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구주식과 신주인수권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구주식 평가 : 상장주식의 평가방법(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② 신주식 평가 : 구주식의 평가액 - 배당차액 - 주금납입액 = 신주인수권



예시

○ 다음의 경우 상장주식(구주식)과 미상장주식의 평가액은?

- 상속개시일 : 2020.4.10.
- 평가대상 주식 및 주식수 : 상장법인(중소기업) 주식 500,000주
- 평가대상 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며, 지분율은 35%임
- 신주배정기준일(유상증자 20%) : 2020.3.23.
- 인수한 주식수 : 100,000주
- 주금 납입일(배당기산일) : 2020.3.31.
- 상장예정일 : 2020.5.1.
- 전기배당률 : 10%, 액면가액 @10,000
- 증자가 있는 날의 다음날(권리락일)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증가평균액 : @43,000원

답 구주식평가액 : 500,000주 × @43,000원 = 21,500,000,000원
 미상장주식평가액 : (100,000주 × @43,000원) - (100,000주 × @10,000 × 10% × 90[※] / 366)
 = 4,275,409,837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일수(1.1~3.30.)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증령§ 54 등)

1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사례

1) 증자시 주금 납입액

법인의 증자 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 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서면4팀-2563, 2006.7.28.)

2) 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주식 평가방법

상증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였을 때에

자산에서 부채를 지급하고 남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개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장래 수익력이 얼마 정도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떤 비중으로 하여 평가할 것인가는 평가의 목적이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중을 달리하는 평가방법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하였는바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소득법 §94①4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8.4.1. 이후 가중평균과 순자산가치의 80%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text{1주당 평가액} = \text{Max}\left(\frac{\text{1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text{1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5}, \text{순자산가치} \times 80\%\right)$$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의 비율을 사용한다.

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법 §94①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해당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자산(소득법 §94① 1호 및 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 ① 토지 또는 건물(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③ 지상권
- ④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2011.1.1 이후 토지·건물은 기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2010.12.31 이전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음은 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령 §158④).

- ① 개발비
- ②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 ③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에 따라서 증가한 현금·금융자산(상증법 §22에 따른 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



관련 사례

1) 건설 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 §94 1호 및 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 현재 같은 법 §94① 1호 및 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0.1.27., 부동산거래관리과-573, 2012.10.25.)

2) 골프장 영위법인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 자산가액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서면법규과-223, 2014.3.12.)

다. 평가기준일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평가의 기준시점인 평가기준일은 ‘재산 평가의 기준시점’과 동일하다.

라.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63①1 나목으로 평가함에 있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을 10% 이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령 §74① 1호 마목(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상증법 §60①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상증령 §54③).

마.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2005.1.1. 이후 상속 또는 증여 분부터는 장래의 수익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청산법인 또는 휴·폐업법인이거나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순손익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아래 유형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의무 규정임)하도록 하였다.

- ①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이 경우 법인법 §46의3, §46의5 및 §47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③ 소득법 §94④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 2018.2.13.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2017.2.7. 이후 상속증여부터)
- ⑤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2017.2.7. 이후 상속증여부터)



관련 사례

1)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 양수시 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영위기간은 신설 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법규과-1033, 2013.9.24.)

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증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54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

3 순자산가치의 산정

$$\text{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text{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등}}$$

$$\text{○ 순자산가액} = \text{자산총액} - \text{부채총계} + \text{영업권평가액}$$

가.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순자산가치는 법인이 청산할 때를 가정하여 청산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을 하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순자산가치가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5①, 2009.2.4. 개정, 서면4팀-2578, 2007.9.4)

1)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평가한다.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가결산된 평가대상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만약,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한 후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발행주식 총수 계산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이때 발행주식 총수에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배당 우선주식 및 상환 우선주가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하지 않는다(재산 46014-3209, 1995.12.13., 서면4팀-1894. 2004.11.23).

한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재재산-1494, 2004.11.10.).

구 분	발행주식 총수 포함여부	자산 포함여부
주식소각·감자목적	포함하지 않음	포함하지 않음
일시보유목적	포함	포함

-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인 경우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보아 발행주식 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 ②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인 경우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가액은 아래 계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관련 사례

1) 상증령 §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4.26.)

$$\text{※ 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text{자기주식수} \times \text{1주당 순자산가치} \times 80\%)}{\text{총발행주식수}}$$

나. 순자산가액의 평가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60부터 §66까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04.1.1. 이후 상속 또는 증여 분부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는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라서 평가한다.

또한, 영업권 평가가액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②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만의 법인 또는 휴폐업 중인 법인. 다만,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위의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이상인 경우
- ③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 ④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2018.2.13. 신설)



관련 사례

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다(재산세과-1144, 2009.12.29.)

2) 장부가액의 의미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3)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상증법 §60③ 및 §66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골프장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함(서면4팀-1557, 2004.10.5.)

4) 환산가액과 비교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임대료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산별로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 평가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4, 2014.2.26)

5)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증령 §54④(ii)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8.4.25)

6)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증법 §60①에 따라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61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2017.10.26.)

7) 이월결손금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9.20.)

다. 순자산가액의 계산(순자산가액 계산서 양식 참조)

순자산가액은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제2쪽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2021.3.4. 개정)

(단위 : 원)

(제2쪽)

4. 순자산가액**가. 자산총액**

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② 평가차액		제4쪽 5. 평가차액 “가”
③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④ 유상증자 등		
⑤ 기타(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등)		
⑥ 선급비용 등		
⑦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		
⑧ 소계(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나. 부채총액

⑨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		
⑩ 법인세		
⑪ 농어촌특별세		
⑫ 지방소득세		
⑬ 배당금·상여금		
⑭ 퇴직급여추계액		
⑮ 기타(총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등)		
⑯ 제준비금		
⑰ 제충당금		
⑱ 기타(이연법인세대 등)		
⑲ 소계(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		

다.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⑧-⑲)

라. 영업권		제5쪽 6. 영업권 “자”
마. 순자산가액(다 + 라)		

1)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가결산된 평가대상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 서식의 ②항 ~ ⑤항까지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으로는 ② 평가차액 가·감분, ③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④ 기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영업권 평가액 등의 금액이 있다.

2) 평가차액의 계산

비상장법인의 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그 차액을 가·감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제4쪽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제4쪽)

5. 평가차액

가. 평가차액 계산 (① - ②)				제2쪽 4. 순자산가액 “가”의 ② 기재			
자산금액				부채금액			
계정 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재무상태표 상 금액	차액	계정 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재무상태 표상 금액	차액
① 합계			A	② 합계			B

상기 평가차액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다.

가) 계정과목에는 평가대상 자산 또는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계정명을 기입하되,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한다.

나) 자산가액은 상증법 §60②(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상증법 §60③(상증법 §61~§65) 및 상증법 §66(저당권 등 채권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장부가액에 따라서 평가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다) 자산별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계정과목 별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차액은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4쪽 '5. 평가차액' 서식 자산금액의 "차액"란에 기재한다.

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예금, 저금, 적금 등의 평가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 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법 §63④에 따라 평가한 가액(예입총액 - 미수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상당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서면4팀-133, 2004.2.25).

②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매출채권액 등(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 등

대손충당금은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채로 보지 않는 충당금이므로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매출채권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예시

○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1,000,000원, 관련 대손충당금 100,000원일 때 매출채권의 평가액은?

답] 1,000,000원

(∴) 장부상 매출채권 잔액은 900,000원이지만, 대손충당금은 단순히 장래의 회수불능을 예상하고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실제 대손금은 아님. 따라서 매출채권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은 1,000,000원이 되는 것이며, 그 차액을 "차액"란에 적는다.

③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등의 가액은 상증법 §63①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이와 같이 평가한 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가액과의 차액을 “차액”란에 기재한다.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시 지분법평가손익이 계상되었거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상의 유보금액(지분법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식평가 대상인 비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매출채권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액 + 이자 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⑥ 보증금

입회금, 보증금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⑦ 토지

기업회계기준상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나, 상증법 토지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임대료환산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며, 저당권 채권액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큰 가액을 적용한다.

⑧ 건물, 구축물 등

재무상태표상 건물, 구축물 등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나, 상증법상 건물 등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령 §28① 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은 상증령 §51④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80①에 따른 가액(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령 §80①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령 §24①1사목에 따른 사용수의 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증법 §61⑦ 및 상증법 §62③(임대료 환산방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⑨ 무체재산권

2014.1.1.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는 각 연도에 수입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며, 그 이전에는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으로,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연도에 수입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text{감가상각비} = \text{매입가액} \times (\text{매입일} \sim \text{평가기준일의 월수} \div \text{법인규칙 별표4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월수})$$

⑩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평가차액” 계산 서식에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기재하고 평가차액으로 반영하거나 “순자산가액” 계산서식 ⑤번란 “선급비용 등”에 기재하여 자산에서 차감한다.



예시

○ 시가 등이 아래와 같을 경우 자산의 평가차액을 계산하면?

구분	재무상태표상 가액	시가	공시지가 등	담보채권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00,000,000 (2,000,000)			
제품 제품평가손실충당금	100,000,000 (2,000,000)			
토지	1,000,000,000	1,500,000,000	1,100,000,000	1,200,000,000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0 (300,000,000)	-	300,000,000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00 (100,000,000)			

* 건물과 기계장치의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에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및 시인부족액은 아래와 같음

-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100,000,000원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50,000,000원



(단위 : 원)

(제4쪽)

5. 평가차액							
가. 평가차액 계산 (① - ②)				제2쪽 4. 순자산가액 “가”의 ② 기재			
자산금액				부채금액			
계정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재무상태표 상 금액	차액	계정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재무상태표 상 금액	차액
		① 합계	554,000,000			② 합계	
매출채권	100,000,000	98,000,000	2,000,000				
제품	100,000,000	98,000,000	2,000,000				
토지	1,500,000,000	1,000,000,000	500,000,000				
건물	800,000,000	700,000,000	100,000,000				
기계장치	350,000,000	400,000,000	-50,000,000				
계	2,850,000,000	2,296,000,000	554,000,000				

라) 부채별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계정과목 별 부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가액과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차액은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제4쪽) “평가차액” 서식의 부채금액의 “차액”란에 기재한다.

① 유동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부가가치세예수금, 선수금,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비유동부채 중 사채

사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채할인(할증) 발행차금은 가감하지 않는다.



예시

○ 재무상태표의 사채 1,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00원일 때 사채의 평가액은?

답 1,000,000원

(∵) 장부가액은 900,000원이지만 상증법상 평가액은 1,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그 100,000원을 ‘차액’란에 기재한다.

③ 비유동부채 중 장기차입금, 영업보증금 등

지급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상증규칙 §18의2②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재산-1263, 2007.10.17). 즉,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한다.

④ 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함)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차액명세서가 아닌 순자산가액 계산서에 기재한다.

마) 평가시 유의사항

①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국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4).

② 국외재산 평가

비상장법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상증법 §60부터 §6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 소재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 기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③ 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

상증법 §66에 따른 평가특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3)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서 배당, 상여, 퇴직급여 등과 같이 사외로 유출하는 처분과 적립금의 적립, 잉여금의 차기이월 등과 같이 사내에 유보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업무를 종결한다.

세법상으로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그 귀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귀속을 결정하므로 해당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각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한 귀속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세무조정 하면서 발생한 각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된다.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액만큼 기업외부로 유출된 소득 처분을 말하는데 사외유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여 동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결되나, 사내유보 처분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보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차감)하는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혹은 모자라) 회계상 자본보다 세무상 자본이 증가(감소)하게 되는 소득처분을 말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과 관련된 유보금액 및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계정과목(제준비금, 충당금 등)과 관련된 유보금액들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액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감안하지 않는다.

가) (+)로 유보된 금액의 경우 → 순자산 증가

- ① 자산의 평가내용을 확인하여 상증법상 자산의 평가가 기준시가 등 장부상의 자산가액과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유보금액(예 : 건설자금이자, 재고자산평가감,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 예금이자 미수수익 등)은 제외한다.
- ②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 및 환율 조정차는 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유보금액도 제외한다.
- ③ 대손충당금은 부채로 보지 않는 충당금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서 차감하며, 그에 따라 관련 유보금액(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도 제외한다.
- ④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신고조정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있어 퇴직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총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가산액(△ 유보)은 부채에 가감할 필요가 없다.

나) (-)로 유보된 금액의 경우 → 순자산 감소

-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제 준비금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 가산 사항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모두 제외한다.
- ② 환율조정대도 부채로 보지 않으므로 유보금액 계산시 제외한다.


4) 기타자산

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이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평가대상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것만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가지는 손해 배상채권은 비록 장부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89누916, 1989.9.12).

나) 영업권 평가액

2절, 17. 영업권의 평가 참조(‘순자산계산’ 서식 ‘라’번란에 기재)

 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 ⇒ 서식의 ⑥항 ~ ⑦항 까지

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으로는 ⑤선급비용, 이연자산 등 ⑥증자일 전의 잉여금 유보액이 있다.

5) 선급비용, 이연자산 등

가) 선급비용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분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분(자산성이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며, 순수한 선급비용(자산성이 있는 것)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증규칙 §17③ 2에 따라서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재삼46014-2524, 1998.12.26).

나) 이연자산 등 → 2002.1.1. 이후 무형고정자산으로 개정

①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제외)

종전 법인법에서는 창업비 및 연구개발비가 개업비 및 사채발행비와 함께 이연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2001년말 법인령 개정시 창업비와 연구개발비가 무형고정

자산으로, 개업비는 당기 비용으로, 사채발행비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치로 볼 수 있으므로 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외화환산차

법인령 §76에 따른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외화환산차는 이를 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해당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③ 이연법인세차

이연법인세차란 기업회계상으로는 아직 당기순이익에 가산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연도 중 익금 가산되어 해당 연도의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한 부분으로서 추후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재무상태표의 투자 자산 중 이연법인세차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해당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6) 증자일 전의 잉여금 유보액

증자일 전의 잉여금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않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칙63-55…6).

7) 재무상태표상 부채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그 부채총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확정된 부채 등의 가액으로 한다.

✔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 ⇒ 서식의 ⑨항 ~ ⑭항 까지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으로는 ⑨ 법인세, ⑩ 농어촌특별세, ⑪ 주민세, ⑫ 배당금·상여금, ⑬ 퇴직급여 추계액, ⑭ 기타 금액이 있다.

8)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평가기준일까지 납부할 세액에서 재무상태표상(가결산한 것) 미지급법인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

9) 농어촌특별세

법인세액의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10) 지방소득세

법인 소득할 지방소득세액

11) 배당금·상여금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말하고, 배당금과 상여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상증통칙 63-55...8). 즉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 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하였는지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후에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구 분	잉여금 처분결의일	
	상속개시일 전	상속개시일 후
배당·상여금	상속세 과세기액산입	상속세 과세기액 불산입
비상장주식 평가시 미지급 배당·상여금	부채로 인정(차감)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12)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금추계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추계액은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다(재산46014-1654, 1997.7.4.).

따라서, 새로이 퇴직급여추계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므로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금은 이중 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13) 기타부채

①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충당금의 경우는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채에 포함한다.

② 가수금

비상장법인의 부채 중 주주 및 임원 등으로부터의 가수금 또는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무의 계정과목이 있는 경우 그 부채의 변제 의무를 해당 법인이 가지는 경우에는 가수금 등을 부채에 포함한다(재산세과46014-815, 1996.3.28.).

③ 퇴직수당, 공로금

해당 법인 종사자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은 부채에 포함한다.

④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한다.

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57①, ② 및 §58①, ③에 따른 범위 내의 것은 부채로 인정 한다(상증규칙 §17의2 4호).

✔ 부채에서 차감하는 항목 ⇒ 서식의 ⑮항 ~ ⑰항 까지

부채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는 ⑮ 제 준비금, ⑯ 제 충당금, ⑰ 기타가 있다.

14) 제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법률에 따른 제 준비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 등)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 14)에서 말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관련 준비금은 부채로 인정한다.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법인이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뜻하는 것이나, 이들 준비금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환입하거나 또는 발생된 손금과의 상계처리 등을 예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5) 제충당금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을 제외한 제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은 부채에서 뺀다.

16) 기타

① 외화환산대

법인령 §76에 따른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외화환산대는 이를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부채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② 이연법인세대

이연법인세대란 기업회계상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에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 중 손금 가산되어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한 부분이며, 추후 회계상 비용 처리하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대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연법인세대는 부채에서 뺀다.

③ 상속개시 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및 장기 미지급이자

상증령 §55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채할인(할증) 발행차금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 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해당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서일46014-10359, 2001.10.26.).

4 순손익가치의 산정

○ 순손익가치의 계산

$$1\text{주당 순손익가치} = \frac{\text{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text{순손익가치환원율 (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가.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령에서는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두9140, 2012.5.24.).

다만, 3년 기간 중에 증자, 합병, 주요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추정이익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frac{\begin{aligned} &(\text{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3) \\ &+ (\text{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2) \\ &+ (\text{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1) \end{aligned}}{6}$$

$$\text{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frac{\text{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text{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별 순손익액을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 총수 또는 환산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각 사업연도 별로 산정한 1주당 순손익액 중 (-)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0”으로 보지 않고 (-) 그대로 계산한다(서일46014-11475, 2002.11.7).

2) 최근 3년간 사업연도의 판정

2002.1.1.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이 평가기준일이면 해당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을 계산한다.

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① 2004.12.31. 이전분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가중평균액”은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구 상증통칙 63-56…1311).

② 2005.1.1. 이후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11) 2019.12.23. 삭제

4) 결산시기가 다른 법인이 합병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

- ①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

이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각각 1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서면4팀-1071, 2004.7.13.).

- ②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 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서일46014- 945, 2007.3.21.).

- ③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 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서일 46014-10352, 2001.10.24.).

- ④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서면4팀-1991, 2006.6.27.).



예시

- A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2020.6.30.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A법인은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를 1.1.~12.31.로 적용하였다가 2019년부터 4.1.~3.31.로 사업연도를 변경함
 - A법인의 사업연도 변경현황

1기 : 2016.1.1.~2016.12.31.	2기 : 2017.1.1.~2017.12.31.
3기 : 2018.1.1.~2018.12.31.	4기 : 2019.1.1.~2019. 3.31.
5기 : 2019.4.1.~2020. 3.31.	6기 : 2020.4.1.~2021. 3.31.
 - ① 평가기준일이 2020.6.30.인 경우 이전 3개 사업연도
 - 1차 : 2019.7.1.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19.4.1.~2020. 3.31.
 - 2차 : 2018.7.1.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18.1.1.~2018.12.31.
 - 3차 : 2017.7.1.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17.1.1.~2017.12.31.
 - ② 평가기준일이 2020.2.1.인 경우 이전 3개 사업연도
 - 1차 : 2019.2.2.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19.1.1.~2019.3.31.
 - 2차 : 2018.2.2.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18.1.1.~2018.12.31.
 - 3차 : 2017.2.2.이 속하는 사업연도 → 2017.1.1.~2017.12.31.
- 이 경우 1차는 3개월만 있는 사업연도이므로 연 환산 : 순손익 × 12 / 3

나. 순손익액의 계산(순손익액계산서 양식 참조)

순손익액은 아래 서식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6쪽 서식 7. 순손익액’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2021.3.4. 개정)

(단위 : 원)		(제6쪽)		
7.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소득 에 가산 할 금액	② 국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③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④ 이월된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⑤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⑥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소계(① + ② + ... ⑦)			
소득 에서 차감 할 금액	⑧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⑨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⑩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손금불산입액			
	⑪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손금불산입액			
	⑫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⑮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⑯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액			
	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액			
	⑲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⑳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㉑ 외화환산손실(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㉒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소계(⑧ + ... ㉒)				
다. 순손익액(가 - 나)				
라. 유상증(감)자시 반영액				
마. 순손익액(다 ± 라)				
바.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사. 주당순손익액 (마 ÷ 바)	㉓	㉔	㉕	
아. 가중평균액 $\{ (㉓ \times 3 + ㉔ \times 2 + ㉕) / 6 \}$				
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차.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아×자)				

✓ 순손익액의 계산 개요

순손익액의 계산은 법인법 §14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56④1호에서 열거한 익금 불산입액을 가산하고, 2호에서 열거한 손금 불산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증령 §56④).

1) 각사업연도 소득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계산한 소득금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 조정을 하여 만들어지는 소득이 각사업연도소득이다.

각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 §14에 따른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순손익액에 가산하는 항목 ⇒ 서식의 ②항 ~ ④항 까지

소득에 가산하는 항목으로는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나 세법에서는 그 목적상 익금 불산입한 항목이 해당되며, ②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③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④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④-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④-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액의 이월손금산입액이 있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할 금액

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

법인세법 §18 4호에 따른 국세·지방세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이자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

법인세법 §18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와 §18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른 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액은 소득에 가산한다.

①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법 §18의2와 §18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증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56③1호의 개정규정은 상증령 부칙 §2에 따라서 200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서면 4팀-737, 2005.5.11).

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다)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 금액 중 이월손금산입액

법인세법 §24⑤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 금액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 지정 및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상기와 같이 이월하여 손금산입된 그 한도초과 금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한다.

이는 기부금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기부금 한도초과액(아래 10)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이중으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② 특례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액(2011.6.30. 이전, 2011. 7.1. 이후 법정기부금에 통합됨)

특례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액은 손금산입된 연도의 소득에 가산한다.

상증령 §56① 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특법 §73①·②에 따른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조특법 §73④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해당 손금 산입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한다(서면4팀-2471, 2006.7.26). 즉, 특례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액은 손금산입된 연도의 소득에 가산한다.

- 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 손익(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 평가시부터)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또는 통화선도 등을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마) 업무용승용차(2020.2.11. 이후 상속·증여 평가분부터)

법인세법 §27의2③④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한다.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 서식의 ⑤항 ~ ⑩항 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는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나 세법에서는 그 목적상 손금불산입한 항목으로서 법인세 과세소득과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해당되며, 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⑥ 손금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⑦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⑧ 각 세법에서 정한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⑨ 기부금 한도초과액 ⑩ 접대비 한도초과액 ⑪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액 ⑫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⑬ 감가상각비(상증령 §56④라목) ⑬-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손실(법인세 계산시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⑬-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⑬-3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⑭ 법인세 등이 있다.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차감할 금액

가)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법인법 §21 3호에 따른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법 §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나)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법인법 §21 4호에 규정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국세기본법 §2【정의】**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벌금, 과료 등에 포함된다(서면2팀-2681, 2004.12.20.).

다)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인법 §27에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수선비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순손익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에서 공제한다.

- ① 업무무관 부동산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 ② 업무무관 동산 : 서화·골동품 및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 ③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 관리비 및 사용료 등
- ④ 주주,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 관리비 등
- 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

✔ 법인세법 §27【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법인법 §21 1호 및 법인령 §21에 따라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법인법 §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법인령 §21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서면4팀-684, 2007.2.22.).

☑ 법인세법 §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57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21【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21.1호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마) 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법 §24에 따른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계산되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바) 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법 §25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조특법 §136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사)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액

법인법 §26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등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법인법 §28에 따른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아래의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한다.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②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 ③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④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한 지급이자 등
- ⑤ 국조법 §14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순손익계산시 소득에서 뺀다(법규과-640, 2014. 6.24).

자)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2014.2.21. 이후 평가부터는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공제한다. 이는 기업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였다(상증령 §56④ 2호 라목).

차)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 손익(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 평가시부터)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또는 통화선도 등을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카)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2020.2.11. 이후 상속·증여분 평가분부터)

법인법 §21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순손익계산시 소득에서 뺀다.

타)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2020.2. 11. 이후 상속·증여분 평가분부터)

법인법 §27의2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순손익계산시 소득에서 공제한다.

파) 법인세 등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특별부가세 포함),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소득에서 뺀다.

2011.1.1. 이후 법인세법 §57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세액도 뺀다.

이 경우 차감할 법인세액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경정시 총 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총 결정세액으로 한다(재삼46014-2519, 1994.9.27.).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상당액을 말하며, 이에 따라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을 차감 후의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

다. 총 발행주식수 계산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며,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제도46014-10291, 2001.3.28.).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

1) 환산주식수의 계산

- ①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무상증자는 2001.1.1. 이후부터, 유상증자는 2011.7.25. 이후부터 적용)

$$\text{증자 前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times \frac{\text{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text{증자 주식수}}{\text{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②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무상감자는 2001.1.1. 이후부터, 유상감자는 2011.7.25. 이후부터 적용)

$$\text{감자 前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times \frac{\text{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text{감자 주식수}}{\text{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무상증자와 같이 주식수를 환산함

2011.7.25.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를 환산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유상증자·감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 해당 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변경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수가 달라진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의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경부재산46014-44, 2002.2.22, 재산세과-172, 2012.5.8).

2) 환산에 따른 희석효과 순손익액 반영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감자의 경우 주식수 환산은 위 1)과 같이 무상증자·감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 계산은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감자와 달리 유상증자·감자에 따른 자본금의 추가 납입 등이 발생하므로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유상증자·감자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다.

순손익액 계산시 유상증자·감자 효과 반영 방법

$$= \text{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pm (\text{유상증자·감자금액} \times \text{순손익가치환원율} 10\%)$$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감자전까지의 기간만 반영하도록 월할계산한다.



예시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유상증자시

- 평가기준일(2011.7.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 20,000원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200,000주

① 주식평가일(2011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2010.6.30)에 유상증자 실시

- * 2010.6.30. 주식 10만주를 액면가(5,000원)로 발행, 주금납입액 : 5억원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100,000주

② 희석효과가 반영된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text{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text{주금납입액} \times \text{순손익가치환원율}(10\%))$$

- * 각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증자일까지의 기간 월할계산

$$\text{(예) } 100,000,000 + (500,000,000 \times 10\%) = 150,000,000$$

③ 유상증자시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

$$- 100,000 \times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0\text{주}$$

(단위 : 원, 주)

구 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종전규정	개정후
1년전	순손익액	(환산) 125,000,000
		1억 + [(5억×10%) × 6 / 12] ¹⁾
	주식수	(환산) 200,000
	1주당 순손익액	625
2년전	순손익액	(환산) 250,000,000
		2억 + (5억 × 10%)
	주식수	(환산) 200,000
	1주당 순손익액	1,250
3년전	순손익액	(환산) 350,000,000
		3억 + (5억 × 10%)
	주식수	(환산) 200,000
	1주당 순손익액	1,750

구 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종전규정	개정후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²⁾	1,666	1,020
1주당 순손익가치 ³⁾	16,660	10,200
1주당 순자산가치	20,000	20,000
1주당 가치	17,996	14,120
총발행주식수	200,000	200,000
총 주식가치	3,599,200,000	2,824,000,000

- 1) 유상증자(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1년 전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유상감자) 한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할로 계산
- 2) [(1년전 1주당순이익액 × 3) + (2년전 1주당순이익액 × 2) + (3년전 1주당순이익액 × 1)] ÷ 6
- 3) 1주당 순손익가치 ÷ 10%(순손익가치환원율)



예시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시

- 평가기준일(2011.7.30)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 20,000원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 200,000주
- ① 주식평가일(2011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2011.5.30)에 유상증자 실시
 - * 2011.5.30. 주식 10만주를 액면가(5,000원)로 발행, 주금납입액 : 5억원
 -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100,000주
 - ② 희석효과가 반영된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주금납입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 (예) 100,000,000 + (500,000,000 × 10% × 6월 / 12월) = 125,000,000
 - ③ 유상증자시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0주

(단위: 원, 주)

구 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종전규정	개정후
1년전	순손익액	100,000,000	(환산) 150,000,000 1억 + [(5억 × 10%)]
			주식수
	1주당 순손익액	1,000	750
2년전	순손익액	200,000,000	(환산) 250,000,000 2억 + (5억 × 10%)
			주식수
	1주당 순손익액	2,000	1,250
3년전	순손익액	300,000,000	(환산) 350,000,000 3억 + (5억 × 10%)
			주식수
	1주당 순손익액	3,000	1,750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666	1,083
1주당 순손익가치		16,660	10,830
1주당 순자산가치		20,000	20,000
1주당 가치		17,996	14,498
총발행주식수		200,000	200,000
총 주식가치		3,599,200,000	2,899,600,000

1) 주식수 환산 = 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주식수) / 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라. 1주당 추정이익에 따른 순손익가치의 계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상증규칙 §17의3①)에 해당하고,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2011.1.1.부터)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등의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상증령 §56②).

1)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2) 위 ①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①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재해손실(이하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함)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②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2015.3.12. 이전에는 합병·분할·증자·감자)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③ 상증법 §38에 따른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⑥ 주요 업종(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⑦ 위 ① 내지 ⑦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사례

1)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인세법 §46①에 따른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신설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 중에 있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함(서면4팀-1473, 2008.6.20.)

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폐업신고 후 3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4팀-3092, 2007.10.26.)

3)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판단함(서면4팀-4182, 2006.12.27.)

4) 추정이익의 적용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 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

국고보조금 손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 상증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①본문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0, 2016.4.1.)

5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의 부족으로 거래 시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기가 곤란하여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하여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비상장 중소기업 중 과대평가되는 주식에 대하여 적절한 주식 평가하고자 위원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0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중 보충적 평가가액이 해당 중소기업과 업종, 자본금과 매출액의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에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7.7.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심의위원회 비상장주식 가액 심의대상에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흐름할인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었다.

제5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상증법 §63③)

1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 평가방법

○ 할증평가율

구 분	2019.12.31. 이전		2020.1.1.이후부터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중소기업은 2005.1.1.부터 할증평가 면제

○ 지분율 계산

- 자기주식을 제외,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양도, 증여한 주식을 합산

○ 지분율 적용

-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면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할증률 적용

가. 할증 이유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2001두8292, 2003.2.11.).

나. 할증평가율과 할증대상

연도별 할증 평가율은 아래와 같다(상증법 §63③).

구 분	2000년 이후	2003년 이후		2020.1.1. 이후부터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지분율 50% 이하	20%	10%	20%	20%
지분율 50% 초과	30%	15%	30%	

1993.1.1. 이후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 할증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7.1.1. 이후부터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도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2000.1.1. 이후에는 할증률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 하도록 하였고 2003.1.1.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2005.1.1. 부터 2019.12.31. 까지의 기간 중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면제하였으며(2019.12.31. 조특법 §101를 삭제하고 상증법 §63에 반영), 2020.1.1.부터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 하지 않고, 비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율은 20%로 단일화하였다.

이 경우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이는 조특령 §2의 중소기업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2023.1.1.부터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주식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확대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다. 최대주주 등의 범위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그룹)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합계를 주주그룹 별로 계산하여 해당 법인에서 보유 지분율이 가장 큰 주주그룹에 속하는 모든 주주를 말하는 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상증령 §19② 각호를 삭제하고, 신설규정인 상증령 §12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현재 §2의2)를 준용하여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명확히 하였다.

1997.1.1. ~ 1999.12.31.	2000.1.1.- 2012.2.1.	2012.2.2 이후
- 최대주주 등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 최대주주 등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 최대주주 등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명확화)

2)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지분율을 계산한다.

3) 2000.1.1. 이후부터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지분율을 계산한다. 최대주주 등이 높은 할증률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한 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합산 여부는 아래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한다.

①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증여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증여하더라도 결국 최대주주 지분율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② 양도·양수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순 양도분을 합산한다.

최대주주 등이 해당 주식을 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판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최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뺀 주식수(부수인 경우는 “0”)를 판단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수에 합산한다.

③ 주식양도 후 최대주주 등에서 제외된 자에게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던 주주 등이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 등 판단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는다.

즉, 판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먼저 최대주주 등을 판단한 후 그 최대주주 등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수를 합하여 50%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 4)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는 그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그룹이 2 이상인 경우(즉,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아 할증 평가한다.



관련 사례

1)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상증령 §19②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상증령 §53④는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됨(서면2팀-107, 2007.1.15.)

2) 비상장법인(A)이 다른 법인(B)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

비상장법인(A)이 다른 법인(B)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A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B법인의 주식을 할증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A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는 그 A법인의 주식 평가액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재산세과-727, 2010.10.5.)

3)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됨(재산세과-466, 2010.6.30)

2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증여자 또는 양도자 입장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보유하였다 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① 거래 시점에서 ② 주식을 이전하는 자를 기준으로 ③ 이전되는 주식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이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63③, 상증령 §53⑦)

가. 할증평가 제외대상 주식

- ①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도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 이는 상속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내 최대주주 등 주식 전부가 매각된 경우이다.
이 경우, 2020.2.11. 상증령 개정시 증여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2020.2.11.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또는 전환사채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것이 아닌 간접이익의 증여이므로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
- ④ 순환출자주식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존 1차 출자분에 한정하여 할증평가하였으나,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2021.2.17.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부터는 1차 출자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할증평가 개정연혁

2021.2.16. 이전	2021.2.17.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부터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 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출자·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1차 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에서 제외)

- ⑤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법인의 주식
사업초기에 결손이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
- ⑥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이 확정된 법인의 주식

- ⑦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기간인 10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최대주주 외의 자 입장에서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 주식을 상속,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16.2.5.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 ⑨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2020.1.1.이후 상속·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¹²⁾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2023.1.1.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시가(상증법 §60②)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대법2005두7228, 2006.12.7; 국심2007서747, 2008.6.2) 2009.1.1.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60②(매매가격 등)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할증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상증법 §63③ 개정).

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외 (조특법 §101)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프리미엄이 부가되어 거래되거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5.1.1.부터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제외하였으며, 조특법 §101(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2019.12.31. 삭제되었고, 상증법 §63③에 반영하였다.

12) 2019.12.31. 이전에는 구 조특법 §101에 따라 할증평가하지 않았다.

라. 양도소득세·법인세 부당행위 계산 규정 적용시

소득법상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증법 §60부터 §66까지와 상증령 §49, §50 ~ §52, §52의2, §53 ~ §58, §58의2~§58의4, §59 ~ 63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이 경우 상증령 §49①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특법 §101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소득령 §167⑤). 따라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할증평가가 배제된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2010.12.31. 이전은 중소기업·일반 기업 모두 할증평가가 적용되었으나, 2011.1.1. 이후부터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가 배제된다(법인령 §89② 2호).



관련 사례

1)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및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조특법 §101 적용함(재재산-614, 2007.5.28.)

2) 외국법인의 주식

조특법 §101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2460, 2007.8.17., 재산세과-318, 2011.7.4.)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 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4-법령 해석재산-20735, 2015.5.4)

4) 포함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 §63③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재경부재산-23, 2007.1.5.)



사례

홍길동은 2020. 1. 25.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재무상태의 비상장법인(부동산과다보유법인 아님, 중소기업 아님) 주식 6,000주를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주식평가액을 계산하시오.

1. 재무상태표

서귀포(주)

(2019. 12. 31.)

과 목	제 30 기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1. 현금		23,441,000
2. 예금		26,330,000
3. 유가증권		3,200,000
4. 매출채권	231,570,000	
대손충당금	2,315,700	
5. 원재료		37,261,000
6. 재공품		35,669,000
7. 상품및제품		61,027,000
유동자산합계		416,182,300
Ⅱ. 고정자산		
1. 토지		232,521,000
2. 건물	85,970,971	
감가상각누계액	8,780,971	
3. 기계장치	447,202,827	
감가상각누계액	69,306,827	
4. 차량·집기비품	28,692,356	
감가상각누계액	8,736,356	
5. 개발비		6,000,000
고정자산합계		713,563,000
자산총계		1,129,745,300

과 목	제 30 기	
	금	액
부 채		
Ⅰ. 유동부채		
1. 외상매입금		75,000,000
2. 지급어음		95,000,000
3. 단기차입금		105,000,000
유동부채합계		275,000,000
Ⅱ. 고정부채		
1. 장기차입금		295,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259,368,000
고정부채합계		554,368,000
부채총계		829,368,000
자 본		
Ⅰ. 자본금		150,000,000
Ⅱ.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34,763,000
2. 기업합리화적립금		32,108,000
3. 당기말미처분잉여금	40,097,300	
가.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	43,409,000	
나. 당기순이익		83,506,000
이익잉여금합계		150,377,300
자본총계		300,377,300
부채와자본총계		1,129,745,300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유보금액(2019. 1. 1.~2019. 12. 31.)

가. 감가상각누계액(건물)	₩3,813,000
나. 재고자산평가감(상품 및 제품)	₩11,225,000

3. 최근 3년간의 순이익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2017. 1. 1.~2017.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41,942,182
나. 국세환급금 이자	₩ 326,094
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주민세	₩13,369,069
라. 벌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350,000
마. 업무와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107,000
바. 접대비 한도초과액	₩ 1,213,600

② 2018. 1. 1.~2018.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49,127,020
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지방소득세	₩12,527,389
다. 과태료를 손금불산입한 금액	₩ 500,000
라. 부가가치세 징수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3,276,960
마. 기부금 한도초과액	₩1,987,200

③ 2019. 1. 1.~2019.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39,672,080
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지방소득세	₩10,116,380
다. 벌금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 760,000
라. 연구개발비 손금불산입액	₩6,000,000
마. 접대비 한도초과액	₩2,016,310

4. 기타 자료

① 토지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는 없으며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은 241,521,100원임

건물 : 시가는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70,000,000원임.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감가상각누계액 3,813,000원은 기준내용연수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한 금액임

기계장치, 차량·집기비품은 재취득가액은 없으며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계산

② 상속개시일 현재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 퇴직금추계액은 607,858,000원

- ③ 가결산 결과 기타자산 및 부채(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음)액은 2019. 12. 31.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2020.1.1~2020.1.25.까지 발생한 손익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④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임.
- ⑤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은 10%임(연금의 현재계수 3.7908).
- ⑥ 홍길동은 주식을 상속받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40%)임.

해설

1. 평가차액의 계산

- 아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4쪽 '평가차액' 서식 참조 : 26,353,700

2.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액의 계산

- 아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2쪽 '순자산가액' 서식 참조 : △37,875,380

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의 계산

- 아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6쪽 '순손익액' 서식 참조 : 9,390

4. 영업권 계산(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5쪽) : ₩53,462,194

5. 영업권 포함후 순자산가액의 계산

- 아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2쪽 순자산가액 서식 참조 : △37,875,380 + 53,462,194
= 15,586,814

6. 1주당 순자산가액

- 아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제1쪽 서식 참조 : 15,586,814원/30,000주 = @519

7. 1주당 평가액의 계산

- 아래 비상장 주식 등 평가서 제1쪽 서식 참조 : Max(①, ②)

① 1주당 평가액(*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아님) $(9,390 \times 3 + 519 \times 2) / 5 = ₩5,841$

② @519 $\times 80\% = 415$

8.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이므로 20%의 할증률 적용 $₩5,841 \times 120\% = ₩7,009$

9. 상속재산(주식) 평가액 : ₩7,050 $\times 6,000$ 주 = ₩42,054,000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2021.3.4. 개정)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단위 : 주, 원)

(제1쪽)

1. 평가대상 비상장법인

법인명	서귀포(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①발행주식총수	30,000	1주당 액면가액	5,000	자본금	150,000,000
평가기준일	2020.1.25		②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		[부]

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v] 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해당여부)

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산(합병)등기일 (. . .)	[]
나. 사업 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경우 사업개시일 (. . .), 휴·폐업일 (. . .)	[]
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이익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 (2018. 2. 13. 삭제)	[]
라.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마.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바.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3. 1주당 가액의 평가

(단위 : 원)

③ 순자산가액	15,586,814	제2쪽 4. 순자산가액 “마”
④ 1주당 순자산가액 (③ ÷ ①)	519	
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기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또는 20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포함)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9,390	제6쪽 7. 순손익액 “차”
⑥ 1주당 평가액 (㉑ 평가액과 ④의 평가액 중 많은 금액)	5,841	
㉑ $\{[(4 \times 2) + (5 \times 3)] \div 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4 \times 3) + (5 \times 2)] \div 5\}$	5,841	
④ 1주당 순자산가액(④)의 80%	415	
㉒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평가액		
㉒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⑥ × 할증율)	1,168	
④ (⑥ + ㉒)	7,009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관련 서식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⑥ × 할증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합니다.
- 할증율

지분율	2019.12.31.이전	2020.1.1.이후
50% 이하 보유	20%	20%
50% 초과 보유	30%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단위 : 원)

(제2쪽)

4. 순자산가액		
가. 자산총액		
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1,129,45,300	
② 평가차액	26,353,700	제4쪽 5. 평가차액 “가”
③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0	
④ 유상증자 등		
⑤ 기타(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등)		
⑥ 선급비용 등	6,000,000	개발비
⑦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		
⑧ 소계(①+②+③+④+⑤-⑥-⑦)	1,150,099,000	
나. 부채총액		
⑨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액	829,368,000	
⑩ 법인세	10,116,380	2019년 법인세 등
⑪ 농어촌특별세		
⑫ 지방소득세		
⑬ 배당금·상여금		
⑭ 퇴직급여추계액	607,858,000	
⑮ 기타(총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등)		
⑯ 제준비금		
⑰ 제충당금	259,368,000	퇴직급여충당금
⑱ 기타(이연법인세대 등)		
⑲ 소계(⑨+⑩+⑪+⑫+⑬+⑭+⑮+⑯+⑰+⑱)	1,187,974,380	
다. 영업권포함전 순자산가액(⑧-⑲)		
라. 영업권		
		제5쪽 6. 영업권 “자”
마. 순자산가액(다 + 라)		

(단위 : 원)

(제4쪽)

5. 평가차액

가. 평가차액 계산 (① - ②)				26,353,700	제2쪽 4. 순자산가액 "가"의 ② 기재			
자산금액				부채금액				
계정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재무상태표상 금액	차액	계정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	재무상태표상 금액	차액	
① 합계				② 합계				
합 계	1,156,099,000	1,129,745,300	26,353,700	합 계	829,368,000	829,368,000	0	
현 금	23,444,000	23,444,000	0	외상매입금		75,000,000	0	
예 금	26,330,000	26,330,000	0	지급어음		95,000,000	0	
유가증권	3,200,000	3,200,000	0	단기차입금		105,000,000	0	
매출채권	231,570,000	229,254,300	2,315,700	장기차입금		295,000,000	0	
원 재 료	37,261,000	37,261,000	0	퇴직급여 충당금		259,368,000	0(註1)	
재 공 품	35,669,000	35,669,000	0					
상품·제품	72,252,000	61,027,000	11,225,000					
토 지	241,521,000	232,521,000	9,000,000					
건 물	81,003,000	77,190,000	3,813,000					
기계장치	377,896,000	377,896,000	0					
차량집기비품	19,956,000	19,956,000	0					
개발비	6,000,000	6,000,000	0(註2)					

(註1)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순자산가액계산서 ⑭란에서 퇴직금추계액의 50%를 부채에 가산하고 ⑰란에서 제충당금을 부채에서 공제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대로 차이없이 기재함.

(註2) 순자산가액계산서 ⑥란에서 이연자산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차이없는 것으로 기재함.

작성 방법

평가기준일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경우를 포함한 평가차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계정과목란에는 평가대상 자산 또는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계정으로 기입하며 재무상태표상 미계상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 평가차액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잔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1. 자산의 평가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산 내 용
1. 현 금	₩ 23,441,000	
2. 예 금	26,330,000	
3. 유 가 증 권	3,200,000	
4. 외 상 매 출 금	231,570,000	대손총당금은 공제하지 않음.
5. 원 재 료	37,261,000	
6. 재 공 품	35,669,000	
7. 상 품 및 제 품	72,252,000	61,027,000 + 11,225,000(재고자산평가감)
8. 토 지	241,521,000	개별공시지가 241,521,100
9. 건 물	81,003,000	77,190,000(B/S가액) + 3,813,000(감가상각누계액)
10. 기 계 장 치	377,896,000	장부가액
11. 차 량 · 집 기 비 품	19,956,000	장부가액
12. 개 발 비	6,000,000	평가차액 계산시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후 '순자산가액' 계산서식에서 차감
합 계	1,156,099,000	

2. 부채의 평가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산 내 용
1. 외 상 매 입 금	₩ 75,000,000	
2. 지 급 어 음	95,000,000	
3. 단 기 차 입 금	105,000,000	
4. 장 기 차 입 금	295,000,000	퇴직금추계액(607,858,000) '순자산가액' 반영
5. 퇴 직 금 여 총 당 금	259,368,000	법인세 등(10,116,380) '순자산가액' 반영
6. 법 인 세 등		
합 계	829,368,000	

(단위 : 원)

(제5쪽)

6. 영업권

가.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순손익액의 기중평균액	28,206,286	(①×3 + ②×2 + ③) / 6
①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	26,779,390	
②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	30,835,471	
③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액	27,228,607	
나. 가×50%	14,103,143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0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0%	10%
마. 다×라	0	
바. 영업권 지속연수	5년	5년
사. 영업권 계산액 $\sum_{n=1}^n = \left[\frac{(나 - 마)}{(1 + 0.1)^n} \right]$ n은 평가기준일부서의 경과연수	53,462,194	
아. 영업권 상당액에 포함된 매입한 무체재산권 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0	
자. 영업권 평가액 (사 - 아)	53,462,194	제2쪽 4. 순자산가액 "라" 기재

작성 방법

-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①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단위 : 원)

(제6쪽)

7.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9	2018	2017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9,672,080	49,127,020	41,942,182
소득 에 가산 할 금액	② 국세,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자			326,094
	③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④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⑤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			
	⑥ 외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⑦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소계(① + ② + … ⑦)		39,672,080	49,127,020
소득 에서 차감 할 금액	⑧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10,116,380	12,527,389	13,369,069
	⑨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			
	⑩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손금불산입액	760,000	500,000	350,000
	⑪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손금불산입액			
	⑫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3,276,960	
	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⑮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1,987,200	
	⑯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2,016,310		1,213,600
	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액			107,000
	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액			
	⑲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⑳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㉑ 외화환산손실 (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㉒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소계(⑧ + … ㉒)		12,892,690	18,291,549	15,039,669
다. 순손익액(가 - 나)		26,779,390	30,835,471	27,228,607
라. 유상증(감)자시 반영액				
마. 순손익액(다 ± 라)		26,779,390	30,835,471	27,228,607
바.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30,000	30,000	30,000
사. 주당순손익액 (마 ÷ 바)		⑳ 892	㉑ 1,027	㉒ 907
아. 기중평균금액 {(㉓ × 3 + ㉑ × 2 + ㉒) / 6}				939
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10%
차.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기중평균금액에 의한 1주당 가액(아×자)				9,390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 평가 특례의 취지

이상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특례 규정을 두어 평가하고 있다. 즉,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또는 상증법 §61부터 §65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담보채권액이 통상 시가보다 높을 순 없지만 기준시가보다는 높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과세하려는 목적과 만약 기준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면 해당 평가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어지는 문제(예 : 실재는 수증자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평가방법상 채무액과 기준시가의 차액만큼이 증여자에게 이익이 역증여되는 현상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서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Max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 재산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상증법 §60~§65)
-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상증법 §66)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이란

- ①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② 양도담보재산
- ③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④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2)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의 범위

구 분	평 가 방 법
저당권(공동저당권, 근저당권 제외)이 설정된 재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전세권이 있는 재산	전세금(임대보증금 포함)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

- ① 해당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 ② 해당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법인령 §63① 각 호 법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해당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③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④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 ⑤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 담보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과 그 외 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관련 사례

1) 전세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 적용시 채권액에는登記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함 (재재산-1722, 2004.12.30.)

2) 예외

(기재부)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66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2012.9.28.)

(대법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대법원91누2137, 1993.3.23.)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前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말소되었거나 아니면 평가기준일 後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본 평가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1) 원인무효

저당권 등이란 유효하게 설정된 저당권 등을 의미하므로 원인무효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재산은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니므로 본 평가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대법원89누6457, 1990.1.25.)

2) 증여 후 근저당권 설정

채권·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1595, 2005.9.2.)

3) 증여일에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국세청)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재산세과-1893, 2008.7.25.)

(법원) 당해 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2013두1850, 2013.6.13.)

4) 공유재산

증여재산이 공유물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서면4팀-1618, 2004.10.13.)

5) 제3자의 채무 담보

평가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증여자)이 아닌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봄(재재산46014-207, 2001.8.21.)

4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저당권(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제외)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해당재산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인도받지는 아니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을 말한다(민법 §356).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 등기·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지상권 및 전세권, 입목, 어업권, 광업권,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각종의 재단저당법에 따른 재단 등이 있다.

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동저당권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는데, 이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계산은 해당 공동담보 재산들이 담보하는 전체 채권액에 대하여 평가할 재산과 그 외 담보재산의 가액(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을 말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즉, 저당권이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도 내(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저당권도 등기·등록을 하여야만 성립한다.

근저당시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 ② 해당 재산에 물적담보 외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해당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③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재산에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것 외에 평가대상자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사로부터 담보 원용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 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재재산46014-233, 2001.9.21).
-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질권이 설정된 예금·무체재산권(영업권)이 공동으로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계산은 공동으로 담보된 전체 채권액에서 예금과 무체재산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하여 각 각의 그 평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재재산-257, 2008.6.4).
- ⑤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 포함)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시

○ 시가는 알 수 없으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5억원인 주택에 대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4억원,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액 3억원)하였고, 해당 주택에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받은 경우에 이 주택의 재산평가액은?

답 4억원

(∴) Max[공시가격 3.5억원, 담보채무액 4억원(채무액 3억원 + 전세보증금 1억원)]

라.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또는 법 §61부터 §65에 따라 평가한 가액)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질권을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부동산 질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양도담보 재산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또는 법 §61부터 §65에 따라 평가한 가액)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바. 전세권이登記된 재산의 평가

전세권이登記된 재산의 평가는 해당재산의 시가(또는 상증법 §61부터 §65에 따라 평가한 가액)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에 대하여登記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登記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의 물권이며, 전세권은 보통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 취득자 사이의 설정계약과登記에 따라서 설정·취득된다.

사.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2019.2.12. 상증령 §63이 개정되어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원칙적인 시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하고,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함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규정 및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발행일자 : 2024년 4월
발행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감수 : 상속증여세과장 최성영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
편집위원 : 서기관 조윤석
행정사무관 김은진
집필위원 : 국세조사관 이태호
국세조사관 홍소영
국세조사관 장수환
국세조사관 정주연
국세조사관 진수정

* 이 책자는 국세청 종사직원의 직무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